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실무가이드

PART 1.

증명

KOREA
CUSTOMS
SERVICE



PART 2.

인증수출



PART 3.

검증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실무가이드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발 간 사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었던 한-칠레 FTA가 체결·발효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FTA가 크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미국·유럽연합(EU)·아세안 등 세계 3대 경제권을 비롯하여, 각 대륙별 거점 국가와의 FTA를 성공적으로 추진한 결과 '14년 현재 총 50개국과의 FTA를 체결한 'FTA-Hub 국가'로 도약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중국과의 FTA를 비롯 RCEP, TPP 등 광역 FTA가 모두 체결되는 경우 FTA 교역 비중이 약 81.2%까지 큰 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FTA는 우리기업에게 새로운 수출시장을 제공하고 우리국민에게 지속적인 일자리를 부여하는 기회와 도약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FTA를 통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쟁력 있는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FTA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운명, 나아가 국가경제를 좌우하는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어 FTA활용촉진이 기업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은 FTA활용을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와 시간부담,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관리 등에 대한 어려움, 급증하고 있는 원산지 사후 검증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여전히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FTA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기업실무자들이 보다 쉽게 원산지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발급할 수 있도록 ‘원산지 증빙서류 작성가이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크게 원산지증명, 인증수출자, 사후검증 등 세부분으로 나누어 초심자도 쉽게 원산지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각 양식별 작성요령 및 필수 체크 사항 등에 대한 상세한 실무내용을 담고 있으며, 원산지검증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국 측 원산지 검증절차와 검증대응 성공 사례 등 관련 정보 또한 꼼꼼하게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자를 십분 활용하여 우리기업들이 FTA환경 속에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우리기업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관세청은 FTA활용 맞춤형 컨설팅,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수출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역량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2014. 4.

관세청장 **박 문 찬**

PART 1 : 원산지증명 관련 서식

1. 민원인 작성서식

FTA

01_ 원산지증명서(재)발급신청서	12
02_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	38
03_ 원산지소명서	43
04_ 원산지(포괄)확인서	56
05_ 국내제조(포괄)확인서	67
06_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77
07_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81
08_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92
09_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100
10_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113
11_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124
12_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137
13_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149
14_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160

일반특혜

15_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남북)	165
16_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남북)	169
17_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일반특혜)	173
18_ 원산지소명서	185
19_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	191
20_ 업체서명 등록서	200

2. 세관 등 발급기관 작성서식

FTA

21_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204
22_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213
23_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223
24_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232

일반특혜(남북교역 포함)

25_ GATT 원산지증명서(TNDC)	242
26_ APTA 원산지증명서	249
27_ GSTP 원산지증명서	260
28_ GSP 원산지증명서	269
29_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	277

PART 2 : 인증수출자 관련 서식

1. 민원인 작성서식

30_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와 인증서	284
31_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와 인증서	298
32_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309
33_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315
34_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323
35_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328
36_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332

2. 세관 등 기관 작성서식

37_ 보정요구서	348
38_ 현지확인 통보서	353
39_ 시정요구서	358

PART 3 : 원산지검증 · 수입 관련 서식

1. 수출입자 등 민원인 작성서식

FTA

40_ 조사연기승인(신청)서	364
41_ 이의제기서	374
42_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	382
43_ 현지조사 통지서 수령증	391
44_ FTA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	398
45_ 원산지소명서	415
46_ 원산지질문서	426
47_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수입자용)	441
48_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수출자 · 생산자용)	474
49_ 사전심사서 변경효력 유예신청(승인)서	503
50_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	511
51_ 관세상호협의 신청서	516
52_ 협정관세적용 신청서	522
53_ 협정관세적용 신청 정정신청(승인)서	533
54_ 사전심사 신청서	539
55_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서	553
56_ 사전심사서 수정 통보서	560

[한-미 FTA 원산지 검증대비 실무 가이드라인] 569

- 한-미 FTA 원산지검증 569
- CBP의 정보제공 요청 571
- 원산지 소명서 작성 예시 및 사례 582
- 검증결과 및 이행통지 616
- 수출자/생산자의 대응전략 620
- 미국 직접검증대응 성공사례 2편 636

일반특혜 관련서식

57_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648
58_ 조사연구승인(신청)서	653
59_ 이의제기서	658

2. 세관 등 발급기관 작성서식

60_ 관세상호협약의 결과통지서	663
61_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정요구서	666
62_ 원산지조사(대상/수행)기간 확장통지서	670
63_ 청렴 협약서	674
64_ 자료 보관증, 보관자료 목록, 보관자료 반환증	676
65_ 계약상대국의 원산지확인요청(사실/회신)통지서	680
66_ 과세전(경정) 통지서	682
67_ 원산지 서면검증 통지서	684
68_ 원산지 현장검증 통지서 및 현장검증 점검표	687
69_ 사전심사신청대장	691
70_ 사전심사서	694

PART 4: 부 록

1. FTA 활용절차	702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절차(세관)	704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절차(상공회의소)	709

PART 1.
원산지증명
관련 서식

KOREA
CUSTOMS
SERVICE



1. 민원인 작성서식

FTA

01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작성목적

- 발효 중인 FTA협정 중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FTA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작성·제출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발급기관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 주의사항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을 원하는 자는 발급권한을 가진 기관을 통하여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경우 당해 지역 입주기업에 대해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선적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자의 과실·착오 등 부득이한 경우 선적 후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이 가능하다.

협정	제출처
한-싱가포르 FTA	- 싱가포르 : 세관 - 한 국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한-아세안 FTA	- 아 세 안 : 각국 정부기관 - 한 국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한-인도 CEPA	- 인 도 : 수출검사위원회 - 한 국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한-페루 FTA	- 페 루 : 통상부 - 한 국 :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및 발급신청 첨부서류

-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전국 46개 세관*과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 67개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다.

* 46개 세관 : 서울, 인천공항, 부산, 인천, 대구, 광주, 구로, 성남, 안양, 동해, 대전, 청주, 천안, 용당, 김해, 창원, 양산, 마산, 거제, 수원, 평택, 안산, 포항, 구미, 울산, 군산, 목포, 여수, 광양, 제주, 의정부, 인천공항국제우편, 속초, 충주, 대산, 김포, 사상, 부산국제우편, 진주, 통영, 사천, 부평, 익산, 전주, 파주, 원주

** 상공회의소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수원, 안성, 안양, 부천, 성남, 경기북부, 평택, 이천, 안산, 화성, 용인, 김포, 군포, 하광, 시흥, 광명, 경기 동부, 고양, 포천, 오산, 의왕, 춘천, 원주, 강릉, 태백, 속초, 청주, 충주, 음성, 진천, 충남북부, 충남서부, 당진, 전주, 익산, 군산, 정읍, 목포, 순천광양, 여수, 김천, 안동, 포항, 경주, 영주, 구미, 경산, 영천, 칠곡, 마산, 진주, 통영, 사천, 진해, 창원, 양산, 김해, 밀양, 함안, 제주

-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자는 발급목적에 따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발급목적	첨 부 서 류
신규발급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 (증명서 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재발급	1. 사유서
정정발급	1. 사유서
	2. 정정사유 입증서류
	3. 원산지증명서 원본

주 : 수출신고필증을 갈음하는 서류는 자유무역지역 생산물품의 경우 '국외반출신고서', 개성공단 생산물품은 '보세운송신고서', 우편물 등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또는 계약상대국 수출입증서류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0.3.2, 2010.12.31, 2011.6.30, 2013.2.23>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 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3.2.23>

-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5.21, 2010.3.2, 2013.2.23>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2010.12.31>
- ⑦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및 재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21.>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과 방법 등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 기재방법, 유효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조(증명서 발급기관)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는 때에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별표1과 같다.

- ② 증명서 발급기관 중 세관은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인장을,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공회의소”라 한다.)는 대한상공회의소장이 지정한 인장을 원산지증명서 발급용 인장으로 사용한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와 그 자로 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신청인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 ③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작성양식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제3쪽 중 1쪽)

신청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뒤쪽 참조							
①신청구분	[]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소급발급(선택후 발급)									
②신청인	구분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기타()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③원산지인증수출자	[]비해당 []해당 [인증번호 :]									
④적용FTA협정	한- FTA									
⑤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E-Mail								
⑥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E-Mail								
⑦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⑧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연/월/일)	금액(FOB USD)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품목번호 (HS)	품명·규격	금액(USD)	원산지결정기준 및 총족여부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원전 생산	영내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기타	
/				[]	[]	[]	[]	[]	[]	
/				[]	[]	[]	[]	[]	[]	
⑨비원산지재료 내역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품목번호 (HS)	품명·규격	금액(USD)		원산지	비고				
			품목번호(HS)별 소계	란 합계						
⑩운송수단/선(편)명	[]선박 []항공기 []기타 /			⑪적재항(출항일자)						
⑫목적국/항구	/			⑬포장종류부호/개수		/				
⑭총중량				⑮송품장 번호/일자		/				
⑯원산지증명서 특례	[]제3국 송품장		[]전 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상호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세관장(○○상공회의소 회장) 귀하

(제3쪽 중 2쪽)

첨부서류	<p><신규발급> 1. 수출신고필증 사본(전산으로 확인가능한 경우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합니다) 4. 원산지소명서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 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p> <p><재발급> 1. 사유서</p> <p><정정발급> 1. 사유서 2. 정정사유 입증서류 3. 원산지증명서 원본</p> <p>※ 처리기간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위 제1호 외의 경우 :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p>	수수료 7,000원 (다만, 세관장 발급시 면제)
------	---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작성방법		
항목	작성요령	작성예
①신청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 중 해당란에 [V] 표시 - 재발급, 정정발급 뒤 괄호 안에는 구 신청번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발급의 경우 [V]신규발급 []재 발 급 []정정발급 []선적후 발급
②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V] 표시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가 신청하는 경우 []생산자 [V]수출자 []관세사 []기타 ○ ○ 물산(주) 홍 ○ ○ ● 123-45-67890
③원산지 인증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해당” 또는 “해당” 중 해당란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 해당되는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 기재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미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되는 경우 [] 비해당 [V] 해당 [인증번호 :]
④적용FTA협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국가와 체결된 FTA의 명칭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아세안 FTA
⑤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전화/E-Mail :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E-M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물산(주) 홍 ○ ○ ● 123-45-67890 □ □ 시 ○ ○ 구 △ △ 대로 123 ● 02-123-4567/○ ○ ○ ○@abcd.com
⑥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대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대표자를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 주소 기재 전화/E-Mail : 발급신청 부서(담당자)의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또는 담당자) E-Mai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상사(주) 김 △ △ ● 234-56-78910 □ □ 시 ○ ○ 구 △ △ 로 ● 031-123-4567/○ ○ ○ ○@bcde.com
⑦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상호 기재 대표자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회사의 대표자 기재 주소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주소 기재 전화번호 :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자(applicant) 전화번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Corporation ● John △ △ ● 55 Newton Road #10 ○ ○ house ● 65-1234-5678

(제3쪽 중 3쪽)

<p>⑧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 결정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 수출신고필증상의 신고번호 및 신고수리일자 기재 금액(FOB USD) : 수출신고필증상의 총신고가격을 미화로 기재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기재 (란번호/총란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010-10-13-12345678(13/01/01) USD 12,000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3 / 5 																		
<p>※수출품목의 개 수 (수출신고 필증 상의 란수)가 총 3개 이상인 경우 HS, 품명, 규격 및 금액은 기재를 생략 할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번호(HS) : HS 6단위 기재 품명 · 규격 :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 · 규격 기재 금액(USD) : 수출신고필증상의 해당 란 신고가격을 신고환율로 환산하여 미화로 기재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 해당 수출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모두 선택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0304.31 Tilapias(Oreochromis spp.) USD 12,000 세번변경 및 부가가치기준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table border="1" data-bbox="830 643 1146 772"> <thead> <tr> <th colspan="6">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th> </tr> <tr> <th>완전 생산</th> <th>연내 완전 생산</th> <th>세번 변경</th> <th>부가 가치</th> <th>특정 공정</th> <th>기타</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V]</td> <td>[V]</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 50% 기준인 경우 - 55% (USD10,000-USD4,500)/ USD10,000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완전 생산	연내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기타	[]	[]	[V]	[V]	[]	[]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완전 생산	연내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기타															
[]	[]	[V]	[V]	[]	[]															
<p>⑨비원산지 재료 내역</p> <p>※수출신고 필증 란 번호 별로 주요 수입 원재료 3개 를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기재 (란번호/총란수) 품목번호(HS) : HS 6단위 기재 품명 · 규격 : 수입신고필증상의 품명 · 규격 기재 금액(US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번호(HS)별 소계 : 비원산지 재료별 금액을 미화로 기재 - 란 합계 : 란별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합계 금액을 미화로 기재 원산지 : 비원산지재료의 원산지를 기재 비고 : 참고사항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총 5란 중 3란 품목의 경우 : 3 / 5 0304.31 Tilapias(Oreochromis spp.) USD 6,000 USD 10,000 일본 																		
<p>⑩운송수단 (선명/편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V] 표시 선명 또는 편명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V]선박 []항공기 []기타 KE 123 																		
<p>⑪적재항 (출항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물품의 적재항(또는 적재예정항), 출항일자(또는 출항예정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산항(13/01/01) 																		
<p>⑫목적국 (항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물품의 최종 목적국 및 항구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하노이항 																		
<p>⑬포장종류 (부호/개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물품의 포장종류 부호와 포장개수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CS/1,000 																		
<p>⑭총중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물품의 총중량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0Kg 																		
<p>⑮송품장 번호/일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품장 번호와 발급일자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ABC123456/13.01.01 																		
<p>⑯원산지 증명서 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국 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또는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중 해당하는 경우 란에 [V] 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V]제3국 송품장 [] 전시 []연결 원산지증명서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작성방법

- 1) **신청구분** : “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 중 신청서 제출목적 해당란에 [V] 표시를 합니다. 만약, 재발급이나 정정발급인 경우 뒤에 나오는 괄호 안에는 구 신청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신청인** :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V] 표시를 하고 상호(대표자) 기입란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기재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3) **원산지인증수출자** : 원산지인증수출자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란”에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비해당란에 [V] 를 표시합니다. 또한,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적용 FTA협정** : 해당 수입국가와 체결된 FTA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ex) 한-페루 FTA, 한-아세안 FTA
- 5) **수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대표자 성명·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발급신청 부서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 E-mail 혹은 담당자 E-mail을 기재합니다.
- 6) **생산자**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수출자의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 정보를 수출자 정보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7) **수입자** :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또는 계약서상의 수입자 상호·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8) **수출물품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의 수리일자, 미화 표시 총수출신고금액 (FOB USD), 수출신고필증의 수출물품 란별 6단위 HS Code, 품명·규격, 해당 란 미화 환산액, 해당물품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해당되는 경우 모두 표기한다)를 기재합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일 경우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란수가 3개 이상인 경우 3개 이상의 명세에 대하여는 생략 가능.
- 9) **비원산지재료내역** :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를 ‘란번호/총란수’ 로 기재하고, 해당 제품의 6단위 HS Code와 품명·규격을 기재합니다. 또한, 품목별 비원산지재료내역을 6단위 HS Code별로 기재하고 해당 물품의 원산지 및 비고(참고)사항을 기재합니다.
※ 다만, 수출신고필증 란의 번호별로 주요 수입원재료 3개만 기재하여도 무방.
- 10) **운송수단/선(편)명** :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V]표시 합니다.
- 11) **적재항(출항일자)** : 수출신고필증상의 적재항 또는 아직 적재되지 않은 경우 적재예정항과 출항일자(또는 출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 12) **목적국(항구)** : 수출물품의 최종 목적국과 항구를 '국가/항구명'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 13) **포장종류 부호/개수** : 수출물품의 포장종류 부호와 포장개수를 기재합니다.

포 장 종 류 부 호

표시부호	포 장 형 태	표시부호	포 장 형 태
BA	Barre(통)	IZ	Ingots(주철괴)
BC	Bottlecrate(맥주박스 모양의 상자)	NT	Net(그물)
BE	Bundle(다발, 꾸러미 등 묶음포장 단위)	OU	외포장이 없는 개, 두, 필, 대, 기, 척, 착 등
BG	Bag(자루, 부대)	PG	Plate(판)
BJ	양동이	PI	Pipe(파이프)
BL	Bale(광목, 원단 등 감아놓은 상태)	PU	Traypack(뚜껑 없는 칸막이 상자)
BR	Bar(막대)	RL	Reel(줄 감는 틀)
BV	Bottle, bulbous(전구모양의 병)	RO	Roll(두루마리)
CA	Can(캔)	SK	Skeletoncase(골조상자)
CH	Chest(나무상자 껍)	GT	기타 개수를 헤아릴 수 있는 물품
CJ	Coffin(관)	VG	Bulk, gas(기체 상태의 벌크)
CL	Coil(코일, 나선형으로 뭉뚝 감은 것)	VL	Bulk, liquid(액체 상태의 벌크)
CR	Wooden box, Wooden case 대체용기	VO	Bulk, solid(덩어리 상태의 벌크)
CS	그릇, 상자, 케이스	VQ	Bulk, gas(액화가스 상태의 벌크)
CT	Carton(판지로 만든 상자)	VR	Bulk, solid(곡물벌크)
DR	Drum(드럼통)	VY	Bulk, fine particles(분말벌크)
HH	휴대품	VT	기타 벌크물품

- 14) **총중량** : 수출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합니다.
- 15) **송품장 번호/일자** : 송품장(Invoice)의 번호와 발급일자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16) **원산지증명서 특례** : "제3국 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 증명서" 또는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란에 [V]표시 합니다.

작성방법

별지 제1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 제2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제3쪽 중 1쪽)

신청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뒤쪽 참조							
①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신규발급 [<input type="checkbox"/>]재발급() [<input type="checkbox"/>]정정발급() [<input type="checkbox"/>]소급발급(선적후 발급)									
②신청인	구분	[<input type="checkbox"/>]생산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수출자 [<input type="checkbox"/>]관세사 [<input type="checkbox"/>]기타()								
	상호(대표자)	(주)정보원								
③원산지인증수출자	[<input type="checkbox"/>]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해당	[인증번호 : 120-11-xxxxxx-011]								
④적용FTA협정	한-ASEAN FTA									
⑤수출자	상호(대표자)	국제전자(이 국 제)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전화/E-Mail 031-600-0000							
⑥생산자	상호(대표자)	국제전자(이 국 제)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전화/E-Mail 031-600-0000							
⑦수입자	상호	PT Awaco Indoelec	대표자 Awaco Hammer							
	주소(국가)	NO 8, KOTA MODERN TANGERANG, 15117, INDONESIA	전화번호 +62-343-858-100							
⑧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123-11-xxxxxxxx(13.03.07) (연/월/일)		금액(FOB USD) 30.0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품목번호 (HS)	품명·규격	금액(USD)	원산지결정기준 및 총족여부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완전 생산	열내 천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기타
1/3	8471.30	laptop/8440P	3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6.2%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⑨비원산지재료 내역										
수출신고필증 란 번호	품목번호 (HS)	품명·규격	금액(USD)		원산지	비고				
			품목번호(HS)별 소계	란 합계						
12345-03- 12345	8471.70	ram/ 1G	2	4.5	CN					
	8471.60	mouse/H123	1.5		CN					
	8471.90	parts/2*1	1		CN					
⑩운송수단/선(편)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선박 [<input type="checkbox"/>]항공기 [<input type="checkbox"/>]기타 /			⑪적재항(출항일자)	Incheon port(13.03.20)					
⑫목적국/항구	INDONESIA / Pan dang			⑬포장종류부호/개수	CT/30					
⑭총중량	90Kg			⑮송품장 번호/일자	13-1121/2013. 11. 10					
원산지증명서 특례	[<input type="checkbox"/>]제3국 송품장 [<input type="checkbox"/>]전 시 [<input type="checkbox"/>]연결 원산지증명서 [<input type="checkbox"/>]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2013년 03월 12일

신청인 : 상호 [대표자명] **국제전자(이 국 제)** (서명 또는 인)

서울세관장 귀하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 표시를 합니다.

신청번호											
수출신고 필증 란 번호	품목 번호(HS)	품명·규격	금액(USD)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완전 생산	역내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기타		
1/3	8471.30	Lap top/ 8440P	30.0	[]	[]	[]	[V]	[]	[]	56.2%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전자문서 작성범례(세관신청용)

[별지 제4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세관신청용)

(1) 전자문서(XML) 약어 설명

구분	약어	설 명
TYPE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u> 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u> 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u> 로 작성
SIZE	999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건	M	- 필수 기재항목
	C	- 선택 기재항목
	X	- 기재 불필요 항목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세관신고용)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 기본정보					
문서코드	an	3	m	원산지증명서: 036, 일반 : 504	36
문서명	an..	80	m	원산지증명서, FTA원산지증명서등	FTA원산지증명서
문서전송구분	an..	2	m	최초(9),수정(35),삭제(1), 재발행 (18)	9
제출번호	an	14	x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신청일자	an	8	m	신청일자	20130213
신청세관코드	an	3	m	무역통계부호표상 세관부호	010
신청세관명	an..	20	m	신청세관명	서울세관
변경차수	an..	2	c	변경횟수	2
C/O 발급번호	an	10	x	세관(3)+과(2)+일련번호(5)	1200300001
C/O 발급 비밀번호	an	9	x	C/O 발급 비밀번호	ABCDE1234
C/O 발급일자	an	8	x	C/O 발급일자	20130213
발행자	an..	6	x	발행자	Hong gil dong
원산지증명서발행일자	an	8	x	YYYYMMDD	20130213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① 신청구분	an	1	m	A : 발급신청 B : 재발급신청 C : 보정발급신청 D : 정정발급신청	A
신청사유명	an.	200	c	신청사유설명	원산지증명서 분실로 재발급 신청
발급구분	an	1	m	A : 신청, B : 선적후발급	A
재발급/정정발급 사유란	an.	500	c	재발급/정정발급 사유란	원산지증명서 분실
② 신청인					
신청인명	an.	28	m	대표자명	Hong gil dong
신청인부호	an	10	c	시스템에서 자동생성	
신청 담당자 아이디	an	24	c	시스템에서 자동생성	
신청인구분	an.	3	c	신청인구분 GD : 생산자 EX : 수출자, CB : 관세사, ZZZ : 기타	GD
신청업체상호	an.	30	m	신청업체상호	Monalisa company limited
사업자등록번호	an	10	c	신청사업자등록번호	1128166062
③ 원산지인증수출업체	an	11	c	원산지인증수출업체:세관(3)+과(2)+일련번호(6)	010-07-000001
④ 원산지증명발급구분	an	1	m	A : 남북교역(일반특혜) B : GSP(일반특혜) C : GSTP(일반특혜) D : GATT(일반특혜) E : APTA(일반특혜) Z : 기타(일반특혜) G : 한국-싱가포르FTA(FTA특혜) I : 한-아세안FTA(FTA특혜) J : 한-인도(FTA특혜) K : 한-페루 FTA(FTA특혜)	I
⑤ 수출자					
수출자명	an.	50	m	수출자 상호(대표자)	Monalisa company limited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수출자사업자등록번호	1128166062
주소	an.	200	m	수출자주소	165, Ingye-ro, Yeonglong-gu, Suwon-si, Gyeonggi-do
국적	an	2	m	수출자국적	KR
국가명	an.	30	m	수출자국가명	Republic of Korea
연락처구분자	an.	2	c	TE:전화번호, FX:팩스번호	TE
전화번호, 팩스번호	an.	20	c	수출자전화번호	02-123-4567
이메일	an.	50	c	수출자이메일	34567abc@naver.com
⑥ 생산자					
생산자명	an.	50	c	생산자 상호(대표자)	FTA Ltd
사업자등록번호	an	10	c	생산자 사업자등록번호	1128105013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주소	an..	200	c	생산자주소	165, Ingye-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국적	an	2	c	생산자국적	KR
국가명	an..	30	c	생산자국가명	Republic of Korea
연락처 구분자	an..	2	c	TE:전화번호, FX:팩스번호	TE
전화번호, 팩스번호	an..	20	c	생산자전화번호	02-123-4567
이메일	an..	50	c	생산자이메일	34567abc@naver.com
생산장소명(제조지)	an..	30	c	생산장소	165, Ingye-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⑦ 수입자			c		
수입자명	an..	50	c	수입자 상호(대표자)	ABC Corporaion
사업자등록번호	an..	10	c	수입자사업자등록번호	12345
주소	an..	200	c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인 주소 기재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국적	an	2	c	수입자국적	SG
국가명	an..	30	c	수입자국가명	SINGAPORE
⑧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1~999(연번)
수출신고 구분	an	3	m	830 : 수출신고번호 955 : 기타번호(까르네) 5MF : 기타번호(휴대반출) 833 : 기타번호(간이수출) ETC : 기타번호(기타)	830
수출신고번호	an..	30	m	수출신고번호 : 세관(3)+과(2)+일련번호(10) 수출신고번호외에 "기타번호" 추가가능 (2012.11.30적용)	010-10-1234567800
수출신고 수리일자	an	8	c	수출신고 수리일자	20070301
금액(FOB, 미화)	n..	20	m	수출신고필증의 총신고가격 기재 (FOB 미화기준으로 환산기재)	200.5
품목총란번호	n..	3	c	품목총란번호	5
품목란번호	n..	3	m	품목의 순번, 1부터 1씩 차례로 증가	3
수출란번호	n..	3	m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3
품명	an..	50	m	품명	Flat-rolled product of stainless steel
HS부호	an..	10	m	수입당사국 HS 기재	821191
규격	an..	100	m	규격	A616
수량	n..	14	m	수량	11
수량단위	an..	5	m	수량단위 기재(에트리뷰트 고정값)	EA
송품장가격통화	an	3	c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를 기재	USD
송품장가격금액	n..	20	c	송품장가격금액, 미화가 아닌 경우	2222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원산지기준	an.	20	m	CTC, CTH, RVC40%, CTC&VAC, CTH+RVC, DeMinimis, GaeSungProducts, OP, Other, Rule6, RVC, Specific Process, VAC, WO, WOR, WO-AK, CTSH+RVC, CC, CTSH, BD, BU, MC, NC, SP, CC+BD, CC+BU, CC+MC, CC+NC, CTH+BD, CTH+BU, CTH+MC, CTH+NC, CTSH+BD, CTSH+BU, CTSH+MC, CTSH+NC	MC
국내부가가치비율	n.	4	m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적용	55
㉑ 비원산지재료 내역 1··3(반복)					
증명란번호	n.	3	m	수출신고필증상의란번호 수출신고필증란번호별로주요수입원재료3개를기재	1
품목사항순번(1,2,3)	n.	2	c	품목사항순번(1,2,3)	1
품명	an.	50	c	수출신고필증상의 품명 기재	Table knives harving fixed blade
규격	an.	100	c	수출신고필증상의 규격 기재	M90P
HS부호	an.	10	c	HS 10단위 기재	7220200000
HS별금액	n.	20	c	비원산지 재료별 금액을 기재	200
란합계금액	n.	20	c	란별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합계금액을 미화로 기재	2000
비고	an.	30	c	참고사항 기재	
원산지국가코드	an	2	c	수입산 원재료의 원산지를 기재	jp
원산지국가명	an.	30	c	원산지국가명	JAPAN
㉒ 비고	an.	200	c	한-페루 FTA : 고객 주문번호, 신용장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 기재,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발행시 비당사국 운영인의 성명 기재, 최소허용수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을수 있음	Order No : 3417
㉓ 운송수단					
운송수단부호	an	2	c	10:선박, 20:철도, 30:차량, 40:항공기, 50:우편, 60:복합, 70:고정운송설비, 80:내륙수로, 90:기타	10
선박/항공기명	an.	30	c	선박/항공기명	KE571
㉔ 선적지					
선적항구	an	5	m	선적항구	KRPUS
선적국가명	an.	30	m	선적국가명	Republic of Korea
선적도시명	an.	30	m	선적도시명	PUSAN
출발일자	an	8	c	출발일자(YYYYMMDD)	20130212
㉕ 양륙지					
하역항구	an	5	m	하역항구(un-2/Lcode-3)	KRPUS
㉖ 경유국					
경유국가코드	an	2	c	경유국가코드	JP
경유국가명	an.	30	c	경유국가명	JAPAN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㉒ 목적국					
목적국	an	2	c	목적국	VN
국가명	an..	30	c	목적국 국가명	VIETNAM
도시명	an..	30	c	목적국 항구명	HAIPHONG
㉓ 총포장갯수 및 총수량 영문명					
선적마크	an..	50	c	수출물품의 포장기호와 포장개수를 기재	quantity 100ea
㉔ 총중량					
중량단위	an..	5	m	중량단위(에트리뷰트 고정값임)	KG
㉕ 송품장					
송품장번호	an..	100	m	송품장상의 송품장 일련번호	MOC120060301001
송품장발행일자	an	8	m	송품장발행일자(YYYYMMDD)	20070601
원산지증명서특례	an	1	m	0: 해당없음 1: 제3국발행송장 2: 전시 3: 연결원산지증명	1
연결원산지증명 국가명	an..	60	c	연결원산지증명 국가명	USA
㉖ 제3국 송장 발행회사(중계무역회사)					
송품장 발행회사명	an..	100	c	송품장 발행회사명	ABC Corporaion
운영인 법적이름	an..	50	c	제3국 송장 운영인 법적이름	ABC Corporaion
발행국가코드	an	2	c	제3국 송장 발행국가코드	SG
발행회사주소	an..	250	c	제3국 송장 발행회사주소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제3자무역	an	1	c	해당 : Y, 해당없음 : N	N
㉗ 첨부파일					
순번	n..	2	c	순번	1
첨부파일용도구분	an..	2	c	첨부파일용도구분	01: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02: 원산지소명서 03: 원산지확인서 04: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05: 기타
파일명	an..	512	c	파일명	작성자가 부여한 파일명
파일절대위치	an..	512	c	파일절대위치	자동생성

전자문서 작성범례(상공회의소신청용)

[별지 제5호서식]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상공회의소 신청용)

대분류	분류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중분류	소분류	세항목							
관리 정보	전자 문서번호			an.	40	m	서비스 사업자 관리번호	eco-20110817 16042855731		
	전자문 서명			an.	35	c	전자문서명			
	전자문서 추가유형 코드			an	4	c	F100: 원산지확인서 F102: 원산지소명서 F103: 원산지확인요청서(미결) F104: 결과통보서 F105: 원산지확인서사본 F106: 원산지증명신청서 F107: 국내제조확인서	F100		
	발행일시			n	14	m	YYYYMMDDHHMISS 전자서명생성일시	20070206121256		
	송신자 정보	가입자 식별자			an.	30	m	송신자 가입자 아이디	KLN-2011001	
		가입자 식별자 한정어			an.	10	c	송신자 가입자 Agency 아이디		
		상호			an.	100	m	송신자 상호	케이엘넷	
		담당자	직위			an.	30	c	송신자 담당자 직위	부장
			부서			an.	20	c	송신자 담당자 부서	영업부
			이름			an.	30	m	송신자 담당자 이름	박영업
			서명정보			an.	100	c	송신자 서명 정보	byu_sign.jpg
		전화번호	전화번호		an.	20	c	송신자 전화번호	02-555-3434	
		팩스번호	팩스번호		an.	20	c	송신자 팩스번호	02-555-3435	
		이메일	이메일		an.	50	c	송신자 이메일주소	yupark@kinet.co.kr	
	주소	주소1			an.	150	m	송신자 주소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주소2			an.	150	c	송신자 주소2	701호 영업부	
		주소3			an.	150	c	송신자 주소3	영업1팀	
국가				an	2	c	송신자 국가코드	KR		
수신자 정보	가입자 식별자			an.	30	m	수신자 가입자 아이디	NIP-2011002		
	가입자 식별자 한정어			an.	10	c	수신자 가입자 Agency 아이디			
	상호			an.	100	m	수신자 상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담당자	직위			an.	30	c	수신자 담당자 직위	실장	
		부서			an.	20	c	수신자 담당자 부서	해외사업실	
		이름			an.	30	m	수신자 담당자 이름	조사업	
서명정보				an.	100	c	수신자 서명 정보	csu_sign.jpg		

대분류	분류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중분류	소분류	세항목						
관리 정보	수신자 정보	전화번호	전화번호	an..	20	c	수신자 전화번호	02-555-1257	
		팩스번호	팩스번호	an..	20	c	수신자 팩스번호	02-555-1258	
		이메일	이메일	an..	50	c	수신자 이메일주소	sucho@nipa.or.kr	
		주소정보	주소1	an..	150	m	수신자 주소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주소2	an..	150	c	수신자 주소2	14층	
			주소3	an..	150	c	수신자 주소3	해외사업실	
			국가	a	2	c	수신자 국가코드	KR	
전자 서명	전자서명				x	W3CXMLDsig전자서명 지침내 "8.2전자서명" 참조			
신청서 기본 정보	변경전 신청번호			an..	24	c	이전 신청번호를 기재. 재발급, 정정발급시만 해당		
	적용 FTA코드			N	2	c	01:한-칠레, 02:한-싱가포르, 03:한-EFTA, 04:한-아세안, 05:한-인도, 06:한-EU, 07:한-페루, 08:한-미	04	
	비고사항			an..	200	c	비고사항		
	신청일자			N	8	m	YYYYMMDD	20081211	
	신청구분			N	1	m	1. 신규발급 2. 재발급 3. 정정발급 4. 소급발급(선적후 발급)	1	
	원산지 증명서 특례			N	1	m	1:제3국 송품장, 2:전시, 3:연결 원산지증명서(Back- to-Back), 4: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1	
	신청인 정보	사업자 번호			N	10	c	신청인 사업자번호	2113829847
		구분			N	1	c	1: 생산자 2: 수출자 3: 관세사 4: 기타	1
		상호			an..	100	m	신청인의 사업자 업체명	케이엘넷
		구분 기타 항목			an..	10	c	신청인 구분을 4.기타로 하였을시 그 내용 명시	
		담당자	직위	an..	30	c	신청인 담당자 직위	부장	
			부서	an..	20	c	신청인 담당자 부서	영업부	
			이름	an..	30	m	신청인 담당자 이름	박영업	
서명정보			an..	100	c	신청인 서명 정보	byu_sign.jsp		
업무 담당자		직위	an..	30	c	FTA 업무담당자 직위	과장		
		부서	an..	20	c	FTA 업무담당자 부서	수출사업과		
	이름	an..	30	m	FTA 업무담당자 이름	한수출			
	서명정보	an..	100	c	FTA 업무서명 정보				
대표자	성명	an..	30	m	대표자 성명	김케이			

대분류	분류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중분류	소분류	세항목						
신청서 기본 정보	신청인 정보	주소정보	주소1	an.	150	m	수신자 주소1		
			주소2	an.	150	c	수신자 주소2		
			주소3	an.	150	c	수신자 주소3		
			국가	an	2	c	수신자 국가코드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 번호	an	11	m	원산지 인증수출자 해당 여부 코드 2. 해당으로 하였을시 인증번호 명시	010-07-000001	
	해당여부 코드		n	1	m	원산지인증수출자해당 여부코드 1:비해당 2: 해당	1		
신청세관 정보	신청세관		n	3	m	신청세관의 코드 입력	080		
거래 상대방 정보	생산자 정보	사업자번호		N	10	m	생산자 사업자번호	2443898374	
		생산자유형		N	1	c	1: 생산자가 2명이상임. 2: 생산자와 수출자가 같음. 3: 생산자를 모름. 4: 생산자를 비밀로 함. 적용FTA코드가 01: 한-칠레시만 사용, 그 이외의 협정에서는 사용안함	1	
		상호		an.	100	c	생산자의 사업자 업체명	연구상사	
		대표자 정보	대표자 성명	an.	30	m	생산자의 대표자 성명	홍연구	
		전화번호	전화번호	an.	20	m	생산자 전화번호	02-555-5478	
		팩스번호	팩스번호	an.	20	m	생산자 팩스번호	02-555-5479	
		이메일	이메일	an.	50	m	생산자 이메일주소	ykhong@labco.co.kr	
		주소	주소1	an.	150	m	생산자 주소1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주소2	an.	150	c	생산자 주소2	인계로 165	
			주소3	an.	150	c	생산자 주소3	410-701	
			국가	a	2	c	적용협정코드 01: 한-칠레, 05: 한-인도일시 필수, 그이외의협정 선택사용	01	
		수입자 정보	사업자번호		N	10	c	수입자 사업자번호	
			상호		an.	100	m	수입자 상호	MaxCom
			대표자	대표자	an.	30	m	수입자 대표자 성명	James T. Kirk
			전화번호	전화번호	an.	20	m	수입자 전화번호	555-9988
주소정보	주소1		an.	150	m	수입자 주소1	Cetic Bldg 202		
	주소2		an.	150	c	수입자 주소2	LA, California USA		
	주소3		an.	150	c	수입자 주소3			
	국가	a	2	c	수입자 국가코드	VN			
수출자 정보	사업자 번호		N	10	m	수출자 사업자번호	2473628390		

대분류	분류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중분류	소분류	세항목						
거래 상대방 정보	수출자 정보	상호		an.	100	m	수출자 상호	KLNET	
		대표자	성명	an.	30	m	수출자 대표자 성명	kerri jung	
		전화번호	전화번호	an.	20	m	수출자 전화번호	02-555-3748	
		팩스번호	팩스번호	an.	20	m	수출자 팩스번호	02-555-3749	
		이메일	이메일	an.	50	m	수출자 이메일주소	krjung@klnet.co.kr	
		주소	주소1	an.	150	m	수출자 주소1	410-701	
			주소2	an.	150	c	수출자 주소2	165, Ingye-ro, Yeongtong-gu, Suwon-si	
			주소3	an.	150	c	수출자 주소3	Gyeonggi-do Korea	
			국가	a	2	c	적용협정코드 01:한-칠레, 04:한-아세안, 05:한-인도 필수, 그 이외 협정은 선택 항목	01	
수출 물품 정보	화인정보			an.	500	c	화인 Marks And Number		
	총중량			n.	14	m	단위는 kg	3000	
	순중량			n.	14	c	단위는 kg	2750	
	FOB 금액			n.	14	m	수출신고필증상 금액, 화폐단위는 태그의 속성(unitCode)에 기재	7540000	
	포장개수			n.	14	m	포장 수량을 명시, 포장단위는 태그의 속성(unitCode)에 기재	900	
	포장기호			an.	100	m	수출물품의 포장기호와 포장개수를 기재(포장박스에 기호를 표기하지 않는 경우 기재 생략)	KG	
	수출신고 수리필증 정보	문서번호			an	15	m	세관(3)+연도(2)+일련번호(10)	010-10-0000000001
		수리일자			n	8	m	수출신고수리필증의 수리일자, YYYYMMDD	20110804
	송품장 정보	문서번호			an.	50	m	송품장의 문서번호	INV1189392
		발행일자			n	8	m	송품장의 발행일자 YYYYMMDD	20110802
	수출신고물품 상세정보 (1..999)	란번호			n.	3	c	수출신고수리필증의 란번호	1
		물품일련번호			n.	10	c	적용FTA협정코드가 04 : 한-아세안시 필수, 그 이외의 협정 선택항목	1
HS코드				n.	10	m	세번부호(6자리를 기재)	202043	
적용협정 코드				n	2	c	원산지 확인서는 필수, 01: 한-싱가포르, 02: 한-아세안, 03: 한-인도, 04: 한-EU, 05: 한-칠레, 06: 한-EFTA, 07: 한-스위스치즈,		

대분류	분류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중분류	소분류	세항목					
수출 물품 정보	수출신고물품 상세정보 (1..999)	특혜기준		an.	30	c	실제적용한 원산지기준을 국문과 부호(영문)로 모두 기재	4단위 세번변경 기준(CTH)
		원산지 결정기준		n	2	c	신청서에서는 사용 안함. 01:세번변경, 02:부가가치기준, 03:조합기준	01
		가격조건		n	1	c	1: FOB 2: EXW	1
		물품가격		n.	14	c	송품장 거래가격과 통화 단위의 금액으로 기재, 화폐단위는 태그의 속성(currencyID)에 기재	500000
		규격		an.	200	m	수출물품의 규격	340x720x4500, Blue cover, White and Gray Stripes
		품명		an.	100	m	수출물품의 품명	Blue Bag 308
		부가가치비율, 비율계산		an.	100	c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의 계산식을 명시	500000x0.1=50000
		주요생산 공정		an.	1000	c	주요 생산 공정	
		국산재료 합계		n.	14	c	국산 재료 합계	
		수입산 재료합계		n.	14	c	수입산 재료 합계	
		원산지 기준 및 충족여부	완전생산	n	1	c	0: No, 1: Yes	1
			역내완전 생산	n	1	c	0: No, 1: Yes	1
			세번변경	n	1	c	0: No, 1: Yes	1
			부가가치	n	1	c	0: No, 1: Yes	1
			세번변경+ 부가가치	n	1	c	0: No, 1: Yes	1
			특정공정	n	1	c	0: No, 1: Yes	1
최소기준	n		1	c	0: No, 1: Yes	1		
누적기준	n		1	c	0: No, 1: Yes	1		
역외가공	n		1	c	0: No, 1: Yes	1		
직접운송	n		1	c	0: No, 1: Yes	1		
기타	n		1	c	0: No, 1: Yes	1		
원산지 결정	n	1	c	0: No, 1: Yes	1			

대분류	분류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중분류	소분류	세항목							
수출 물품 정보	수출신고물품 상세정보 (1..999)	원산지 기준 및 총족여부	원산지 포괄기간 시작일자	n	8	m	YYYYMMDD	20131201		
			원산지 포괄기간 종료일자	n	8	m	YYYYMMDD	20131201		
		부가가치 비율		an.	14	m	부가가치 비율	55		
	비원산지 내역 (0..999)	수출신고 수리필증 란번호			n.	3	c	수출신고수리필증란번호	1	
			비고		an.	200	c	비고사항	N/A	
		란 합계			n.	14	c	거래가격 기재, 당해물품이 세번변경기준시 기재 생략, 화폐단위는 태그의 속성 (currencyID)에 기재		
		원재료내역 (0..3)	물품 일련번호			n.	10	c	물품 일련번호	1
			HS No.			n.	10	m	세번부호(6자리를 기재)	203040
			규격			an.	200	c	물품 규격	
			품명			an.	100	m	품명	Sheep Calp Leather
	HS별 소계			n.	14	c	HS별 금액 소계. 화폐단위는 태그의 속성(unitCode)에 기재	500000		
	원산지			an	2	m	국가코드 2자리	kr		
	대표물품 원산지 정보	원산지			an	2	m	원산지 국가코드 2자리	kr	
	화물 운송 정보	선기명			an.	50	m	선기명	KAL209	
		운송수단			n	1	m	1.선박 2.항공기 3.기타	1	
도착항 정보		도착항			an	3	m	목적항 항구, 공항 코드	INC	
		도착항명			an.	100	c	목적항 항구, 공항 명칭	Inchon	
		도착항 국가명			an.	50	c	목적항의 국가명	Republic of Korea	
		도착항 국가코드			an	2	m	목적항 국가코드	KR	
출항지 정보		출항일자			n	8	m	출항일자. YYYYMMDD	20110818	
		적재항코드			an	3	m	적재항 항구, 공항 코드	LAX	
	적재항명			an.	100	c	적재항의 항구, 공항 명칭	Los Angeles		

02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

작성목적

- FTA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기 위해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장에게 발급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을 취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제출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기관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원산지증명서는 현지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이 완료 되므로 발급신청의 취하를 원하는 신청자는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는 당해 기간 이내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8조(원산지증명서 신청취하) ① 제9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한 자가 그 신청을 취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발급기관장에게 발급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취하신청서로 발급취하를 신청 할 수 있다.

-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취하신청을 받은 증명서발급기관장은 신청인이 단순실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한 경우 등 취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발급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9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신청인이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에는 규칙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증명서 발급기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로부터 공급받은 원재료 또는 제품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원산지확인서를 제외한 그 밖의 서류의 제출과 원산지의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이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 증명서의 물품과 동일하고 수출국이 동일한 경우
2.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물품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발급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것과 동일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인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제1호나 제2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Reference No)를 제출하는 경우

작성방법

- 1) **발급신청번호** : 발급신청을 취소하려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번호를 기재합니다.
- 2) **발급신청일자** : FTA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 3) **신청인** : FTA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주체를 선택하여 해당 란에 [V]표로 표시하고, 신청자의 사업자등록증 상 상호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4) **원산지인증수출자** :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의 해당 란에 [V]표로 표시하고,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수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 대표자 성명 · 주소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또한 발급신청 부서의 이름과 전화번호 및 신청부서 공용 E-mail 혹은 담당자 E-mail을 기재합니다.
- 6) **생산자**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수출자의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정보를 수출자 정보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7) **수입자** :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또는 계약서상의 수입자 상호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8) **취하신청일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신청서를 작성 · 제출하는 일자를 기재합니다.
- 9) **취하신청사유** : 원산지증명서의 취하를 신청하는 사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3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승인(신청서)

(처리기간 : 즉시)

①발급신청번호	2013-11-6789		발급신청일자	2013. 10. 2
②신청인	구 분	[]생산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수출자 []관세사 []기타 ()		
	상호(대표자)	국제전자(이 국 제)		사업자번호 123-45-xxxxx
③원산지인증수출자	[]비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해당 [인증번호 : : xxx-xx-xxxxxx]			
④적용FTA협정	한- ASEAN FTA			
⑤수출자	상호(대표자)	국제전자(이 국 제)		사업자번호 123-45-xxxxx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전화/E-Mail 031-600-0000
⑥생산자	상호(대표자)	국제전자(이 국 제)		사업자번호 123-45-6789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전화/E-Mail 031-600-0000
⑦수입자	상호	PT Awaco Indoelec		대표자 Awaco Hammer
	주소(국가)	NO 8, KOTA MODERN TANGERANG, 15117, INDONESIA		전화번호 +62-343-858-1000
⑧취하 신청 일자	2013. 10. 4			
⑨취하 신청 사유	<p>원산지결정기준 적용 오류로 특혜적용 가능성 재검토가 필요하여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취하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 고시」 제18조에 따라 위 내용과 같이 원산지증명서 발급 취하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3 년 10 월 2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명] 국제전자(이 국 제)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세관장 귀하</p>			

03 원산지소명서

작성목적

- 원산지 판단에 대한 소명자료로 ①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신청, ②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근거자료, ③ 인증수출자 인증신청,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 서면조사 요구에 따른 필요서류로, 자율발급의 경우 제출처는 기관이 아닌 '계약상대국의 수입자'가 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작성주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 가능'하며, 세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 or 생산자	증명서 발급기관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0.3.2, 2010.12.31, 2011.6.30, 2013.2.23.>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 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⑦ 생략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4조(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① 규칙 제6조의3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전자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규칙 제6조의4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전자문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의 전자문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④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 제출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통보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단,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산자 서면진술서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0.12.31>

(국문 앞쪽)

원산지명세서						
1.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전자주소)					
2.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전자주소)					
물품명세						
3.품명/규격			4.HS No.			
5.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Ex-Works ()		6.원산지 결정기준		
	금액					
7.주요생산공정						
원재료명세서						
8.연번	9.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12.가 격		13.공급자 (생산자)
				수량	가격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비율 : %)			
18.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0.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1.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2.직접운송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3.기 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4.원산지 결정	충족 () 불충족 ()					
()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성 자 : (서명)						
직 위 :						
상 호 및 주소 :						
작성 일자 :						

(국문 뒤쪽)

작성요령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1	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주소 포함) 등을 적습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품명 / 규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	H S . N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5	물품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Works에 “O” 표기합니다. • 금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	원산지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예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세번변경기준” 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부가가치기준” 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조합기준” 으로 적습니다.
7	주요생산공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8	연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재료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
10	H S N o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적습니다.
12	가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13	공급자 (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주소·전자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14	합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15 ~ 23	원산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 로 표기합니다. • 19~21란에 “예☑” 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원산지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 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 에 “O” 를 표기합니다.

(영문 앞쪽)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1.Exporter	Name of Company			Business Number		
	Representative			Telephone & Fax No.		
	Address					
2.Producer	Name of Company			Business Number		
	Representative			Telephone & Fax No.		
	Address					
Description of Exported Goods						
3.Name & Model					4.HS No.	
5.Value	Term of Price	FOB (), Ex-Works ()			6.Origin Criteria	
	Price					
7.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List of Materials(Parts)						
8.S/N	9.Material Name	10.HS No.	11.Origin	12.Price		13.Supplier
				Volume	Cost	
14. Total Cost		Originating Materials		/		/
		Non-Originating Materials				
		Total				
Origin Determination						
15.Wholly Obtained Criter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16.Tariff Shift Criter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17.Value-added Criter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Ratio : %)				
18.Combined Criter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19.De Minimi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20.Accumulat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21.Outward Processing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22.Direct Consignment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23.Other Requirement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24.Origin Determination		Qualified ()		Non-Qualified ()		
<p>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all records and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 representations made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p>						
<p>Name : _____ (Signature)</p> <p>Title : _____</p> <p>Company & Address : _____</p> <p>Date : _____</p>						
<p><Documentary Evidence></p> <p>1. Invoice ()</p> <p>3. Payment Evidence for Material ()</p> <p>5. Production Process Documents ()</p> <p>7. Other Related Documents, if Required ()</p>			<p>2. List of Materials ()</p> <p>4. A Copy of Import Permit for Non-originating Materials ()</p> <p>6. Direct Transportation Evidence ()</p>			

(영문 뒤쪽)

Instructions for Completing the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Field		
1	Export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me of the Company, business No., name of representative, telephone and fax No., and address of the Company including the email address of the actual exporter of the concerned item.
2	Produc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me of the Company, business No., name of representative, telephone and fax number, and address of the Company of the actual producer/ processor/ manufacturer in the exporting country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3	Name/Model	<ul style="list-style-type: none"> Specifications including item name, model name, brand name, and size <i>eg. Cell phone ; Samsung MX-2700 ; Anycall</i> The name of the exporting item should be the same as the name in the invoice.
4	HS 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x-digit HS cod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5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rms of price: mark 'O' in FOB, if it is 'free on board', mark 'O' in Ex-Works, if it is 'ex-works' or 'ex-factory' Price: Write the transaction valu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Currency should be the same as that in the invoice.
6	Origin Crit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Write the criterion applied to determine the origin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pursuant to the Law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 <i>eg. Writ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when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is applied; 'Value Added Criterion' when Value Added Criterion is applied; 'Combined criterion' when combined criterion is applied, upon which both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and Value Added Criterion should be fulfilled.</i>
7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Describe the each step in the process in a sequential order.
8	Serial 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Serial numbers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9	Material Nam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mes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10	HS 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Six-digit HS codes of the materials.
11	Orig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Producing country of the materials.
12	Pri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Volume and cost of the raw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of the concerned export item.
13	Suppli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Name of Company, address((including the e-mail address), Telephone & Fax No.
14	Total Cost	<ul style="list-style-type: none"> The sum of the cost of the originating materials and the sum of the cost of the non-originating materials as well as the total cost of the raw materials.
15 ~ 23	Origin Criteria	<ul style="list-style-type: none"> Check whether the concerned export item is qualified for the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i>eg. mark 'Yes' <input type="checkbox"/>, if qualified; mark 'No' <input type="checkbox"/>, if not qualified</i> If section 19, 20 & 21 are marked 'Yes', further documentary evidence should be attached as annexes
24	Origin Determin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rk 'O' in Qualified if the origin determination can be made with the Cost & Production Statement; mark 'O' in Non-Qualified if not.
Documentary Eviden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Mark 'O' if the documentary evidence is attached to the Cost & Production Statement other related documents can be noted in the Other Documents section

작성방법

- 1) **수출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팩스번호,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 2) **생산자**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 물품을 생산한 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주소(전자주소 포함) 그리고 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하되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품명/규격** : 송품장(Invoice)상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HS. No** : 소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6단위 HS Code를 기재합니다.
- 5) **물품가격** : 해당 FTA의 물품 가격 조건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V]표시 하여야 하며, 물품의 거래가격 및 통화단위는 송품장(Invoice)상의 통화와 일치시켜 기재한다.
- 6) **원산지결정기준** : 소명 대상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조합기준 등)을 기재하되, 특혜를 적용하기 위한 FTA협정의 HS Code별로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확인하여 일치시켜야 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 1) **완전생산기준** : 다른 국가의 재료(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되어야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2) **세번변경기준** :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3) **부가가치기준** : 역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4) **가공공정기준** : 물품의 제조공정 중 각 물품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물품의 주요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조·가공작업을 열거하여 지정된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5) **선택기준** : 둘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6) **결합기준** : 둘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이들 모두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7) **주요/생산공정** : 소명 대상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술합니다.

- ex)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 8) **연번** : 소명 대상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작정자의 회사 기준)를 기재합니다.
- 9) **재료명** : 소명 대상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재료명(작정자의 회사 기준)을 기재합니다.
- 10) **HS, No** : 원재료의 6단위 HS Code를 기재합니다.
- 11) **원산지** :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12) **가격**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 및 가격을 기재합니다. 다만,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일 경우 가격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13) **공급자(생산자)** : 원재료를 공급한 자(생산자)의 상호, 주소, 전자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 14) **합계** : 투입된 원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의 가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15~23) **원산지 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해당되는 항목에 [V]표시합니다. 다만, 19(최소기준), 20(누적기준), 21(역외가공기준) 표시란에 “예☑” 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례 규정별 개념

구 분	개 념
최 소 기 준	제품 생산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혹은 중량)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 내라면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
누 적 기 준	물품의 원산지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재료·공정)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외가공기준	당사국 원재료를 반출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후 반제품을 생산·재수입하여 당사국에서 최종제품을 만든 후 상대국에 특혜수출할 때 최초 반출한 당사국 원산지재료 가치를 최종품 원산지결정시 고려하는 것

- 24) **원산지결정** : 본 원산지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 “불충족”에 “○” 를 표기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1호의서식] <개정 2008.7.15>

(국문 앞쪽)

원산지명세서						
1.수출자	상 호	야탑무역	사업자등록번호	200-11-xxxxx		
	대표자(성명)	이대표	전 화 / 팩 스	031-600-1111/ 031-600-1112		
	주소(전자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11번길				
2.생산자	상 호	야탑도기	사업자등록번호	123-45-xxxxx		
	대표자(성명)	이국제	전 화 / 팩 스	031-600-0000/ 031-600-0001		
	주소(전자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물 품 명 세						
3.품명/규격		항아리	4.HS No.	6919.19		
5.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V), Ex-Works ()		6.원산지 결정기준	CC	
	금 액	1,000				
7.주요생산공정	별첨					
원재료명세서						
8.연번	9.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12.가 격		13.공급자 (생산자)
				수량	가격	
1	진흙	250840	역내산	2Kg	200.0	한국도자
2	부엌토	253090	역내산	1.5Kg	132.0	한국도자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332,0		
		비원산지재료(수입산)		0		
		합 계		332,0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비율 : %)			
18.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1.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직접운송 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3.기 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원산지 결정	충족 (V) 불충족 ()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 성 자 : 이국제 (서명) 직 위 : 대표이사 상 호 및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작 성 일 자 : 2013.10.22						

(영문 앞쪽)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1.Exporter	Name of Company	Yatap Trade Inc.		Business Number	200-11-xxxx	
	Representative	Dae-Pyo, Lee		Telephone & Fax No.	031-600-1111/ 031-600-1112	
	Address	111, YaTap Ro Bundang-Gu, Sung Nam, Kyung -Ki, Korea				
2.Producer	Name of Company	Yatap Bowl		Business Number	123-45-xxxx	
	Representative	KuK-Je, Lee		Telephone & Fax No.	031-600-0000/ 031-600-0001	
	Address	555, YaTap Ro Bundang-Gu, Sung Nam, Kyung -Ki, Korea				
Description of Exported Goods						
3.Name & Model	Bowl			4.HS No.	6909,19	
5.Value	Term of Price	FOB (V), Ex-Works ()		6.Origin Criteria	CC	
	Price	1,000				
7.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attached					
List of Materials(Parts)						
8.S/N	9.Material Name	10.HS No.	11.Origin	12.Price		13.Supplier
				Volume	Cost	
1	Mud	250840	Korea	2Kg	200,0	HanKooK Ceramic
2	leaf mold	253090	Korea	1,5Kg	132,0	HanKooK Ceramic
14. Total Cost		Originating Materials		332,0		
		Non-Originating Materials		0		
		Total		332,0		
Origin Determination						
15.Wholly Obtained Criter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16.Tariff Shift Criterion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17.Value-added Criter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Ratio : %)			
18.Combined Criter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19.De Minimi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Accumulat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21.Outward Processing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Direct Consignment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23.Other Requirement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Origin Determination	Qualified (V)		Non-Qualified ()			
<p>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provided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of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all records and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 representations made in response to this questionnaire.</p> <p>Name : KuK-Je, Lee (Signature) Title : CEO Company & Address : 55, YaTap Ro Bundang-Gu, Sung Nam, Kyung -Ki, Korea Date : 2013, 10, 22</p>						
<Documentary Evidence>						
1. Invoice ()			2. List of Materials ()			
3. Payment Evidence for Material ()			4. A Copy of Import Permit for Non-originating Materials ()			
5. Production Process Documents ()			6. Direct Transportation Evidence ()			
7. Other Related Documents, if Required ()						

전자문서 작성범례

[별지 제10호서식] 원산지소명서 전자문서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문서관리정보					
전자문서번호	an.	40	m	전자문서 번호	자동생성
문서형태구분	an	3	m	전자문서문서형태구분을기재 5WH:원산지확인서 5WO:원산지소명서 036:원산지증명신청서 5WK:국내제조확인서	5WO
발행일시	an	14	m	전자문서 발행일시	YYYYMMDDHHMISS
전자서명			c	유통시 SOAP(통신규약) head부분에 이미 있으나 받은 문서를 첨부용으로 활용시에 필요(선택사항)	
송신처 송신식별자코드	an.	35	m	B2B간 송수신을 위한 송신자 정보	
송신처명	an.	35	m	송신자 상호	
수신처 수신식별자코드	an.	35	m	B2B간 송수신을 위한 수신자 정보	
수신처명	an.	35	m	수신자상호	
◎작성자					
작성일자	an	8	m	작성일자 (CCYYMMDD)	20120101
자유무역협정 구분	an	1	m	자유무역협정구분코드를기재 G:한-싱가포르 I:한-아세안 J:한-인도 K:한-페루 L:한-미국 M:한-EFTA N:한-EU O:한-터키(예정) P:한-콜롬비아(예정)	G
작성자 상호	an.	200	m	작성자 상호를 기재	흥해라 상사
작성자 명	an.	30	m	작성자명을 기재	흥길동
작성자 직위	an.	30	C	작성자 직위를 기재	대리
작성자 서명 또는 인		-	m	작성자 서명 또는 인 첨부	-
작성자 주소	an.	500	m	작성자 주소를 기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1. 수출자					
상호	an.	200	m	수출자의 상호를 기재	잘난 상사
대표자(성명)	an.	50	m	수출자 대표자명을 기재	이순신
주소	an.	500	c	수출자의 주소를 기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Email	an.	100	c	수출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 (통신유형코드로 구분)	sunshin.lee@Jalnan.com
수출자 사업자등록 번호	an	10	M	수출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1801234567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수출자 전화번호	an.	50	c	수출자 전화번호를 기재 (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0
수출자 팩스	an.	50	c	수출자 팩스번호를 기재 (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1
통신유형코드 (TE/FX/EM)	an	2	c	통신유형코드를 기재 [TE: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2. 생산자					
상호	an.	200	m	생산자의 상호를 기재	잘난 상사
대표자(성명)	an.	100	m	생산자 대표자명을 기재	이순신
주소	an.	500	c	생산자의 주소를 기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Email	an.	100	c	수출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 (통신유형코드로 구분)	sunshin.lee@Jalnan.com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생산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1801234567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전화번호	an.	50	c	수출자 전화번호를 기재 (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0
팩스	an.	50	c	수출자 팩스번호를 기재 (통신유형코드로 구분)	042-400-4001
통신유형코드 (TE/FX/EM)	an	2	c	통신유형코드[TE: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물품명세(3~7)					
3. 품명/규격 품명					
규격	an.	200	m	명세물품의 규격사항을 기재	1334-3422
4. 세번부호(HS No.)					
5. 물품가격 물품가격조건					
물품가격	an.	12	c	명세물품의 물품가격 기재 (통화단위는 송품장과 동일)	100000000
6. 원산지 결정기준					
7. 주요 생산공정					
◎원재료명세서(8~13) 1...999(반복)					
8. 연번					
9. 재료명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10. 세번부호(HS No.)	an..	10	m	원자료 명세의 세번부호 (HS No.)을 기재	1234567890
11. 원산지명	an	2	m	원자료 명세의 원산지명을 기재	KOR
12. 수량/가격 수량	an..	12	c	원자료 명세의 수량을 기재	100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가격을 기재	1000000
13. 공급자(생산자)					
상호	an..	200	c	원자료 명세의 공급자(생산자)를 기재	HYUNDAI MOTERS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전화번호	an..	50	c	공급자 전화번호를 기재	042-400-4000
팩스	an..	50	c	공급자 팩스번호를 기재	042-400-4001
Email	an..	100	c	공급자 이메일 주소를 기재	sunshin.lee@jalnan.com
주소	an..	500	c	공급자 주소를 기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14. 합계					
국내산 원산지재료 합계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국내산 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을 기재	10000000
수입산 비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수입산 비원산지 재료 합계 가격을 기재	0
원산지+비원산지재료 합계 가격	an..	12	c	원자료 명세의 (원산지 재료+비원산지 재료)합계 가격을 기재	10000000
15. 완전생산기준	an	1	m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를 기재 (예:Y, 아니오:N)	Y
16. 세번변경기준	an	1	m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를 기재 (예:Y, 아니오:N)	Y
17. 부가가치기준	an	1	m	부가가치기분 충족여부를 기재 (예:Y, 아니오:N)	Y
부가가치 비율(%)	n..	3	m	부가가치 비율(%)을 기재	95
18.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적용	an	1	m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적용품목 충족여부를 기재 (예:Y, 아니오:N)	Y
19. 최소기준	an	1	m	최소기준 적용여부를 기재 (예:Y, 아니오:N)	Y
20. 누적기준	an	1	m	누적기준 적용여부를 기재 (예:Y, 아니오:N)	Y
21. 역외가공기준	an	1	m	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22. 직접운송여부	an	1	m	직접운송여부를 기재 (예:Y, 아니오:N)	Y
23. 기타	an	1	m	기타 충족 여부를 기재 (예:Y, 아니오:N)	Y
24. 원산지결정 충족	an	1	m	원산지 결정 충족 여부를 기재(예:Y, 아니오:N)	Y

04 원산지(포괄)확인서

작성목적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여 이들이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원산지확인서와 원산지(포괄)확인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며, 작성란 10번인 원산지포괄확인기간에 별도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원산지포괄확인서라 하고 기간이 없는 경우를 원산지확인서라 한다.

다만, 원산지의 포괄 확인기간은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해진 포괄확인기간 내에는 당해 원산지확인서 한 장으로 당해 기간 내 공급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 증명이 가능하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원산지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 또는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원산지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을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산지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3.2.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또는 최종물품 생산자등으로부터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포괄확인서를 제공 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08.7.15.] [제목개정 2010.12.31.]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생산자”란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작성·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국내제조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재료를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작성·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7. “서면조사”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사무실에서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8. “현지조사”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제3국발행송장 거래’란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협정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10.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세관장이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증한 자를 말한다.
1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을 말한다.

제24조(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① 규칙 제6조의3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전자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 ② 규칙 제6조의4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전자문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 ③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의 전자문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 ④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 제출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통보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단,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산자 서면진술서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양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3>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앞 쪽)

1.공급 하는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E-mail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2.공급 받는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E-mail	

공급물품 명세서

3.연번	4.적용 대상협정	5.품목번호 (HS 6단위)	6.품명 · 규격	7.원산지 결정기준	8.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9.원산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	[]		
					[]	[]		
					[]	[]		
					[]	[]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작성 자 : (서명 또는 인)
 직 위 :
 상호 및 주소 :
 작성 일자 :

(뒤 쪽)

작성 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발급번호	·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1	공급하는자	·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 · 공급하는 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적습니다.																		
2	공급받는자	· 원산지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주소(E-mail 포함)를 적습니다.																		
3	연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4	적용대상협정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적습니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5	품목번호 (HS 6단위)	· 공급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6	품명·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적습니다.																		
7	원산지 결정기준	<p>·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적습니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원산지 결정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가. 완전생산 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 WO</td> </tr> <tr> <td>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 CC - CTH - CTSH</td> </tr> <tr> <td>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 BD - BU - MC - NC</td> </tr> <tr> <td>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 CTSH - BD</td> </tr> <tr> <td>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td> </tr> <tr> <td>바. 주요공정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 SP</td> </tr> <tr> <td>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 OP</td> </tr> <tr> <td>아. 기타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 Other</td> </tr> </tbody> </table>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8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예시) 원산지인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V] 충족" 에 표시합니다.																		
9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 으로 적습니다.																		
10	원산지포괄 확인기간	·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예시) 2012.12.01 - 2013.11.30 ※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때에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 봅니다.																		

작성방법

- 1) **공급하는 자** : 실제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사업등록자번호,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와 E-mail을 기재합니다.
 ※ 원산지확인서 발급자(공급자)가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 기재
- 2) **공급받는 자** : 원산지확인서를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사업등록자번호,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와 E-mail을 기재합니다.
- 3) **연번** :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번호를 부여합니다.
- 4) **적용대상협정** :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FTA협정을 기재합니다.
 ex) 한-EU, 한-아세안 등
- 5) **품목번호** : 공급물품의 HS Code 6단위를 기재합니다.
- 6) **품명·규격** :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합니다.
- 7) **원산지결정기준** : 각 연번별 공급물품의 적용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하되 기재요령은 아래의 표에 나와 있는 약어를 사용하여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8)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 각 연번별 공급물품의 적용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표시합니다.

ex)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경우 “[V] 충족” 에 표시

9)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 으로 표기합니다.

10) **원산지포괄확인기간** : 당해 원산지확인서를 사용하여 동일한 공급받는 자(확인서 수취인)에게 동종동질물품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반복사용을 원하는 기간을 명시합니다. 다만, 별도의 원산지포괄확인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발급일에 공급되는 물품에 대해서만 확인하는 단수원산지확인서로만 활용 가능합니다.

ex) 2013. 11. 02 ~ 2014. 11. 01

작성사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3)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번호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시를 합니다.

(앞 쪽)

1.공급 하는 자	상 호 (주)정보원	사업자등록번호 123-45-xxxxx
	대표자(성명) 이국제	전화 / 팩스 031-600-0000/ 031-600-0001
	주소/E-mail Kukje@Origin.com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xxx-xx-xxxxxx
2.공급 받는 자	상 호 (주)한국통상	사업자등록번호 345-56-xxxxx
	대표자(성명) 이한국	전화 / 팩스 02-456-7890
	주소/E-mail HanKuk@naver.com	

공급물품 명세서

3.연번	4.적용 대상협정	5.품목번호 (HS 6단위)	6.품명 · 규격	7.원산지 결정기준	8.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		9.원산지	10.원산지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충족	미충족		
1	한미	870821	안전벨트/ HD112	NC 35%	[V]	[]	KR	2013.11.02~2014.11.01
2	한EU	870821	안전벨트/ HD113	MC 45%	[V]	[]	KR	2013.11.02~2014.11.01
					[]	[]		
					[]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작성 자 : 이국제 (서명 또는 인)

직 위 : 대표이사

상호 및 주소 : (주)정보원

작성 일자 : 2013. 11. 02

전자문서 작성범례

[별지 제8호서식] 원산지(포괄)확인서 전자문서

항 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 문서관리정보					
발급번호	an..	50	m	원산지확인서 발급번호 기재	312
문서구분	an	3	m	문서 구분코드 기재 (5WH : 원산지확인서 고정)	5WH : 원산지확인서 5WO : 원산지소명서 036 : 원산지증명신청서 5WK : 국내제조확인서
발행일시	an..	14	m	전자문서 발행일시	YYYYMMDDHHMISS형식
송신처 송신식별자코드	an..	35	c	B2B 송수신을 위한 송신자 정보	
송신처명	an..	35	c	송신자 상호	
수신처 수신식별자코드	an..	35	c	B2B 송수신을 위한 수신자 정보	
수신처명	an..	35	c	수신자상호	
전자서명			c	유통시(SOAP(통신규약) head 부분에 이미 있으나 받은 문서를 첨부용으로 활용시 필요(선택사항)	
포괄여부	a	1	m	원산지확인서포괄 여부 (YES, NO)	Y
1. 공급하는 자					
상호	an..	50	m	물품 실제 공급자 상호	(주)최신상사 최고봉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공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대표자(성명)	an..	30	m	물품 실제 공급업체 대표자 성명	홍길동
전화	an..	30	c	물품 실제 공급업체 전화번호	(042)481-9999
팩스	an..	50	c	물품 실제 공급업체 팩스번호	(042)481-0000
주소	an..	500	c	물품 실제 공급업체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E-mail	an..	100	c	물품 실제 공급업체 E-mail	craft0312@customs.go.kr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n	11	c	세관부호(3)+연도(2)+일련번호(6)	01013000001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 코드 TE: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2. 공급받는 자 (수출자/생산자)					
상호	an..	50	m	원산지확인서 공급처 구분코드(EX:수출자, MF:생산자)	EX
상호	an..	50	m	물품 공급자 상호	(주)최신상사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공급업체 사업자등록번호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대표자(성명)	an..	30	m	물품 공급업체 대표자 성명	홍길동

항 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전화	an..	30	c	물품 공급업체 전화번호	(042)481-9999
팩스	an..	50	c	물품 공급업체 팩스번호	(042)481-0000
주소	an..	500	c	물품 공급업체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E-mail	an..	100	c	물품 공급업체 E-mail	craft0312@customs.go.kr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코드 (TE : 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공급물품명세서(3~10) 1...999(반복)					
3. 연번	n..	3	m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1 ~ 999
4. 적용대상 협정	an	1	m	해당공급물품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협정코드 기재(통계부호표참조) G(한-싱가포르FTA), H(한-칠레FTA), I(한-아세안FTA), J(한-인도CEPA), K(한-페루FTA), L(한-미FTA), M(한-EFTAFTA), N(한-EUFTA), O(한-터키FTA, 예정), P(한-콜롬비아FTA, 예정)	G(한-싱가포르 FTA)
5. 품목번호	an..	10	m	세번부호(HS부호) 6단위를 기재	870332
6. 품명/규격 품명	an..	80	m	당해 물품을 나타내는 품명 기재	PART FOR CAR
규격	an..	200	m	해당품목의 세부모델 및 규격 기재 - 모델 · 규격별 일련번호를 기재 - 모델 및 규격을 상세히 기재	MODEL : 335MH
자사물품번호	an..	50	c	공급자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1
거래처물품번호	an..	50	c	공급처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2
7. 원산지결정기준	an..	20	m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 WO : 원전생산물품 CC : 2단위세번변경기준 CTH : 4단위세번변경기준 CTSH : 6단위세번변경기준 BD : 공제법을적용한경우 BU : 집적법을적용한경우 SP : 주요공정기준 OP :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품) Other : 기타기준 ※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 7번참고	WO
8.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a	1	m	원산지 충족여부 (Y:예, N:아니오)	Y
9. 원산지	a..	2	m	원재료 생산국 국가코드	KR
10. 원산지포괄확인기간 시작일자	an	8	c	원산지 포괄확인기간 시작일 (CCYYMMDD)	2010.12.01
종료일자	an	8	c	원산지 포괄확인 기간 종료일(CCYYMMDD)	2011.11.30

항 목	TYPE	SIZE	조건	작 성 요 령	작 성 예
◎ 작성자					
상호	an..	50	m	원산지확인서 작성업체의 상호	(주)자동차부품
성명	an..	30	m	원산지확인서 작성자 성명	홍길동
직위	an..	30	c	원산지확인서 작성자 직위	차장
서명 또는 인	an..		m	서명 또는 인장이미지	생략
주소	an..	200	m	원산지확인서 작성업체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작성일자	an	8	m	원산지확인서 작성일자(CCYMMDD)	2012.09.25
◎ 첨부					
원산지확인서 파일경로	an..	512	c	첨부 원산지확인서 파일경로	생략
원산지확인서 파일명	an..	512	c	첨부 원산지확인서 파일명	생략

05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목적

-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국내의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제공하는 서류로 당해 서류를 제공받은 생산자나 수출자는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음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국내제조확인서와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서식을 사용하며, 작성란 2번인 국내제조괄확인기간에 별도의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국내제조(포괄)확인서라 하고 기간이 없는 경우를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

다만, 국내제조확인서의 포괄 확인기간은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정해진 포괄확인기간 내에는 당해 국내제조확인서 한 장으로 당해 기간 내 공급물품에 대한 국내제조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수출용 원재료의 국내제조확인서) ①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이하 “재료 생산자등”이라 한다)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재료의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하여 작성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국내제조확인서”라 한다)를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동일한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장기간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는 재료 생산자등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내제조포괄확인서(물품공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초의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료 생산자등으로부터 국내제조확인서 또는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제공받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이를 기초로 제6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제8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 및 국내제조포괄확인서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6.30.]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산지확인”이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령(이하 “법령”이라 한다) 및 관세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2. “증명서발급기관”이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원산지국가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을 말한다.
3. “생산자”란 수출물품이나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
4. “원산지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나 최종물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재료나 최종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여

다른 생산자나 수출자에게 작성·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5. “국내제조확인서”란 수출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재료를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자가 협정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재료를 국내에서 제조한 사실을 확인하여 물품을 공급받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게 작성·제공하는 서류를 말한다.
6. “원산지조사”란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과 법령에서 정하는 원산지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조사를 말한다.
7. “서면조사”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라 세관장이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에게 서류나 장부 등을 제출받아 세관사무실에서 행하는 조사를 말한다.
8. “현지조사”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사무실, 공장, 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9. ‘제3국발행송장 거래’란 송품장 등 상업서류가 협정체약당사국이 아닌 비당사국에서 다시 발행되는 무역거래를 말한다.
10. “원산지인증수출자”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라 세관장이 인증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인증한 자를 말한다.
11.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관세청 홈페이지(<http://customs.go.kr>) 또는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을 말한다.

제24조(원산지확인서 등 작성) ① 규칙 제6조의3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전자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 규칙 제6조의4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전자문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③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의 전자문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④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는 경우 수출자는 생산자가 작성 제출한 별지 제11호서식의 원산지통보서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다. 단, 휴폐업 등의 사유로 생산자에게 원산지통보서를 제출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생산자 서면진술서나 생산자 생산장소 생산공정 및 거래계약서 등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나 사실에 근거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양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3.2.23>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앞 쪽)

1. 발급번호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3. 공급하는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전화/팩스						
	E-mail						
4. 공급받는 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성명)						
	전화/팩스						
	E-mail						

5. 공급물품 명세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	주요 생산공정

6. 비원산지재료 명세

공급물품 연번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	비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합니다.

7. 작성자 성명			상 호
작성자 서명			직 위
(년)	(월)	(일)	전화번호
___	___	___	팩스번호

210mm×297mm[백상지 80g/m²(재활용품)]

(뒤 쪽)

작성 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1	발급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적습니다.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공급일로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그 반복사용기간을 적습니다. ※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을 적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수 국내제조확인서로 봅니다.
3	공급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을 실제로 공급하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4	공급받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제조(포괄)확인서상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적습니다.
5	공급물품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물품의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및 주요 생산공정(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6	비원산지재료명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번 항목에 기재된 공급물품별로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원화로 기재) 등을 적습니다.
7	작성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상호, 서명, 직위, 작성일 및 전화번호·팩스번호를 적습니다.

작성방법

- 1) **발급번호** : 국내제조(포괄)확인서를 발급하는 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 동일 공급받는 자(수취인)에게 당해 국내제조확인서를 반복사용하려는 경우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반복하여 사용하려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다만, 별도의 포괄확인기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단수 국내제조확인서로 봅니다.
 - 3) **공급하는 자** : 실제 물품을 공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사업등록자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와 E-mail을 기재합니다.
 - 4) **공급받는 자** : 국내제조확인서의 물품을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와 E-mail을 기재합니다.
 - 5) **공급물품명세** : 공급하는 물품의 연번을 정하고 각 품목의 6단위 HS CODE,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원화로 표시된 가격과 주요 생산공정을 기재합니다.
 - 6) **비원산지재료명세** :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연번, 품목의 6단위 HS CODE,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원화로 표시된 가격 등을 기재합니다.
 - 7) **작성자** : 국내제조(포괄)확인서의 작성을 담당하는 자의 성명, 상호, 서명, 직위,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작성일을 적습니다.
-

작성사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3.2.23)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앞 쪽)

1. 발급번호	2013-05-002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2013년 5월 2일부터 2014년 5월 1일까지		
3. 공급하는 자	상 호	(주)정보원	사업자등록번호 123-45-xxxxx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대표자(성명)	이국제	
	전화/팩스	031-600-0000 / 031-600-0001	
	E-mail	Kunje@Origin.com	
4. 공급받는 자	상 호	(주) 한국통상	사업자등록번호 345-56-xxxxx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초로 21번길 한국빌딩 10층	
	대표자(성명)	이한국	
	전화/팩스	02-456-7890 / 02-456-7810	
	E-mail	hanKur@naver.com	

5. 공급물품 명세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	주요 생산공정
1	5205.11	면사/5km	1 roll	120,000	원면→방적→면사

6. 비원산지재료 명세

공급물품 연번	연번	품목번호(HS 6단위)	품명·규격	수량 및 단위	가격	비고
1	1	5201.00	면	2pack/kg	50,000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제조 사실을 확인합니다.

7. 작성자 성명 이국내	상 호 (주)정보원
작성자 서명 ~~~	직 위 생산과장
(년) (월) (일) _2013_/_05_/_02_	전화번호 031-600-0000 팩스번호 031-600-0001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전자문서 작성법례

[별지 제9호서식]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전자문서

항 목	TYPE	SIZE	조건	작 성 요 령	작 성 예	
◎ 문서관리정보						
문서구분	an	3	m	문서 구분코드를 기재	5WH:원산지확인서 5WO:원산지소명서 036:원산지증명신청서 5WK:국내제조확인서	
송신처	식별자코드	an..	35	c	B2B간 송수신 송신자 정보	
	송신처명	an..	35	c	송신자 상호	
수신처	식별자코드	an..	35	c	B2B간 송수신 수신자 정보	
	수신처명	an..	35	c	수신자상호	
전자서명			c	유통시SOAP(통신규약)head부분에 이미 있으나 받은 문서를 첨부용으로 활용시 필요(선택사항)		
적용대상 협정	an	1	c	해당 공급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협정코드기재(통계부호표참조) G(한-싱가포르FTA), H(한-칠레FTA), I(한-아세안FTA), J(한-인도CEPA), K(한-페루FTA), L(한-미FTA), M(한-EFTAFTA), N(한-EUFTA), O(한-터키FTA,예정), P(한-콜롬비아FTA, 예정)	G(한-싱가포르 FTA)	
발행일시	an..	14	m	전자문서 발행일시	YYYYMMDDHHMISS형식	
1. 발급번호	an..	50	m	원산지확인서 발급번호기재	312	
2. 국내제조포괄확인기간 포괄여부	a	1	m	원산지포괄확인여부(YES, NO)	Y	
포괄증명기간 시작일	an	8	c	포괄증명기간 시작일 기재	2012년 1월 1일	
포괄증명기간 종료일	an	8	c	포괄증명기간 시작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서 기재	2012년 12월 31일	
3. 공급하는 자						
상호	an..	200	m	실제 물품공급자 상호 기재	(주)최신상사 최고봉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주소	an..	500	c	실제 물품 공급업체 주소 기재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대표자(성명)	an..	100	c	실제 물품 공급업체 대표 기재	홍길동	
전화	an..	50	c	업체 전화번호 기재	(042)481-9999	
팩스	an..	50	c	업체 팩스번호 기재	(042)481-0000	
E-mail	an..	100	c	업체 전자주소 기재	craft0312@customs.go.kr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코드기재 TE : 전화번호, FX : 팩스, EM : 이메일	TE	

항 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4. 공급받는 자 (수출자/생산자)	a	2	c	원산지확인서 공급처 구분코드 EX : 수출자, MF : 생산자	EX
상호	an..	200	m	물품 공급받는 자 상호	(주)최신상사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1122966062
업체코드	an..	17	c	업체코드	abc12345
주소	an..	500	c	물품 공급받는 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인계로 165
대표자(성명)	an..	100	c	물품 공급받는 자 성명	홍길동
전화	an..	50	c	물품 공급받는 자 전화번호	(042)481-9999
팩스	an..	50	c	물품 공급받는 자 팩스	(042)481-0000
E-mail	an..	100	c	물품 공급받는 자 전자주소	craft0312@customs.go.kr
통신유형코드	an	2	c	통신유형코드기재 TE:전화번호, FX:팩스, EM:이메일	TE
5. 공급물품명세(①~⑥) 1...999(반복)					
① 연번	n..	3	m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 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 기재	1 ~ 999
② 품목번호	an..	10	m	세번부호(HS부호)6단위를기재	870332
③ 품명·규격 품명	an..	200	m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 기재	PART FOR CAR
규격	an..	200	m	- 모델·규격별 일련번호 기재 - 모델 및 규격 상세히 기재	MODEL : 335MH
자사물품번호	an..	50	c	공급자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1
거래처물품번호	an..	50	c	공급처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2
④ 수량·단위 수량	n..	16	c	공급물품 수량과 단위 기재	1 ~ 9,999,999,999,999,999
단위	an..	3	c	해당 품목의 단위를 기재	EA
⑤ 가격	n..	20	c	당해 물품의 가격을 기재	1 ~ 9,999,999,999,999,999,999
⑥ 주요생산공정	an..	500	c	주요생산 공정을 기재	자재입고 > 자재입고검사...
6. 비원산지재료명세 ⑦공급물품연번별 ⑧~⑫ 반복(1...999)					
⑦ 공급물품 연번	n..	3	m	5. 공급물품 명세 ① 연번 기재	1 ~ 999
⑧ 연번	n..	3	m	종류가 다른 물품이 여러개일 경우 각 종류별로 연번을 적습니다.	1 ~ 999
⑨ 품목번호	an..	6→10	m	세번부호(HS부호)6단위를기재	870332
⑩ 품명·규격 품명	an..	200	m	공급물품의 품명과 규격 기재	PART FOR CAR
규격	an..	200	m	-모델·규격별 일련번호 기재 -모델 및 규격 상세히 기재	MODEL : 335MH

항 목	TYPE	SIZE	조건	작 성 요 령	작 성 예
자사물품번호	an..	50	c	공급자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1
거래처물품번호	an..	50	c	공급처 지정 물품번호	CNTOSHIN002
㉑ 수량 · 단위수량	n..	16	m	공급물품 수량과 단위 기재	1~9,999,999,999,9999999
단위	an..	3	c	해당 품목의 단위를 기재	EA
㉒ 가격	n..	20	c	당해 물품의 가격을 기재	1~9,999,999,999,999,999
㉓ 비고	an..	500	c		
7. 작성자					
작성자성명	an..	30	m	작성자 성명 기재.	홍길동
상 호	an..	50	m	작성업체 상호 기재	(주)자동차부품
서명 또는 인			m	서명 또는 인장이미지	생략
직 위	an..	30	c	작성자 직위 기재	차장
작성일자	an	8	m	작성일자 기재(CCYMMDD)	20120925
작성자 전화	an..	30	c	작성자 전화 기재	(042)481-9999
작성자 팩스	an..	50	c	작성자 팩스 기재	(042)481-0000
㉔ 첨부					
국내제조확인서 파일경로	an..	512	c	첨부 국내제조확인서 파일경로 기재	생략
국내제조확인서 파일명	an..	512	c	첨부 국내제조확인서 파일명 기재	생략

06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작성목적

- FTA특혜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기록·관리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 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서명권자	없음 (회사내에 비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권한 있는 서명권자에 의해 서명이 이루어져야 하며, 서명권자의 권한부여 및 권한변경 사항은 모두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기록·관리되어야 한다.

한-페루 FTA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관발급이나 인증수출자의 경우 자율발급이 가능하므로 자율발급 분에 관한 서명의 유효성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도 동 서식의 사용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는 정기적으로 관세당국에 보고하거나 하여할 할 의무는 없으나 원산지검증과 관련하여 관세당국이 요구할 경우 반드시 비치되고 관리되고 있음이 증명되어야 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3조(원산지증명서 작성·서명자 등) 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는 서명권자를 지정·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증명하는 자가 서명권자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려는 때에는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자 및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종전의 서명권자에 대하여는 서명 권한 해제일자 및 사유를 각각 기재하여야 한다.

작성방법

- 1) **일련번호** :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가진 자를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기재합니다.
- 2) **서명** : 일련번호별로 원산지 발급 자격을 가진 자의 서명을 기재합니다.
- 3) **부서명** :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가진 자의 부서명을 기재합니다.
- 4) **직책** :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가진 자의 직책을 기재합니다
- 5) **성명** :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가진 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6) **지정일자 및 사유** :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부여한 날자와 권한 부여사유를 기재합니다.
- 7) **해제일자 및 사유** :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을 박탈한 날자와 권한 해제사유를 기재합니다.
ex) 2013. 06. 02. - 퇴사

작성사례

[별지 제7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일련 번호	서 명	부서명	직책	성명	지정일자 및 사유	해제일자 및 사유
1		영업	과장	이한국	2012. 01.01 - 신규	
2		영업	과장	이한국		2013. 03. 31 - 퇴사
3		영업	차장	나미래	2013. 03. 31 - 신규	

07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작성목적

-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내역을 기록·관리하기 위함. 또한 생산자(재료생산자)가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등을 작성·제공한 경우에도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	없음 (회사내에 비치)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5조(원산지증명서 작성, 서명) ① 해당 수출입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 서명한 후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 서명 내역을 별지 제1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생산자(재료생산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제공한 경우 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
1. 규칙 제6조의3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및 제24조제1항의 원산지(포괄)확인서 전자문서
 2. 규칙 제6조의4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및 제24조제2항의 국내제조(포괄)확인서 전자문서
 3. 규칙 제6조제1항제4호의 원산지소명서 및 제24조제3항의 원산지소명서 전자문서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3.2.23>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2013.2.23>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자(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수출자 :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
 - 나. 생산자 :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다. 수입자 : 계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
5. 삭제 <2013.2.23>
6.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목개정 2013.2.23.]

[별지 제13호서식 기재요령]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1. 협정명칭 기재요령

FTA 종류	약어	FTA 종류	약어
싱가포르와의 자유무역협정	SG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	EU
아세안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AK	페루와의 자유무역협정	PE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KIN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US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자유무역협정	EFTA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	TR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CL		

2.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물품별로 구분하여 표시

의 미	약어
HS 2단위 세번 변경	CC
HS 4단위 세번 변경	CTH
HS 6단위 세번 변경	CTSH
완전 생산기준	WOR
특정 류의 물품의 완전생산 기준	WOR of Ch. XX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MC(50)
세번 변경없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a) 집적법에 의거 최소 35% 이상일 것, 혹은 (b) 공제법에 의거 최소 45% 이상일 것	RVC(35/45) - BU 35 - BD 45
세번변경없이 순원가법에 의거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최소 50%이상 일 것	NC(50)
특정 호에 사용된 모든 물품의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넘지 않을 것	MC(50) of XXXX
다른 호의 제품 또는 해당 호에서 변경	within CTH
HS 4단위 변경되거나, 또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거래도 가격의 50% 초과하지 않을 것	CTH or MC(50)

의 미	약어
HS 4단위 변경되거나 세번이 변경되지 않고 역내부가가치 비율이 (a) 직접법에 의거 최소 35% 이상일 것, 혹은 (b) 공제법에 의거 45%이상일 것	CTH or RVC(35/45) - BU 35 - BD 45
다른 류에서 특정호로 세번이 변경되거나, 특정 호에 사용된 모든 재료 가격이 공장도 거래가격의 50%를 넘지 않을 것	CC or MC(50)
HS4단위가 변경되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거래도 가격의 50% 초과하지 않을 것	CTH + MC(50)
HS2단위가 변경되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공장거래도 가격의 50% 초과하지 않을 것	CC + MC(50)
HS4단위가 변경되고 역내 부가가치 비율이 최소 (a) 직접법에 의거 35%보다 적지 않을 것, 혹은 (b) 공제법에 의거 45%보다 적지 않을 것	CTH + RVC(35/45) - BU 35 - BD 45
다른 류에서 해당호로 세번변경조건, 단 XX류는 제외	CC ex, from chXX
다른 호에서 해당호로 세번변경조건, 단 XXXX호는 제외	CTH ex, from heading XXXX
특정XXXX호의 비원산지 재료로부터 해당호로 세번변경조건, 단 XXXX호의 waste and scrap 제외	CTH ex, from (waste & scrap) XXXX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원산지 재료의 가격을 초과하지 않을 것	VNM less than VOM
HS4단위가 변경되고,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이 거래가격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것	CTH+TV(40)
재단 봉제 가공이 해당국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수행될 것	cutting & sewing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개성공단 적용품목	Rule 6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특정공정기준 적용품목	Specific Process
[싱가포르와의 협정] 개성공단 적용품목	Gaesung Products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 특정공정기준 적용품목	SP
기타 기준	Others

작성방법

- 1) **발급번호** : 해당 회사가 발급한 실제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 2) **발급일자** :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 3) **수출신고번호 및 수리일자** :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수출신고한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 번호와 수리일자를 기재합니다.
 - 4) **품명·규격** : 수출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Invoice), 수출신고필증과 일치되게 기재합니다.
 - 5) **품목번호** :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물품의 6단위 HS code를 기재합니다.
 - 6) **수량** : 수출수량을 원산지증명서, 송품장 (Invoice), 수출신고필증과 일치되게 기재합니다.
 - 7) **원산지** :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 8) **생산자(공급자)** :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물품의 생산자(공급자)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수출자 : 생산자(공급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자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수입자 :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당해 물품의 해외 수출자의 회사명을 기재합니다.
 - 9) **협정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증명서를 적용하는 협정의 명칭 및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을 기재합니다.
 - 10) **비고** : 원산지증명서 발급 과정에서 특이한 점 등을 기재한다.
-

08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작성목적

-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 목적으로 발급한 원산지증빙서류에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당국 및 수입자에게 오류사실을 통보하고 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 및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원산지수정통보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 수정통보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업무 담당 세관장에게 보고 (통보)하여야 하며, 협정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원산지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원산지 수정통보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출받은 원산지 수정통보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관세청장과 수출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원산지조사업무 담당 세관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하며 협정에서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정통보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목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알았을 때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세관장(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받은 체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그 사실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수입자는 체약상대국의 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사람이나 해당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받은 경우로서 그 오류로 인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과부족(過不足)이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정정, 세액보정, 수정신고 또는 경정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수정통보 방법)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제출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법 제11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에 수정된 원산지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수출자·생산자 및 계약상대국의 수입자
2. 수출신고번호 및 수출신고일자
3.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4.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및 수량
5. 오류내용 및 정정사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수출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통보기간) 법 제11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원산지증빙서류를 작성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7.15, 2010.12.31.>

제15조(수입물품의 원산지오류 수정신고기간)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통보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통지를 받기 전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8.7.15, 2010.12.31>

[Form 1] Correc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Correc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Exporter		Producer	
Importer in Importing Party		No. of Export Declaration	
Date of Export Declaration		No. of Certificate of Origin	
Date of Signature		Description of Goods	
Contents of the Correction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p>I inform you of the correction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p> <p style="text-align: center;">Date.</p> <p style="text-align: center;">Exporter (Singnature)</p> <p style="text-align: center;">To ○ ○ Customs Collector</p>			

작성방법

- 1) **수출자(Export)** : 오류가 확인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물품의 실제 수출자를 기재합니다.
- 2) **생산자(Producer)** : 오류가 확인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물품을 실제 생산한 자를 기재합니다.
- 3) **체약 상대국 수입자(Import in Importing Party)** : 오류가 확인된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상물품을 수입한 수입자를 기재합니다.
- 4) **수출신고번호(No. of Export Declaration)** : 오류가 확인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출물품의 수출신고필증 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수출신고일자(Date of Export Declaration)** : 수출신고서를 제출(신고)한 신고일자를 기재합니다.
(수리일자를 기재하면 아니된다)

※ 주의사항 : 수출신고 수리일자를 기재하여서는 안됨

- 6) **원산지증명서번호(No. of Certificate of Origin)** : 수정통보서의 대상이 되는 오류가 확인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를 기재합니다.
- 7) **원산지증명서 서명일자(Date of Signature)** : 수정통보서의 대상이 되는 오류가 확인된 원산지증명서의 최초 서명일자를 기재합니다.
- 8) **품명(Description of Goods)** : 오류가 확인된 원산지증명 수정통보서의 대상 품명을 기재합니다.
- 9) **수정 전(Before Correction)** : 발견된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사항을 기재합니다.
- 10) **수정 후(After Correction)** : 발견된 오류사항의 수정사항을 기재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1호 서식]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원산지증명서 수정통보서			
수 출 자	(주) 한국통상	생 산 자	(주)정보원
계약상대국수입자	International Trade Ltd.,	수 출 신 고 번 호	010-15-1306308059
수 출 신 고 일 자	13. 1. 30	원산지증명서번호	130-14-xxxxx
원 산 지 증 명 서 서 명 일 자	13. 1. 02	품 명	Safety Belt
수 정 사 항			
수 정 전		수 정 후	
수출자 : (주)정보원 생산자 : (주)한국통상		수출자 : (주)한국통상 생산자 : (주)정보원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 수정사항을 상기와 같이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년 3월 30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출인 (주)한국통상  (인)</p> <p style="text-align: center;">대구 세 관 장 귀하</p>			

[Form 1] Correc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Correction of Certificate of Origin

Exporter	Hankuk Tongsang Ltd.,	Producer	Jungbowon Ltd,
Importer in Importing Party	International Trade Ltd.,	No. of Export Declaration	010-15-1306308059
Date of Export Declaration	13. 1. 30	No. of Certificate of Origin	130-14-xxxxx
Date of Signature	13. 1. 02	Description of Goods	safety Belt

Contents of the Correction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Export : Hankuk Tongsang Ltd., Producer : Jungbowon Ltd,	Export : Jungbowon Ltd, Producer :Hankuk Tongsang Ltd.,

I inform you of the correction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0.0 of Korea-000 FTA

Date. 2013. 03. 30,

Exporter Hankuk Tongsang Ltd.,  (Singnature)

To **DAE-GU** Customs Collector

09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 한-칠레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한-칠레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는 양국간 통일증명양식을 사용하며, 반드시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협정이 12개월을 기한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칠레 FTA는 서명일로부터 2년을 유효기간으로 하고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하다.

칠레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협정상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물품에 대해 원산지통보서를 작성하여 수출자에게 제공(생산자의 휴폐업 등의 사유로 원산지통보서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진술서로 대체 가능)하여야 하며, 수출자는 생산자로부터 발급받은 원산지통보서 또는 서면진술서를 근거로 협정상 원산지증명 서식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 의무사항]

- ①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지정사유를 정확히 기재
 - 지정된 서명권자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 ②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기재 및 관리

근거규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5(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7서식과 같다.[본조신설 2010.3.2.]

제4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칠레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 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23.> [본조신설 2010.3.2.]

참고규정**「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③ 생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2013.2.23>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자(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 · 품목번호(6단위) · 수량 · 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수출자 :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계약상대국의 수입자 · 수입국명
 - 나. 생산자 :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다. 수입자 :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 수출국명
5. 삭제 <2013.2.23>
6.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한-칠레 FTA협정문」

제5.2조 원산지증명서 및 신고서

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시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단일 형식과 원산지신고서의 단일 형식을 확정하며, 이 형식들은 이후 양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증명서는 일방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한다. 이 증명서는 서명된 일자로부터 2년간 유효하다.
3.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요구할 목적으로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가 영어로 작성되고 서명될 것을 요구한다.
4. 각 당사국은,
 - 가. 자국 영역내의 수출자에 대해 타방 당사국 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하는 수입자가 이에 대해 특혜관세대우를 주장할 대상인 당해 상품의 수출용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 나. 자국 영역내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에, 수출자가 다음을 기초로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1)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신의 지식,
 - (2) 상품이 원산지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또는
 - (3)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

5.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의 생산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되어야 하며 수출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제출되어야 한다. 신고서는 서명된 일자로부터 2년의 유효기간을 갖는다.
6.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 영역내의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가 당사국 영역내로의 단 한번의 수입에 적용됨을 규정한다.
7. 이 협정이 발효되는 일자 또는 그 후에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모든 원산지상품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그 상품의 수출자에 의해 발효일자 이전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를 수락한다.
8. 각 당사국은 수출자에 의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를 권한있는 정부당국 또는 정부에 의해 위임된 기관이 승인하는 제도를 설립하기 위해 국내법에 따른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작성양식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11.12.2>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1: Ex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2: Producer (Name and Address)			3: Importer (Name and Address)	
Tax ID No.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9. Remarks:				
10: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Name (Print or Type)		Title		
Date (MM/DD/YY)		Telephone / Fax / E-mail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CONTINUATION SHEET**

Issuing Number:

2. Producer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작성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요령
	Issuing Number (발급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련번호 기재
1	Exporter(수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의 이름, 주소(국가포함), 사업자등록번호(칠레: Unique Tax Number) 기재.
2	Producer(생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자 1명일 경우: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생산자 2명 이상일 경우: "VARIOUS"를 기재하고 모든 생산자의 리스트를 첨부(생산자 이름, 주소, 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사업자등록번호) 생산자와 수출자와 같을 경우: "SAME" 기재 생산자를 모를 경우: "UNKNOWN" 기재 비밀로 할 경우: "Available to Customs upon request" 기재
3	Importer(수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자 이름, 주소(국가포함) 기재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UNKNOWN" 기재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 "VARIOUS" 기재
4	Description of Good(s) (품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을 기재 송품장번호 기재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 기재
5	HS No (품목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목4의 각 물품의 HS번호 6단위까지 기재
6	Preference Criterion (특혜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항목4의 각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D)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B.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C.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D.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협정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7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부가가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가치기준 적용대상 물품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법(build-down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D" - 집적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U" 기재
8	Country of Origin (원산지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기재
9	Remarks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

작성방법

Issuing Number(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 발급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 **Exporter(수출자)** : 사업자등록증 상의 수출자 상호, 주소(국가포함),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칠레에 있는 수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대신 Unique Tax Number를 기재

2) **Producer(생산자)** :

- 생산자가 1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의 생산자 이름, 주소(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포함), 사업자등록번호를 갑지의 해당 란에 기재합니다.
- 생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 갑지의 해당란에 “VARIOUS”를 기재하고 모든 생산자의 리스트를 을지에 기록(사업자등록증상의 생산자 상호, 주소, 국가, 전화번호, FAX, E-mail, 사업자등록번호)합니다.
- 생산자와 수출자가 같을 경우 - 갑지의 해당란에 “SAME”을 기재합니다.
- 생산자를 모를 경우 - 갑지의 해당란에 “UNKNOWN”을 기재합니다.
- 생산자를 비밀로 할 경우 - 갑지의 해당란에 “Availabel to Customs upon request”를 기재합니다.

3) **Importer(수입자)** : 수입자의 상호, 주소(국가포함)를 기재합니다. 또한 수입자를 알지 못할 경우 해당 란에 “UNKNOWN”을 기재하며 수입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해당 란에 “VARIOUS”를 기재합니다.

4) **Description of Good(s)(품명)** : HS 및 송품장과 관련시킬 수 있는 상세한 상품의 설명과 송품장(Invoice)번호를 기재합니다. 또한 송품장번호를 모를 경우에는 shipping order, purchase order number 등 물품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번호를 기재합니다.

5) **HS No(품목번호)** : 항목4(품명)에 기재되어 있는 각 물품의 HS code를 6단위까지 기재합니다.

6) **Preference Criterion(특혜기준)** – 항목4(품명)의 각 물품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특혜기준(A~D)에 해당되는 항목을 기재합니다.

특혜기준 항목별 설명

항목구분	특 혜 조 건
A	역내국에서만 완전하게 획득하거나 생산된 경우
B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되고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부속서(annex 4)에 규정된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주요공정기준 및 협정 4장에 규정된 다른 적용가능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C	물품이 협정 제4.2조 제1(a)부터 제1(d)의 기준에 의한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재료로만으로 일방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내에서만 생산된 경우
D	물품이 일방 또는 양 당사국 영역내에서 생산되었으나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하나 이상의 비원산지재료가 협정 4.2.1 C(i, ii) 규정에 해당하여 세번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부가가치 기준을 충족한 경우

7) **Regional value Content(역내부가가치)** :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 공제법(build-down method)을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 “BD”, 집적법(build-up method)에 의해 계산한 경우 “BU” 로 기재합니다.

8) **Country of Origin(원산지국가)** : 원산지가 한국일 경우 “KR”, 원산지가 칠레일 경우 “CL” 로 기재합니다.

9) **Remarks(비고)** : 송품장이 비당사국에서 작성되었을 경우 작성자 이름, 회사명 주소를 기재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6호의7서식] <개정 2011.12.2>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Issuing Number: 2013-0101				
1: Exporter (Name and Address) <i>Kuŕje-Dogi, 555, YaTap Ro, Bundang -Gu, Sung Nam, Kyung -Ki, Korea</i> Tax ID No. 123-45-6789				
2: Producer (Name and Address) <i>Jungbowon Ltd, 17 Yeo-Ju Ro Dea-sin Myun, Yeo-Ju, Kyungŕido, Korea</i> Tax ID No. 876-54-3210			3: Importer (Name and Address) <i>International Trade Ltd., Montana 712 Vina del Car, Quinta Region de Valparaiso, Chile</i>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i>Bowl</i>	<i>691200</i>	<i>B</i>	<i>-</i>	<i>KR</i>
9. Remarks: <i>N/A</i>				
10: Certification of Origin I certify th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d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is certificate, and to inform, in writing, all persons to whom the certificate was given of any changes that could affect the accuracy or validity of this certificate. •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ies,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nd there has been n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12 of the Agreement.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Name <i>Kuŕje-Dogi</i>			
Name (Print or Type) <i>Gil-Dong, Hong</i>	Title <i>Manager</i>			
Date (MM/DD/YY) <i>03/02/2013</i>	Telephone / Fax / E-mail <i>82-32-600-0000/82-32-600-0001/origin@origin.or.kr</i>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m²]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을지)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CONTINUATION SHEET

Issuing Number:

2. Producer	4. Description of Good(s)	5. HS No	6. Preference Criterion	7. Regional Value Content	8. Country of origin

전자문서 작성범례

[별지 제6호서식] 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자문서

AnnexII(d)

e-C/O Entries of Korea-Chile FTA

Obligatory	M	Mandatory
	C	optional

C/O No.	Entries	Name of Field	Name of XML	Type	Size	Obliga tory	Comments
1	Agreement	Name of Agreement	Agreement Name	string	256	M	KOREA-CHILE FREE TRADE AGREEMENT
		Acronym of Agreement	Agreement Acronym	string	3	M	KCL
	Issuing Number	Issuing Number	Certificate ID	string	20	M	
	Exporter	Name	Exporter Business Name	string	100	M	
		Address	Exporter Address	string	256	M	
City		Exporter City	string	50	M		
Country		Exporter Country	string	2	M	Korea: "KR", Chile: "CL"	
2	Importer	Name	Importer Business Name	string	100	M	
		Address	Importer Address	string	256	M	
		City	Importer City	string	50	M	
		Country	Importer Country	string	2	M	Korea: "KR", Chile: "CL"
③ If there are more than two products, entry 3~8 will be repeated							
3	Producer	Name	Producer Business Name	string	64	M	
		Address	Producer Address/ Producer City	string	256	M	
		Country	Producer Country	string	2	M	Korea: "KR", Chile: "CL"
		Tax ID No.	Producer Tax Identification	string	32	M	
		Tel	Producer Telephone	string	16	M	
		Fax	Producer Fax	string	16	M	
		E-mail	Producer Email	string	50	M	
		Number of Producers	Producer Qty	integer/ positive	2	C	
Producer Order No.	Producer Order No	integer/ positive	2	M			

3	Producer	Confidentiality	Producer Confidentiality	string	15	C	If confidential: "Yes"
		Producer/Exporter	Producer Exporter	string	9	M	If the producer and the exporter are the same : "SAME" If producer is unknown : "UNKNOWN"
4	Description of Goods	Description of Goods	Goods Item Name	string	1024	M	
		Invoice No.	Invoice No	string	30	M	
5	HS No.	HS No.	Goods Item Code	string	16	M	
6	Preference Criterion	Preference Criterion	Goods Item Origin Rules	string	256	M	
7	RVC	RVC	Goods Item RVC	string	2	C	*build-down Method:"BD" *build-up Method:"BU"
8	Country of Origin	Country of Origin	Country Of Origin	string	2	M	
9	Remarks	Non-Party Operator Invoice	Third Op Statement	Boolean	True/False	C	
		Non-Party Operator Name	Op3c Business Name	string	100	C	Field9 in the C/O indicates : "Field9: indicate the name, corporate name and address of that operator, if known. If the information is Unknown, the filed should be blank".
		Non-Party Operator Address	Op3c Address	string	256	C	
		Country	Op3c Country	string	2	C	Standar ISO alphabets (2-digit). If the information is Unknown, the filed should be blank
10	Certification of Origin	Non-Party Operator Name					equivalent to No.9.1. Thus, not needed
		Authorized Signature				M	Electronic signature is to be provided.
		Name	Representative Submitter Name	string	100	M	
		Date (MM/DD/YYYY)	Certificate Date	datetime	yyyy-mm-dd	M	
		Company Name	Representative Business Name	string	64	M	
		Title	Representative Submitter Title	string	64	M	
		Tel	Representative Telephone	string	16	M	
Fax	Representative Fax	string	16	M			
E-mail	Representative Email	string	50	M			

Note: All other XML file must be in blank

10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 한-EFTA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 및 생산자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 주의사항

한-EFTA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는 별도의 양식 없이 송품장(Invoice) 등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작성언어는 영어이며 작성자의 서명이 필수적이거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서면확인서를 관세당국에 사전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EFTA와의 협정에서 체약당사국은 4개국이나 리히텐슈타인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일 경우 스위스를 원산지로 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점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 및 생산자 의무사항]

- ①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지정사유를 정확히 기재
 - 지정된 서명권자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 ②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기재 및 관리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5, 2011.6.30, 2011.7.29>

1.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표 1**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해당 물품의 상업송장 또는 이를 갈음하는 서류
2.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6호의4서식**

②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I **제16조**에 따른 인증수출자로 본다. <신설 2008.7.15, 2010.3.2>

제4조(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동 협정의 일부를 구성하는 「대한민국과 아이슬란드공화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대한민국과 노르웨이왕국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포함하며, 이하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 중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치즈(영 별표 2 제2호가목 품목번호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및 같은 목의 비고에 따른 기타 치즈에 한하며, 이하 이 조에서 “스위스치즈”라 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08.7.15, 2013.2.23>

③ 제2항 및 「대한민국과 스위스연방 간의 농업에 관한 협정」 부속서 I에 따라 스위스치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스위스연방농업국이 인증한 기관으로 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③ 생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3.2.23>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2013.2.23>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자(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수출자 :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
 - 나. 생산자 :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다. 수입자 : 계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
5. 삭제 <2013.2.23>
6.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목개정 2013.2.23.]

「한-EFTA FTA협정문 부속서 I」

제15조 원산지신고서

1. 수입 당사국에서의 특혜관세대우 목적상, 당사국의 수출자는 대한민국 또는 유럽자유무역 연합회원국이 원산지로 간주되고 이 부속서의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록 3에 규정된 원산지신고서 양식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상품임을 확인할 수 있고, 수출자, 수출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가 확인되는 송장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같음할 수 있다.
3. 제1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원산지신고서는 읽기 쉽고 영구적인 양식으로 영어로 작성되고 수출자의 본 서명을 포함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하여, 또는 관련 상품이 수출되었거나 수출 후에는 생산자에 의하여 작성될 수 있다.
5. 원산지신고서 작성시 생산자에게 서류와 정보를 의존하는 수출자는 그 서류와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가 동 신고서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경우,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주는 변화에 대하여 수입자에게 즉시 서면통보하고, 동 사본을 수출국 관세당국에게 제출한다. 벌칙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7.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의 요청시,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수출자는 원산지신고서 사본 및 동 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의 사본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장부 검사 또는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8. 이 조의 목적상, 국내 법령에 따라 상품의 화주로부터 원산지신고서의 작성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운송중개인, 관세사 또는 이와 유사한 자는 “수출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16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이 인증 수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약속서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 하에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상품을 빈번하게 선적하는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2.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규정된 인증 수출자에게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수출자의 서명대신 원산지신고서에 사용하기로 합의될 수 있는 세관인증번호 또는 그 밖의 확인양식을 교부한다.

3.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인증제도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고, 수출자가 더 이상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제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3.2, 2011.6.30, 2013.2.23>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2의3.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3. 삭제 <2011.6.30>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5.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2010.12.31, 2011.6.30, 2013.2.23>

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 2013.2.23>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 2011.6.30>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2, 2013.2.23>

⑭ 제6항,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0.3.2, 2013.2.23>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3.2.23>

1.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3~4.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6.30, 2013.2.23>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3>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3년간”은 “2년간”으로 본다. <개정 2011.6.30, 2013.2.23>

[본조신설 2010.3.2.]

작성양식

[별표 1] <개정 2013.2.2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p>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p>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²⁾ preferential origin.</p> <p>.....³⁾ (Place and date)</p> <p>.....⁴⁾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p>.....⁵⁾ (Remarks)</p>
<p>작성방법</p>	<p>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p> <p>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기재한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 부호를 기재한다.</p> <p>① 대한민국 : KR ② 아이슬란드 : IS ③ 노르웨이 :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 CH</p> <p>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기재한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4)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p> <p>5)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기재한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1 (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p>

작성방법

송품장(Invoice)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신고문안을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customs authorization No**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으며,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these products are of** : 해당물품의 원산지국가를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ISO 알파 2단위 부호를 기재합니다.

ex) these products are of The republic of Korea 또는 these products are of KR

① 대한민국:KR ② 아이슬란드:IS ③ 노르웨이: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 : CH

3) **Place and date**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신고일을 영문으로 기재합니다.

4) **Signature of the exporter** : 원산지증명서 작성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다만,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서 사전에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5) **Remarks** :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ex)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적습니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작성사례

[별표 1] <개정 2013.2.23.>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2제1항제1호 관련)

<p>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p>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zation No..IT/001/RM1/06 (인증수출자 아닌 경우 공란)..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R.²⁾ preferential origin.</p> <p>.....SEOUL KOREA and 03/09/2013.....³⁾ (Place and date)</p> <p>BO WON JUNG (서명) (인증수출자 생략가능).....⁴⁾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p>.....(특이사항 있는 경우 기재).....⁵⁾ (Remarks)</p>
<p>작성방법</p>	<p>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기재한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다음과 같이 ISO 알파 2단위 부호를 기재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대한민국 : KR ② 아이슬란드 : IS ③ 노르웨이 : NO ④ 스위스(리히텐슈타인을 포함한다) : CH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기재한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특이사항을 기재한다. 역외가공된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다음의 문구를 기재한다. “The provisions of Appendix 4 to Annex I (Exemptions from the Principle of Territoriality) have been applied”

1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 한-EU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	계약상대국의 수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 주의사항

한-EU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는 별도의 양식 없이 송품장(Invoice), 포장명세서(Packing List), 선하증권(B/L), 인도증서(Delivery Note) 등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다만, 작성언어는 영어와 수입당사국 언어 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작성자의 서명이 필수적이거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서면확인서를 관세당국에 사전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또한 전체 수출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한 수출자만이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 의무사항]

- ①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 · 부서명 · 직책 · 성명 · 지정일 · 지정사유를 정확히 기재
 - 지정된 서명권자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 ②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기재 및 관리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6(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로 한다. <개정 2011.7.29.>

②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II (a) of Protocol”이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2013.2.23.> [본조신설 2011.6.30.]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2. 추가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의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추가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추가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 ②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1항제2호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 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 ②~③ 생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3.2.23>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2013.2.23>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자(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수출자 :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
 - 나. 생산자 :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다. 수입자 : 계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
5. 삭제 <2013.2.23>
6.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한-EU FTA협정문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5조 일반요건

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될 때, 그리고 유럽연합 당사자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대한민국으로 수입될 때, 이후 “원산지 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1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16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이 의정서의 제15조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 또는
 - 나. 전체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원산지제품을 포함하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되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2. 제3항을 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유럽연합 당사자 또는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신고서는 부속서 3에 규정된 언어본 중 하나를 사용하고 수출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송품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수출자에 의해 작성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 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그러나, 제17조의 의미상 인증수출자는, 자신임이 확인되는 원산지 신고서에 대해 본인에 의해 수기로 서명된 것처럼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서면약속을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에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한 신고서에 서명하도록 요구받지 아니한다.
6. 원산지 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 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 당사자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 당사자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3.2, 2011.6.30, 2013.2.23>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2의3.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요구(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할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3. 삭제 <2011.6.30>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5.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 2013.2.23>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 2011.6.30>

-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3>
-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2, 2013.2.23>
- ⑭ 제6항,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3.2.23>

1.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3. 삭제 <2011.6.30>
 4. 삭제 <2011.6.30>
- ②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6.30, 2013.2.23>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3>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3년간”은 “2년간”으로 본다. <개정 2011.6.30, 2013.2.23>

[본조신설 2010.3.2.]

작성양식

[별표 2] <개정 2013.2.23.>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6제1항 관련)

<p>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p>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²⁾ preferential origin.</p> <p>.....³⁾</p> <p>(Place and date)</p> <p>.....⁴⁾</p> <p>(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p>작성방법</p>	<p>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다만, 언어는 영어본이외에도 아래의 22개 언어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증수출자의 인증번호를 기재한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한다.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3)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기재한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수출국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성명과 서명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II (a) of Protocol” 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영어본 이외
언어 문안**1. Bulgarian version**

Износителят на продуктите обхващан от този документ (митническо разрешение № ...⁽¹⁾) декларира, че освен където е отбелязано друго, тези продукти са с... преференциален произход⁽²⁾.

2. Spanish version

El exportador de los productos incluidos en el presente documento (autorización aduanera n° ...⁽¹⁾.) declara que, salvo indicación en sentido contrario, estos productos gozan de un origen preferencial ...⁽²⁾.

3. Czech version

Vývozce výrobků uvedených v tomto dokumentu (číslo povolení ...⁽¹⁾) prohlašuje, že kromě zřetelně označených, mají tyto výrobky preferenční původ v ...⁽²⁾.

4. Danish version

Eksportøren af varer, der er omfattet af nærværende dokument, (toldmyndighedernes tilladelse nr. ...⁽¹⁾), erklærer, at varerne, medmindre andet tydeligt er angivet, har præferenceoprindelse i ...⁽²⁾.

5. German version

Der Ausfüh­rer (Ermäch­tigter Ausfüh­rer; Bewilligungs-Nr. ...⁽¹⁾) der Waren, auf die sich dieses Handelspapier bezieht, erklärt, dass diese Waren, soweit nicht anderes angegeben, präferenzbegünstigte ...⁽²⁾ Ursprungswaren sind.

6. Estonian version

Käesoleva dokumendiga hõlmatud toodete eksportija (tolliameti kinnitus nr. ...⁽¹⁾) deklareerib, et need tooted on ...⁽²⁾ sooduspäritoluga, välja arvatud juhul kui on selgelt näidatud teisiti.

7. Greek version

Οεξαγωγέας των προϊόντων που καλύπτονται από το παρόν έγγραφο (άδεια τελωνείου υπ' αριθ. ...⁽¹⁾) δηλώνει ότι, εκτός εάν δηλώνεται σαφώς άλλως, τα προϊόντα αυτά είναι προτιμυσιακής καταγωγής ...⁽²⁾.

8. French version

L'exportateur des produits couverts par le présent document (autorisation douanière n° ...⁽¹⁾) déclare que, sauf indication claire du contraire, ces produits ont l'origine préférentielle ...⁽²⁾.

9. Italian version

L'esportatore delle merci contemplate nel presente documento (autorizzazione doganale n. ...⁽¹⁾) dichiara che, salvo indicazione contraria, le merci sono di origine preferenziale ...⁽²⁾.

10. Latvian version

Eksportētājs produktiem, kuri ietverti šajā dokumentā (muitas pilnvara Nr. ...⁽¹⁾), deklarē, ka, izņemot tur, kur ir citādi skaidri noteikts, šiem produktiem ir priekšrocību izcelsme no ...⁽²⁾.

11. Lithuanian version

Šiame dokumente išvardintų prekių eksportuotojas (muitinės liudijimo Nr. ...⁽¹⁾) deklaruoja, kad, jeigu kitaip nenurodyta, tai yra ...⁽²⁾ preferencinės kilmės prekės.

12. Hungarian version

A jelen okmányban szereplő áruk exportőre (vámfelhatalmazási szám: ...⁽¹⁾) kijelentem, hogy eltérő jelzés hiányában az áruk kedvezményes ...⁽²⁾ származásúak.

13. Maltese version

L-esportatur tal-prodotti koperti b'dan id-dokument (awtorizzazzjoni tad-dwana nru. ...⁽¹⁾) jiddikjara li, hliet fejn indikat b'mod ċar li mhux hekk, dawn il-prodotti huma ta' oriġini preferenzjali ...⁽²⁾.

14. Dutch version

De exporteur van de goederen waarop dit document van toepassing is (douanevergunning nr. ...⁽¹⁾), verklaart dat, behoudens uitdrukkelijke andersluidende vermelding, deze goederen van preferentiële ... oorsprong zijn ⁽²⁾.

15. Polish version

Eksporter produktów objętych tym dokumentem (upoważnienie władz celnych nr ...⁽¹⁾) deklaruje, że z wyjątkiem gdzie jest to wyraźnie określone, produkty te mają ...⁽²⁾ preferencyjne pochodzenie.

16. Portuguese version

O abaixo assinado, exportador dos produtos cobertos pelo presente documento (autorização aduaneira n.º. ...⁽¹⁾), declara que, salvo expressamente indicado em contrário, estes produtos são de origem preferencial ...⁽²⁾.

17. Romanian version

Exportatorul produselor ce fac obiectul acestui document (autorizația vamală nr. ...⁽¹⁾) declară că, exceptând cazul în care în mod expres este indicat altfel, aceste produse sunt de origine preferențială ...⁽²⁾.

18. Slovenian version

Izvoznik blaga, zajetega s tem dokumentom (pooblastilo carinskih organov št. ...⁽¹⁾) izjavlja, da, razen če ni drugače jasno navedeno, ima to blago preferencialno ...⁽²⁾ poreklo.

영어본 이외
언어 문안**19. Slovak version**

Vývozca výrobkov uvedených v tomto dokumente (číslo povolenia ...⁽¹⁾) vyhlasuje, že okrem zreteľne označených, majú tieto výrobky preferenčný pôvod v ...⁽²⁾.

20. Finnish version

Tässä asiakirjassa mainittujen tuotteiden viejä (tullin lupa n:o ...⁽¹⁾) ilmoittaa, että nämä tuotteet ovat, ellei toisin ole selvästi merkitty, etuuskohteluun oikeutettuja ... alkuperätuotteita ⁽²⁾.

21. Swedish version

Exportören av de varor som omfattas av detta dokument (tullmyndighetens tillstånd nr. ...⁽¹⁾) försäkrar att dessa varor, om inte annat tydligt markerats, har förmånsberättigande ... ursprung ⁽²⁾.

22. Korean version

이 서류(세관인증번호...⁽¹⁾)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은...⁽²⁾의 특혜원산지상품임을 신고한다.

작성방법

송품장(Invoice)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신고문안을 영문 또는 수입당사국 언어로 작성합니다.

- 1) **customs authorization No**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으며,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 2) **these products are of** : 해당물품의 원산지국가를 해당 국가의 국명 또는 ISO 알파 2단위 부호를 기재합니다. 또한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일 경우에는 “CM”으로 표기합니다.
- 3) **Place and date**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이들 서류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4) **Signature of the exporter** :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다만,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로서 사전에 관세당국에 서면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5)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9 제5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Annex II (a) of Protocol” 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 별표 9 제5호에는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작성사례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customs authorisation No 010-11-123456¹⁾ (없을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R²⁾ preferential origin.

..... SEOUL KOREA and 03/09/2013.³⁾
(Place and date)

...BO WON JUNG (서명) (인증수출자 생략가능)⁴⁾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12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 한-페루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 주의사항

한-페루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법이 기본적으로 발효 후 5년간 기관발급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달러 이하의 수출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작성이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을 할 경우에는 송품장(Invoice) 등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이 빠짐없이 기재되어야 하며, 작성언어는 필수적으로 영어가 사용되어야 한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 관세당국의 관할 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간 유효하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 의무사항]

- ①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지정사유를 정확히 기재
 - 지정된 서명권자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 ②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기재 및 관리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7(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의8서식
2. 제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표 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제4조의4(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23>

1.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 가.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가 규칙 5 및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 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2천미합중국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② 생략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 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③ 생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자(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수출자 :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
 - 나. 생산자 :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다. 수입자 : 계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
5. 삭제 <2013.2.23>
6.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한-페루 FTA협정문」

제4.1조 원산지증명서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 가. 인쇄본 또는 전자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 나.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부속서 4나에 규정된 견본 및 그에 포함된 지침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 나.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

5.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 나.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그 발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

「한-페루 FTA협정문 부속서 4가」

규칙 1 원산지증명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 시 다음의 원산지증명 중 하나를 제출하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 가. 부록 4가-1에 있는 양식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 나. 규칙 4의 제1항에 명시된 경우, 부록 4가-2에 있는 문안을 사용한 신고서(이하 “원산지 신고서” 라 한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상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상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규칙 4 원산지신고서 작성조건

- 1. 규칙 1의 나호에 언급된 원산지신고서는 다음에 의해 작성될 수 있다.
 - 가. 규칙 5에 따른 의미에서의 인증수출자 또는

나. 원산지 상품을 담고 있는 하나 이상의 포장으로 구성될 수 있는 탁송화물의 수출자. 다만, 탁송화물의 총가격은 미화 2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원산지신고서는 해당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고 판단되고 이 장 및 제3장(원산지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문서를 수출 당사국 또는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4.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에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하여 영어로 작성된다.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잉크를 사용하여 정자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원산지신고서에 부정확한 정보가 포함되었음을 인지한 수출자는 그 원산지신고서가 적용되는 각 상품이 원산지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경을 수입자 및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게 서면으로 즉시 통지한다.

규칙5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상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라 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보증을 권한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증 번호를 부여하며, 이 번호는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다.
3.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를 서로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모든 변경사항을 그것이 발효하는 날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4.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언제라도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자국 국내 법령에 명기된 조건들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철회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3.2, 2011.6.30, 2013.2.23>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2의3.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3. 삭제 <2011.6.30>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5.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3.2, 2010.12.31, 2011.6.30, 2013.2.23>

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 2013.2.23>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 2011.6.30>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2, 2013.2.23>

⑭ 제6항,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0.3.2, 2013.2.23>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3.2.23>

1.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3~4.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6.30, 2013.2.23>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3>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3년간”은 “2년간”으로 본다. <개정 2011.6.30, 2013.2.23>

[본조신설 2010.3.2.]

작성양식

[별표 3] <신설 2011.7.29.>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7제2호 관련)

항목	기재요령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문안</p>	<p>다음의 신고문안을 기재한다.</p> <p>“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authorization No.....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²⁾ preferential origi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origin criteri³⁾”</p> <p>※ 한글번역문: “이 문서(인증번호.....¹⁾)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는, 달리 분명하게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상품들이.....²⁾의 원산지 상품임을 다음 원산지 기준³⁾에 근거하여 신고한다.”</p> <p>【세부 기재요령】</p> <p>1)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기재한다.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p> <p>2) 해당 물품의 원산지국가는 다음과 같이 해당 국가의 국명을 기재한다. ① Korea ② Peru ※ 한글번역문 : ① 대한민국 ② 페루</p> <p>3)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한다.</p> <table border="1" data-bbox="356 1012 1133 1264"> <thead> <tr> <th>원산지결정기준</th> <th>기재문구</th> </tr> </thead> <tbody> <tr> <td>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td> <td>WO</td> </tr> <tr> <td>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td> <td>WP</td> </tr> <tr> <td>다) 별표 10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td> <td>PSR⁽¹⁾</td> </tr> <tr> <td>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를 적용받는 물품</td> <td>OP</td> </tr> </tbody> </table> <p>(1) 해당 물품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 (공제법인 경우) 또는 “BU” (집적법인 경우)를 기재한다.</p>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WP	다) 별표 10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SR ⁽¹⁾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를 적용받는 물품	OP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WP										
다) 별표 10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SR ⁽¹⁾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를 적용받는 물품	OP										
<p>장소 및 날짜 (Place and date)</p>	<p>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날짜를 영문으로 기재한다.</p>										
<p>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 (Signature of the exporter)</p>	<p>수출자의 성명을 영문으로 정확하게 적고, 서명을 합니다.</p>										
<p>비고 (Remarks)</p>	<p>특별한 사항을 기재한다. 예를 들어, 해당 물품이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다음의 문구를 기재한다.</p> <p>“Article 3.15 has been applied.”</p> <p>※ 한글번역문: 제3.15조가 적용되었음.</p>										

작성방법

송품장(Invoice)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신고문안을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 1) **authorization No** : 업체별 또는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번호를 적으며,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빈칸으로 두거나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페루 FTA에 있어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미화 2,000달러 이하의 수출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2) **these goods are of** : 해당물품의 원산지국가를 해당 국가의 국명(한국의 경우 “Korea” , 페루의 경우 “Peru”)으로 기재합니다.
- 3) **following origin criteria** : 수출자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방법을 아래 표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WP
다) 별표 10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계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SR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를 적용받는 물품	OP

- 4) **Place and date**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 5) **Signature of the exporter** :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 6) **Remarks** : 특별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ex) 해당 물품이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Article 3.15 has been applied.” 라고 기재.

작성사례

SEOUL INTERNATIONAL CORPORATION				
RM .902 MILLIANA OFFICE ETEL #99-1 G ARAK-DO NG SONG PA-KU SEOUL KOREA TEL : 02)408-6692/3 FAX : 02)404-958			OFFER NO. 2120309-28	
			REG. NO.	9503168
			DATE	MARCH 12, 2012
FIRM OFFER Messrs Jungbo won Ltd.,			()	215-06-78892
We are pleased to offer you the undermentioned goods on the terms and conditions described as follows				
Origin	KR	Validity	APRIL 13, 2012	
Manufacturer	BELL FLAVORS & FRAGRANCES, INC.	Packing	11,34KG PLASTIC PAIL	
Shipping port	Imcheon Airport	Destination	Peru	
Delivery	4 WEEKS AFTER RECEIPT OF T/T	Shipment		
Payment : (By T/T remittance in advance) in favor of BELL FLAVORS & FRAGRANCES, INC. 500 ACADEMY DRIVE NORTHBROOK ILLINOIS 60062 U.S.A				
"The exporter of the goods covered by this document (authorization No. Pe/11/33/44/55 ¹⁾)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goods are of Korea ²⁾ preferential origin, on the basis of the following origin criteria PSR, ³⁾ "				
SEOUL KOREA and 03/09/2013.				
BO WON JUNG (서명)				
_____ FOB C&F CIF _____ others (PREPAID)		Remark	Ex-works = FOB Northbrook, IL	
Accepted by: Jungbo Won Ltd.,				
SAMJINBLDG 7F, WOON-NI RO, CHONGNO-KU, SEOUL, KOREA, C.P.O.BOX 4008 TEL : 82-2-2127-2166 FAX : 82-2-3675-6292				
			Signature	
HSNO. [10]	Commodity / Specification	Quantity	Unit Price	Amount
3302.10. 1000	COMPOUND FLAVOR RUM FLAVOR WONF, NATURAL #129.640	11.34kg (=25 lbs)	(EX-WORKS,IL) US\$28.25/k	US\$320.36
Total Amount : US\$320.36				

13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 한-미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 생산자, 수입자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 주의사항

한-미 FTA 협정에서는 협정상 정해진 원산지증명서 양식 없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기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로서의 효력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양국 관세당국은 각기 원산지증명서의 권고서식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에 있어 일반적인 협정들이 발급일로부터 1년을 기간으로 하고 있는데 반해 한-미 FTA는 4년간 유효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의무사항]

- ①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지정사유를 정확히 기재
 - 지정된 서명권자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 ②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기재 및 관리

근거규정

「한-미 FTA협정문」

제6.15조 특혜관세대우 신청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다음 중 하나에 기초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서면 또는 전자증명, 또는
 - 나.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가 보유한 정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를 포함하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인지
2. 각 당사국은 증명이 정하여진 형식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음을 규정한다. 다만, 그 증명이 서면 또는 전자 형태로 되어야 하며, 다음 요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 가.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성명
 - 나. 상품의 수입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 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 라. 상품의 생산자(이는 경우에 한한다)
 -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성명
 - 바.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증명일, 그리고
 - 아. 제4항 나호의 규정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
3. 각 당사국은 상품이 생산자 또는 수출자에 의한 증명이 다음에 기초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 나. 수출자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생산자의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
 어떠한 당사국도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서면 또는 전자증명을 다른 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없다.
4. 각 당사국은 증명이 다음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 나. 서면 또는 전자증명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증명일로부터 1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동일상품의 복수 선적
5. 각 당사국은 증명이 발급된 날 후 4년 동안 유효하도록 규정한다.
6.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입당사국 또는 수출당사국의 언어로 증명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후자의 경우에는 수입당사국이 세관당국은 수입자에게 수입 당사국의 언어로 된 증명의 번역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8(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한다. <개정 2013.2.23.>

1. 별지 제6호의9서식에 따라 작성된 서류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서류
 - 가. 작성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 나. 수입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다. 수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생산자와 다른 경우에만 해당한다)
 - 라. 생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작성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마.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6단위) 및 품명
 - 바. 해당 물품이 원산지물품임을 증명하는 정보
 - 사. 원산지포괄증명 유효기간(원산지포괄증명 대상 물품인 경우만 해당한다)
 - 아. 작성일자 [본조신설 2011.12.2.]

제4조의5(미합중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이하 “미합중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23.> [본조신설 2011.12.2.]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③ 생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2013.2.23>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자(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수출자 :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
 - 나. 생산자 :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다. 수입자 : 계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
5. 삭제 <2013.2.23>
6.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작성방법

- 1) **Export(수출자)** : 사업장등록증상의 상호, 주소를 기재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자의 전화, 팩스, E-mail을 기재합니다.
- 2) **Blanket Period(원산지포괄증명기간)** : 12개월의 범위 내에서 년도, 월, 일 순으로 정확히 기입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의 포괄은 동종의 물품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3) **Producer (생산자)** :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사업장등록증상의 상호, 주소, 전화, 팩스, E-mail을 기재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작성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 4) **Import(수입자)** : 수입자의 상호, 주소, 전화, 팩스, E-mail을 기재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 작성자가 생산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5) 원산지 증명 대상물품 내역 :

- Serial No(연번) : 대상물품 수 만큼 연번을 설정합니다.
- Description of Goods(품명, 규격) : 원산지증명 발급대상물품의 송품장(invoice)상 기재된 품명과 규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HS No.(품목번호 HS 6단위) : 원산지증명 발급대상물품의 HS Code를 6단위까지 기입합니다.
- Preference Criterion(원산지결정기준) : 해당 HS Code별로 적용되는 한-미 FTA 협정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표기방법

항목구분	특 예 조 건
WO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인 경우
PSR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되고 ①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7(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품목별 원산지규정)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거나, ②상품이 부속서 4-가 또는 부속서 6-가에 명시된 적용가능한 역내부가가치 포함비율이나 그 밖의 요건을 달리 충족시키며 그 밖의 모든 적용가능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
PE	원산지재료로만 전적으로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경우

- Country of Origin(원산지 국가) : 원산지판정결과 해당하는 원산지의 국가명을 기재합니다.(한국 : KR, 미국 : US)

- 6) **Observations(특이사항)** : 본 서식 작성 중 참조가 되거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7) **Authorized Signature(서명 등)** : 서명권자의 서명, 회사명, 작성자의 성명과 직위, 작성일자와 연락처 등 요구하는 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한-미 FTA 활용 팁

냉장고, 청소기 등 관세혜택이 없는 물품의 경우에도 한-미 FTA협정문 제2.10조 제4항에 따라 한-미 FTA 원산지증명을 하게 되면 물품취급수수료*가 면제되며, 한-미 FTA 협정문 제6.19조 제5호 및 미국 관세법에 따라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물품취급수수료의 환급신청이 가능하다

* 물품취급수수료(MPF : Merchandise Processing Fee) : 미국세관이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징수하는 일종의 행정 수수료(최소 25달러~최대 485달러)

구분	MPF 세부내용		
법적근거	통합예산총괄조정법 (Consolidated Omnibus Budget Reconciliation Act, 1985)		
징수방법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일괄적으로 부과(증가세)		
제외국가	NAFTA, 이스라엘, 미국 속령의 제품, 최빈국가의 제품, 카리브연안 국가		
적용요율	화물금액(US\$)	적용요율	비고
	7,217이하	US\$25	최저수수료
	7,217초과~140,012미만	0.3464%	
	140,014이상	US\$485	최고수수료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Please print or type

1. EXPORTER NAME AND ADDRESS			2. BLANKET PERIOD				
AQUA MARINE, INC. 100 MANHATTAN, NEWYORK			FROM 15/03/2013				
TEX IDENTIFICATION NUMBER 13-3900000			TO 14/03/2014				
3. PRODUCER NAME AND ADDRESS			4. IMPORTER NAME AND ADDRESS				
SAME AS #1 ABOVE			AQUA WORLD LTD. 5 YATAP RO, BUNDANG, SEONGNAM, KYUNGKI KOREA 463-836 Korea Republic of				
TEX IDENTIFICATION NUMBER			TEX IDENTIFICATION NUMBER 11-3-1010101				
5. DESCRIPTION OF GOODS;			6. HS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7. PREFERENCE CRITERION	8. PRODUCER	9. NET COST	10. COUNTRY OF ORIGIN
Precis Part	Customer Part	Description					
F7000	280698		3926.90	B	YES	NO	US
ORING			3926.90	B	YES	NO	US
F1130	280865		3926.90	B	YES	NO	US
ORING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se representations;

The goods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United States-Korea Free Trade Agreement; and

※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S.

11.	11a. AUTHORIZED SIGNATURE		11b. COMPANY:		
			AQUA MARINE, INC.		
	11c. NAME (PRINT OR TYPE):		11d. TITLE:		
	Cathy Goldwin		Senior Manager		
	11d. DATE (DD/MM/YY):	11f. TELEPHONE NUMBER	(Voice)	(Facsimile)	
	15/03/2013	508-900-4000	508-900-4000	508-900-4001	

작성사례(지울서식)

* Issuing No: KIOI-KORUS-001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CERTIFICATE OF ORIGIN

1. Name and address of importer:

name : Robert Twine LLC

address : PO Box 1000, Miami Hills, LA 1000-1000

telephone : 1 (700) 100-1000 e-mail: rober.twine@us.twine.com

2. Name and address of exporter:

name : Twine Electrical Co., Ltd

address : 155 Yatap-Ro, Bundang-Gu, Seoungnam, Kyunggi, Korea

telephone : 031-600-1000 e-mail: kim.twine@kr.twine.com

3. Name and address of producer:

name : Twine Electrical Co., Ltd

address : 155 Yatap-Ro, Bundang-Gu, Seoungnam, Kyunggi, Korea

telephone : 031-600-1000 e-mail: kim.twine@kr.twine.com

4. Description of good:

PST/M XM Recl N-IMS LH/RH/100 EA

5. HS tariff classification number:

850110

6. Preference criterion:

PSR

7. Single shipment:

8. Multiple shipment of identical goods:

FROM : TO :

* Issuing No: KIOI-KORUS-001

9. Authorized signature, company, title, telephone, fax, e-mail and certification date:

signature : company : [Twine Electrical Co., Ltd](#) title : [Section Manager](#)telephone : 031-600-1000 fax : 031-600-1100 e-mail: kim.twine@kr.twine.com

10. Certification: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i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I agree to maintain and present upon request, documentation necessary to support these representations;

The goods comply with all requirements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and

※ This Certificate consists of 2 pages, including all attachment.

signature : Title : [Section Manager](#)

Phone Number : 031-600-1000

E-mail address: kim.twine@kr.twine.com

Date : 2013-10-10

14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 한-터키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한-터키 FTA 협정 원산지증명서는 별도의 양식 없이 송품장(Invoice) 등의 상업서류에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기재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작성언어는 영어가 사용되어야 하며 작성방법은 타이핑, 스탬프, 인쇄, 수기가 가능하나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 반드시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되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시 수출자 의무사항]

- ① 서명권자 지정 및 서명카드 비치
 - 서명권자를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새로운 서명권자의 서명·부서명·직책·성명·지정일·지정사유를 정확히 기재
 - 지정된 서명권자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서명카드에 해제일자 및 사유 기재
- ② 원산지증명서작성대장 기재 및 관리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9(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①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에 별표 3의2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한 서류로 한다.

② 터키와의 협정 중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 관한 의정서」(이하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부속서 2-가에 따라 수출자가 별표 12 제4호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 같은 호에 따른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라는 영어문구를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14.]

제4조의6(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터키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 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③ 생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자율증명절차 등) ① 수출자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경우로서 그 물품의 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확인서, 원산지소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정보 등을 근거로 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3.2.23>

②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작성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5, 2013.2.23>

1. 작성번호 및 작성일자
2. 수출입신고번호 및 수출입신고 수리일자(생산자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3. 품명·품목번호(6단위)·수량·금액 및 원산지
4.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수출자 : 생산자 또는 공급자(생산자 또는 공급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및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수입국명
 - 나. 생산자 : 수출자 또는 물품을 공급받는 자
 - 다. 수입자 : 계약상대국의 수출자·수출국명

5. 삭제 <2013.2.23>
6. 해당 물품에 적용된 협정의 명칭 및 원산지결정기준
[제목개정 2013.2.23.]

「한-터키 FTA협정문 원산지규정 및 원산지절차에 관한 의정서」

제16조 원산지신고서

1. 한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될 때, 해당 제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제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지는 이후 “원산지신고서”라 지칭되는 신고서 형식의 원산지증명에 근거하여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를 받는다. 원산지 신고서의 문안은 부속서 3에 기술되어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의정서의 의미에서 원산지 제품이 제20조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이 이 협정의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제17조 원산지신고서 작성 조건

1. 제2항을 지해함이 없이 해당 제품이 어느 한쪽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신고서가 작성될 수 있다.
2.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과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를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요청하는 경우 언제라도 제출할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수출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계기록을 조사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감독을 행할 권리를 가진다.
3.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가 수출당사국의 국내법에 따라 송장, 인도증서 또는 다른 상업서류에 부속서 3에 나타난 문안을 영어로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한다. 그 신고서가 수기로 작성되는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여 대문자로 작성한다.
4. 원산지신고서에는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로 작성된다.
5. 원산지신고서는 수출자에 의해 관련된 제품이 수출될 때 또는 원산지신고서가 관련된 제품의 수입 후 2년 또는 수입당사국의 법령에 명시된 기간 내에 수입당사국에서 제시된다는 조건으로 수출 후 작성될 수 있다.

작성양식

[별표 3의2] <신설 2013.2.23>

터키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에 기재할 사항

(제9조의9 관련)

<p>상업서류에 기재할 문안</p>	<p>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p> <p>..... (Place and date)</p> <p>.....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p>
<p>작성방법</p>	<p>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원산지신고문안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타이핑·스탬핑·프린팅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2. 문안의 ...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3. 장소 및 일자란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기재한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수기로 서명을 합니다. 5.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2 제4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6. 터키와의 협정 제14조에 따라 제3국 전시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기재합니다.

작성방법

송품장(Invoice)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서 신고문안을 영문으로 작성하되 타이핑·스탬핑·프린팅 등의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만약,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대문자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1) **these products are of** : 해당물품의 원산지를 해당 국가의 국명으로 기재합니다.
- 2) **Place and date** :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기재합니다. 다만, 이들 서류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 3) **Signature of the exporter** :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특히, 수기가 아닌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라 하더라도 서명은 반드시 수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4)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별표 12 제4호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Annex II (a) of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 별표 12 제4호에는 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5) 터키와의 협정 제14조에 따라 제3국 전시 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작성사례

상업서류에
기재할 신고문안
(영어본)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Korea** preferential origin.

..... **SEOUL KOREA and 03/09/2013.**
(Place and date)

...**BO WON JUNG (서명)**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일반특혜

1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남북)

작성목적

- 남북교역 특혜세율 적용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기 위한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희망자	세관장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장 (지방 상의 포함)	남북교역물품

※ 주의사항

세관장 이외의 발급기관의 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발급용 청인의 인영과 발급기관의 장이 지정한 서명권자의 서명을 한 뒤 원산지증명서 각 2부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동일물품에 대한 반복신청 등의 사유로 서류확인을 면제한 경우에는 첨부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1. 반출신고서(수출신고필증) 원본 또는 사본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그 밖에 발급기관장이 원산지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작성양식

[별지 제1호 서식] <고시 제20조제1항 관련>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1. 반출신고번호(신고수리일) : _____
2.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 _____
3. 수하인(상호, 주소, 국가) : _____
4. 생산자(상호, 주소, 국가) : _____
5. 생산장소 : _____
6. 운송수단, 경로 및 선적일 : _____
7. 반출물품 내역

연번	HS번호	포장의 개수 및 종류	품 명	수 량	총중량

8. 원산지 기준(해당란에 ○로 표시할 것)

- 완전생산 기준 ()
 - 생산지역(선박명, 제조·가공내용) : _____
- 실질변형 기준 ()
 - 사용원재료 내역

연번	HS번호	품 명·규 격	수 량	원산지	수입신고번호

※ 국내에서 구입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 구입원재료 내역 기재

-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공구, 포장용품 ()
 - 제작자 국적(기계·기구·차량 및 내용품 등 원산지) : _____

붙임 : 원산지기준 증빙자료(생산입증자료, 수입신고필증, 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상기물품에 대하여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작성방법

- 1) **반출신고번호(신고수리일)** : 남북교역물품의 반출신고번호와 신고수리일을 기재합니다.
- 2)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 남북교역물품 발송인의 회사명, 주소, 국가를 기재합니다.
- 3) **수하인(상호, 주소, 국가)** - 남북교역물품 수령인의 회사명, 주소, 국가를 기재합니다.
- 4) **생산자(상호, 주소, 국가)** - 남북교역물품을 실제 생산한 생산자의 상호, 주소, 국가를 기재합니다.
- 5) **생산장소** : 원산지증명서 발급대상 물품의 생산장소를 기재합니다.
- 6) **운송수단, 경로 및 선적일** : 남북교역 특혜신청 물품을 운반하기 위한 운송수단과 운송경로 및 선적일자를 기재합니다.
- 7) **반출물품내역** :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대상물품(반출대상물품)의 상세한 내역을 아래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연번	HS번호	포장의 개수 및 종류	품명	수량	총중량

- 8) **원산지기준** : 제시된 원산지기준 중 해당 란에 “0” 표로 표시합니다. 다만, 실질변형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일 경우 사용원재료 내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1호 서식] <고시 제20조제1항 관련>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1. 반출신고번호(신고수리일) : XXX-XX-XXXXXXXXXX(2013.10. 20)
2. 송하인(상호,주소,국가) : 나무와 연필, 경기도 광주시 광주읍 빗고을로 55번길 대한민국
3. 수하인(상호,주소,국가) : 연필무역, 개성시 100, 북한
4. 생산자(상호,주소,국가) : 나무와 연필, 경기도 광주시 광주읍 빗고을로 55번길 대한민국
5. 생산장소 : 경기 광주시
6. 운송수단, 경로 및 선적일 : 육상운송, 2013. 10. 21
7. 반출물품 내역

연번	HS번호	포장의 개수 및 종류	품 명	수 량	총중량
1	9609.10-1000	1000 / 박스	연필	12000	200KG

8. 원산지 기준(해당란에 ○로 표시할 것)

- 완전생산 기준 ()
 - 생산지역(선박명, 제조·가공내용) : _____
- 실질변형 기준 (○)
 - 사용원재료 내역

연번	HS번호	품 명·규 격	수 량	원산지	수입신고번호
1	4403.10-1000	열대산 목재	200	MY	20131011-86489

※ 국내에서 구입하여 생산한 물품의 경우 구입원재료 내역기재

- 촬영된 영화용 필름, 부속품.예비부분품, 공구, 포장용품 ()
 - 제작자 국적(기계·기구·차량 및 내용품 등 원산지) : _____

붙임 : 원산지기준 증빙자료(생산입증자료, 수입신고필증, 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상기물품에 대하여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13 년 10월 20일

신청자 윤 연 필 (서명 또는 인)

성남 세 관 장 귀하

16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남북)

작성목적

- 남북교역특혜 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를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원산지증명서 재발급 신청자	당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 주었던 세관장	남북교역물품

근거규정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①~④ 생략

⑤ 원산지증명서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재발급 신청사유를 기재하여 기 발급받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에는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와 재발급표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재한다.

1. 발급번호는 기 발급된 발급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재발급 횟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부가하여 다음 예시와 같이 기재하며 발급일자는 기 발급한 발급일자와 동일하게 표기한다.(예시 : 원래의 발급번호가 123인 경우의 1차 재발급시의 발급번호 123-1)
2. 재발급표시와 재발급일자는 서식 제5란(공적사용란)에 다음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예시 : 2003.10.10.)

⑦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재발급의 경우에는 최초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1년으로 한다.

⑧ 생략

작성방법

- 1) **발급일자** : 재발급 받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 2) **발급번호** : 재발급 받을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를 기재한다. 다만, 발급번호는 이미 발급된 발급번호를 기준으로 하여 재발급 횟수를 의미하는 숫자를 부가하여 표시하는데 원래의 발급번호가 '123' 인 경우 1차 재발급시의 발급번호는 '123-1' 과 같이 표기합니다.
- 3) **재발급 사유** : 재발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4호 서식] <고시 제20조제4항 관련>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 발급일자 : 2013. 3. 1
- 발급번호 : XX-XX-XXXX
- 재발급 사유(구체적으로 기재)

2013. 3. 1일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당사 서류보관 창고의 침수로 인하여 훼손되었습니다. 이에 상기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발급번호 XX-XX-XXX)에 대하여 재발급을 요청 드립니다.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조제5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붙임 : 1. 기 발급 신청인보관용 원산지증명서 1부(제출이 가능한 경우)
2. 기 발급 신청시 원산지확인을 위해 제출했던 관련서류

2013 년 5 월 20 일

신청인 : 이 국 제 (서명 또는 인)

광 주 세 관 장 귀하

17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일반특혜)

작성목적

- 일반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 대리 가능) 및 생산자(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발급기관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일부지역)자유무역 지역관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특혜관세(GS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우리나라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근거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XML방식)
2. 인터넷방식

② 신청인은 수출시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내)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이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안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소명서
4.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제5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작성양식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신청번호 :		처리기간 : 구비서류란 참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①신청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발급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input type="checkbox"/> 정정발급() <input type="checkbox"/> 소급발급(선적후 발급)									
②신청인	구분	<input type="checkbox"/> 생산자 <input type="checkbox"/> 수출자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③적용협정										
④수출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⑤생산자	상호(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E-Mail								
⑥수입자	상호	대표자								
	주소(국가)	전화번호								
⑦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yy/mm/dd)	금액(FOB\$)							
수출신고 필증란 번호	HS	품명 규격	금액(\$)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부가가치 비율 및 비율계산	특혜 기준
				완전 생산	역내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⑧운송수단/선(편)명		<input type="checkbox"/> 선박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⑨적재항(출항일자)		(yy/mm/dd)				
⑩목적국/항구		/		⑪포장 기호/개수		/				
⑫총중량				⑬송품장 번호/일자		/				
⑭원산지증명서특례				<input type="checkbox"/> 제3국 송품장 <input type="checkbox"/> 전 시 <input type="checkbox"/> 연결 원산지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위 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명] (인) ○ ○ 세 관 장(○ ○상공회의소 회장) 귀 하										
※ 구비서류 ☞ 신규발급 : 1.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소명서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5. L/C 사본 등 계약서류(원산지증명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재발급 : 1. 사유서 ☞ 정정발급 : 1. 사유서 2. 정정사유 입증자료 3. 원산지증명서 원본 ※ 처리기간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위 제1호 외의 경우 :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별지 제3호의 을지 서식〉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 필증란 번호	HS	품명·규격	금액(\$)	원산지결정기준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	특혜 기준
				완전 생산	역내 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별지 제3호서식 기재요령〉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기재요령

(1) 전자문서(XML) 약어 설명

구분	약어	설 명
TYPE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	- 영문자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u> 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N.	- 숫자(계산가능)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u> 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로 작성
	AN.	- 영문 또는 숫자를 정해진 자리수 <u>이내</u> 로 작성
SIZE	999	- 입력 또는 출력 자리수
조건	M	- 필수 기재항목
	C	- 선택 기재항목
	X	- 기재 불필요 항목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 기본정보					
문서코드	an	3	m	원산지증명서: 036, 일반 : 504	36
문서명	an.	80	m	원산지증명서, FTA원산지증명서등	FTA원산지증명서
문서전송구분	an.	2	m	최초(9), 수정(35), 삭제(1), 재발행 (18)	9
제출번호	an	14	x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신청일자	an	8	m	신청일자	20130213
신청세관코드	an	3	m	무역통계부호표상 세관부호	010
신청세관명	an.	20	m	신청세관명	서울세관
변경차수	an.	2	c	변경횟수	2
C/O 발급번호	an	10	x	세관(3) + 과(2) + 일련번호(5)	1200300001
C/O 발급 비밀번호	an	9	x	C/O 발급 비밀번호	ABCDE1234
C/O 발급일자	an	8	x	C/O 발급일자	20130213
발행자	an.	6	x	발행자	Hong gil dong
C/O 발행일자	an	8	x	YYYYMMDD	20130213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① 신청구분	an	1	m	A:발급신청 B:재발급신청 C:보정발급신청 D:정정발급신청	A
신청사유명	an.	200	c	신청사유설명	원산지증명서 분실로 재발급 신청
발급구분	an	1	m	A:신청, B:선적후발급	A
재발급/정정발급 사유란	an.	500	c	재발급/정정발급 사유란	원산지증명서 분실
② 신청인					
신청인명	an.	28	m	대표자명	Hong gil dong
신청인부호	an	10	c	시스템에서 자동생성	
신청 담당자 아이디	an	24	c	시스템에서 자동생성	
신청인구분	an.	3	c	GD:생산자 EX:수출자, CB:관세사 ZZZ:기타	GD
신청업체상호	an.	30	m	신청업체상호	Monalisa company limited
사업자등록번호	an	10	c	신청사업자등록번호	1128166062
③ 원산지증명발급구분	an	1	m	A : 남북교역(일반특혜) B : GSP(일반특혜) C : GSTP(일반특혜) D : GATT(일반특혜) E : APTA(일반특혜) Z : 기타(일반특혜) G : 한국-싱가포르FTA(FTA특혜) I : 한-아세안FTA(FTA특혜) J : 한-인도(FTA특혜) K : 한-페루 FTA(FTA특혜)	I
④ 수출자					
수출자명	an.	50	m	수출자 상호(대표자)	Monalisa company limited
사업자등록번호	an	10	m	수출자사업자등록번호	1128166062
주소	an.	200	m	수출자주소	165, Ingye-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국적	an	2	m	수출자국적	KR
국가명	an.	30	m	수출자국가명	Republic of Korea
연락처구분자	an.	2	c	TE:전화번호, FX:팩스번호	TE
전화번호, 팩스번호	an.	20	c	수출자전화번호	02-123/4567
이메일	an.	50	c	수출자이메일	34567abc@naver.com
⑤ 생산자					
생산자명	an.	50	c	생산자 상호(대표자)	APTA Ltd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사업자등록번호	an	10	c	생산자 사업자등록번호	1128105013
주소	an.	200	c	생산자주소	165, Ingye-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국적	an	2	c	생산자국적	KR
국가명	an.	30	c	생산자국가명	Republic of Korea
연락처 구분자	an.	2	c	TE:전화번호, FX:팩스번호	TE
전화번호, 팩스번호	an.	20	c	생산자전화번호	02-123-4567
이메일	an.	50	c	생산자이메일	34567abc@naver.com
생산장소명(제조지)	an.	30	c	생산장소	165, Ingye-ro, Yeongtong-gu, Suwon-si, Gyeonggi-do
⑥ 수입자			c		
수입자명	an.	50	c	수입자 상호(대표자)	ABC Corporaion
사업자등록번호	an.	10	c	수입자사업자등록번호	12345
주소	an.	200	c	L/C(또는 계약서) 상의 신청인 주소 기재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국적	an	2	c	수입자국적	SG
가명	an.	30	c	수입자국가명	SINGAPORE
⑦ 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1~999(연번)
수출신고 구분	an	3	m	830::수출신고번호 955:기타번호(까르네) 5MF:기타번호(휴대반출) 833:기타번호(간이수출) ETC:기타번호(기타)	830
수출신고번호	an.	30	m	수출신고번호:세관(3)+과(2) +일련번호(10) 수출신고번호외에 "기타번호" 추가가능(2012.11.30적용)	010-10-12345678
수출신고 수리일자	an	8	c	수출신고 수리일자	20070301
금액(FOB, 미화)	n.	20	m	수출신고필증의 총신고가격 기재 (FOB 미화기준으로 환산기재)	200.5
품목총란번호	n.	3	c	품목총란번호	5
품목란번호	n.	3	m	품목의 순번, 1부터 1씩 차례로 증가	3
수출란번호	n.	3	m	수출신고필증상의 란 번호	3
품명	an.	50	m	품명	Flat-rolled product of stainless steel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HS부호	an.	10	m	수입당사국 HS 기재	821191
규격	an.	100	m	규격	A616
수량	n.	14	m	수량	11
수량단위	an.	5	m	수량단위 기 (어트리뷰트 고정값)	EA
송품장가격통화	an	3	c	통계부호표상의 통화종류를 기재	USD
송품장가격금액	n.	20	c	송품장가격금액, 미화가 아닌 경우	2222
원산지결정기준	an.	20	m	A, B, BD, BU, C, CC, CC+BD, CTC, CTH, CTH+RVC, CTSH, CTC&VAC, CTSH+RVC 35%, D, De Minimis, F, GaeSung Products, MC, NC, OP, Others, P, PSR, Rule 6, RVC, SP, Specific Process, VAC, W, WO, WO-AK, WP, Y	MC
국내부가가치비율	n.	4	m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에 한하여 적용	55
⑧ 운송수단					
운송수단부호	an	2	c	10:선박, 20:철도, 30:차량, 40:항공기, 50:우편, 60:복합, 70:고정운송설비, 80:내륙수로, 90:기타	10
선박/항공기명	an.	30	c	선박/항공기명	KE571
⑨ 선적지					
선적항구	an	5	m	선적항구	KRPUS
선적국가명	an.	30	m	선적국가명	Republic of Korea
선적도시명	an.	30	m	선적도시명	PUSAN
출발일자	an	8	c	출항일자(YYYYMMDD)	20130212
◎ 양륙지					
하역항구	an	5	m	하역항구(un-2/Lcode-3)	KRPUS
◎ 경유국					
경유국가코드	an	2	c	경유국가코드	JP
경유국가명	an.	30	c	경유국가명	JAPAN
⑩ 목적국					
목적국	an	2	c	목적국	VN
국가명	an.	30	c	목적국 국가명	VIETNAM

항목	TYPE	SIZE	조건	작성요령	작성예
도시명	an.	30	c	목적국 항구명	HAIPHONG
⑪ 총포장갯수 및 총수량 영문명	an.	120	c	수출물품의 포장기호와 포장개수를 기재	quantity 100ea
선적마크	an.	50	c	선적마크(포장위에 붙이는 부호-업체의 편의를 위해)	mr
⑫ 총중량	n.	10	m	중량	MR
중량단위	an.	5	m	중량단위(메트릭뷰트 고정값임)	KG
⑬ 송품장					
송품장번호	an.	100	m	송품장상의 송품장 일련번호	MOC120060301001
송품장발행일자	an	8	m	송품장발행일자(YYYYMMDD)	20070601
⑭ 원산지증명서 특례	an	1	m	0: 해당없음 1: 제3국송장 2: 전시 3: 연결원산지증명	1
연결원산지증명 국가명	an.	60	c	연결원산지증명 국가명	USA
㉠ 제3국 송장 발행회사(중계무역회사)				수출업체임	
송품장 발행회사명	an.	100	c	송품장 발행회사명	ABC Corporaion
운영인 법적이름	an.	50	c	제3국 송장 운영인 법적이름	ABC Corporaion
발행국가코드	an	2	c	제3국 송장 발행국가코드	SG
발행회사주소	an.	250	c	제3국 송장 발행회사주소	55 Newton Road #10 Revenue House
제3자무역	an	1	c	해당 : Y, 해당없음 : N	N
㉡ 첨부파일					
순번	n.	2	c	순번	1
첨부파일용도구분	an.	2	c	첨부파일용도구분	01: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02: 원산지소명서 03: 원산지확인서 04: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05: 기타
파일명	an.	512	c	파일명	작성자가 부여한 파일명
파일절대위치	an.	512	c	파일절대위치	자동생성

작성방법

- 1) **신청구분** : “신규발급”, “재발급”, “정정발급” 또는 “소급발급” 중 신청서 제출목적 해당란에 [V] 표시를 합니다.
- 2) **신청인** : “생산자”, “수출자”, “관세사” 또는 “기타” 중 해당란에 [V] 표시를 하고 상호(대표자) 기입란에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와 대표자를 기재합니다. 그리고 사업자번호 기재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3) **적용협정** : 해당 수입국가와 체결된 협정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ex) APTA, TNDC
- 4) **수출자** :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번호 · 주소 · 전화번호 및 E-mail을 기재합니다.
- 5) **생산자**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수출자의 정보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의 정보를 수출자 정보 작성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 6) **수입자** : 신용장(L/C : Letter of Credit) 또는 계약서상의 수입자 상호 · 대표자 성명 · 주소 ·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7) **수출물품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 수출신고필증상의 수출신고번호와 수리일자, 미화 표시 총수출신고금액(FOB USD), 수출신고필증의 수출물품 란별 6단위 HS Code, 품명 · 규격, 해당 란 미화 환산액, 해당물품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해당되는 경우 모두 표기한다)를 기재합니다. 다만,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일 경우 부가가치비율 및 비율계산식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8) **운송수단/선(편)명** :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중에 해당되는 란에 [V]표시 합니다.
- 9) **적재항(출항일자)** : 수출신고필증상의 적재항 또는 아직 적재되지 않은 경우 적재예정항과 출항일자(또는 출항예정일)을 기재합니다.
- 10) **목적국(항구)** : 수출물품의 최종 목적국과 항구를 ‘국가/항구명’ 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 11) **포장기호/개수** : 수출물품의 포장종류 부호와 포장개수를 기재합니다.

포장종류부호

표시부호	포장형태	표시부호	포장형태
BA	Barrel(통)	IZ	Ingots(주철괴)
BC	Bottlecrate(맥주박스 모양의 상자)	NT	Net(그물)
BE	Bundle(다발, 꾸러미 등 묶음포장 단위)	OU	외포장이 없는 개, 두, 필, 대, 기, 척, 착 등
BG	Bag(자루, 부대)	PG	Plate(판)
BJ	양동이	PI	Pipe(파이프)
BL	Bale(광목, 원단 등 감아놓은 상태)	PU	Traypack(뚜껑 없는 칸막이 상자)
BR	Bar(막대)	RL	Reel(줄 감는 틀)
BV	Bottle, bulbous(전구모양의 병)	RO	Roll(두루마리)
CA	Can(캔)	SK	Skeletoncase(골조상자)
CH	Chest(나무상자 껍)	GT	기타 개수를 헤아릴 수 있는 물품
CJ	Coffin(관)	VG	Bulk, gas(기체 상태의 벌크)
CL	Coil(코일, 나선형으로 톱질 감은 것)	VL	Bulk, liquid(액체 상태의 벌크)
CR	Wooden box, Wooden case 대체용기	VO	Bulk, solid(덩어리 상태의 벌크)
CS	그릇, 상자, 케이스	VQ	Bulk, gas(액화가스 상태의 벌크)
CT	Carton(판지로 만든 상자)	VR	Bulk, solid(곡물벌크)
DR	Drum(드럼통)	VY	Bulk, fine particles(분말벌크)
HH	휴대품	VT	기타 벌크물품

12) 총중량 : 수출물품의 총중량을 기재합니다.

13) 송품장 번호/일자 : 송품장(Invoice)의 번호와 발급일자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14) 원산지증명서 특례 : “제3국 송품장”, “전시”, “연결 원산지 증명서” 또는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란에 [V]표시 합니다.

작성양식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제8조제2항 관련)

신청번호 :		처리기간 : 구비서류란 참조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										
①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발급 <input type="checkbox"/> 재발급() <input type="checkbox"/> 정정발급() <input type="checkbox"/> 소급발급(선적후 발급)									
②신청인	구분	<input type="checkbox"/> 생산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출자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input type="checkbox"/> 기타()								
	상호(대표자)	Jungbowon(KuK-je Lee)	사업자번호 123-45-XXXXX							
③적용협정	APTA									
④수출자	상호(대표자)	Jungbowon(KuK-je Lee)	사업자번호 123-45-XXXXX							
	주소	Yatap Seongnam, Kyunggi, KR	전화/E-Mail 031-600-0000							
⑤생산자	상호(대표자)	Jungbowon(KuK-je Lee)	사업자번호 123-45-XXXXX							
	주소	Yatap Seongnam, Kyunggi, KR	전화/E-Mail 031-600-0000							
⑥수입자	상호	PT Awaco Indoelec	대표자 Amber Aman							
	주소(국가)	Il Raya, Eastjava(Indonesia)	전화번호 00-000-0000-0000							
⑦수출물품 내역 및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신고번호(수리일자)		123-11-XXXXXXXXX (13,03,07)	금액(FOB\$) 30.0							
수출신고 필증란 번호	HS	품명 · 규격	금액(\$)	원산지결정기준 및 총족여부					부가가치 비율 및 비율계산	특혜 기준
				완전 생산	역내완전 생산	세번 변경	부가 가치	특정 공정		
1/3	8471	Laptap/8440P	30.0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6.2%	B
/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⑧운송수단/선(편)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박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⑨적재항(출항일자)		Incheon Port(13/03/20)				
⑩목적국/항구		Indonesia / Java		⑪포장 기호/개수		CT/30				
⑫총중량		90kg		⑬송품장 번호/일자		13-1121/2013, 11, 10				
⑭원산지증명서특례				<input type="checkbox"/> 제3국 송품장 <input type="checkbox"/> 전 시 <input type="checkbox"/> 연결 원산지증명서 <input type="checkbox"/>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						
위 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하오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03월 12일 신청인 : 업체명 [대표자명] 국제무역(이국제) (인) 성남세관장 귀하										
※ 구비서류 ☞ 신규발급 : 1. 수출신고필증 사본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원산지소명서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증명서 발급기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함) 5. L/C 사본 등 계약서류(원산지증명서 추가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함) ☞ 재발급 : 1. 사유서 ☞ 정정발급 : 1. 사유서 2. 정정사유 입증자료 3. 원산지증명서 원본 ※ 처리기간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위 제1호 외의 경우 :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18 원산지소명서

작성목적

- 원산지 판단에 대한 소명자료로 사용되며 작성주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가 작성 가능' 하며 세관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 대리 가능) 및 생산자(협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발급기관 (세관, 대한상공회의소, 자유무역관리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일반특혜관세(GSP)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엔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우리나라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근거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XML방식)
2. 인터넷방식

② 신청인은 수출시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내)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이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안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소명서
4.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제5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작성양식

[별지 제4호 서식]

원산지명세서						
1.수출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전자주소)					
2.생산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전화 / 팩스			
	주소(전자주소)					
물품명세						
3.품명/규격			4.HS No.			
5.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Ex-Works() 기타		6.원산지 결정기준		
	금액					
7.주요생산공정						
원재료명세서						
8.연번	9.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12.가 격		13.공급자 (생산자)
				수량	가격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		/
		비원산지재료(수입산)				
		합 계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비율 : %)		
18.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0.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1.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2.직접운송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3.기 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4.원산지 결정		충족 ()		불충족 ()		
<p>「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p> <p>작성 자 : (서명)</p> <p>직 위 :</p> <p>상 호 및 주 소 :</p> <p>작성 일 자 :</p>						

작성요령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1	수출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적습니다.
2	생산자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로 생산한 자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 주소(전자주소 포함) 등을 적습니다.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별지에 적습니다.
3	품명/규격	•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 등을 적습니다. (예시) 휴대폰 ; Samsung MX-2700 ; anycall • 품명은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4	HS. No.	• 물품의 6단위의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5	물품가격	• 가격조건 : 본선인도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FOB, 공장도거래가격 조건인 경우에는 Ex-Works에 "O"표기합니다. FAS 등 기타 조건인 경우 기타(FAS)로 적습니다. • 금액 : 물품의 거래가격을 적습니다. 통화단위는 송품장에 적은 것과 같아야 합니다.
6	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을 적습니다. (예시)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세번변경기준"을,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부가가치기준"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 조합기준을 적용한 때에는 "조합기준"으로 적습니다.
7	주요생산 공정	• 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OO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8	연 번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를 적습니다.
9	재료명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명을 적습니다.
10	HS No.	• 원재료의 6단위 품목번호를 적습니다.
11	원산지	•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적습니다.
12	가격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과 가격을 적습니다. 다만, 그 물품이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이면 적지 않아도 됩니다.
13	공급자 (생산자)	• 원재료의 공급자(생산자)의 상호·주소·전자주소·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적습니다.
14	합계	• 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의 가액과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
15~23	원산지 결정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표기합니다. (예시)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할 경우 "예"로 표기합니다. • 19~21란에 "예"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24	원산지결정	• 이 원산지소명서에 적은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충족"에, 불충분한 경우에는 "불충족"에 "O"를 표기합니다.

작성방법

- 1) **수출자**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팩스번호, 전화 및 팩스번호, 회사주소(전자주소 포함)를 기재합니다.
- 2) **생산자** :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 물품을 생산한 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주소(전자주소 포함) 그리고 전화 및 팩스번호를 기재하되 생산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품명/규격** : 송품장(invoice)상에 기재되어 있는 물품의 품명, 모델명, 규격 및 상표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4) **HS. No** : 소명서 작성대상 물품의 6단위 HS Code를 기재합니다.
- 5) **물품가격** : 해당 물품의 거래가격 조건에 따라 해당되는 곳에 “0” 표로 표시하여야 하며, 물품의 거래가격 및 통화단위는 송품장(invoice)상의 통화와 일치시켜 기재합니다.
- 6) **원산지결정기준** : 소명 대상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한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 기준, 조합기준 등)을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유형

- 1) **완전생산기준** : 다른 국가의 재료(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제품의 모든 생산과정이 한 국가 내에서 수행되어야만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2) **세번변경기준** : 역내 생산과정에서 투입된 비원산지재료의 세번과 다른 세번의 상품이 생산되면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3) **부가가치기준** : 역내에서 일정 수준의 부가가치가 창출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4) **가공공정기준** : 물품의 제조공정 중 각 물품에 대해 가장 중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당해 물품의 주요 특성을 발생시키는 기술적 제조·가공작업을 열거하여 지정된 공정이 역내에서 수행된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5) **선택기준** : 둘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충족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6) **결합기준** : 둘 이상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제시하고 이들 모두를 충족할 경우 원산지물품으로 인정

- 7) **주요/생산공정** : 소명 대상물품의 주요 제조과정 및 공정방법을 기술합니다.

- ex) 면사를 수입하여 직물을 가공한 후 의류를 제조하는 경우
- ① 직조 : 면사 85%, 합성사 15%로 면직물 제조(3m×100m)
 - ② 날염 : 면직물에 국내 ○○업체가 생산한 염료로 염색
 - ③ 재단 및 봉제 : 남성용 셔츠 제작(50Pcs)

- 8) **연번** : 소명 대상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일련번호(작성자의 회사 기준)를 기재합니다.
- 9) **재료명** : 소명 대상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재료명(작성자의 회사 기준)을 기재합니다.
- 10) **HS. No** : 원재료의 6단위 HS Code를 기재합니다.
- 11) **원산지** : 원재료의 생산국명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12) **가격** :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량 및 가격을 기재합니다. 다만,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일 경우 가격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13) **공급자(생산자)** : 원재료를 공급한 자(생산자)의 상호, 주소, 전자주소,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를 기재합니다.
- 14) **합계** : 투입된 원재료 중 원산지재료(국산)와 비원산지재료(수입산)의 가격을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 15~23) **원산지 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적용된 기준의 충족여부를 해당되는 항목에 “예☑”로 표시 합니다. 다만, 19(최소기준), 20(누적기준), 21(역외가공기준) 표시 란에 “예☑”로 표기한 경우 세부 내역을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합니다.

특례 규정별 개념

구 분	개 념
최 소 기 준	제품 생산과정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가 당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혹은 중량)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범위내라면 세번변경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를 인정
누 적 기 준	물품의 원산지결정시 체약상대국에서 발생한 생산과정 투입요소(재료·공정)를 자국의 것으로 간주하는 것
역외가공기준	당사국 원재료를 반출하여 제3국에서 가공한 후 반제품을 생산·재수입하여 당사국에서 최종제품을 만든 후 상대국에 특혜수출할 때 최초 반출한 당사국 원산지재료 가치를 최종품 원산지결정시 고려하는 것

- 24) **원산지결정** : 본 원산지소명서에 기재한 내용으로 원산지결정이 가능한 경우 “충족” 에, 불충분한 경우 “불충족” 에 “○” 를 표기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4호 서식]

원산지명서						
1.수출자	상 호	야탑무역		사업자등록번호	200-11-XXXX	
	대표자(성명)	이대표		전화 / 팩스	031-600-1111/ 031-600-1112	
	주소(전자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11번길				
2.생산자	상 호	야탑도기		사업자등록번호	123-45-XXXX	
	대표자(성명)	이국제		전화 / 팩스	031-600-0000/ 031-600-0001	
	주소(전자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물 품 명 세						
3.품명/규격		항아리		4.HS No.	691200	
5.물품가격	가격조건	FOB(<input checked="" type="checkbox"/>), Ex-Works() 기타			6.원산지 결정기준	BU 40
	금액	500,0				
7.주요생산공정	별첨					
원재료명세서						
8.연번	9.재료명	10.HS No.	11.원산지	12.가 격		13.공급자 (생산자)
				수량	가격	
1	진흙	250840	역내산	2 Kg	200,0	한국도자
2	부엌토	253090	역내산	1 Kg	120,0	한국도자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		320,0		
		비원산지재료(수입산)		0		
		합 계		320,0		
원산지인정요건 검토						
15.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6.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7.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비율 : 64 %)		
18.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9.최소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1.역외가공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직접운송 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3.기 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원산지 결정		총족 (<input checked="" type="checkbox"/>) 불충족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성 자 : 이국제 (서명)						
직 위 : 대표이사						
상 호 및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작성 일자 : 2013. 10. 22						

19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

작성목적

- 상품의 특혜관세 적용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	관할지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

근거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7조(특혜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 사전확인) ① 영 제236조의2에 따른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원산지 사전확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현품(사진) 등 참고자료를 붙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본부세관장 또는 직할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세번변경관련 입증서류(부품구입증명자료, 공정명세서 등)
2.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원재료사용 및 가격 관련 입증서류(노무비, 경비 및 이윤 등의 개략적인 신고서를 포함한다)
3.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는 물품은 외국의 수출자 또는 제조자가 작성·날인한 원산지별 공정명세 관련서류
4.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고서류(상품의 카다로그 등)

②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세관장은 영 제236조의2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전확인서에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료의 보완요구, 중간회신 등에 대하여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준용한다.

③ 원산지 사전확인을 받은 이후 사전확인 신청 당시의 물품과 수입물품의 원재료 또는 구성비 등의 변경으로 원산지 사전확인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일 뒤에 수입신고 되는 물품에 대하여 이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이 자료제출누락 또는 허위자료제출 등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변경일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하여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참고규정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확인) ① 법 제2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미리 확인 또는 심사(이하 “사전확인”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229조의 규정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2. 조약 또는 협정 등의 체결로 인하여 관련법령에서 특정물품에 대한 원산지 확인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 당해 법령에 따른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
 3. 제1호 및 제2호의 원산지 확인기준의 충족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관세청장이 원산지에 따른 관세의 적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 ② 사전확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확인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사전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수입신고된 물품 및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사전확인서상의 내용과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확인서의 내용에 따라 관세의 경감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사전확인의 결과를 통지받은 자(제236조의3제1항에 따른 사전확인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통지내용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경우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3.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 ⑤ 관세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2.2.2>
- ⑥ 관세청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써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2.2>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작성양식

[별지 제10호 서식] (제47조 제1항 관련)

원산지 사전확인신청서

신청인	1. 상 호			2. 대 표 자		
	3. 주 소					
	4. 담 당 자			5.전화번호		
7.제조사 /수출자						8.적출국
9. 수입예정물품		<input type="checkbox"/> HS <input type="checkbox"/> 품명 <input type="checkbox"/> 규격				
10.수입예정시기			11.수입통관예정세관			
12. 원산지사전확인 신청사유			13. 신청 원산지			
<input type="checkbox"/> ① WTO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TNDC)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③ UNCTAD 개발도상국간 양허관세(GSTP)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 특혜관세 적용()			<input type="checkbox"/> ② 아태무역협정(APTA) 양허관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④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양허관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⑥ 원산지표시 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14. 원산지 확인기준						
<input type="checkbox"/> ① 완전생산기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세번변경기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③ 부가가치기준(외국원재료공제법, 역내누적법) <input type="checkbox"/> ④ 가공공정기준 <input type="checkbox"/> (공정:) <input type="checkbox"/> ⑤ 단순가공 제외 기준 <input type="checkbox"/>			<원산지확인 총칙을 위한 기초사항> <input type="checkbox"/> ① 원산지 구성 원재료의 인정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② 원재료 가격산출의 적정여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③ 기타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기초사항 <input type="checkbox"/>			
15.신청내용 설명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사용 가능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2제1항과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원산지사전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첨부서류 1. 견본(규격별) 각 점 2. 공장내역 설명서 3. BOM(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						

공정내역 설명서

- 회사업종 및 제조물품명

- 수입(할)물품의 내역 · 용도 및 전체적인 제조공정

- 제조를 위해 수출하는 물품 및 해외 제조공정 내역

- 제품 수입 후 국내 추가가공(공정) 내역

- 물품을 (임가공)수입하는 이유(가공비, 기술 등 구체적 내역 설명)

업 체 명 :

담 당 자 :

연락전화 :

E-mail :

(서명 또는 인)

※ 자유양식이나 위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A4용지 2-3p내외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Bill of Materials)

완제품 품명/규격 : [작성자] 업체명/담당부서 : 담당자 : (서명 또는 인)

순번	부품명/규격	수량	단가(원)	가격소계	원산지	제조사	구매처	연락전화
소요부품합계					—	(부품원가)		

※ 완제품 1개당 소요되는 부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품원가	직접경비	간접경비	제조원가	이윤	판매가
가격(원)						
주요내역						

※ 직접경비(노임 등) 및 간접경비(판매관리비 등)의 구체적 내역은 별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내역 설명서

- 회사업종 및 제조회품명
필기용품제조/연필
- 수입(할)물품의 내역·용도 및 전체적인 제조과정
나무 및 흑연을 사용하여 제조한 필기용 연필로 흑연심을 나무 안에 삽입한 후 외면을 도포하여 제조
- 제조를 위해 수출하는 물품 및 해외 제조과정 내역
해당없음. (해외 임가공 등을 위한 해외 수출 제품이 있을 경우 해외에서 진행되는 제조공정을 기재한다.)
- 제품 수입 후 국내 추가가공(공정) 내역
원재료 등을 수입하여 동 물품을 원료로 국내 제조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공정을 상세히 기재한다.
- 물품을 (임가공)수입하는 이유(가공비, 기술 등 구체적 내역 설명)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조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수입 사유와 가공비용 및 수입비용 그리고 동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업 체 명 : 원산지무역

담 당 자 : 정연필 (서명 또는 인)

연락전화 : 031-600-0000

E-mail : origin@origin.co.kr

소요부품 및 제조원가 계산서(Bill of Materials)

완제품 품명/규격 : 연필 [작성자] 업체명 : 원산지무역 / 담당부서 : 생산 담당자 : 이국제 (서명 또는 인)

순번	부품명/규격	수량	단가(원)	가격소계	원산지	제조사	구매처	연락전화
1	나무	1	10	10	말레이시아	니퐁	니퐁	00-000-0000
2	흑연	1	10	10	말레이시아	XX	XX	XX-2-222-2222
소요부품 합계		10		136,000	—	(부품원가)		

※ 완제품 1개당 소요되는 부품을 기준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부품원가	직접경비	간접경비	제조원가	이윤	판매가
가격 (원)	20	15	5	40	5	45
주요내역						

※ 직접경비(노임 등) 및 간접경비(판매관리비 등)의 구체적 내역은 별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업체서명등록서

작성목적

-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하기 위해 작성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 또는 수출자가 지정한 서명권자	전자통관시스템	일반특혜협정 전체

근거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수출자(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가 대리 가능)를 말한다. 다만,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가능하다.

② 신청인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2호서식] 업체 서명등록서(제7조제2항 관련)

업체 서명등록서(영문명)

1. Registration Number : 0000000000-000

※ 번호체계 : 사업자번호(10자리) + 일련번호(3자리, 자동부여)

2. Exporter(include producer) Name, Address(post-no), Telephone, Fax

수출자(생산자) 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Name, Address(post-no).

Tel, Fax.

3. Title(직책)

4. Name(성명)

5.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이미지는 가로 120 × 세로 40 크기로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jpg 파일)

--	--

6. Signatures of Authorized Signatories

No	Title	Name	Specimen Signature

7. Date of Enforcement :

작성방법

- 1) **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 사업자등록번호 10자리에 자동부여되는 일련번호 3자리를 기재합니다.
 - 2) **수출자(생산자) 명, 주소(우편번호), 전화 및 팩스번호(Exporter(include producer) Name, Address(post-no), Telephone, Fax)** : 수출자 또는 생산자명과 우편번호를 포함한 주소 및 전화와 팩스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3) **직책(Title)** :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의 직책을 기재합니다.
 - 4) **성명(Name)** :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5) **서명(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등록하기 위한 공식서명을 합니다. 다만, 이미지 크기는 가로 120×세로 40에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추어 서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서명(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ies)** : 추가적으로 등록하기 위한 서명권자의 직책과 성명 및 서명을 합니다.
 - 7) **효력발생일(Date of Enforcement)** : 등록된 서명이 효력을 발생시키는 일자를 지정합니다.
-

작성사례

[별지 제2호서식] 업체 서명등록서(제7조제2항 관련)

업체 서명등록서(영문명)

1. Registration Number : 010-15-13063-080

※ 번호체계 : 사업자번호(10자리) + 일련번호(3자리, 자동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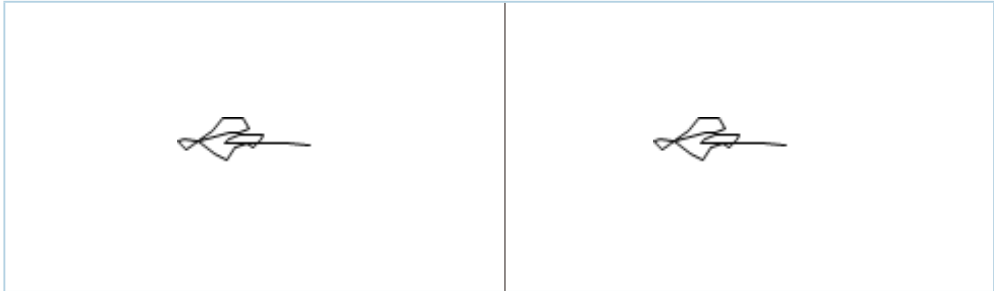
2. Exporter(include producer) Name, Address(post-no), Telephone, Fax

수출자(생산자) 명, 주소(우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Name. *Jungbowon* Address(post-no). *5th street Yatap, Seongnam, Kyunggi, KR(600-000)*Tel. *031-600-0000* Fax. *031-600-0001*3. Title(직책) *Manager*4. Name(성명) *KiR-Je, KIM*

5.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 이미지는 가로 120 × 세로 40 크기로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jpg 파일)



6. Signatures of Authorized Signatories

No	Title	Name	Specimen Signature

7. Date of Enforcement : *2013/10/11*

2. 세관 등 발급기관 작성서식

☀ 📄

FTA

21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 싱가포르 수입자가 한-싱가포르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신청주체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상공회의소	채약상대국의 수입자 (C/O발급기관 → 수출자 → 수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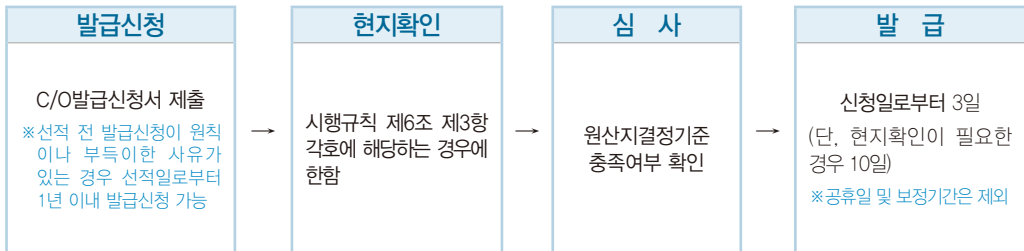
※ 주의사항

한-싱가포르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이 원칙으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규정서식이 채약당사국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수출자는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유의가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발급절차



※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1 **발급신청**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FTA or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신청
- 2 **재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재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재발급 완료
- 3 **정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정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정정발급 완료
- 4 **보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보정 요구인 C/O조회 → 하단의 '보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심사 승인

세관직원의 심사사항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FTA C/O)
3. 계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계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8.24.>

1. 싱가포르 관세당국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6호서식
2. 우리나라 증명서발급기관이 발급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지 제6호의2서식

제3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싱가포르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23>

- ② 제1항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5>

1. 싱가포르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싱가포르 관세당국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대한상공회의소(이하 “증명서발급기관”이라 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③ 생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다. 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3.2.23>

1~2. 삭제 <2013.2.23>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5.21, 2010.3.2, 2013.2.23>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및 재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와 그 자로 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싱가포르 FTA협정문」

제5.1조 정의

원산지증명서라 함은 수출상품이 제4장(원산지규정)에 따라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빙서류와 신빙성있는 정보에 기초하여 증명하는 것으로서 수입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각각의 양식을 말한다.

발급기관이라 함은 부속서 5A에 규정된 기관을 말한다.

제5.2조 원산지증명서

1. 양 당사국은 부속서 5B 및 5C에 규정된 2개의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채택한다. 동 서식은 양 당사국 간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각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에서 발급된다.
3.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12월간 유효하다.
4. 각 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권한있는 서명자의 성명 및 주소를 자국의 관세행정기관을 통하여 타방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그러한 서명자가 사용하는 서명 및

관인의 견본을 제공한다. 성명·주소·서명 또는 관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타방 당사국에 통보한다.

5. 각 당사국은,

가. 자국 영역 안의 수출자에게 수입자가 타방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을 수입함에 있어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당해 상품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나. 자국 영역 안의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수출자가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증명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1)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2) 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서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6.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발급되어야 한다.

7. 각 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이 지정한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상품이 자국 영역으로 단 한번 수입되는 데에 적용됨을 규정한다.

8. 비자발적 실수,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원인으로 인하여 원산지증명서가 수출 시에 또는 그 직후에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행될 수 있다.

「한-싱가포르 FTA 부속서 5A」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1. 다음의 기관 및 그 승계기관은 제5장(통관절차)의 목적상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승인된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관세청, 대한상공회의소, 그리고 자국의 법률 및/또는 규정,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승인한 기관. 그리고

나. 싱가포르의 경우, 싱가포르 세관, 그리고 자국의 법률 및/또는 조건에 따라 싱가포르 정부가 승인한 기관

2. 승인기관이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함으로써 이 장 및 제4장(원산지규칙)의 요건을 반복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수출당사국은 그러한 승인기관이 이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도록 승인을 철회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수출당사국은 승인철회를 결정함에 있어서 수입국의 관세행정기관의 견해를 고려한다.

3. 수출당사국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승인된 기관의 승인철회, 대체 또는 승인추가를 수입당사국에게 즉시 통지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08. 7. 15>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Reference No.: KOREA -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2. Importer					
3. Departure Date:			4. Vessel's Name/Flight No.: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7. Country of Origin:		
8. Item Number	9. Description of Goods	10. HS No.	11. Marks & Numbers	12. Quantity & Unit	13. Origin Criterion
14.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_____ (Importing Country)			15.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lace and Date:		
Place and Date :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작성요령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Exporter(수출자) :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2. Importer(수입자) : 수입자의 성명, 주소 및 수입국을 기재한다.
3. Departure Date(출항일) :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의 출항일을 기재한다.
4. Vessel's Name/Flight No.(선명/편명) : 선박명이나 항공기의 편명을 기재한다.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적재항 및 운송경로) : 물품을 선적이나 기적하는 최종 항만이나 공항을 기재한다. 물품이 운송도중 제3국에서 환적되는 경우에는 본 란 또는 별지에 환적국가와 환적장소 등 모든 운송경로를 기재한다.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최종 목적국) : 물품의 최종 목적국이 싱가포르인 때에는 "REPUBLIC OF SINGAPORE"로 기재한다.
7. Country of Origin(원산지) : 물품의 원산지는 "REPUBLIC OF KOREA"로 기재한다.
8. Item Number(물품번호) :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9. Description of Goods(품명) : 송품장에 기재된 품명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10. HS No.(품목번호) :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기재한다.
11. Marks & Numbers(표시 및 일련번호) : 물품의 표시 및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2. Quantity & Unit(수량 및 단위) : 물품의 수량 및 측정단위(pieces, Kg 등)를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13. Origin Criterion(원산지결정 기준) : 물품의 원산지결정을 위하여 적용된 원산지결정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영문으로 표시합니다.
 - 가.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Wholly Obtained Rule)
 - 나. 세번변경기준 적용품목 : "CTC"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 다. 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VAC" (Value Added Criterion)
 - 라.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 "CTC & VAC"
 - 마. 역외가공 적용품목 : "OP" (Outward Process)
 - 바. 개성공단 적용품목 : "Gaesung Products"
 - 사. 최소기준 적용품목 : "De Minimis"
 - 아. 그 밖의 기준 적용품목 : "Others"

※ 제8란부터 제13란까지의 기재내용이 많을 때에는 별지에 기재한다.
14. Declaration by exporter(수출자 신고) : 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신청일자, 장소, 수출국명 및 수입국명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15. Certification(증명) 및 Reference No(증명서 발급번호)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와 발급장소를 적고, 발급담당자가 서명을 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우측 상단의 Reference No에는 증명서 발급번호를 기재한다.

작성사례

[별지 제6호의2서식] <신설 2008. 7. 15>

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대한민국의 원산지증명서

1. Exporter HONG GIL DONG CO., LTD 45, Namdaemun-Ro 4Ga, Jung-gu, Seoul, Korea Tax ID No. 123-11-11111			Reference No.: KOREA - 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2. Importer TODD COMPANY 45 HAVELOCK ROAD SINGAPORE					
3. Departure Date: March 20, 2013			4. Vessel's Name/Flight No.: Fareast Star 0120W		
5. Port of Discharge and Route: SINGAPORE PORT					
6. Country of Final Destination: REPUBLIC OF SINGAPORE			7. Country of Origin: REPUBLIC OF KOREA		
8. Item Number	9. Description of Goods	10. HS No.	11. Marks & Numbers	12. Quantity & Unit	13. Origin Criterion
1	BEER	220300	CTS NO.1	100 CAN	CTC
14.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SINGAPORE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 SEOUL KOREA FEB 28, 2013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15.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goods originated in the territory of Korea, an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KOREA-SINGAPORE FREE TRADE AGREEMENT Place and Date: Oct/01/2013 SEOUL Customs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22 아세안회원국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 아세안 국가에 소재하고 있는 수입자가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신청주체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생산자, 수출자,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관세사	세관, 상공회의소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C/O발급기관 → 수출자 → 수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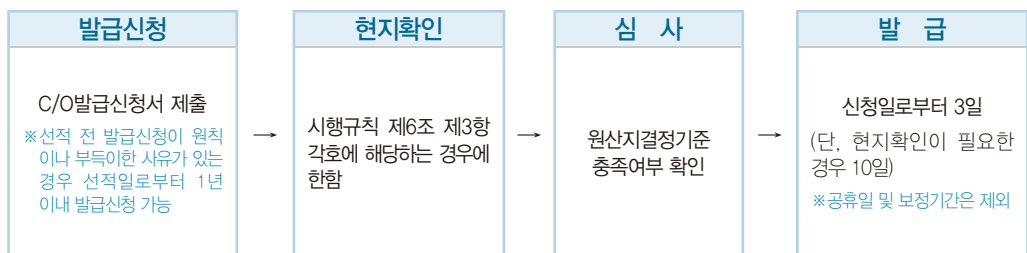
※ 주의사항

한-아세안 FTA 협정에서는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이 원칙으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간에 통일서식(AK서식)이 사용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역외가공된 물품이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특혜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경우 선적 전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는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불인정하므로 선적 후에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는 발급시 칼라프린트로 인쇄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뒷면에 작성방법(Overleaf Note)이 같이 인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Overleaf Note가 없을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인정받지 못할 우려가 있음)

발급절차



※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1 **발급신청**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FTA or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신청
- 2 **재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재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재발급 완료
- 3 **정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정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정정발급 완료
- 4 **보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보정 요구인 C/O조회 → 하단의 '보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심사 승인

세관직원의 심사사항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FTA C/O)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 발급신청시 준비서류

-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
- 1 송품장 or 거래계약서
- 3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
- 4 원산지소명서
-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 확인서류
 - ① 세번변경기준 적용 물품의 경우 세번변경 관련 입증서류
ex. 원료구입명세서, 자재명세서(BOM), 생산공정명세서, 사용자메뉴얼, 제품브로셔 등
 - ② 부가가치기준 적용 물품은 비원산지·원산지 재료 및 수출물품의 가격 관련 입증서류
ex. 자재명세서(BOM), 원료구입명세서, 원료수불부, 원가산출내역서 등
 - ③ 기타 해당물품의 생산자·생산장소·생산공정 등 원산지 확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서류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3(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5서식과 같다. <개정 2008.7.15.> [본조신설 2007.5.21.]

제3조의2(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23.>

② 제1항 및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연방,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왕국 및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말하며, 이하 “아세안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3.2.23.>

1. 브루나이 다루살람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브루나이 외교통상부
2. 캄보디아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캄보디아 상무부
3. 인도네시아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네시아 통상부
4.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라오스 상공회의소
5. 말레이시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6. 미얀마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미얀마 상무부
7. 필리핀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필리핀 세관
8. 싱가포르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싱가포르 세관
9. 태국왕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태국 상무부
10.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베트남 통상부
11.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을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7.5.21.]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③ 생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0.3.2, 2010.12.31, 2011.6.30, 2013.2.23>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 라 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3.2.23>

1~2. 삭제 <2013.2.23>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5.21, 2010.3.2, 2013.2.23>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및 재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

제15조 원산지증명서

상품이 특혜관세 대우를 받을 수 있다는 신청은, 부록 1에 규정된 원산지증명 운용절차에 따라, 수출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한다.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 부록 1」

제5조

1. 원산지증명서는 A4 용지의 별첨 AK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2. 원산지증명서는 1부의 원본과 2부의 부분으로 구성된다. 원산지증명서의 원본과 부분의 색상은 당사국 상호 합의에 의하여야 한다.
3. 원산지증명서는 각 발급장소 또는 발급사무소가 개별적으로 부여한 참조번호를 포함하여야 한다.
4. 생산자 그리고/또는 수출자는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 제출용으로 수입자에게 원본을 전송하여야 한다. 수출당사국의 발급기관은 제2 부분을 보관하여야 한다. 생산자 그리고 또는 수출자는 제3 부분을 보관하여야 한다.

5. 발급기관은 발급번호 및 발급일자, 생산자/수출자 및 품명을 포함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록을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정기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원산지증명서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의하여 반려되는 경우, 당해 원산지증명서의 4번란 표기하고, 원산지증명서 원본은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발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 특혜관세대우 배제의 근거는 적법하게 발급기관에 통보되어야 한다
7. 제6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원산지증명서가 수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 원산지증명서를 수리하고 특혜관세대우를 회복하기 위하여 발급기관이 작성한 해명서를 수리하여야 한다. 수입 당사국이 제기한 특혜관세대우 배제의 사유에 대한 해명서의 내용은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것이어야 한다.

제6조

원산지증명서상의 삭제 또는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변경시 잘못된 부분을 줄을 그어 지우고, 추가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한 변경은 발급기관이 지정한 원산지증명서 서명권자인 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추가기재를 방지할 목적으로 줄을 긋고 지운다.

작성양식

[별지 제6호의5서식] <신설 2008.7.15>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_____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_____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_____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_____ (Importing Country)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_____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작성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다음 국가에 적용됩니다.
브루나이दारु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2.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9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제1란에는 수출자의 상호, 주소, 수출국을 기재한다.
4. 제2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기재한다.
5. 제3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재한다.
6. 제4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V"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5란에는 품목번호가 다른 물품들은 같은 종류별로 구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8. 제6란에는 물품에 대한 표시 및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9. 제7란에는 포장개수 · 포장형태 · 품명 · 수량 · 품목번호 등을 기재한다.
 - 가. 품명은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적고, 제조자의 성명 및 상표도 기재한다.
 - 나. 품목번호(HS No.)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기재한다.
10. 제8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기재한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을 생산할 때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협약」(HS)상 4단위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인 물품	CTH 또는 RVC 40%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3) 일정 역내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예: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5% 이상인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예: 재단 및 봉제공정)	CTC WO-AK RVC % (예: RVC 45%) CTH + RVC % Specific Process
라.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부속서 3 제6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Rule 6

11.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분선인도가격을 기재한다.
12. 제10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기재한다.
13. 제11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2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3란은 다음 구분에 따라 "V" 표시를 합니다.
 - 가.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V"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제7란에는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및 국가명을 기재한다.
 - 나.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의 전시를 위해 수출당사국에서 제3국으로 송부된 물품으로서 제3국에서 전시 도중 또는 전시 후에 수입당사국으로의 수입을 위해 판매된 경우 "전시(Exhibition)"란에 "V" 표시를 합니다.
 - 다. 연결원산지증명서인 경우 "연결원산지증명서(Back-to-Back CO)"란에 "V" 표시를 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6호의5서식] <신설 2008.7.15>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Original(Duplicate/Triplicate)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Korea Origin Information Organization 205-8 YATAP-RO, SEONGNAM, KOREA			Reference No. 2100-10-00100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Issued in REPUBLIC OF KOREA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KOID VIETNAM BRANCH NO 20, LANE 1, TAN DA, HA DONG, HANOI, VIETNAM TEL : +84-0-00000000 FAX : +84-0-00000000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 20131010 Vessel's name/Aircraft etc. : ORIGIN 100 Port of Discharge VIETNAM, HAIPHONG			4.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s)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	PG	METAL HOSE FOR OIL (3917,31,00)	RVC 40	100(KG) 1,000(FOB)	KOI100YRS 20131008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exported to VIETNAM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10/10/2013 SEOUL CUSTOMS REPUBLIC OF KORE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input type="checkbox"/> Exhibition <input type="checkbox"/> Back-to-Back CO					

23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 인도에 소재하고 있는 수입자가 한-인도 CEP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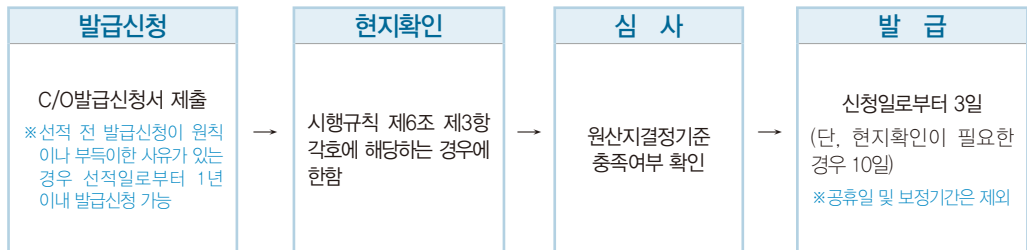
신청주체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생산자, 수출자,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관세사	세관, 상공회의소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C/O발급기관→ 수출자 →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한-인도 CEPA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는 기관발급이 원칙으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 간에 통일서식이 사용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역외가공된 물품이 특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특혜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급절차



※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1 **발급신청**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FTA or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신청
- 2 **재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재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재발급 완료
- 3 **정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정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정정발급 완료
- 4 **보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보정 요구인 C/O조회 → 하단의 '보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심사 승인

세관직원의 심사사항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FTA C/O)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4(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은 별지 제6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조의3(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인도공화국 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하 “인도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23>

② 제1항 및 인도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도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인도수출검사위원회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③ 생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0.3.2, 2010.12.31, 2011.6.30, 2013.2.23>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삭제 <2013.2.23>
2. 삭제 <2013.2.23>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5.21, 2010.3.2, 2013.2.23>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속임수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및 재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인도 CEPA 협정문」

제4.2조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

1. 원산지증명서는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수출당사국의 정부지정기관(이하 “발급기관” 이라 한다)에 의하여 발급된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각 발급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의 이름 및 주소를 다른 쪽 당사국에게 통지하고,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의 원본세트도 제공한다. 이름·주소·견본 서명 또는 관인에 대한 변경사항은 다른 쪽 당사국에게 신속하게 통지된다.
3.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증할 목적으로 발급기관은 자국의 법과 관행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검증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제4.3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

1.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각 경우에 맞게, 그 상품의 수출 전 원산지 검증을 관련 발급기관에 신청한다. 발급기관은 수출 전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검증 결과는 정기적으로 또는 적절할 때마다 검토하는 것을 조건으로, 그 이후 수출되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인정된다. 수출 전 검증은 본질적으로 원산지가 쉽게 검증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할 수 있다.
2. 특혜관세대우 대상인 상품에 대한 수출 절차를 수행할 때 다음 중 하나이어야 한다.
 - 가. 수출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수출될 상품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적절한 증빙 서류와 함께 원산지증명서를 받기 위한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 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은 제1항에 따른 수출 전 검증의 결과를 포함하여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원산지 신고에 기초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모든 물품은 각 해당 물품별로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가. 협정관세 적용 대상 물품의 품명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나. 인도와의 협정 제3.15조에 따른 직접운송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다. 인도와의 협정 제3장의 원산지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2.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3.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수출국을 기재한다.
4. 제3란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수입국을 기재한다.
5. 제4란에는 물품을 운송하는 선박(항공기)의 출항일, 선박명(편명), 양륙항 등 운송수단 및 운송 경로를 알고 있는 범위에서 기재한다.
6. 제5란에는 수입당사국의 세관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여부를 “V” 표시한 후 서명합니다.
7. 제6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소급발급한 경우에는 “소급발급”, 재발급한 경우에는 “진정등본” 표시를 합니다.
8. 제7란에는 품목번호는 수입당사국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번호를 기재한다.
9. 제8란의 품명은 그 해당 물품을 검사하는 세관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재한다.
10. 제9란에는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본선인도가격을 기재한다.
11. 제10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 정한 방법으로 기재한다.

가. 수출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인도와의 협정 제3.4제1항제나호를 충족하는 물품	CTSH + RVC 35%
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1)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3) 세번변경기준 또는 역내가치포함비율을 충족하는 물품 (4) 세번변경기준과 역내부가가치비율을 동시에 충족하는 물품 (5) 특정 공정을 수행한 물품 (6) 기타	CC, CTH, CTSH RVC % CC, CTH, CTSH 또는 RVC % CC, CTH, CTSH + RVC % SP Others
라. 인도와의 협정 3.14조를 충족하는 물품(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	OP


12. 제11란에는 송장의 일련번호 및 발급일자를 기재한다.
13.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수출국, 수입국, 신청일자, 장소를 적은 후 서명합니다.
14. 제13란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자 및 발급장소를 적고, 서명한 후 발급기관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15. 제14란에는 수출당사국이 아닌 제3국에서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제3국 송품장(Third country invoicing)”란에 “V” 표시를 합니다. 이 경우 송장을 발행한 회사의 상호, 주소 및 국가명을 기재한다.

작성사례

[별지 6호의6서식] <신설 2009.12.31>

인도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Original (Duplicate/Triplicate/Quadruplicate)

1. Exporter (name, address, country, e-mail address, telephone number, fax number) Korea Origin Information Organization 205-8 YATAP-RO, SEONGNAM, KOREA		Reference No.: 100-11-000000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PREFERENTIAL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REPUBLIC OF KOREA		
2. Produc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Korea Origin Information Organization 205-8 YATAP-RO, SEONGNAM, KOREA		5. For Official Use		
3. Importer (name, address, country) (optional) India Origin Information Organization IRRUNGATTUKOTTAI, TAMIL NADU		6. Remark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optional) Departure date: 20131010 Vessel's name/Aircraft etc.: ORIGIN 100 Port of Discharge CHENNAI				
7. HS Code (6 digit)	8.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9. Gross weight and value(FOB)	10. Origin criterion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s
7307.99	PIPE ASSY 30000-00010	1,000KG 20000(FOB)	CC+RVC25	K01100YRS 20131008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INDIA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for the goods exported to INDIA, CHENNAI		13.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10/10/2013 SEOUL CUSTOMS REPUBLIC OF KOREA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sed signatory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issuing authority		
14. <input type="checkbox"/> Third country invoicing (name, address, country)				

24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 페루에 소재하고 있는 수입자가 한-페루 CEPA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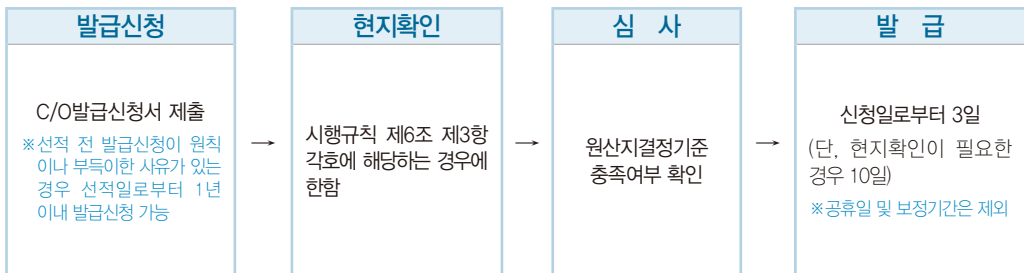
신청주체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 수출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	세관, 상공회의소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C/O발급기관 → 수출자 → 수입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 주의사항

한-페루 FTA협정에서 원산지증명서는 발효 후 5년간 기관발급이 원칙으로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양 당사자 간에 통일서식이 사용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의 수출에 대해서는 원산지증명서의 자율발급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된 물품의 경우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어야만 한다는 점도 유의가 필요하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은 선적이 완료되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수출물품의 선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발급절차



※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1 **발급신청**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FTA or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신청
- 2 **재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재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재발급 완료
- 3 **정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정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정정발급 완료
- 4 **보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보정 요구인 C/O조회 → 하단의 '보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심사 승인

세관직원의 심사사항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FTA C/O)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FTA or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신청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7(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서식 및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 별지 제6호의8서식
2. 제4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하는 원산지증명서 : 별표 3에 규정된 사항이 기재되고, 품명·규격 등 해당 물품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상세 정보가 포함된 상업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서류 [본조신설 2011.7.29.]

제4조의4(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페루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2.23>

1.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발급된 것
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
 - 가. 페루와의 협정 부속서 4가 규칙 5 및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 나. 탁송화물의 총가격이 2천미합중국달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② 제1항제1호 및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페루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 페루 통상본부
2. 대한민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 증명서발급기관(자유무역지역관리원은 제외한다). 다만,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세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7.29.]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원산지증명서 작성 등) ① 원산지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1.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해당 물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확인하여 발급할 것
2. 협정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수출자,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를 확인하여 작성·서명할 것

②~③ 생략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 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첨부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0.3.2, 2010.12.31, 2011.6.30, 2013.2.23>

1. 수출신고의 수리필증 사본(증명서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또는 이에 갈음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이 경우 수출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 제출할 수 있다.
 - 가. 자유무역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국외반출신고서 사본
 - 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226조에 따른 보세운송신고서 사본
 - 다. 우편물·택송품 및 별송품의 경우에는 영수증·선하증권 사본 또는 그 밖에 계약상대국으로 수출하였거나 수출할 것임을 나타내는 서류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제6조의3에 따른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원산지소명서(이하 “원산지소명서”라 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원산지소명서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5.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제6조의4에 따른 국내제조확인서(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수출자의 과실·착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7.15, 2013.2.23>

1~2. 삭제 <2013.2.23>

③ 증명서발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의 주소·거소·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확인(이하 “현지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의 경우에는 그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07.5.21, 2010.3.2, 2013.2.23>

1.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2. 해당 물품을 직접 생산하지 아니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최초로 신청한 경우
3. 원산지증명서 신청 오류의 빈도, 협정·법·영 및 규칙의 준수도, 생산공장의 유무, 제조공정 및 물품의 생산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현지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한 경우

4.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5.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의 조사를 요청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신청한 경우
 6. 그 밖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④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1.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3일(공휴일·토요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다) 이내
- ⑤ 증명서발급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4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 ⑥ 증명서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원산지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및 재발급 신청사유서를 당초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증명서발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5.21, 2008.7.15, 2010.12.31>
- ⑦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발급(재발급신청 및 재발급을 포함한다)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2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해당 협정에서 정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권한을 서면으로 위임받은 자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페루 FTA협정문」

제4.1조 원산지증명서

1. 각 당사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근거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부터 수입되는 원산지 상품에 대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를 부여한다.
2. 특혜관세대우를 받기 위해, 수입자는 수입 당사국에서 적용되는 절차에 따라 원산지 상품의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원산지 증명서는,
 - 가. 인쇄본 또는 전자본이어야 한다. 그리고
 - 나. 양 당사국간 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는 부속서 4나에 규정된 견본 및 그에 포함된 지침과 합치되게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4. 각 당사국은,
 - 가. 수입자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 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는 상품의 수출을 위해서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하도록 요구한다. 그리고
 - 나.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1)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 2)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을 위해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
5. 당사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해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는 다음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으로 하나 이상 상품의 단일 선적, 또는
 - 나. 원산지 증명서에 명시된 기간으로서 그 발급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

「한-페루 FTA협정문 부속서 4가」

규칙 1 원산지증명

- 어느 한 쪽 당사국의 원산지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 수입 시 다음의 원산지증명 중 하나를 제출하면 이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대우의 혜택을 받는다.
- 가. 부록 4가-1에 있는 양식의 원산지증명서 또는
 - 나. 규칙 4의 제1항에 명시된 경우, 부록 4가-2에 있는 문안을 사용한 신고서(이하 “원산지 신고서” 라 한다). 원산지 신고는 해당 상품이 확인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그 상품을 기술하는 송장, 인도증서 또는 그 밖의 상업적 문서상에 수출자에 의해 행해진다.

규칙 2 원산지증명서

1.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나 그 수축자의 책임 하에 있는 권한 있는 대리인이 신청하면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에 의해 발급된다.
2. 원산지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되며, 하나의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하나 이상의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수출자는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문서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는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제출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4. 원산지 증명서 발급을 위해,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은 수출 이전에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조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은 증빙 증거를 요청하고 수출자의 회계에 대한 조사 또는 그 밖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가진다.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은 규칙 1의 가호에 언급된 양식이 적절히 작성되는 것을 보장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6호의8서식] <신설 2011.7.29>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Certificate No.: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Peru FTA Issued in _____ (see Overleaf Instruction)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Flight/Train/Vehicle No.: Port of loading: Port of discharge:			5. Remarks:			
6. Item number (Max 20)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HS code (Six digit code)	9. Origin Criterion	10.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 ³ , etc.)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장소 및 날짜,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서명)			13.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Peru FT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장소 및 날짜, 수입기관의 서명 및 소인)			

작성 방법

※ 이 서식은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증명서 번호 : 수입기관이 부여한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1. 제1란에는 수출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2. 제2란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두 명 이상의 생산자로부터 만들어진 상품이 증명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생산자의 성명,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수출자나 생산자가 생산자의 성명, 주소를 비밀로 유지하기를 원할 경우 "AVAILABLE UPON REQUEST" (요청이 있을 경우 제공 가능)라고 적을 수 있으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SAME" (동일)이라고 기재한다.
3. 제3란에는 대한민국 또는 페루에 거주하는 수하인의 성명과 주소(국가를 포함한다)를 기재한다.
4. 제4란에는 운송 수단 및 경로, 출발 날짜, 운송수단의 번호, 선적항 및 하역항을 기재한다.
5. 제5란에는 고객 주문번호, 신용장 번호 등과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적을 수 있습니다. 비당사국 운영인이 송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비당사국 운영인의 성명을 기재한다. 페루와의 협정 제3.7조(최소허용수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적을 수 있습니다.
6. 제6란에는 물품의 일련번호를 적으며, 일련번호는 2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7. 제7란에는 포장의 수량, 종류 및 각 상품의 정식 품명을 기재한다. 품명은 해당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식별할 수 있고, 그 상품을 송장 품명 및 HS 품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세하게 기재한다. 상품이 포장되지 않은 경우에는 "IN BULK" (포장되지 않음)라고 기재한다. 상품의 품명 끝에는 "***" (별 3개) 또는 "/" (사선) 을 더합니다.
8. 제8란에는 제7란에 명시된 각 상품의 HS 품목번호를 6단위까지 기재한다.
9. 제9란에는 수출자(제조사 및 생산자 포함)가 해당 물품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 표에서 정한 방법으로 기재한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문구
가) 페루와의 협정에 따라 완전생산된 물품	WO
나)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부합하는 재료로만 생산된 물품	WP
다) 별표 10 제3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명시된 세번변경 요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 공정 요건이나 그 밖의 요건에 부합하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어느 한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물품	PSR ⁽¹⁾
라) 페루와의 협정 제3.15조(영역 원칙)를 적용받는 물품	OP

(1) 해당 물품이 역내 부가가치 비율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그 비율과 함께 "BD" (공제법인 경우) 또는 "BU" (집적법인 경우)를 기재한다.


10. 제10란에는 킬로그램으로 표시된 총중량을 기재한다. 관례적인 경우 정확한 수량을 표시하는 그 밖의 단위(예: 물품의 부피 또는 개수)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11. 제11란에는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기재한다. 상품의 송장을 비당사국 운영인이 발행하여 상업용 송장의 번호 및 날짜를 알 수 없다면 수출 당사국에서 발급된 상업용 송장(원본)의 번호 및 날짜를 기재한다.
12. 제12란에는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13. 제13란에는 권한있는 당국 또는 수입기관의 권한있는 사람이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적고, 소인을 찍습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6호의8서식] <신설 2011.7.29>

페루와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CERTIFICATE OF ORIGIN ORIGINAL

1. Exporter's name and address: Korea Origin Information Organization 205-8 YATAP-RO, SEONGNAM, KOREA KR			Certificate No.: 100-00-10000 CERTIFICATE OF ORIGIN Form for Korea-Peru FTA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2. Producer's name and address: Korea Origin Information Organization 205-8 YATAP-RO, SEONGNAM, KOREA KR					
3. Consignee's name and address: Peru Origin Information Organization AV. LAS TORRES 100 URB, LIMA-LIMA P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20131010 Vessel/Flight/Train/Vehicle No.: ORIGIN 10 Port of loading: INCHEON Port of discharge: LIMA-LIMA			5. Remarks:		
6. Item number (Max 20)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HS code (Six digit code)	9. Origin Criterion	10. Gross weight, quantity (Quantity Unit) or other measures (liters, m ³ , etc.)	11. Number and date of invoice
1	SYNTHETIC ORGANIC	7307.99	PSR	300(KG) 1,000(EA)	K01100YRS 20131008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FTA for the goods exported to PERU, CALLO PERU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장소 및 날짜, 권한있는 서명권자의 서명)			13. Certification: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information herein is correct and that the goods described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in the Korea-Peru FTA Oct/04/2013 Seoul Customs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authorized body (장소 및 날짜, 수입기관의 서명 및 소인)		

● 일반특혜(남북교역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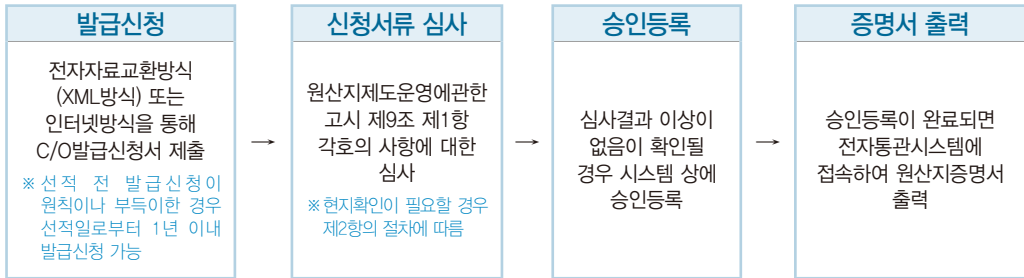
25 GATT 원산지증명서(TNDC)

작성목적

- TNDC 적용국과의 수출에 있어서 체약상대국 수입자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신청주체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국가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C/O발급기관 → 수출자 → 수입자)	아시아(3) : 방글라데시, 터키, 파키스탄 아메리카(5) : 멕시코, 브라질, 우루과이, 칠레, 페루 중동(2) : 이스라엘, 이집트 아프리카(1) : 튀니지아 유럽(1) : 루마니아

발급절차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발급 코드	협정 · 규정	특혜적용 주요 원산지결정기준
수출 · 입	D	TNDC	- (공통) 완전생산기준, HS 4단위 변경 - (이스라엘 · 루마니아 · 우루과이) 공통기준 - (튀니지아 · 이집트 · 방글라데시) EXW기준 비원산지재료 50%이하 - (멕시코 · 칠레) FAS기준 비원산지재료 50%이하 - (브라질 · 파키스탄 · 터키 · 페루 · 한국) FOB기준 비원산지재료 50%이하

※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1 **발급신청**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FTA or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신청
- 2 **재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재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재발급 완료
- 3 **정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정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정정발급 완료
- 4 **보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보정 요구인 C/O조회 → 하단의 '보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심사 승인

세관직원의 심사사항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FTA C/O)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참고사항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 표시방법
2	HS 2단위 변경	CC, W
4	HS 4단위 변경	CTH, W
6	HS 6단위 변경	CTSH, W
8	HS 6단위 이하 변경	CTSHS, W
A	완전생산기준	A, P, Perfect, WO, WOR, WO-AK
B	부가가치기준, 수입원재료 공제	B, Y, Yield Build-down
C	부가가치기준, 역내부가가치 누적	C, F, Pk, VAC, RVC, Build-up
D	부가가치기준, 최빈국특례 적용	D, G
E	부가가치기준, 역외가공비 제외	OP, Outward-Processing, Rule 6
G	부가가치기준, 개성공단 역외가공	Gaesung
H	HS변경기준, 미소량 제외	De-Minimis
K	부가가치+가공공정기준 충족	VAC&Specific, RVC+Specific
M	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충족	CTC&VAC, CTH+RVC
N	세번변경+가공공정기준 충족	CTC&Specific, CTH+Specific
S	가공공정기준	Specific-Process
W	HS변경기준, 수입원재료 HS 명시	W, X, CTC, CTH, CTSH

근거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해당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 2)에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5호의5까지의 서식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원본 1부, 부분 1부)를 출력할 수 있다.

③ 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2조의2에 따라 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3.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유엔 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5.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②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하거나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할 수 있다.

참고규정

제6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다. 다만,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역물품의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발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출자(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가 대리 가능)를 말한다. 다만,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가능하다.

② 신청인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XML방식)
2. 인터넷방식

② 신청인은 수출시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내)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이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안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소명서
4.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제5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작성양식

[별지 제5-3호 서식]

GATT 원산지증명서(TNDC)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Reference No.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 (country) See Notes overleaf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4. For official use		
5. Tariff Item No.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	7. No. &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Instruction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hr/>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hr/>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hr/> (importing country) <hr/>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 Instructions for filling the Form >

- The main conditions for admission to preference are that goods sent to any of the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 must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good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and
 - must comply with the origin criteria specified for those goods by the countries of destination.
- If the goods qualify under the origin criteria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exporter must indicate in Box 8 of the form as below:

Classification of goods by types of origin criteria	Indication to be made in Box 8 of the form
Goods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country	P
Goods not wholly produced in the exporting country: Goods satisfying the origin criterion based on value added	Y followed by the value or materials imported or of undetermined origin,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value of the exported goods Example: Y less than 50%
Goods satisfying the origin criterion based on a change in HS heading or other origin criteria	X followed by the HS heading No. of the exported goods Example: X 97.06
Goods satisfying two origin criteria	Example: X 84.05 Y less than 40%

- Each article must qualify. It should be noted that all the goods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their own right.
- Language, description of goods, etc. In making out the form, it is recommended that English, French or Spanish be used, taking into account the acceptability of the language in the importing country. Entries on the form should be typed or hand-written: in the latter case use ink and capital letters. Any unused space should be struck through in such a manner as to make any later addition impossible. Any alteration must be endorsed by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The description of goods must be sufficiently detailed to enable the goods to be identified by the Customs officer examining them.
- Procedure for claiming preference. A declaration on the certificate of origin form must be prepared by the exporter of the goods and submitted in duplicate to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of the country of exportation, which will, if satisfied, certify the top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and return it to the exporter for transmission to the importer in the country of destination. The certifying authority or body will itself keep the second copy duly completed and signed by the exporter.

작성사례

[별지 제5-3호 서식]

GATT 원산지증명서(TNDC)

1. Goods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i>Korea Origin Information Organization</i> <i>205-8 YATAP-RO, SEONGNAM, KOREA</i>			Reference No. <i>100-00-10000</i>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i>SHAM PETROL LTD.</i> <i>ATATURK OTU SANATKARLARI SITESI, NO</i> <i>100, KUCUKKUMCE, IKITEELLI, ISTANBUL,</i> <i>TURKEY</i>			PREFERENTIAL ARRANGEMENTS AMONG DEVELOPING COUNTRIES NEGOTIATED IN GATT CERTIFICATE OF ORIGIN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Issued in <i>REPUBLIC OF KOREA</i> See Notes overleaf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as far as known) <i>FROM : INCHEON PORT, REPUBLIC OF KOREA</i> <i>TO : TURKEY</i> <i>BY SEA</i>			4. For official use		
5. Tariff Item No.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	7. No. &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criterion (see Instruction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i>3208.90</i>		<i>SUNFOL LE-10</i> <i>Palletes 10(EA)</i>	<i>Y less than 50%</i>	<i>100(KG)</i>	<i>KOI100YRS</i> <i>20131008</i>
11.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i>10/10/2013 INCHEON CUSTOMS</i> <i>REPUBLIC OF KOREA</i> <hr/>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i>REPUBLIC OF KOREA</i>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i>TURKEY</i> <hr/>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26 APTA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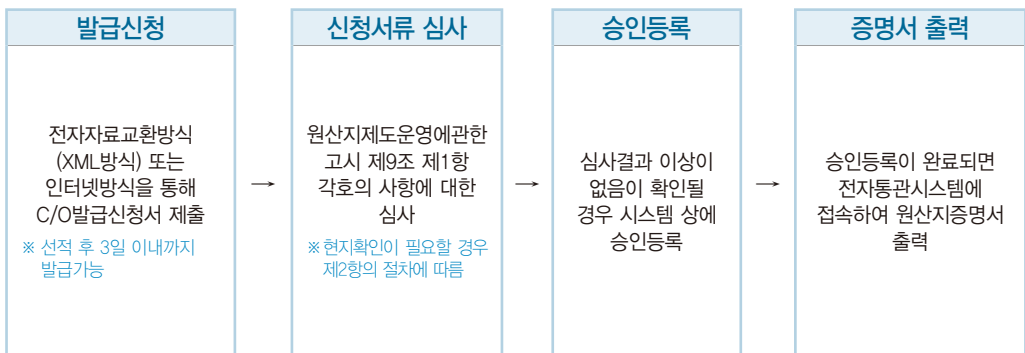
-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 적용국과의 수출에 있어서 계약상대국 수입자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신청주체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국가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계약상대국의 수입자 (C/O발급기관 → 수출자→수입자)	중국(홍콩 및 마카오 제외),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라오스

※ 주의사항

라오스는 양허표를 제출하지 않아 정식 회원국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APTA협정에 의한 관세 양허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국의 자치 행정구인 홍콩과 마카오는 별도의 경제적 자유권을 가지고 있어 중국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발급절차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발급 코드	협정 · 규정	특혜적용 주요 원산지결정기준
수출 · 입	E	APT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생산기준 - FOB기준 비원산지(비참가국 생산 + 미상)재료 55%이하 ** (최빈국 완화기준) 65%이하 - FOB기준 역내부가가치누적기준 60%이상 ** (최빈국 완화기준) 50%이상 <p>다만,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원재료(APTA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에 한함)가 계약상대국의 제품생산에 투입된 후 수입시 국제운송 비용 및 비원산지재료비는 제외하고 우리나라와 계약상대국 영역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만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p>

※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1 **발급신청**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FTA or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신청
- 2 **재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재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재발급 완료
- 3 **정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정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정정발급 완료
- 4 **보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보정 요구인 C/O조회 → 하단의 '보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심사 승인

세관직원의 심사사항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FTA C/O)
3. 계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계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참고사항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 표시방법
2	HS 2단위 변경	CC, W
4	HS 4단위 변경	CTH, W
6	HS 6단위 변경	CTSH, W
8	HS 6단위 이하 변경	CTSHS, W
A	완전생산기준	A, P, Perfect, WO, WOR, WO-AK
B	부가가치기준, 수입원재료 공제	B, Y, Yield Build-down
C	부가가치기준, 역내부가가치 누적	C, F, Pk, VAC, RVC, Build-up
D	부가가치기준, 최빈국특례 적용	D, G
E	부가가치기준, 역외가공비 제외	OP, Outward-Processing, Rule 6
G	부가가치기준, 개성공단 역외가공	Gaesung
H	HS변경기준, 미소량 제외	De-Minimis
K	부가가치+가공공정기준 충족	VAC&Specific, RVC+Specific
M	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충족	CTC&VAC, CTH+RVC
N	세번변경+가공공정기준 충족	CTC&Specific, CTH+Specific
S	가공공정기준	Specific-Process
W	HS변경기준, 수입원재료 HS 명시	W, X, CTC, CTH, CTSH

근거규정**「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해당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 2)에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5호의5까지의 서식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원본 1부, 부분 1부)를 출력할 수 있다.

③ 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2조의2에 따라 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3.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유엔 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5.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②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하거나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할 수 있다.

참고규정

제6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다. 다만,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역물품의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발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출자(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가 대리 가능)를 말한다. 다만,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가능하다.

② 신청인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XML방식)
2. 인터넷방식

② 신청인은 수출시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내)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이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안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소명서
4.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제5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 Notes for completing Certificate of Origin

I. General Conditions

To qualif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list of concessions of an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untry of destination;
- b) comply with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 c)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specified by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In general,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hereof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II. Entries to be made in the boxes

Box 1. Goods Consigned from

Type the name, address and country of the exporter. The name must be the same as the exporter described in the invoice.

Box 2. Goods Consigned to

Type the name, address and country of the importer. The name must be the same as the importer described in the invoice. For third party trade, the words “To Order” may be typed.

Box 3 For Official Use

Reserved for use by certifying authority.

Box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State in detail the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for the products exported. If the L/C terms etc. do not require such details, type “By Air” or “By Sea”. If the products are transported through a third country this can be indicated as follows: e.g. “By Air”, “Laos to India via Bangkok”

Box 5 Tariff Item Number

Type the 4-digit HS heading of the individual items.

Box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Type the marks and numbers of the packages covered by the Certificate. This information should be identical to the marks and numbers on the packages.

Box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Type clearly the description of the products exported. This should be identical to the description of the products contained in the invoice. An accurate description will help the Customs Authority of the country of destination to clear the products quickly.

Box 8 Origin Criterion

Preference products must b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Rule 2 of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Rules of Origin, or where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 must be eligible under Rule 3 or Rule 4.

-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A” in Box 8.
-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the entry in Box 8 should be as follows:
 1. Enter letter “B”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3. Entry of letter “B”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materials, 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ting States, or undetermined origin use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products; (example “B” 50 per cent);
 2. Enter letter “C”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4. Entry of letter “C”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aggregate conten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icipating States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 (example “C” 60 per cent);
 3. Enter letter “D”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special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10.

Box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Type the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such as pieces, kg)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e Certificate.

Box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State number and date of the invoice in question. The date of the invoice attached to the Application should not be later than the date of approval on the Certificate.

Box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term “Exporter” refers to the shipper who can either be a trader or a manufacturer. Type the name of the producing country and the importing country and the place and date when the declaration is made. This box must be signed by the Company’s authorized signatory.

Box 12 Certification

The certifying authority will certify in this Box.

※ APTA 협정용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I.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생산품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가) 목적지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국가의 양허표상 특혜품목에 해당해야 한다.
- 나)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탁송품 내의 개별상품은 당연히 개별적으로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 다)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정의 운송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생산품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II. “란” 기재방법

1란 : 수출자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해야 한다.

2란 : 수입자

수입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자와 동일해야 한다. 제3자 무역일 경우, “주문용” 을 기입할 수 있다.

3란 : 공용란

증명기관의 사용을 위해 공란으로 남겨둔다.

4란 : 운송 수단 및 경로

수출품의 운송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입한다. 신용장의 조건 등이 세부사항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By Air(비행기로)” 또는 “By sea(선박으로)” 로 기입한다.

생산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 “By Air(비행기로)”, “Laos to India via bangkok(방콕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 를 표기한다.

5란 : 세번

개별품목의 HS 4단위를 표기한다.

6란 : 포장기호 및 번호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포장의 기호와 번호를 기입한다. 기입사항은 포장에 표기된 기호 및 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7란 :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

수출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송품장에 기재된 생산품의 품명과 일치해야 한다. 정확한 품명은 목적지 세관당국이 신속히 생산품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8란 : 원산지 기준

특혜 생산품은 아시아-무역협정 제2조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되지 않은 생산품은 제3조 또는 제4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가) 완전 생산품 또는 획득품 : 8란에 “A” 를 기재한다.

나) 불완전 생산품 또는 획득품 : 8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제3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B” 를 기재한다. “B” 뒤에는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 미상인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 (예: “B” 50%)
2. 제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C” 를 기입한다. “C” 뒤에는 협약참가 수출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 (예: “C” 60%)
3. 제10조의 특별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8란에 “D” 를 기입한다.

9란 :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원산지증명서에 포함된 생산물의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갯수, Kg 등)을 기입한다.

10란 : 송품장 번호 및 일자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한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어서는 안된다.

11란 : 수출자 신고

“수출자” 는 무역업자 또는 제조자 일 수 있는 선적자를 의미한다. 생산국명/수입국명 및 신고장소/신고일자를 기입한다. 이란은 회사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해 서명되어야 한다.

12란 : 증명

증명기관이 이 란에 증명한다.

작성사례

[별지 제5호의5 서식]

Asia-Pacific Trade Agreement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1. Goods consigned from: <i>(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i> Korea Origin Information Organization 205-8 YATAP-RO, SEONGNAM, KOREA		<i>Reference No.</i> 2100-10-00100 <h3 style="text-align: center;">CERTIFICATE OF ORIGIN</h3> <i>Issued in</i> REPUBLIC OF KOREA			
2. Goods consigned to: <i>(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i> KOID CHINA BRANCH 20F, JINRONG DASHA, 10HEDAN RD, BEIZING, CHINA		3. For Official use			
4.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FROM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REPUBLIC OF KOREA TO : CHINA BY AIR					
5. Tariff item number: 8209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 description of goods: TUNGSTEN TIPS 100(PCS)	8. Origin criterion <i>(see notes overleaf)</i> B 7,36%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20(KG)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K01100YRS 20131008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REPUBLIC OF KOREA</i> <i>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ia-Pacific Trade Agreement for goods exported to CHINA</i> <i>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i>			12. Certificate <i>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i> 10/10/2013 INCHEON CUSTOMS REPUBLIC OF KOREA <i>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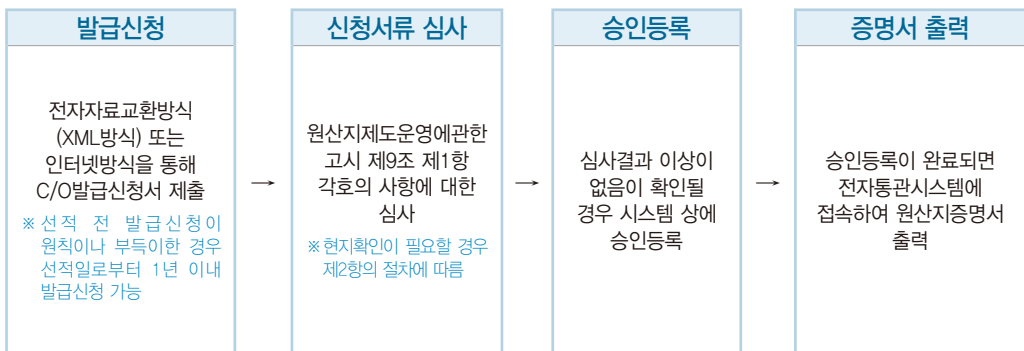
27 GSTP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 GSTP 적용국과의 수출에 있어서 체약상대국 수입자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신청주체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국가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 지역관리원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C/O발급기관 → 수출자 → 수입자)	<p>아시아(12) : 파키스탄,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북한, 태국, 필리핀, 미얀마, 방글라데시</p> <p>아메리카(15) : 페루, 쿠바, 니카라과, 멕시코, 가이아나,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 베네주엘라, 우루과이, 파라과이</p> <p>아프리카(13) : 짐바브웨, 가나, 알제리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카메룬, 모로코, 튀니지, 수단, 기네아, 베닌, 모잠비크, 탄자니아</p> <p>중동(3) : 이라크, 이집트, 이란</p>

발급절차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발급 코드	협정 · 규정	특혜적용 주요 원산지결정기준
수출 · 입	C	GS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생산기준 - FOB기준 비원산지(비참가국 생산 + 미상)재료 50%이하 * (최빈국 완화기준) 60%이하 - FOB기준 역내부가가치누적기준 60%이상 * (최빈국 완화기준) 50%이상

※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1 **발급신청**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FTA or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신청
- 2 **재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재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재발급 완료
- 3 **정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정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정정발급 완료
- 4 **보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보정 요구인 C/O조회 → 하단의 '보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심사 승인

세관직원의 심사사항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FTA C/O)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참고사항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 표시방법
2	HS 2단위 변경	CC, W
4	HS 4단위 변경	CTH, W
6	HS 6단위 변경	CTSH, W
8	HS 6단위 이하 변경	CTSHS, W
A	완전생산기준	A, P, Perfect, WO, WOR, WO-AK
B	부가가치기준, 수입원재료 공제	B, Y, Yield Build-down
C	부가가치기준, 역내부가가치 누적	C, F, Pk, VAC, RVC, Build-up
D	부가가치기준, 최빈국특례 적용	D, G
E	부가가치기준, 역외가공비 제외	OP, Outward-Processing, Rule 6
G	부가가치기준, 개성공단 역외가공	Gaesung
H	HS변경기준, 미소량 제외	De-Minimis
K	부가가치+가공공정기준 충족	VAC&Specific, RVC+Specific
M	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충족	CTC&VAC, CTH+RVC
N	세번변경+가공공정기준 충족	CTC&Specific, CTH+Specific
S	가공공정기준	Specific-Process
W	HS변경기준, 수입원재료 HS 명시	W, X, CTC, CTH, CTSH

근거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해당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 2)에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5호의5까지의 서식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원본 1부, 부분 1부)를 출력할 수 있다.

③ 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2조의2에

따라 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3.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유엔 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5.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②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하거나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할 수 있다.

참고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다. 다만,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역물품의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발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출자(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가 대리 가능)를 말한다. 다만,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가능하다.

② 신청인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XML방식)
2. 인터넷방식

② 신청인은 수출시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내)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이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안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소명서
4.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제5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작성양식

[별지 제5호의4 서식]

GSTP특혜용 원산지증명서(Form A)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Reference No. 번호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신고 및 증명 검용)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Issued in _____ (Country) ※ See notes overleaf 뒷면 참조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운송수단 및 경로		4. For official use 공용란	
5. Tariff item number HS번호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포장기호 및 번호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 수량 및 종류: 상품명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결정기준 (뒷면참조)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송장번호 및 일자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의 신고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아래의 자는 상기 기재내용이 정확하며, 모든 물품이 (국가명)에서 생산되고,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상 하기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신고함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 서명		12. Certificate 증명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심사결과, 수출자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함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증명발급지, 발급년월일, 증명발급기관의 서명 및 소인	

Notes overleaf

I . General Conditions

To qualif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schedule of concessions of the GSTP country of destination;
- (b) comply with the GSTP rules of Origin.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 (c)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specified by the GSTP Rules of origin. In general,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within the meaning of Rule 5 hereof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II . Entries to be made in box 8

Preference products must b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in accordance with rule 2 of the GSTP Rules of Origin, or where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s must be eligible under rule 3 or rule 4.

-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A” in box 8.
 -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the entry in box 8 should be as follows:
 - 1. Entry of letter “B”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materials ,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nts, or undetermined origin use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s; (example “B” 50 percent).
 - 2. Entry of letter “C”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aggregate conten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icipant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 (example “C” 60 percent) .
 - 3. Enter letter “D”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special origin criteria according to rule 10.
-

※ 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당해 상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수출국에 대한 GSTP양허표상 특혜품목이어야 한다.
- (2) GSTP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적송중인 각 상품은 수혜권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3) GSTP원산지규정상의 운송여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동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제8란 기재방법

특혜수혜품목은 GSTP원산지규정 제2조(완전생산기준) 또는 GSTP원산지규정에 상응하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과 동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 또는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를 충족하는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이다.

- (1)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 를 기재한다.
- (2)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규정 제3조(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B” 를 기재한다. “B” 뒤에는 GSTP비참가국 및 원산지미상 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예 : “B” 50%)
 - ② 규정 제4조(누적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C” 를 기재한다. “C” 뒤에는 수출품의 당해 수출국산 원자재 총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 (예 : “C” 60%)
 - ③ 규정 제10조(최빈국특혜비율)의 특혜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D” 를 기재한다.

작성사례

[별지 제5호의4 서식]

GSTP특혜용 원산지증명서(Form A)

<p>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p> <p><i>Korea Origin Information Organization 205-8 YATAP-RO, SEONGNAM, KOREA</i></p>		<p>Reference No. 번호</p> <p>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p> <p>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GSTP) 원산지증명서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신고 및 증명 겸용)</p> <p>Issued in REPUBLIC OF KOREA (Country)</p> <p>※ See notes overleaf</p>			
<p>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p> <p><i>GERDAU LTD R. Fernandes Lima - Anchieta Rio de Janeiro, BRAZIL</i></p>		<p>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운송수단 및 경로</p> <p><i>FROM :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REPUBLIC OF KOREA TO : BRAZIL BY AIR</i></p>			
<p>5. Tariff item number HS번호</p> <p><i>8209</i></p>	<p>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포장기호 및 번호</p>	<p>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 수량 및 종류: 상품명</p> <p><i>TUNGSTEN TIPS 100(PCS)</i></p>	<p>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결정기준 (뒷면참조)</p> <p><i>B 55%</i></p>	<p>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p> <p><i>20(KG)</i></p>	<p>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송장번호 및 일자</p> <p><i>KOI100YRS 20131008</i></p>
<p>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의 신고</p> <p>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p> <p><i>REPUBLIC OF KOREA</i> (country)</p> <p>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p> <p>개도국간 특혜무역제도에상 하기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신고함</p> <p>..... <i>SRILANKA</i>..... (importing country)</p> <p><i>SEOUL, KOREA 20 MAR 2013</i></p> <p>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 서명</p>		<p>12. Certificate 증명</p> <p>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p> <p>.....</p> <p>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증명발급지, 발급년월일, 증명발급기관의 서명 및 소인</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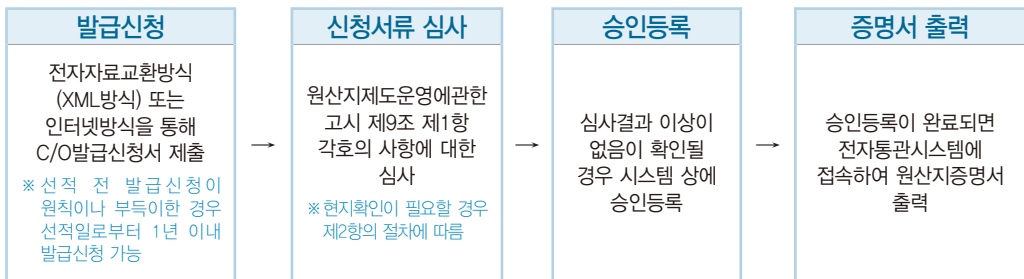
28 GSP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 GSP 적용국과의 수출에 있어서 계약상대국 수입자의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신청주체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국가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 지역관리원	계약상대국의 수입자 (C/O발급기관 →수출자 →수입자)	유럽(3) : 노르웨이, 러시아연방, 우크라이나 아메리카(1) : 캐나다 오세아니아(1) : 뉴질랜드 아시아(1) : 카자흐스탄

발급절차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발급 코드	협정 · 규정	특혜적용 주요 원산지결정기준
수출	B	GS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완전생산기준 - (노르웨이) HS 4단위 변경 - (캐나다) EXW기준 비원산지재료 40%미만 - (뉴질랜드) EXW기준 부가가치 50%이상 * 신고만으로 GSP 수혜 가능 - (러시아 · 카자흐스탄 · 우크라이나) FOB기준 비원산지재료 50%미만

※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1 **발급신청**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FTA or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신청
- 2 **재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재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재발급 완료
- 3 **정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정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정정발급 완료
- 4 **보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보정 요구인 C/O조회 → 하단의 '보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심사 승인

세관직원의 심사사항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FTA C/O)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참고사항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 표시방법
2	HS 2단위 변경	CC, W
4	HS 4단위 변경	CTH, W
6	HS 6단위 변경	CTSH, W
8	HS 6단위 이하 변경	CTSHS, W
A	완전생산기준	A, P, Perfect, WO, WOR, WO-AK
B	부가가치기준, 수입원재료 공제	B, Y, Yield Build-down
C	부가가치기준, 역내부가가치 누적	C, F, Pk, VAC, RVC, Build-up
D	부가가치기준, 최빈국특례 적용	D, G
E	부가가치기준, 역외가공비 제외	OP, Outward-Processing, Rule 6
G	부가가치기준, 개성공단 역외가공	Gaesung
H	HS변경기준, 미소량 제외	De-Minimis
K	부가가치+가공공정기준 충족	VAC&Specific, RVC+Specific
M	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충족	CTC&VAC, CTH+RVC
N	세번변경+가공공정기준 충족	CTC&Specific, CTH+Specific
S	가공공정기준	Specific-Process
W	HS변경기준, 수입원재료 HS 명시	W, X, CTC, CTH, CTSH

근거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해당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 2)에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5호의5까지의 서식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원본 1부, 부분 1부)를 출력할 수 있다.

③ 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2조의2에 따라 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3.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유엔 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5.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②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하거나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할 수 있다.

참고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다. 다만,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역물품의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발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수출자(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가 대리 가능)를 말한다. 다만,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가능하다.

② 신청인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XML방식)
2. 인터넷방식

② 신청인은 수출시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내)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이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안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소명서
4.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제5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작성양식

별지 제5호 서식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Form A)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Reference No. 번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신고 및 증명 겸용)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Issued in _____ (Country) ※ See notes overleaf 뒷면 참조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운송수단 및 경로			4. For official use 공용란		
5. Tariff item number HS번호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포장기호 및 번호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 수량 및 종류: 상품명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결정기준 (뒷면참조)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송장번호 및 일자
11. Certificate 증명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심사결과, 수출자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함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증명발급지, 발급년월일, 증명발급기관의 서명 및 소인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의 신고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아래의 자는 상기 기재내용이 정확하며, 모든 물품이 (국가명)에서 생산되고,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pecial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일반특혜관세규정상 하기 수입국의 원산지결정기준에 합치한다는 것을 신고함 (importing country)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 서명		

< Notes overleaf >

I . General Conditions

To qualify for preference, products must:

- (a) fall within a description of products eligible for preference in the schedule of concessions of the GSP country of destination;
- (b) comply with the GSP rules of Origin. Each article in a consignment must qualify separately in its own right, and
- (c) comply with the consignment conditions specified by the GSP Rules of origin. In general, products must be consigned directly hereof from the country of exportation to the country of destination.

II . Entries to be made in box 8

Preference products must be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 the GSP Rules of Origin, or where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in the exporting participants must be eligible.

- (a) products wholly produced or obtained: enter the letter “A” or “P” in box 8.
 - (b) Products not wholly produced or obtained: the entry in box 8 should be as follows:
 - 1. Entry of letter “B” or “Y”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value of materials ,parts or produce originating from non-participants, or undetermined origin used,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s; (example “B” 50 percent).
 - 2. Entry of letter “C” would be followed by the sum of the aggregate content originating in the territory of the exporting participant expressed as a percentage of the f.o.b. value of the exported product; (example “C” 60 percent).
 - 3. Enter letter “W” in box 8 for products which is changed tariff code.
 - 4. Enter letter “D” in box 8 for products which meet the special origin criteria.
-

※ 특혜관세용(GSP) 원산지증명서 작성요령

1.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해 당해상품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1) 수출국에 대한 GSP양허표상 특혜품목이어야 한다.
- (2) GSP원산지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적송중인 각 상품은 수혜권을 독립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 (3) GSP원산지규정상의 운송여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수출국에서 최종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2. 제8란 기재방법

특혜수혜품목은 GSP원산지규정상 (완전생산기준) 또는 GSP원산지규정에 상응하는 수출국의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과 동 규정 (부가가치기준) 또는 (누적부가가치기준)를 충족하는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이다.

- (1) 완전생산품 또는 완전획득품(완전생산기준)은 제8란에 “A” 또는 “P” 를 기재한다.
- (2) 부분생산품 또는 부분획득품(부가가치기준)은 제8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B” 또는 “Y”를 기재한다. “B” 뒤에는 우리나라산이 아닌 원산지미상 원자재, 부분품, 제품가격을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예 : “B” 50%)
 - ② 누적부가가치기준의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C”를 기재한다. “C” 뒤에는 수출품의 당해 GSP공여국 및 우리나라에서 창출한 총부가가치를 수출품의 FOB가격에 대한 백분율로서 기재한다. (예 : “C” 60 %)
 - ③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은 제8란에 “W” 를 기재한다.
 - ④ 규정 특별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 생산품은 제8란에 “D” 를 기재한다.

작성사례

별지 제5호 서식

GSP특혜용 원산지증명서 (Form A)

1. Good consigned from (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수출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Korea Origin Information Organization 205-8 YATAP-RO, SEONGNAM, KOREA			Reference No. 번호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특혜관세용 원산지증명서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신고 및 증명 겸용) Issued in _____ (Country) ※ See notes overleaf 뒷면 참조		
2. Goods consigned to (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수입자(상사명, 주소 및 국명) Originated Materials INC 100, AVE.BRETON, LAVAL, QC, CANADA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운송수단 및 경로 FROM INCHEON INETNATIONAL PORT TO CANADA BY SEA			4. For official use 공용란		
5. Tariff item number HS번호 851631	6. Marks and numbers of packages 포장기호 및 번호	7.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포장 수량 및 종류; 상품명 HAIR DRYER, 100PC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원산지결정기준 (뒷면참조) C 65%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총중량 또는 기타 수량 500.0(KG)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of invoices 송장번호 및 일자 SM100000 20131015
11. Certificate 증명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심사결과, 수출자의 신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함 18/10/2013 INCHEON CUSTOMS REPUBLIC OF KOREA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증명발급지, 발급년월일, 증명발급기관의 서명 및 소인			12. Declaration by the exporter 수출자의 신고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s are correct: that all the goods were produced in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ose goods in the Generalized Special Preferences for goods exported to CANADA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작성지, 작성년월일, 서명권자의 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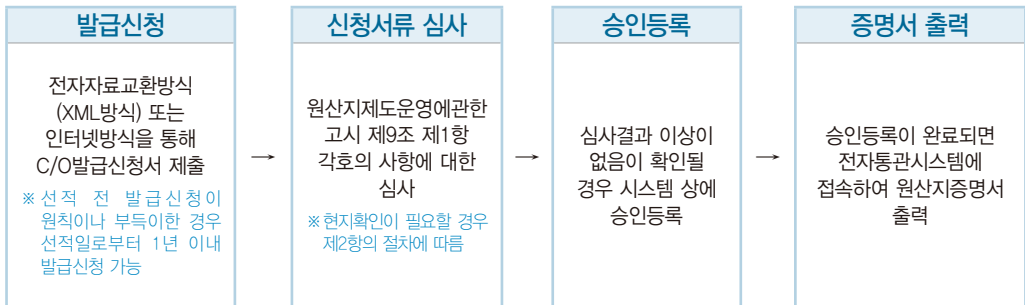
29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

작성목적

- 남북 간의 교역에 있어서 북한 수출물품에 대한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 원산지를 증명하기 위함

신청주체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국가
수출자	세관, 상공회의소,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체약상대국의 수입자 (C/O발급기관 → 수출자 → 수입자)	아시아(1) : 북한

발급절차



특혜대상 원산지결정기준

적용	발급 코드	협정·규정	특혜적용 주요 원산지결정기준
수출·입	A	남북교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S 6단위 변경(단순공정 제외) - 완전생산기준(남한·북한 누적포함)

※ 관세청 통관포탈(UNI-PASS)을 통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 1 **발급신청**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신고서 작성 → FTA or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중 선택하여 발급신청
- 2 **재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재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재발급 완료
- 3 **정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승인 발급된 C/O조회 → 하단의 '정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정정발급 완료
- 4 **보정발급** : UNI-PASS 로그인 → 업무처리 → 수출통관 → 처리현황 → 보정 요구인 C/O조회 → 하단의 '보정발급' 버튼 클릭 → 전송 → 심사 승인

세관직원의 심사사항

1. 원산지증명서 신청자가 신청자격이 있는지 여부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일이 선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FTA C/O)
3. 체약상대국의 협정관세 적용품목인지 여부
4.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5.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가 기재요령과 일치하는지 여부
6.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구비 여부

참고사항 일반특혜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부호

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상 원산지결정기준 표시방법
2	HS 2단위 변경	CC, W
4	HS 4단위 변경	CTH, W
6	HS 6단위 변경	CTSH, W
8	HS 6단위 이하 변경	CTSHS, W
A	완전생산기준	A, P, Perfect, WO, WOR, WO-AK
B	부가가치기준, 수입원재료 공제	B, Y, Yield Build-down
C	부가가치기준, 역내부가가치 누적	C, F, Pk, VAC, RVC, Build-up
D	부가가치기준, 최빈국특례 적용	D, G
E	부가가치기준, 역외가공비 제외	OP, Outward-Processing, Rule 6
G	부가가치기준, 개성공단 역외가공	Gaesung
H	HS변경기준, 미소량 제외	De-Minimis
K	부가가치+가공공정기준 충족	VAC&Specific, RVC+Specific
M	세번변경+부가가치기준 충족	CTC&VAC, CTH+RVC
N	세번변경+가공공정기준 충족	CTC&Specific, CTH+Specific
S	가공공정기준	Specific-Process
W	HS변경기준, 수입원재료 HS 명시	W, X, CTC, CTH, CTSH

근거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0조(원산지증명서 발급) ① 세관장은 민원신청내역과 구비서류(필요시에 한함)가 해당 협정 또는 특혜공여국의 원산지결정기준(별표 2)에 일치하는 지를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즉시 승인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으로부터 원산지증명 발급 승인을 받은 신청인은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여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5호의5까지의 서식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명서(원본 1부, 부분 1부)를 출력할 수 있다.

③ 증명서 발급기관은 수출물품에 대하여 원산지 증명서 1회 발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원산지증명서의 구분 및 기준) ①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2조의2에 따라 수출물품 중 세관장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정한다.

1.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 협정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2.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특혜를 받기 위하여 노르웨이, 캐나다, 뉴질랜드 등으로 수출되는 물품
3. 세계무역기구협정 개발도상국간의 무역협상에 관한 의정서(TNDC)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4. 유엔 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간 특혜무역제도에 관한 협정(GSTP) 가입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5. 남북교역물품(북한으로 반출되는 것)
6. FTA 협정 국가로 수출되는 물품
7. 기타 우리나라산 물품이 특혜관세를 공여받는 경우

②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등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수출신고 기준으로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하나의 원산지증명서에 수출신고서의 각 품목별로 구분하여 작성·발급할 수 있으며 수출물품을 분할하거나 동시 포장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별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작성·서명할 수 있다.

참고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 ① 제4조에 해당하는 관세양허대상 수출물품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세관,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이다. 다만, 마산 및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 관할구역안의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을 발급기관으로 한다.

② 증명서발급기관은 증명서발급기관이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급기관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이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내역을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남북교역물품의 발급기관에 대해서는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북한에 통보하며,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발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원산지증명서 신청인)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수출자(권한을 위임받은 관세사가 대리 가능)를 말한다. 다만,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생산자도 가능하다.

② 신청인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에 서명할 자를 지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업체 서명등록서를 전자통관시스템에 입력한다.

제8조(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세관장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1. 전자자료교환방식(XML방식)
2. 인터넷방식

② 신청인은 수출시 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은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내)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물품이외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적일로부터 1년안에 원산지증명서의 사후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수출신고 수리필증 사본(발급기관이 수출사실 등을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송품장 또는 거래계약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원산지 소명서
4. 원산지소명서 기재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제5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세관장이 판단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증명서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작성양식

별지 제5호의2 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남한 발행)

1.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발급번호 No. of Issuance	
2. 수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3. 생산자(상호, 주소, 국가)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4. 생산장소 Place of production		5. 공적사용 For official use	
7. 연번 Item number		6. 운송수단 및 경로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8. 포장의 수 및 종류 Number and kind of packages		9. 품명 및 수량 Description of goods and Quantity	
		10. 총중량 Gross weight	
11. 비 고 (Other information)		상기물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임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originated in REPUBLIC OF KOREA.	
		증명기관 CERTIFYING BODY	
		발급장소 및 일자 Place and date of issue	
		증명기관 서명 Authorized signature	
확인 인 Stamp			

작성사례

별지 제5호의2 서식

남북교역 원산지증명서(남한 발행)

1. 송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or(name, address, country) Korea Rice Organization 205-8 YATAP-RO, SEONGNAM, KOREA		발급번호 No. of Issuance	
2. 수하인(상호, 주소, 국가) Consignee(name, address, country) RED CROSS SOCIETY D.P,R,K PYONG YANG SI CUUNG GU 1 DONG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ORIGIN	
3. 생산자(상호, 주소, 국가) Producer(name, address, country) Korea Rice Organization 205-8 YATAP-RO, SEONGNAM, KOREA		5. 공적사용 For official use	
4. 생산장소 Place of production Kr		6. 운송수단 및 경로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FROM INCHEON TO 북한 BY SEA	
7. 연번 Item number 1	8. 포장의 수 및 종류 Number and kind of packages 10c/t	9. 품명 및 수량 Description of goods and Quantity NONGLUTINOUS, 1,000ea	10. 총중량 Gross weight 10,000(KG)
11. 비 고 (Other information)		상기물품의 원산지는 대한민국임을 증명합니다. It is hereby certified that the above-mentioned goods originated in REPUBLIC OF KOREA.	
		증명기관 CERTIFYING BODY 서울세관	
		발급장소 및 일자 Place and date of issue 12/10/2013 SEOUL CUSTOMS REPUBLIC OF KOREA	
		증명기관 서명 Authorized signature	
		확인 인 Stamp	

PART 2.
인증수출자
관련 서식

KOREA
CUSTOMS
SERVICE



1. 민원인 작성서식

30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와 인증서

작성목적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 :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협정 (6개 협정) 및 신청업체가 생산·수출하는 전체 품목에 대해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작성·제출(*한-칠레·미국·터키 FTA에 인증수출자제도는 없으나 인증을 받을수는 있음)
-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 심사결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원산지관리 능력이 있음을 인증해주기 위함

구분	작성주체	제 출 처	적용협정
인증(연장) 신청서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터키
인증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인증수출자 신청자	

※ 주의사항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해당협정의 인증받은 HS 6단위 수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구분되며, 인증요건 및 혜택 등에 차이가 있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지속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증의 신청에 있어 인증 신청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원산지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심사하여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인증요건

-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을 것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고 있을 것
- 최근 2년간 원산지관련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5년간 원산지증빙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을 것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속초세관, 대전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구로세관, 성남세관, 의정부세관, 동해세관, 대산세관, 충주세관, 파주세관, 원주세관, 고성세관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용당세관, 김해세관, 거제세관, 마산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사상세관, 사천세관, 진주세관, 통영세관의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부평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익산세관, 전주세관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인증수출자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협정	인증수출자 혜택
한-EU	① (6천유로 미만 수출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세관인증번호 기재 시 수출자 서명의무 생략 ② (6천유로 초과 수출시) 세관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세관인증번호 기재 시 수출자 서명의무 생략
한-페루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기관발급) ② 미화 2천달러 초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자율발급 가능)
한-아세안	발급절차 간소화(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인도	발급절차 간소화(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싱가포르	발급절차 간소화(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업체별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확인서류
① 수출제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번호 및 원산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의 품 목분류번호 관리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재료의 원산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확인서 · 국내제조확인서 등 원산지확인서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의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원재료 공급업체 선정기준 및 리스트 원재료 공급업체 대상 원산지 교육 현황 및 계획 (외부 위탁교육 가능) 		
② 생산(수출)물품에 적용되는 협정별 원산지기준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품목의 상대국 품목분류번호 관리 해당품목의 협정별 원산지 기준 관리 품목분류, 원산지기준 추가 · 변경 시 반영 기능 	

주요 내용	세부 내용	확인서류
③ 원산지 판정의 정확성 (주요 수출·생산품을 선별하여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수출품목의 생산공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공정 해당 여부 -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제품 생산공정 설명서, 원산지확인서,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세스 적정여부 확인 2. 주요 수출(생산)품목(5개 이내)에 대해 서류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확인서·국내제조확인서등원산지확인서류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원재료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수출품의 협정별·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프로세스 적정여부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2. 서류작성 적정여부 (품목별 소명서 및 소명자료, 사전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④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검증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자가 보관하여야 할 서류의 보관(전자서류, 스캔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제공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서류 - 수출신고필증, 거래 관련 계약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 해당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 대장 등 	시스템 설명서, 업무매뉴얼, 사전 검증결과 보고서 및 의견서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3.2, 2011.6.30, 2013.2.23.>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2의3.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3. 삭제 <2011.6.30.>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5.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2010.12.31, 2011.6.30, 2013.2.23.>

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 2013.2.23.>

⑥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 2011.6.30.>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⑭ 제6항,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별표1]에 따른 세관장에게 사업장별로 또는 법인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심사하여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2]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한-EFTA FTA협정문 부속서 I」

제16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이 인증 수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원산지신고서에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약속서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 하에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상품을 빈번하게 선적하는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2.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규정된 인증 수출자에게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수출자의 서명대신 원산지신고서에 사용하기로 합의될 수 있는 세관인증번호 또는 그 밖의 확인양식을 교부한다.
3.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인증제도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고, 수출자가 더 이상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제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한-EU FTA ‘원산지제품’ 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첫쪽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한-페루 FTA협정문 부속서 4가」

규칙5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상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 라 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보증을 권한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증 번호를 부여하며, 이 번호는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다.
 3.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를 서로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모든 변경사항을 그것이 발효하는 날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4.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언제라도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자국 국내 법령에 명기된 조건들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철회한다.
-

작성양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2.23)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	------	------	------

1.신청구분	[] 신규인증	[] 인증유효기간 연장
2.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 세관에서 기재

3.지정요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 예 [] 아니오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 예 [] 아니오
최근 2년간 속임수 등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작성발급 여부 [] 예 [] 아니오	

4. 주요 수출(생산)물품					
연번	품목번호(HS6단위)	품 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5.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E-mail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하
○ ○ 세 관 장

첨부서류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물품의 원산지소명서(원산지증명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제출시 생략 가능합니다)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뒤쪽)

작성 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1	신청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중 해당란에 [V] 표시합니다. 																		
2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 사업장이 여러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요건 해당란에 [V] 표시합니다. 																		
4	주요수출(생산)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기재한다.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 수출(생산)물품의 품명을 기재한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한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기재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원산지결정기준</th> <th style="text-align: center;">기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가. 완전생산 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 WO</td> </tr> <tr> <td>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 CC - CTH - CTSH</td> </tr> <tr> <td>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 BD - BU - MC - NC</td> </tr> <tr> <td>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 CTSH - BD</td> </tr> <tr> <td>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td> <td style="text-align: center;">-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td> </tr> <tr> <td>바. 주요공정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 SP</td> </tr> <tr> <td>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 <td style="text-align: center;">- OP</td> </tr> <tr> <td>아. 기타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 Other</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 으로 기재한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5	원산지 관리전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한다. 																		

작성방법

- 1) **신청구분** : “신규인증” 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중 해당란에 [V]표시 합니다.
- 2) **신청인** : 신청 대상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여러 개인 기업이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지정요건** : 서식에 명시된 6개 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해당란에 [V]표시 합니다.
- 4) **주요 수출(생산)물품** :
- 가. 품목번호 : 신청업체가 생산하는 주요 수출물품의 6단위 HS Code를 기재합니다.
 - 나. 품명 : 각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 다. 적용대상협정 : 인증을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라.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표에 제시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 (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마.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KR” 또는 “한국” 으로 기재합니다.

- 5) **원산지관리전담자** :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성명, 직위, 소속, 전화/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되, 다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작성사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3.2.23>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	------	------	------

1.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규인증 [] 인증유효기간 연장		
2.신청인	상 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사업자등록번호 012 - 345 - XXXX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대표자 성명 김 정 보
	전 화 번 호	031 - 600 - 0703	팩 스 번 호 031 - 600 - 0704
	E-mail 주소	origin@origin.go.kr	인 증 번 호 ※ 세관에서 기재

3.지정요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또는 원산지증명능력 보유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 아니오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원산지조사 거부 사실 여부 []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 위반 여부 []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최근 2년간 속임수 등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또는 작성발급 여부 []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4. 주요 수출(생산)물품

연번	품목번호(HS6단위)	품 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1	9004,10	선글라스	한-EU FTA	CTH	한국

5.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E-mail
1	정보원	대리	해외영업	031-600-0000	031-600-0001	origin@origin.go.k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신 청 인: 김정보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서울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4.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물품의 원산지소명서(원산지증명을 위한 전산처리시스템 현황자료 제출시 생략 가능합니다) 5.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6.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로 없음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3.2.23)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CERTIFICATE OF COMPANY-SPECIFIC APPROVED EXPORTER

- 상 호(Name of Company) :
- 주 소(Address) :
- 대 표 자(Representative) :
- 인 증 번 호(Customs Authorisation No.) :
- 인증유효기간(Validity Period) :

위 업체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7조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authorised as “Company-specific approved expor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년 월 일
(yyyy/mm/dd)

관 세 청 장
○ ○ 세 관 장

○ ○ Customs
The Republic of Korea

직 인
(to be sealed)

3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와 인증서

작성목적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연장)신청서 : 신청기업이 수출(생산)하고 있는 HS 6단위 기준 품목에 대해 특정 FTA협정에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증받으려는 경우 작성·제출
-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서 : 심사결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조건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 원산지관리 능력이 있음을 인증해주기 위함

구분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인증(연장) 신청서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	본부세관 및 평택세관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터키
인증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인증수출자 신청자	

※ 주의사항 :

원산지인증수출자는 모든 협정 및 품목에 대해 인증을 받는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와 해당협정의 인증받은 HS 6단위 수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는 품목별 원산지 인증수출자로 구분되며, 인증요건 및 혜택 등에 차이가 있다. 업체별 원산지 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지속적인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 유의가 필요하다.

또한 인증의 신청에 있어 인증 신청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원산지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심사하여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인증요건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고 있을 것
-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고 있을 것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인증신청 및 관할세관	관할구역
서울세관	서울세관, 안양세관, 속초세관, 대전세관, 천안세관, 청주세관, 구로세관, 성남세관, 의정부세관, 동해세관, 대산세관, 충주세관, 파주세관, 원주세관, 고성세관의 관할구역
부산세관	부산세관, 용당세관, 김해세관, 거제세관, 마산세관, 양산세관, 창원세관, 사상세관, 사천세관, 진주세관, 통영세관의 관할구역
인천세관	인천세관, 수원세관, 안산세관, 부평세관, 인천공항세관, 김포세관의 관할구역
대구세관	대구세관, 구미세관, 포항세관, 울산세관의 관할구역
광주세관	광주세관, 광양세관, 목포세관, 여수세관, 군산세관, 제주세관, 익산세관, 전주세관의 관할구역
평택세관	평택세관의 관할구역

인증수출자 협정별 혜택(협정에 따라 상이)

협정	인증수출자 혜택
한-EU	① (6천유로 미만 수출시)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세관인증번호 기재 시 수출자 서명의무 생략 ② (6천유로 초과 수출시) 세관인증수출자에 한해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가능
한-EFTA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에 세관인증번호 기재 시 수출자 서명의무 생략
한-페루	①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기관발급) ② 미화 2천달러 초과 수출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 작성 가능(자율발급 가능)
한-아세안	발급절차 간소화(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인도	발급절차 간소화(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한-싱가포르	발급절차 간소화(발급신청 시 첨부서류 제출 생략)

업체별 인증수출자 원산지증명능력 및 확인서류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에 기재된 HS 6단위 물품의 대표품목(HS6단위별)을 선정하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사전검증시 확인한 협정 · HS6단위 생략가능)
세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산공정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회사가 실존하고, 해당 품목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불인정 생산공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생산자로부터 최종수출물품을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제출받았는지 여부 및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원산지소명서 작성능력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수출(생산)품목(HS6단위별) 선정 원산지소명서 각 항목이 모두 기재되었는지 여부 원산지확인서가 정확하게 작성되고, 원산지소명서와 일치하는지 여부 원재료의 협정별 ·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수출품의 협정별 · 품목별 원산지기준이 정확한지 여부 (부가가치 기준 적용품목의 경우) 각 협정에서 정하는 재료비 가감요소가 정확하게 반영되었는지 여부 원산지 최종 판정결과가 정확한지 여부
확인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소명서, 원산지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사전검증결과보고서 및 의견서, 제품생산공정설명서 등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3.2.23.>

-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담당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삭제 <2011.6.30.>
-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6.30, 2013.2.23.>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3.>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인증서”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3년간”은 “2년간”으로 본다. <개정 2011.6.30, 2013.2.23.> [본조신설 2010.3.2.]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인증신청 세관)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법인 또는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별표1]에 따른 세관장에게 사업장별로 또는 법인으로 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가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때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일괄하여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인증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사업장 단위로 인증요건을 심사하고, 각각 인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의 원산지 관리를 총괄하는 경우에는 법인 단위로 심사하여 인증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심사) 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면 인증신청 품목(HS 6단위 기준)이 수출하고자 하는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한 자가 규칙 제7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인증요건에 충족하는지를 [별표 4]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내부원산지관리전담자가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격증을 갖춘 경우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지정요건에 대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한-EFTA FTA협정문 부속서 1」

제16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이 인증 수출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에 수기로 서명한 것과 같은 본인임을 확인하는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를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이 협정 하에서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 상품을 빈번하게 선적하는 수출 당사국의 수출자가 서명없이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인증할 수 있다.
2.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 규정된 인증 수출자에게 당사국들의 관세당국 간에 수출자의 서명대신 원산지신고서에 사용하기로 합의될 수 있는 세관인증번호 또는 그 밖의 확인양식을 교부한다.
3. 수출 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인증제도의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하여 검증할 수 있고, 수출자가 더 이상 인증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인증제도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언제든지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7조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자의 관세당국은 수출 당사자의 각 법과 규정의 적절한 조건에 따라 해당 제품의 가치와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이 협정에 따라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에게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와 이 의정서의 그 밖의 요건의 첫쪽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모든 보증을 관세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당국은 그들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3. 관세당국은 원산지신고서에 나타나는 세관인증번호를 인증수출자에게 부여한다.
4.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관세당국은 인증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관세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한-페루 FTA협정문 부속서 4가」

규칙5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자국 국내 법령에 따라 해당 상품의 가격과 관계없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수출자(이하 “인증수출자”라 한다)를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상품의 원산지 지위와 더불어 이 장 및 제3장(원산지 규정)에 따른 그 밖의 요건의 충족을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보증을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게 인증 번호를 부여하며, 이 번호는 원산지 신고서에 기재된다.
3.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의 인증 번호를 서로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모든 변경사항을 그것이 발효하는 날을 명시하여 사전에 통지한다.
4.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에 의한 인증의 사용을 감독한다.
5. 수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언제라도 인증을 철회할 수 있다. 권한 있는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자국 국내 법령에 명기된 조건들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달리 인증을 부정확하게 사용하는 경우, 인증을 철회한다.

작성양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2.2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	------	------	------

1.신청구분	[] 신규인증	[] 인증유효기간 연장
--------	----------	---------------

2.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 세관에서 기재

3.지정요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및 관리 여부 [] 예 []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여부 [] 예 [] 아니오

4.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연번	품목번호(HS6단위)	품 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5.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E-mail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〇 〇 세 관 장

첨부서류	1.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뒤쪽)

작성 방법

번호	기재항목	기재내용																		
1	신청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중 해당란에 [V] 표시합니다. 																		
2	신청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 성명, 전화 및 팩스 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 사업장이 여러 개인 업체가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3	지정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요건 해당란에 [V] 표시합니다. 																		
4	원산지인증 대상 신청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의 6단위 품목번호를 기재한다. HS 6단위에 해당하는 주요물품의 품명을 기재한다. 해당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명칭을 기재한다. (예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등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데 적용된 기준을 아래의 표에 정한 방법으로 기재한다.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60%;">원산지결정기준</th> <th style="width: 40%;">기재방법</th> </tr> </thead> <tbody> <tr> <td>가. 완전생산 물품</td> <td>- WO</td> </tr> <tr> <td>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td> <td>- CC - CTH - CTSH</td> </tr> <tr> <td>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td> <td>- BD - BU - MC - NC</td> </tr> <tr> <td>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td> <td>- CTSH - BD</td> </tr> <tr> <td>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td> <td>-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td> </tr> <tr> <td>바. 주요공정기준</td> <td>- SP</td> </tr> <tr> <td>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td> <td>- OP</td> </tr> <tr> <td>아. 기타기준</td> <td>- Other</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KR” 또는 “한국” 으로 기재한다. ※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이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5	원산지 관리전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및 팩스번호,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 원산지관리전담자가 다수일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작성방법

- 1) **신청구분** : “신규인증” 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 중 해당란에 [V]표시 합니다.
- 2) **신청인** : 신청 대상 사업장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여러 개인 기업이 사업장 단위로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각각 기재하여야 합니다.
- 3) **지정요건** : 서식에 명시된 4개 요건에 대한 충족여부를 해당란에 [V]표시 합니다.
- 4)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
- 가. 품목번호 :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물품의 6단위 HS Code를 기재합니다.
 - 나. 품명 : 각 품목번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품명을 기재합니다.
 - 다. 적용대상협정 : 인증을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 라. 원산지결정기준 : 물품의 적용받고자 하는 FTA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아래표에 제시된 방법으로 기재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가. 완전생산 물품	- WO
나. 세번변경기준 - 2단위세번변경기준 - 4단위세번변경기준 - 6단위세번변경기준	- CC - CTH - CTSH
다. 부가가치기준 - 공제법을 적용한 경우 - 집적법을 적용한 경우 - 역외산재료최대허용법을 적용한 경우 - 순원가법을 적용한 경우	- BD - BU - MC - NC
라. 선택기준 - 실제 선택한 기준 예) 6단위세번변경기준을 선택한 경우 공제법에 따른 부가가치기준을 선택한 경우	- CTSH - BD
마. 결합기준 -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CC(CTH또는CTSH) + BD(BU, MC 또는 NC)
바. 주요공정기준	- SP
사. 역외가공기준(개성공단 생산물품)	- OP
아. 기타기준	- Other

마.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KR” 또는 “한국” 으로 기재합니다.

- 5) **원산지관리전담자** :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성명, 직위, 소속, 전화/팩스번호 및 E-mail 주소를 기재하되, 다수인 경우 별지에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작성사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개정 2013.2.2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연장) 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 일
------	------	------	------

1. 신청구분 [] 신규인증 [] 인증유효기간 연장

2. 신청인	상 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사업자등록번호	012 - 345 - XXXX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대표자 성명	김 정 보
	전 화 번 호	031 - 600 - 0703	팩 스 번 호	031 - 600 - 0704
	E-mail 주소	orgin@orgin.go.kr	인 증 번 호	※ 세관에서 기재

3. 지정요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여부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신청품목이 해당 협정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상 비치 및 관리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 원산지전문가 포함) 지정 및 운영 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 원산지인증대상 신청물품					
연번	품목번호(HS6단위)	품 명	적용대상협정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1	1512.29	해바라기씨유	한-EU FTA	CTH	한국

5. 원산지관리전담자						
연번	성명	직위	소속부서	전화	팩스	E-mail
1	정보원	대리	해외영업	031-600-0000	031-600-0001	orgin@orgin.go.kr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연장)을 신청합니다.

2013년 9월 10일

신청인: 김정보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귀 하
서 울 세 관 장

첨부서류	1. 원산지인증 신청품목별 원산지소명서 2.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 한정합니다) 3.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제출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3서식] (개정 2013.2.23)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CERTIFICATE OF PRODUCT-SPECIFIC APPROVED EXPORTER

- 상 호(Name of Company) :
- 주 소(Address) :
- 대 표 자(Representative) :
- 인 증 번 호(Customs Authorisation No.) :
- 인증유효기간(Validity Period) :

원산지인증 물품내역(List of Certified Products)

적용대상협정 (Applicable Agreement)	품목번호(6단위) (HS Code)	품 명 (Description)	원산지 결정기준 (Origin Criteria)

위 업체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합니다.

We hereby certify that, the above company is authorised as “Product-specific approved export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s’.

년 월 일
(yyyy/mm/dd)

관 세 청 장
○ ○ 세 관 장

○ ○ Customs
The Republic of Korea

직 인
(to be sealed)

3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작성목적

- 인증수출자가 인증심사 당시와 비교하여 대표자의 성명·주소·사업자등록번호와 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인증수출자	관세청장이 정한 세관장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터키

※ 인증사항 변경신고

인증업체는 인증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이 인증을 취득하여야 함에 주의가 필요하다.

- ①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 변경
- ②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 ③ 품목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인증품목에 대한 HS코드 오류가 있거나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3~4.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6.30, 2013.2.23>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3>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1항부터 제14항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 3서식의 인증서”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3년간”은 “2년간”으로 본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인증사항 변경신고) ① 규칙 제7조제5항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사항의 변경신고는 제14조에서 정하는 관할세관장에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개인 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거나, 법인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등 기업의 분할, 인수합병 등으로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2. 품목별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품목에 대한 HS번호 오류가 있거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품목의 변경 등 인증사항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 경우

작성양식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2.2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세관장 귀 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변경 또는 추가 내역 증거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세관장 귀 하

직인

귀하

작성방법

- 1) **신청인** : 변경내용을 신청하는 기업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팩스번호, E-mail 및 취득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합니다.
- 2) **구분** : 인증취득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항목별로 구분하고 변경전 사실과 변경 후 사실을 각각 기재합니다.

예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대표자명	홍 길 동	홍 길 순

작성사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3.2.2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 일	
신청인	상 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사업자등록번호	012 - 345 - XXXXX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대표자 성명	정 보 원
	전 화 번 호	031 - 600 - 0703	팩 스 번 호	031 - 600 - 0704
	E-mail 주소	origin@origin.go.kr	인 증 번 호	KU203202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상호변경	한국원산지정보원	국제원산지정보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5항 또는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의 변경내용을 신고합니다.

2013년 9 월 10 일

신청인 : 김 정보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서 울 세 관 장 귀 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변경 또는 추가 내역 증거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상호, 대표자, 주소 등 변경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김 정보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변경신고사항을 수리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O O 세 관 장 귀 하

직인

귀하

3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작성목적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을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인증수출자	관세청장이 정한 세관장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터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3.2, 2011.6.30, 2013.2.23>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2의3.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3. 삭제 <2011.6.30>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5.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2010.12.31, 2011.6.30, 2013.2.23>

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절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 2013.2.23>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
-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 2011.6.30>
-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3>
-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2, 2013.2.23>
- ⑭ 제6항,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0.3.2, 2013.2.23>

제7조의2(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1.6.30, 2013.2.23>

1.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을 수출하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3~4.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1.6.30, 2013.2.23>

1.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청서
2. 원산지인증 신청품목(품목번호 6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별 원산지소명서. 다만,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원산지를 확인한 물품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수출하는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인증물품의 종류가 변경되었거나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2.23>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6.30>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⑥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있거나,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1.6.30>

⑦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및 인증취소 등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제4항, 제6항, 제8항 및 제11항부터 제1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7조제3항** 본문 중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는 “별지 제4호의3 서식의 인증서”로,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3년간”은 “2년간”으로 본다.

작성양식

[본조신설 2010.3.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개정 2013.2.2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 일
------	------	------	-----

신청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

신청인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팩 스 번 호
	E-mail 주소	인 증 번 호

재발급 사유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2항 또는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세관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작성방법

- 1) **신청구분**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와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중 재발급 신청기업이 재발급받고자 하는 인증종류의 해당란에 [V] 표시 합니다.
- 2) **신청인** :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는 기업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성명, 전화/팩스번호, E-mail 및 취득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합니다.
- 3) **재발급사유** : 인증서를 재발급받고자 하는 사유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작성사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3.2.23>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 일
------	------	------	-----

신청구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input type="checkbox"/>]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	--

신청인	상 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사업자등록번호	012-345-XXXX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대표자 성명	정 보 원
	전 화 번 호	031-600-0703	팩 스 번 호	031-600-0704
	E-mail 주소	origin@origin.go.kr	인 증 번 호	KU203202

재발급 사유

상기 업체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분실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2항 또는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13 년 9 월 10 일

신청인: 김 정보 (서명 또는 인)

관 세 청 장

서울세관장

귀 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	-----	----

34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작성목적

-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6조제5항에 따라 FTA관세특례법시행령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진실성을 확인하고 당해 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책임 질 것을 약속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원산지인증수출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 주의사항

동 서면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원산지인증수출자가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 상에 서명을 생략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7조(인증신청 제출서류)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인증을 신청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한다) 제7조제2항에서 정하는 서류
2.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가 규칙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산지관리를 위한 전산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현황 자료(전산처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원산지관리 업무매뉴얼)

② 규칙 제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서면확인서는 별지 제1호와 같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3(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에 의한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등) ①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이라 한다)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작성·서명한 것으로 한다. 다만, 유럽연합당사자와의 협정 중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이하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라 한다) 제16조제5항에 따라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 인증수출자가 상업송장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서면확인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사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3.2.23>

1.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17조 및 영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원산지인증수출자
2. 추가가격이 6천유로[유로화 외의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유럽연합당사자(이하 “유럽연합당사자”라 한다)의 자국통화로 작성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이 게시하는 금액을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물품의 수출자. 이 경우 물품의 추가가격은 단일의 운송서류(운송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송품장을 말한다)에 의하여 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송부된 물품의 추가가격(단일 수출자로부터 단일 수하인에게 동시에 송부된 물품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동시에 송부된 물품 가격의 합계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② 관세청장은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제25조에 따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매년 10월 15일까지 대한민국에 통보하는 제1항제2호의 6천유로에 상당하는 유럽연합당사자의 자국통화로 환산된 금액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지체 없이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게시한 금액은 게시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작성양식

[별지 제1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신청자	상 호	
	주 소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	

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

1.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후 발행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 일체
2.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시행규칙 제7조제2항(또는 제7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서류

년 월 일

제 출 자 (인 또는 서명)

○ ○ 세관장 귀하

※ 동 서면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작성방법

- 1) **신청자** : 신청자란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 주소, 사업자번호, 대표자성명을 기재합니다.
 - 2) **제출자** : 제출자란에는 대표자의 성명과 일자를 기재하고 대표자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

작성사례

[별지 제1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서면확인서		
신청자	상 호	국제원산지정보원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사업자번호	012-345-XXXX
	대표자성명	김정보
<p>상기 본인은 다음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약속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후 발행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 확인서류) 일체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시행규칙 제7조제2항(또는 제7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서류 <p>2013 년 7 월 7 일</p> <p style="text-align: right;">제 출 자 김국제 (인 또는 서명)</p> <p>서울 세관장 귀하</p>		
<p>※ 동 서면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상대국과의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자율증명에 필요한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p>		

35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작성목적

- 관할세관 변경신청서 :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관할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
- 관할세관 변경승인서 : 세관장이 신청인의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승인하는 경우 신청서 하단의 승인란에 승인일자과 직인을 날인하고 신청인에게 교부

구분	작성주체	제출처
관 할 세 관 변 경 신 청 서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관 할 세 관 변 경 승 인 서	세관장	원산지인증수출자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 제14조(관할세관 및 변경절차) ①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그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자율원산지증명물품이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따른 관할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관할세관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신청을 접수한 세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인에게 관할세관변경승인서를 교부하고 변경된 관할세관장에게 신청인의 인증심사 자료를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4호 서식]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 호		사업자 번호		
	주 소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인증번호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세 관					
신청 사유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서명 또는 인)</p> <p>○○세관장 귀하</p>					
<p>위와 같이 변경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세관장</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display: inline-block; padding: 2px 10px;">직인</div>					

작성방법

1) 신청인

- 상호 : 사업장등록증 및 인증수출자 인증서상의 상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주소 :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 인증신청 당시의 주소를 기재하되 인증후 주소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전화/팩스번호 :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 이메일 : 담당자의 e-mail 주소를 기재합니다.
- 인증번호 : 취득한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합니다.

2) 구분

- 변경전 세관 : 현재의 관할세관을 기재합니다.
- 변경후 세관 : 변경을 희망하는 관할세관을 기재합니다.

3) 신청사유

- 변경 사유 : 관할세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를 간략히 기재합니다.
-

작성사례

[별지 제4호 서식]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원산지인증수출자 관할세관 변경신청(승인)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 호	(주)정보원	사업자 번호	123-45-XXXX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대표자 성명	이국제
	전화번호	031-600-0000	팩스번호	031-600-0001
	이메일주소	Kunje@Origin.com	인증번호	Kr/12/33/21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세 관	부산세관		서울세관	
신청 사유	사업장 이전에 따른 관할세관 변경 필요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에 따라 관할세관 변경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3년 2월 9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 이국제 (서명 또는 인)</p> <p>부 산 세 관 장 귀하</p>				
<p>위와 같이 변경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산 세 관 장 직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36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작성목적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 원산지인증수출자 요건 유지여부에 대해 자율점검 후 결과를 통보하기 위함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에 첨부된 표로 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원산지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및 자율점검표 다운로드 방법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자료실 ⇒ 서식모음 ⇒ 인증수출자제도 ⇒ 14번(별지 제5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15번(별지 제6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14번 및 15번 서류 모두 작성)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및 인증유효기간 연장) ① 관할세관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원산지인증수출자에게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안내 할 수 있다.

② 관할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7조 제1항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심사하여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다.

③ 원산지인증수출자는 규칙 제7조제1항 또는 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년 이내에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를 인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이상이 없는 것으로 세관장이 확인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사를 간이하게 하고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불구하고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인증유효기간 만료일이 되기 전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을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도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를 하지 아니하고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세관장이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라 원산지사전검증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2. 세관장이 법 제13조에 따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충족으로 판명된 경우
3. 세관장이 제17조에 따라 인증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자율점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내에 검토의견을 회신하고 그 내용을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보완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1조의 보정요구절차를 준용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원산지인증수출자 사후관리)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선별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후관리대상업체를 선정하고 필요한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사무실, 생산공장 등 현지확인을 통하여 인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있다.

1. 국제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2. 인증품목의 생산공정이 변경된 경우
 3. 인증품목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경우
 4. 세관의 위험관리 분석결과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위험관리 대상업체로 선정된 경우
 5.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사항 변경에 관한 정보 또는 첩보를 입수한 경우
 6.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2조의 현지확인절차를 준용한다.
- ③ 현지확인을 실시한 세관공무원은 별지 제7호 서식으로 현지확인 결과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고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인증수출자가 현지확인에 불응·방해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때에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검토
- ⑤ 원산지인증수출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실시한 부서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 관리담당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12장의 관세조사(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기업심사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 심사(탈루세액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조사 또는 사전검증을 실시한 경우

작성양식

[별지 제5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① 인증번호 :			② 인증차수 :			
③ 기본 정보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태/종목			
	주 소					
	연락처	이메일 :	전화번호 :			
④ 인증 관련		HS 6단위	품명	협정	원산지기준	
인증 품목 (필요시 별지 기재)						
원산지관리전담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	
					이메일	
⑤ FTA 활용/ 미활용	FTA C/O 발급	협정명	건수	적용 금액(통화)	비고	
		한-EU FTA			제출일 전달 기준 최근 1년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FTA FTA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FTA 미활용	협정명	미활용 사유/ 애로사항(인증받은 협정에 한함)			
		한-EU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FTA FTA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⑥ 원산지 인증변경 등 이력관리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사유발생	신고일
상 호				
대표자 성명				
주 소				
원산지관리전담자				

※ 위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⑦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력관리 (최근 1년)

일자	시간	교육시행기관	교육과정명	교육이수자	비고

⑧ 원산지 관련 건의사항

첨부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자율관리 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 ○ 세 관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1. 수출입 통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1-1. HS 6단위 기준으로 전체 수출입 품목 수는 몇 개인가?	수입 개 수출 개
1-2. FTA 체결국 중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가를 모두 기재하시오. * EU는 국가명이 아니므로 독일, 프랑스 등으로 기재	

2. 인증사항 변경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2-1. 인증품목 중 원재료가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		
2-2. 원재료의 변경으로 완제품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품목이 있는가?		
2-3. 인증일 이후 품목번호(HS6단위)가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		
2-4. 인증품목중 원산지결정기준(PSR)이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		

3. 원산지관리전담자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3-1.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인원수를 기재하시오.			명
3-2.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외부전문가인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되었는가?			
3-3.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교육이수 등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는가?			

4.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4-1.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는가?		
4-2. 부서명 · 직책 · 성명 · 지정일자 등 기재사항은 정확한가?		
4-3. 서명카드에 등재되지 않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을 했는가?		
4-4. 자필로 서명을 했는가?		

5. 원산지기준 관리

(5-2, 5-3은 인증받은 품목의 원재료에 중간재를 지정했을 때 작성)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5-1. 수출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는 정확한가?			
5-2. 중간재로 지정된 물품의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는가? (※중간재 : 부가가치기준일 때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5-3. 지정된 중간재의 원산지기준이 충족하는가?			

6. 원산지증명서 관리(6-1~6-3은 인증받은 협정에 대해 작성)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6-1. 한-EU FTA ①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송품장에 구분표시를 했는가?			
② 인증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가?			
③ 원산지증명서에 발급일자 및 장소를 기재했는가?			
6-2. 한-EFTA FTA : ① 인증수출자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가?			
6-3. 한-아세안, 한-인도 C/O : ① 물품의 생산자가 여럿인 경우 물품별로 표기했는가?			
② C/O 인쇄 후, 수출자 신고란에 서명권자의 친필로 서명했는가?			
6-4.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원산지관리전담자에 의해 작성 · 관리되고 있는가?			
6-5.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는가?			
6-6.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한 사실이 있는가?			
6-7.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정통보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6-8. 인증받지 않은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한 사실이 있는가?			
6-9. 인증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가?			
6-10.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7. 원산지(포괄)확인서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7-1. 발급하여 제공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몇 건인가?		건	
7-2.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확인기간이 경과되었는가? 경과되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시오.			
7-3.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원재료 또는 수출물품의 공급자가 변경되었는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이후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주는가?			
7-4.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작성자의 성명·서명 등이 기재되었는가?			
7-5.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확한가?			
7-6.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업체에 원산지관리 방법을 지원하는가?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는가?			
7-7.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관리하는가?			

8. 제조공정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8-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를 구비하고 있는가?		
8-2. 해외에도 생산공장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인증품목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가?		
8-3. 생산공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가?		
8-4.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가? (※ 불인정공정의 범위 : 단순조립작업, 최초의 물품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의 혼합, 포장개선 작업 등)		
8-5. 제조공정도의 작성일자과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는가?		

9. 서류 보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9-1.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가?		
9-2. 원재료 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9-3. 보관하고 있는 증빙자료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가?		

※ 10~12 항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10. 원산지소명서(기관발급 원산지 증명 신청분에 한함)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0-1. 원산지소명서와 송품장의 품명규격이 동일한가?		
10-2. 제품의 품목번호(HS 코드)의 결정방법을 선택하여 기재하시오. ①관세청 품목분류 질의 ② 관세사의 품목분류 의견서 ③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④ 해외 거래처의 요청 ⑤ 당사 수출입 품목 ⑥ 해외 품목분류 사례		
10-3. 물품명세의 물품가격을 협정에 따라 조정했는가? (EXW : 한-EU, 한-EFTA, FOB : 한-아세안, 한-인도 등)		
10-4. 원재료명세서에 투입된 원재료를 빠짐없이 기재했는가?		
10-5. 작성자의 성명 · 서명 등이 기재되었는가?		

11. 원재료 관리(생산자에 한함)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1-1.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원재료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가?		
11-2. 적용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관리기법을 기재하시오.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		
11-3. 완성품과 HS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부분품)가 있는가? 있다면 관리방법을 기재하시오.		

12. 원가관리(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2-1. 협정에서 정한 가격기준(EXW 또는 FOB)을 바르게 적용하여 제품가격을 산출했는가?		
12-2. 원가배분방식을 바르게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했는가?		
12-3.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 등을 적정하게 책정했는가?		
12-4. 수입산 원재료의 가격을 CIF가격으로 책정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시오.		

작성방법

1.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 1) **인증번호** : 점검표 작성기업이 취득한 인증수출자 인증번호를 기재합니다.
- 2) **인증차수**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제출 차수를 기재합니다.
- 3) **기본정보**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상의 업체명, 대표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태/종목, 담당자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4) **인증관련** : 인증 받은 모든 품목의 정보를 6단위 HS Code, 품명, 해당 협정, 원산지기준의 순으로 정확히 기재합니다. 다만,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대표적인 수출품목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원산지전담자 :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성명, 소속, 직책, 전화번호 및 이메일을 기재합니다.
- 5) **FTA 활용/미활용**
 - FTA C/O 발급 : 자율점검 결과통보서 제출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의 협정별 활용 건수와 적응금액을 기재합니다.
 - FTA미활용 : 인증을 받은 협정에 한해 FTA 미활용 사유와 애로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 6) **원산지 인증 변경 등 이력관리**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당시와 비교하여 해당 항목(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원산지관리전담자)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해당 내역에 변동이 있을 경우 FTA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 7)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력관리** : 원산지관리전담자의 교육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최근 1년간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업무역량 강화 등을 위해 실시한 교육내역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8) **원산지 관련 건의 사항** : 원산지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이라도 관세당국에 건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 해당 서식 참조

- 1) **수출입통관** : 전체 수출입 품목수를 HS 6단위 기준으로 파악하여 수입물품 개수와 수출물품 개수를 기재하고, FTA체결국 중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가를 모두 기재합니다. EU에 대한 수출입이 있을 경우 28개 회원국을 개별 국가 단위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2) **인증사항변경** : 각 질문 항목에 대해 사실대로 해당 란에 [V]로 표시합니다.
- 3) **원산지관리전담자** : 현재 자사가 채용 중인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인원수를 기재하고 해당 질문 항목에 사실대로 해당 란에 [V]로 표시합니다.
- 4)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9) 서류보관** : 각 질문 항목에 대해 사실대로 해당 란에 [V]로 표시합니다.
- 10) **원산지소명서~12) 원가관리(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 해당하는 경우 각 질문 항목에 대해 사실대로 해당 란에 [V]로 표시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5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 결과 통보서						
① 인증번호 : 120-11-230587			② 인증차수 : 001			
③ 기본 정보	업체명	국제무역	사업자등록번호	456-56-XXXXX		
	대표자	김국제	업태/종목	제조업/광학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연락처	이메일 : kj@origin.or.kr		전화번호 : 031 600 0000		
④ 인증 관련	HS 6단위	품명	협정	원산지기준		
인증 품목 (필요시 별지 기재)	9004.90	안경	한-EU	CTH		
	9004.90	안경	한-인도	CTSH +RVC35%		
원산지관리전담자	성명	소속	직책	전화	이메일	
	최안경	국제무역 영업부	대리	0316000005	ak@origin.or.kr	
⑤ FTA 활용/ 미활용	FTA C/O 발급	협정명	건수	적용 금액(통화)	비고	
		한-EU FTA	2	US\$35,600	제출월 전월 기준 최근 1년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1	US\$50,000		
		한-EFTA FTA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FTA 미활용	미활용 사유/ 애로사항(인증받은 협정에 한함)				
		협정명				
		한-EU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FTA FTA				
		한-싱가포르 FTA				
한-페루 FTA						

⑥ 원산지 인증변경 등 이력관리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사유발생	신고일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원산지관리전담자	김국내	최안경	전담자 사직	13.10.1

※ 위 항목 중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

⑦ 원산지관리전담자 교육이력관리 (최근 1년)

일자	시간	교육시행기관	교육과정명	교육이수자	비고
13.7.1	3	서울본부세관	FTA활용	최안경	
13.8.2	8	국제원산지정보원	원산지관리실무	최안경	

⑧ 원산지 관련 건의사항

첨부 :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6조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자율관리 결과를 제출합니다.

2013 년 10 월 10 일

제출자 김 국 제 (서명)

명판 및 도장

서울세관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원산지인증수출자 자율점검표

1. 수출입 통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1-1. HS 6단위 기준으로 전체 수출입 품목 수는 몇 개인가? 전체 수출입 품목수를 HS 6단위 기준으로 파악하여 기재합니다.	수입 2 개 수출 3 개
1-2. FTA 체결국 중 수출입 실적이 있는 국가를 모두 기재하시오. * EU는 국가명이 아니므로 독일, 프랑스 등으로 기재 FTA체약국 중 수출입 거래를 하고 있는 국가명을 기재합니다.	영국, 독일

2. 인증사항 변경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2-1. 인증품목 중 원재료가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		V
2-2. 원재료의 변경으로 완제품의 원산지가 변경되는 품목이 있는가?		V
2-3. 인증일 이후 품목번호(HS6단위)가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		V
2-4. 인증품목중 원산지결정기준(PSR)이 변경된 품목이 있는가?		V

3. 원산지관리전담자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없음
3-1. 원산지관리전담자의 인원수를 기재하시오.			명
3-2. 원산지관리전담자가 외부전문가인 경우 계약기간이 경과되었는가?			V
3-3. 원산지관리전담자가 교육이수 등 자격요건을 유지하고 있는가?	V		

4.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4-1.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를 작성 관리하고 있는가?	V	
4-2. 부서명 · 직책 · 성명 · 지정일자 등 기재사항은 정확한가?	V	
4-3. 서명카드에 등재되지 않은 자가 원산지증명서에 서명을 했는가?		V
4-4. 자필로 서명을 했는가?	V	

5. 원산지기준 관리

(5-2, 5-3은 인증받은 품목의 원재료에 중간재를 지정했을 때 작성)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5-1. 수출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는 정확한가?	√		
5-2. 중간재로 지정된 물품의 수출자가 직접 생산하는가? (※중간재 : 부가가치기준일 때 최종제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를 사용하여 최종제품 생산자가 직접 생산한 재료)	√		
5-3. 지정된 중간재의 원산지기준이 충족하는가?	√		

6. 원산지증명서 관리(6-1~6-3은 인증받은 협정에 대해 작성)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6-1. 한-EU FTA			
① 비원산지 물품이 혼재된 경우 송품장에 구분표시를 했는가?	√		
② 인증받지 아니한 품목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했는가?		√	
③ 원산지증명서에 발급일자 및 장소를 기재했는가?	√		
6-2. 한-EFTA FTA :			
① 인증수출자 번호를 정확히 기재했는가?	√		
6-3. 한-아세안, 한-인도 C/O :			
① 물품의 생산자가 여럿인 경우 물품별로 표기했는가?	√		
② C/O 인쇄 후, 수출자 신고란에 서명권자의 친필로 서명했는가?	√		
6-4.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이 원산지관리전담자에 의해 작성·관리되고 있는가?	√		
6-5. 원산지증명서를 소급하여 발급한 사실이 있는가?		√	
6-6. 원산지증명서를 재발급한 사실이 있는가?		√	
6-7. 자율발급한 원산지증명서에 대하여 수정통보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6-8. 인증받지 않은 품목의 원산지증명서를 자율발급한 사실이 있는가?		√	
6-9. 인증품목 중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는 품목이 있는가?		√	
6-10.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7. 원산지(포괄)확인서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7-1. 발급하여 제공한 원산지(포괄)확인서는 몇 건인가?		건	
7-2.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의 포괄확인기간이 경과되었는가? 경과되었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십시오.		√	
7-3.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원재료 또는 수출물품의 공급자가 변경되었는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이후 원산지결정기준에 영향을 주는가?		√	
7-4.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작성자의 성명·서명 등이 기재되었는가?	√		
7-5. 제공받은 원산지(포괄)확인서에 기재된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확한가?	√		
7-6.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업체에 원산지관리 방법을 지원는가? 지원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는가?	√		교육지원
7-7.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관리하는가?	√		

8. 제조공정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8-1.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제품의 제조공정도를 구비하고 있는가?	√	
8-2. 해외에도 생산공장이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인증품목과 동일한 물품을 생산하는가?		√
8-3. 생산공정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지는가?	√	
8-4. 불인정공정에 해당하는가? (※ 불인정공정의 범위 : 단순조립작업, 최초의 물품 특성이 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산지가 상이한 물품의 혼합, 포장개선 작업 등)		√
8-5. 제조공정도의 작성일자와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는가?	√	

9. 서류 보관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9-1.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보관하고 있는가?	√	
9-2. 원재료 명세서를 정확하게 작성·관리하고 있는가?	√	
9-3. 보관하고 있는 증빙자료로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가?	√	

※ 10~12 항목은 해당되는 경우에만 작성

10. 원산지소명서(기관발급 원산지 증명 신청분에 한함)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0-1. 원산지소명서와 송품장의 품명규격이 동일한가?	√	
10-2. 제품의 품목번호(HS 코드)의 결정방법을 선택하여 기재하시오. ① 관세청 품목분류 질의 ② 관세사의 품목분류 의견서 ③ 유사물품 품목분류 사례 ④ 해외 거래처의 요청 ⑤ 당사 수출입 품목 ⑥ 해외 품목분류 사례		⑤
10-3. 물품명세의 물품가격을 협정에 따라 조정했는가? (EXW : 한-EU, 한-EFTA, FOB : 한-아세안, 한-인도 등)	√	
10-4. 원재료명세서에 투입된 원재료를 빠짐없이 기재했는가?	√	
10-5. 작성자의 성명·서명 등이 기재되었는가?	√	

11. 원재료 관리(생산자에 한함)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1-1. 원산지별로 구분하여 원재료의 재고관리를 하고 있는가?	√	
11-2. 적용하고 있는 원재료 재고관리기법을 기재하시오.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등)		선입선출법
11-3. 완성품과 HS 4단위가 동일한 원재료(부분품)가 있는가? 있다면 관리방법을 기재하시오.		√

12. 원가관리(부가가치기준 적용품목)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예	아니오
12-1. 협정에서 정한 가격기준(EXW 또는 FOB)을 바르게 적용하여 제품가격을 산출했는가?	√	
12-2. 원가배분방식을 바르게 적용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했는가?	√	
12-3. 판매비와 관리비, 이윤 등을 적정하게 책정했는가?	√	
12-4. 수입산 원재료의 가격을 CIF가격으로 책정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사유를 기재하시오.	√	

2. 세관 등 발급기관 작성서식

☀ 📄

37 보정요구서

작성목적

- 세관장이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내용을 보정요구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세관장	인증수출자 신청자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보정요구)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5이상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보정요구를 하여야 한다.

1. 보정기간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할 사항
4. 보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 처리내용

② 세관장은 신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3.2, 2011.6.30, 2013.2.23>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2의3.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3. 삭제 <2011.6.30>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5.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2010.12.31, 2011.6.30, 2013.2.23>

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

-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 2013.2.23>
-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
-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 2011.6.30>
-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2, 2013.2.23>

⑭ 제6항,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2호 서식] 보정요구서

보 정 요 구 서	
신청자	상 호
	대 표 자
	주 소
보 정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보정을 요하는 사유	
보 정 할 사 항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귀하의 년 월 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 건에 대해 위와 같이 보정을 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〇〇세관장</p>	
<p>※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증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보정요구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p>	

38 현지확인 통보서

작성목적

- 원산지인증수출자 확인을 위하여 현지확인할 것을 통보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세관장	인증수출자 신청자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2조(현지확인) ① 세관장은 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현지확인을 하려는 때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1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현지확인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현지확인 기간에 대하여 신청인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현지확인 예정일 이전에도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1. 현지확인을 하려는 이유
 2. 현지확인 기간 및 방문자
 3. 현지확인 대상 및 내용
 4. 신청인이 현지확인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조치할 사항
-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세관장이 통지한 기간에 현지확인을 받기가 곤란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현지확인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현지확인을 시작하기 5일전까지 연기 받고자 하는 기간과 연기이유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세관장은 신청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3.2, 2011.6.30, 2013.2.23>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2의3.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할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3. 삭제 <2011.6.30>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5.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2010.12.31, 2011.6.30, 2013.2.23>

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 2013.2.23>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 2011.6.30>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⑭ 제6항,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0.3.2, 2013.2.23.>

작성양식

[별지 제3호 서식] 현지확인 통보서

현 지 확 인 통 보 서		
신청 업체	상 호	
	대표자	
	주 소	
현지확인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 (일간)	
현지확인 사유		
방 문 자	[소속]	[성명]
현지확인대상 및 확인내용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귀하의 년 월 일 원산지인증수출자 신청건에 대해 위와 같이 현지확인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 세 관 장</p>		
<p>※ 정당한 이유 없이 현지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 현지확인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p>		

39 시정요구서

작성목적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시정할 사항에 대해 요구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세 관 장	인증수출자 신청자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 원산지인증수출자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시정요구) 규칙 제7조제9항 및 규칙 제7조의2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수출자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이하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10.3.2, 2011.6.30, 2013.2.23>

1. 수출 또는 생산하는 물품의 제12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거나 증명할 능력이 있는 자
2. 영 제9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비치·관리하고,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원산지관리전담자(외부의 원산지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지정·운영하는 자
 - 2의2. 최근 2년간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실이 없는 자
 - 2의3. 최근 5년간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의 보관의무(보관요구를 받고 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 자
3. 삭제 <2011.6.30>
4. 최근 2년간 속임수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거나 작성·발급한 사실이 없는 자
5. 삭제 <2011.6.30>

② 제1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2010.12.31, 2011.6.30, 2013.2.23>

1.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2. 수출자가 수출 또는 생산하는 주요 품목의 원산지소명서.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산처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 자는 그 전산처리시스템의 현황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원산지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원산지확인서(최종물품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로서 해당 물품의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4.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정보 및 국내제조확인서(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출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인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인증 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3.2>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 받은 서류가 미비하거나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하거나 현지확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기간은 제3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3.2>

⑤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는 상호·주소·대표자 성명·원산지관리전담자 등 인증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이 정하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의 합병·분할, 폐업 후 기업 신설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동일성 및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2, 2013.2.23>

⑥ 제5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사항 변경신고수리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⑦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3.2>

⑧ 제7항에 따른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인증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3항에 따라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인증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신청을 받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면 그 인증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으며,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⑨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주고 시정하도록 할 수 있으며,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⑩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가 제1항제2호의2·제2호의3 및 제4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면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관세청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세관장은 관세청장,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및 증명서발급기관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3.2, 2011.6.30>

⑪ 제9항 또는 제10항에 따라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2>

⑫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분실·도난·훼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신청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 재발급 신청서를 당초 원산지인증수출자로 인증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2.23>

⑬ 제1항부터 제1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 인증유효기간 연장, 인증서의 재발급, 시정명령, 인증취소 및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의 인증요건 확인기준·확인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2, 2013.2.23>

⑭ 제6항, 제8항 후단, 제9항 및 제10항의 경우 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개정 2010.3.2, 2013.2.23.>

작성양식

[별지 제8호 서식] 시정요구서

시 정 요 구 서		
인증 업체	상 호	
	대 표 자	
	주 소	
	인증번호	
시 정 기 간	20 년 월 일 ~ 월 일까지(일간)	
시정을 요하는 사유		
시 정 사 항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귀하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요건 충족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시정요구하오니 기간 내에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〇〇세관장</p>		
<p>※ 시정기간 내에 시정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시정요구에 대한 문의처 : 00세관 00과 담당자 000 (☎)</p>		

PART 3.
원산지검증 · 수입
관련 서식

KOREA
CUSTOMS
SERVICE



1. 수출입자 등 민원인 작성서식

FTA

40 조사연기승인(신청서)

작성목적

- 조사연기신청서 : FTA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원산지조사를 통보받은 피조사자가 서면조사/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
- 조사연기승인서 : 원산지조사 대상자의 연기신청에 대해 당해 신청을 승인하기 위함

구분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조사연기 신청서	조사대상자	세관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조사연기 승인서	세관장	조사대상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원산지와 관련된 조사를 통보받은 수출입자는 동 서식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으나 현지조사의 경우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연기 신청은 1회에 한하고 연기 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7조(원산지조사 연기신청) 법 제12조제2항 및 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세관장의 서면조사시 서류제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와 법 제13조제4항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른 세관장의 현지조사시 그 조사를 연기하기 위한 신청서는 별지 제18호서식과 같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연기신청) ① 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현지조사에 관한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사연기신청서를 사전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과 그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기의 신청은 1회에 한하며, 그 조사를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사전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연기를 승인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대상자와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계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관세사

⑩ 조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③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입자 또는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현지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4. 조사이유
5. 조사할 내용
6. 조사의 법적 근거
7.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한다)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7.15, 2010.12.31>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제1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Form 18]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ferment of Investigation

Approval No.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ferment of Investigation			
Investigation notice No.		Subject person/party	
Investigation period		Investigation subject period	
Visit investigation period		Date received investigation notice	
Subject goods (im/export)	Item	6-digit HS code	Description of goods
Desired period of deferment			
Reason			
Attachment	A copy of investigation notice		
<p>In pursuance to Article 13.4 of FTA exemption law and Article 17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 hereby apply for a deferment of investigation.</p> <p style="text-align: center;">Date: (yy/mm/dd)</p> <p style="text-align: center;">Applicant's name: Signature:</p> <p>ATTN: ○ ○ Customs Collector</p>			
<p>The above application for deferment of subject investigation has been approved.</p> <p style="text-align: center;">Date: (yy/mm/dd)</p> <p style="text-align: center;">○ ○ Customs Collector (Signature)</p>			

작성방법

- 1) **조사통지서번호(Investigation notice No.)** : 원산지와 관련된 조사를 통보받은 통지서의 번호와 당해 통지서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 2) **조사대상자(Subject person/party)** : 조사통지서에 의해 피조사자로 지정된 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 3) **조사예정기간(Investigation period)** : 최초 조사통지서 상에 기재된 조사예정기간을 기재합니다.
- 4) **조사대상기간(Investigation subject period)** : 최초 조사통지서 상에 기재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 5) **방문기간(Visti investigation period)** : 현지조사의 경우 최초 조사통지서 상에 기재된 현지조사 방문기간을 기재합니다.
- 6) **자료제출기한(Date received investigation notice)** : 서면조사의 경우 최초 조사통지서 상에 기재된 서면자료 제출기간을 기재합니다.
- 7) **조사대상수출입물품(Subject goods(im/export))** : 최초 조사통지서 상에 기재된 조사대상 물품을 품명 6단위 HS code, 규격 등 물품설명의 순으로 기재합니다.
- 8) **자료제출목록** : 원산지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관세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의 목록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9) **연기신청목록** : 원산지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관세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중 제출 연기를 희망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목록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10) **연기희망기간(Desired period of deferment)** : 최초 조사통지서 상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희망기간을 기재합니다. 다만, 현지조사의 경우 연기 승인을 받을수 있는 기간은 조사통지 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1) **연기승인(신청)이유(Reason)** - 신청인이 원산지와 관련된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 이후 이 란에 기재된 내용은 세관장의 연기 승인이유가 기재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18호서식] 조사 연기신청서

승인번호			
조사연기승인(신청서)			
조사통지서번호 (접수일자)	서울13-2013 (13/02/14)	조사대상자	(주) 정보원
조사예정기간	2013.3.1 ~ 2013.3.31	조사대상기간	2012.1.1~2012.12.31
방문기간	2013.3.1 ~ 2013.3.4	자료제출기한	2013.3.31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품명	HS번호(6단위)	규격 등 물품설명
	S EASYLIFE MASK	9019.20	SRS PART OF IN701HS 2
자료제출목록	수출입 신고필증, 원산지증명서 발급 대장, 원산지증명서, Invoice, 회계장부 일체	연기신청목록	제출목록 전체
연기(희망)기한	2013. 05월 이후		
연기승인 (신청)이유	국세청 조사기간과 중복되어 귀관의 조사 기간에 성실히 대응하기가 여러움, 이에 국세청 조사가 종결된 후로 조사기간을 연기하여 주신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조사예정통지서 사본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 년 2 월 20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김 국 제 (인)</p> <p>서울 세 관 장 귀하</p>			
<p>위 조사기간 연기신청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 세 관 장 (인)</p>			

[Form 18]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ferment of Investigation

Approval No.			
Application for (Approval of) Deferment of Investigation			
Investigation notice No.	Seoul13-2013	Subject person/party	Jung-Bo Won, Ltd.
Investigation period	2013.3.1 ~ 2013.3.31	Investigation subject period	2012.1.1 ~ 2012.12.31
Visit investigation period	2013.3.1 ~ 2013.3.4	Date received investigation notice	2013.3.31
Subject goods (im/export)	Item	6-digit HS code	Description of goods
	S EASYLIFE MASK	9019.20	SRS PART OF IN701HS 2
Desired period of deferment	After MAY, 2013		
Reason			
Attachment	A copy of investigation notice		
<p>In pursuance to Article 13.4 of FTA exemption law and Article 17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I hereby apply for a deferment of investigation.</p> <p style="text-align: center;">Date: 2013/02/20</p> <p style="text-align: center;">Applicant's name: Kim Kuk-Je Signature:</p> <p style="text-align: center;">ATTN: SEOUL Customs Collector</p>			
<p>The above application for deferment of subject investigation has been approved.</p> <p style="text-align: center;">Date: (yy/mm/dd)</p> <p style="text-align: center;">SEOUL Customs Collector (Signature)</p>			

41 이의제기서

작성목적

-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 작성·제출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이의를 제기하는 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원산지와 관련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세당국은 이를 심사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과정 중 필요자료의 제출이나 제출자료의 보정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8조(이의제기서)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19호서식과 같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가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때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정을 요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⑤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체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관세사

⑩ 조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Form 19] Application for Protest

Application for Protest				Processing Time	Service charge
				30 days	None
Applicant	Company name			Registration No.	
	Head's nam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Address				
	Responsible Officer	Title	Name	Tel.	
Goods	Import declaration No.			Declaration date	
	Description of goods				
	Imposition	Date: _____ (yy/mm/dd) KRW _____ (customs duty, etc.) imposed			
When did you first know about the imposition?	_____ (yy/mm/dd) (Notification date of imposition: _____ (yy/mm/dd))				
Reason for protest	※ State on a separate sheet, attached with payment bill, rectification notice, etc.				
<p>In pursuance to Article 43.7 of Customs Act, I hereby apply for a protest.</p> <p style="text-align: right;">Date: _____ yy/mm/dd</p> <p style="text-align: right;">Applicants' name: _____ Signature: _____</p> <p>Attn: ○ ○ Customs Collector</p>					

Certificate of Receipt of Protest (Receipt No.: _____)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Subject amount
<p>The application for protest has been duly received as above.</p> <p>Date: _____ (yy/mm/dd) Receptionist's name: _____ Signature: _____</p>		

작성방법

- 1) **청구인(Applicant)**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를 담당하는 자의 직함과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2) **청구대상(Goods)** : 이의제기를 청구하는 대상물품/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와 수입신고일자 및 신고대상 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하고, 원산지조사결과 통보받은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3) **처분이 있음을 안 날(When did you first know about the imposition)** : 원산지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자를 기재합니다. 특히, 이의 제기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4) **이의제기이유(Reason for protest)** :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와 그 내용을 기재하되, 별지에 작성 가능합니다.
- 5) **청구인/인(Applicants' name & Signature)** :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회사 직인/명판을 날인합니다.

[Form 19] Application for Protest

Application for Protest				Processing Time	Service charge
				30 days	None
Applicant	Company name	Jung Go Won, Ltd	Registration No.	123-45-XXXXX	
	Head's name	KuK-Je, Le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Address	555 Yatap-Ro, Bundang Sungnam City, Kyung-Gi, Korea			
	Responsible Officer	Title <i>Manager</i> Name <i>Ya tap, Park</i> Tel. <i>031-600-0000</i>			
Goods	Import declaration No.	20130715-1-5569	Declaration date	2013,07,14	
	Description of goods	The frame of eyeglasses (150*160*50mm)			
	Imposition	Date : 2013/09/03 KRW 500,000,000(customs duty, etc.) imposed			
When did you first know about the imposition?		2013/09/05(yy/mm/dd) (Notification date of imposition : 2013/09/05)			
Reason for protest		※ State on a separate sheet, attached with payment bill, rectification notice, etc.			
<p>In pursuance to Article 43.7 of Customs Act, I hereby apply for a protest.</p> <p style="text-align: center;">Date: 2013/09/18</p> <p style="text-align: center;">Applicants' name: <i>KuK-Je, Lee</i> Signature : <i>KJL</i></p> <p>Attn: ○ ○ Customs Collector</p>					

Certificate of Receipt of Protest (Receipt No.:)				
Applicant		Responsible agency		Subject amount
<p>The application for protest has been duly received as above.</p> <p>Date: _____(yy/mm/dd) Receptionist's name: _____ Signature: _____</p>				

42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

작성목적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수출입자(체약상대국 수출자 포함)가 적용제한 해제를 신청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세관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협정관세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해외공급자로부터의 수입이라 하더라도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는 경우 수입자는 통관지세관장에게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할 수 있음. 다만,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수출하는 물품은 FTA관세특례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제1호에 따라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여부 심사대상물품이 됨에 유의.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9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적용제한자가 그 지정의 해제를 받으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용제한자를 지정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소명서(품목별로 작성하여야 함)
2. 원산지소명서 입증자료
3. 원산지증빙자료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세관장이 요구하는 자료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 ①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제한자로 지정된 자는 법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

-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 나. 적용제한자 지정일 및 지정기간
- 다.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규격·모델·품목번호 및 수출국
- 라. 수입자
- 마. 적용제한 해제신청의 사유

2. 원산지증빙서류

- ② 세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를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해제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신청인 및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적용제한자 지정의 해제의 효력은 세관장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해제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6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협정에서 다르게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의 차액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 1. 정당한 사유 없이 수입자, 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이하 이 조에서 “계약상대국수출자등”이라 한다)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요구한 자료를 제12조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다만,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단순한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것으로서 원산지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회신 내용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결과 세관장에게 신고한 원산지가 실제 원산지와 다른 것으로 확인되거나 수입자 또는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출한 자료에 제9조에 따른 원산지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4.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른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에 대하여 제13조제5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동의 여부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할 때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빙서류의 확인에 필요한 장부 또는 관련 자료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접근을 거부하거나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를 신청한 수입자가 사전심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사전심사서에 기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원산지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납부하여야 할 세액 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관세법」 제2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각각의 기간 내에는 경정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 ③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최근 5년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잘못 작성한 사실을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수출 또는 생산하는 동종동질(同種同質)의 물품 전체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은 수입신고되는 물품별로 원산지 등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을 심사하여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
- ⑤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받은 체약상대국수출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적용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⑥ 협정관세 적용의 제한 및 그 해제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제24조(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지정 등)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자(이하 “적용제한자” 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그 지정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적용제한자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사실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할세관의 게시판에 게시할 수 있다.

1. 적용제한자의 성명 및 주소
2.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의 품명·모델·규격·품목번호 및 수출국
3.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기간 및 사유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지정대상자 및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적용제한자 지정의 효력은 세관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사실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⑤ 세관장은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에 관한 심사를 하는 때에는 이를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Form 20]

Notification No.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Denial/Suspens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Subject	Company name		
	Head's name		
	Address		
	Tax ID		Overseas supplier code
Goods	Description of goods		
	HS Code		
	Origin		
D/S notification No.		D/S notification date	
D/S period		Importer	
Reason for D/S			
<p>In pursuance to Article 16.5 of FTA tariff exemption law, I hereby apply for the cancellation of the denial/suspension of preferential tariff.</p> <p style="text-align: center;">Date (yy/mm/dd):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Applicant's name: _____ Signature: _____</p> <p style="text-align: center;">Attn: ○○ Customs Collector</p>			

작성방법

- 1) **지정대상자(Subject)** : 세관장으로부터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로 통지받은 체약 상대국 수출자(협정관세 적용제한자)의 상호, 대표자, 주소, Tax ID 및 해외공급자부호를 기재합니다.
 - 2) **대상물품(Goods)** : 협정관세 적용제한 대상물품의 품명/규격 및 HS Code,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 3) **적용제한자 통지번호(D/S notification No.)** : 협정관세 적용제한 통지에 따른 적용 제한자 통지번호를 기재합니다.
 - 4) **지정일자(D/S notification date)** : 협정관세 적용제한 통지 일자를 기재합니다.
 - 5) **지정기간(D/S period)** : 협정관세 적용제한 지정기간을 기재합니다.
 - 6) **수입자(Importer)** : 협정관세 적용제한 조치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이 제한되는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7) **해제사유(Reason for D/S)** : 협정관세 적용제한의 해제를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작성사례

[별지 제20호 서식]

통지번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해제신청서			
지정대상자	상 호	John' s Cylinder	
	대 표 자	John Keller	
	주 소	2/28 Selwynes Milford CA USA	
	T a x I D	KK383479	해외공급자부호 MS5635754d54
대 상 물 품	품 명 / 규 격	초저온용기 / 300 l	
	H S 번 호	7311.00-3000	
	원 산 지	미국	
적용제한자 통지번호	S2013091020	지정일자	2012. 9. 10
지정기간	2012. 9. 10 ~ 2014. 9. 9	수입자	정보원(주)
해제사유	별첨 참조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지정 해제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년 9 월 10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김 국 제 (인)</p> <p style="text-align: right;">서울 세 관 장 귀하</p>			

[Form 20]

Notification No.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of Denial/Suspension of Preferential Treatment			
Subject	Company name	John's Cylinder	
	Head's name	John Keller	
	Address	2/28 Selwyncrest Milford CA USA	
	Tax ID	KK383479	Overseas supplier code US5635754d54
Goods	Description of goods	Portable Cylinder / 300 l	
	HS Code	7311.00-3000	
	Origin	USA	
D/S notification No.	S2013091020	D/S notification date	2012, 9, 10
D/S period	2012, 9, 10 ~ 2014, 9, 9	Importer	Jung Bo Won, Ltd,
Reason for D/S	attached		
<p>In pursuance to Article 16.5 of FTA tariff exemption law, I hereby apply for the cancellation of the denial/suspension of preferential tariff.</p> <p>Date (yy/mm/dd): <u>2013, 09, 20</u></p> <p>Applicant's name: <u>Kim Kyuik Je</u> Signature: _____</p> <p>Attn: SEOUL Customs Collector</p>			

43 현지조사 통지서 수령증

작성목적

- 관세당국으로부터 FTA특혜관세 적용과 관련하여 현지조사를 통보받은 검증대상자가 통보사실을 확인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검증대상자	세관장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1조(원산지검증 통지) ① 세관장은 원산지검증을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서면(현지)조사통지서를 통지한다. 다만, 협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하는 때에 별표2의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에 기재된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검증 착수 당일에 원산지검증을 통지할 수 있다.

1. 범칙사건에 대하여 검증을 하는 경우
2.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증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통지한 때에는 검증대상자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현지조사 통지서 수령증을 제출받아 검증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19조(현지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를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조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자
2.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3. 조사예정기간 및 조사방법
4. 조사이유
5. 조사할 내용
6. 조사의 법적 근거
7. 조사에 대한 동의여부 및 조사동의서 제출기한(조사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동의서 제출기한 이내에 그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조치예정사항을 포함한다)
8. 조사기관, 조사자의 직위 및 성명
9.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3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제1항에 따른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을 말한다. <개정 2008.7.15, 2010.12.31>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조사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현지조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입자와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의 통지는 **제18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통지서에 따른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계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과 관련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한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등에 대한 확인에 필요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 또는 생산자(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한다)

3. 원산지증빙서류 발급기관

4.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 또는 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출자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사유, 조사 예정기간 등을 통지하여 조사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통지한 예정 조사기간에 조사를 받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통지를 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조사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없다.

⑥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수출자등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수입자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마치면 조사 결과와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 및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대한 통지는 협정에서 정하는 경우에만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 자를 포함한다)는 조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⑨ 제2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받는 조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에 참관하게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관세사

⑩ 조사의 방법·절차와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령」

제15조(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출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등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6조(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 ①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를 하는 때에는 서면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는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와 그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1.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
2.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중 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

③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수입자 또는 법 제13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현지조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2호 서식]

현지조사 통지서 수령증

1. 소재지 (사업장) :
2. 법인명 (상 호) :
3. 대표자 (성 명) :

당사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해 통지한 현지조사 통보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 ○ 세 관 장 귀하

작성방법

- 1) **소재지** : 현지조사통지서를 수령한 사업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 2) **법인(상호)** : 현지조사통지서를 수령한 조사대상기업의 법인명(상호)를 기재합니다.
 - 3) **대표자(성명)** : 현지조사를 받을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작성사례

[별지 제2호 서식]

현지조사 통지서 수령증

1. 소재지 (사업장)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888번길
2. 법인명 (상 호) : 국제인터네셔널
3. 대표자 (성 명) : 정야탑

당사는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세관공무원이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관세법 제114조의 규정에 의해 통지한 현지조사 통보서를 수령하였습니다.

2013 년 04 월 06 일

대표자 (성 명) 정 야 탑 (서명 또는 인)

서울 세관장 귀하

44 FTA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

작성목적

- 신규로 발효된 FTA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수행 전 수입자가 스스로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정확성 등에 대해 점검하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부

작성주체	제출처
수 입 자	세관장

※ 주의사항

자율점검안내서를 교부받은 수입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자율점검 결과 협정관세를 잘못 적용한 것을 인지한 경우 통관지 세관에 관세의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만약, 회신기한 내 자율점검 결과를 회신하지 않거나 세관장이 회신결과에 대해 추가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관세에 대한 보정 또는 수정신고에 대한 검토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산지검증이 실시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하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39조(서면검증통지 전 업체자율점검) ① 세관장은 신규로 발효된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검증 통지 전에 검증대상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와 그 정확성 등에 관하여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를 시정할 수 있도록 별지 제12호 서식의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를 송부하여 자율점검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1. 최근 2년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최근 2년간 원산지 자율점검에 의해 수정신고 등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어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자율점검을 안내하는 경우 검증대상자가 자율점검 결과 협정관세를 잘 못 적용한 것을 인지한 때에는 통관지 세관에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 또는 같은 법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 줄 것을 고지한다. 이 경우 자율점검결과 회신기한은 검증대상자가 자율점검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상 30일 이내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0조(자율점검결과 조치) ① 세관장은 제39조의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1. 회신기한 내 자율점검 결과가 회신 되었고, 검토결과 원산지 위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율점검결과 원산지위반이 있다고 회신되었으나 검증대상자가 자발적으로 「관세법」 제38조의2에 따른 보정 또는 제38조의3에 따른 수정신고를 이행하였고, 검토결과 그 내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세관장은 제39조의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1. 회신기한 내 자율점검 결과가 회신되지 않은 경우
2. 회신기한 내 자율점검 결과가 회신 되었으나, 검토결과 회신내용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회신기한 내 보정 또는 수정신고를 이행하였으나, 검토결과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라 원산지검증을 생략하는 경우 검증대상자가 이행한 보정 또는 수정신고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관 세 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 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2.31>

② 세관장은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해당 보정기간에 보정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액보정을 신청하려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삭제 <2011.12.31>

④ 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2.31>

1. 제41조제4항에 따라 가산금 및 증가산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보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수정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경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청구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③ 납세의무자는 최초의 신고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제2항 전단에 따른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수입)

Section I 업체 현황

수입자 현황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업종/업태	
시설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 원) _____ 명 (관리직) _____ 명 (기술직) _____ 명 (생산직) _____ 명 (행정직) _____ 명 (기타) _____ 명		
원산지업무 인력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활용(○○○관세사, ☎000-000-0000) <input type="checkbox"/>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input type="checkbox"/>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생산설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현황(아는 경우에 한함)			
업체명		해외공급자부호	
대표자		업종/업태	
시설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 원) _____ 명 (관리직) _____ 명 (기술직) _____ 명 (생산직) _____ 명 (행정직) _____ 명 (기타) _____ 명		
원산지업무 인력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활용(○○○관세사, ☎000-000-0000) <input type="checkbox"/>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input type="checkbox"/>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시설장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 1. 자율점검표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표의 "HS코드" 란에는 가능한 한 HS 6단위(한-미 FTA의 경우 8단위) 이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ction II 원산지결정 전제요건 점검

적용협정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type="checkbox"/> 한-미국
1. 품목분류	
1-1. 귀사가 수입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특혜세율 적용 대상품목이 맞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1-2.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코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체 결정 <input type="checkbox"/> 수출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자문 <input type="checkbox"/> 관세청 사전회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1-3.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제조공정도, BOM 등)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원산지증명서	
2-1.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2-2. 수입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의 동일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2-3. (한-미FTA 수입자 자율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급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협정관세 적용신청	
3-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특혜적용을 신청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3-2. 송품장 상에 원산지가 다수인 물품이 있는 경우 비원산지물품에 대하여도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3-3.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와 현품의 원산지표시는 일치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3-4. 수량할당 협정관세 적용품목(TRQ)의 경우 주무장관의 추천서를 구비하였습니까? * WTO시장접근물량 할당관세 추천서로는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4. 운송원칙	
4-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은 계약상대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목적으로 운송되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4-2. 귀사는 운송원칙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까? * 운송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4-3.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운송 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4-4.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4-4-1. 만약, 있다면 구체적 작업 또는 공정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5. 서류보관	
5-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2. 귀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FTA관세특례법 § 12-①, 같은 법 시행령 § 13-①-1〉 수입자는 아래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p> </div>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Section III 원산지 결정 기준 점검

6-1. 귀사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본-지사 <input type="checkbox"/> 국내 대리점 <input type="checkbox"/> 위탁가공 <input type="checkbox"/> 기타
6-2.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6-2-1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생산시설 <input type="checkbox"/> 보유장비 <input type="checkbox"/> 인력현황 <input type="checkbox"/> 생산공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6-3. (한-미FTA 수입자 자율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input type="checkbox"/> 해외 수출자, 생산자 <input type="checkbox"/> 국내 수입자

(아래는 한-미 FTA에 있어 국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추가 점검 항목입니다) [참고: 한-미FTA협정 제6.19조4항아목]			
공동 사항		Part 1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개 별 사 항	완전생산 기준	Part 2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세번변경 기준	Part 3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부가가치 기준	Part 4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가공공정 기준	Part 5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PART 1. 불인정공정 (공동사항)

7-1.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2.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3.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PART 2. 완전생산기준

8-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2.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 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완전 생산 또는 완전 획득되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PART 3. 세번변경기준

9-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원재료명</th> <th>HS코드</th> <th>원산지</th> <th>공급자명</th> <th>주소 및 연락처</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9-3. 귀사의 수입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성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충족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4.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한 경우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5.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6.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 중 완성품과 세번이 동일한 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원재료명</th> <th>HS코드</th> <th>원산지</th> <th>단가</th> <th>제품1단위 (FOB 또는 EXW 가격)</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단가	제품1단위 (FOB 또는 EXW 가격)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단가	제품1단위 (FOB 또는 EXW 가격)																											

▶ PART 4. 부가가치기준

10-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소요량	단가	금액
계						

※ 금액 : FOB, EXW 등 협정이 정하는 가격

비원산지재료 합계: _____
 원산지재료비 합계: _____
 물품의가격 : _____
 부가가치비율(RVC): _____ %

▶ PART 5. 가공공정기준

11-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2.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Section IV 기타 확인 사항

Section V 서명

위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2. . . .

작성자 : (소속)

(직책)

(성명)

(서명)

작성방법

※ 표지에 해당하는 자율점검 안내서에는 안내서 교부의 목적과 자율점검표의 회신기간이 기재되어 교부됩니다. 따라서 자율점검표 작성을 요청받은 기업은 안내서에 명시되어 있는 기한 내에 자율점검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요청한 세관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1. 업체현황

1) **수입자 현황** : 수입자의 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업종/업태·사업장(본사 및 공장)의 주소 등 연락처 정보·임직원 현황·원산지업무인력 정보와 수입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생산설비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또한 세관당국이 확인을 위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E-mail을 기재합니다.

2)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현황** :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회사명·해외공급자부호·대표자·업종/업태·사업장(본사 및 공장)의 주소 등 연락처 정보·임직원 현황·원산지업무인력 정보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요 생산설비의 현황을 기재합니다. 또한 세관당국이 확인을 위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의 전화번호와 E-mail을 기재합니다.

※ 다만, 수입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합니다.

2. 원산지결정 전제요건 점검

※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협정에 [V]표로 표시합니다.

1) **품목분류** : 각 질문에 대해 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V]표로 표시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 각 질문에 대해 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V]표로 표시합니다.

3) **협정관세 적용신청** : 각 질문에 대해 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V]표로 표시합니다.

4) **운송원칙** : 각 질문에 대해 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V]표로 표시합니다.

※ 4-4(비당사국 영역에서의 추가작업 수행)에 대해 [예]로 답변한 경우 구체적인 작업 또는 공정내용을 설명하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5) **서류보관** : 각 질문에 대해 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V]표로 표시합니다.

3. 원산지결정기준 점검

- 1)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질문에 대해 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V]표로 표시합니다.

한-미 FTA 추가 점검 항목

- **불인정공정** : 각 질문에 대해 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V]표로 표시합니다.
 ※ 한-미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자율점검 대상물품의 제조공정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완전생산기준** : 각 질문에 대해 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V]표로 표시합니다.
- **세번변경기준** : 각 질문에 대해 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V]표로 표시합니다.
 ※ 9-2(제조명세) 항목에는 제품의 1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내역을 간략히 기재하고, 9-6(동일세번) 항목에는 제품에 투입된 원재료 중 완성품과 세번이 동일한 역외산 재료의 내역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 **부가가치기준** : 각 질문에 대해 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V]표로 표시합니다.
 ※ 10-2(원재료정보) 항목에는 제품의 1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원재료의 내역을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소요량, 단가, 금액의 순으로 기재하고 역내·역외산 재료가격의 합계와 물품의 가격(FOB)과 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 **가공공정기준** : 각 질문에 대해 귀사에 해당하는 경우를 선택하여 [V]표로 표시합니다.
 ※ 11-2(제조공정) 항목에는 해당 물품의 제조공정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4. 기타확인사항

- 1) 자율점검과정에서 자율점검표 작성자가 확인한 기타 내용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5. 서명

- 1) 자율점검표를 작성한 자의 소속 · 직책 ·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12호 서식]

FTA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 원산지 자율점검 안내서

수신 : 정보원(주) 김국제 대표이사 귀하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55번길)

1. “원산지 자율점검”은 수입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아 수입한 물품에 대해 그 적정성 여부를 세관의 원산지검증에 앞서 수입자 스스로 점검하고 오류사항을 교정하는 기회를 드리기 위한 제도입니다.
2. 자율점검을 희망하는 경우 붙임 자율점검표의 각 항목에 따라 FTA 특혜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자체 점검한 후 2013.10.30 까지 우리세관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점검표에 따라 점검한 결과 FTA 특혜관세를 잘 못 적용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통관지세관에 보정신고(세액납부일로부터 6월 이내인 경우)하거나 수정신고하시고, 그 결과를 우리세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신기한 내에 자율점검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또는 자율점검표 내용에 대하여 세관의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귀 사에 대해 세관에서 원산지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세관의 원산지검증 착수 이후에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자율 보정 또는 수정신고 시에 비해 가산세가 차등 부과되고, 사안에 따라 벌칙 또는 과태료가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그 밖에 자율점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우리세관(담당 : 이 관 세, ☎ 010-123-1234)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검증대상기간 : ‘12.01월 ~ ‘12.12월 간 FTA 적용 수입물품
 (상세 내용 붙임 참조)

붙임 : 1. 검증대상 상세 목록 1부.
 2. 원산지 자율점검표 1부. 끝.

2013.10.01.

서울 세관장

원산지 검증 자율 점검표(수입)

Section I 업체 현황

수입자 현황				
업체명	정보원(주)	사업자등록번호	123-11-111111	
대표자	김국제	업종/업태	제조업/기계생산	
시설	(사업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공장 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공장 2)			
종업원	(총 원) 100명 (관리직) 5명 (기술직) 5명 (생산직) 85명 (행정직) 5명 (기타) 0명			
원산지업무 인력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활용(○○○관세사, ☎000-000-0000) <input type="checkbox"/>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생산설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AAA machine	1	EEE machine	1
	BBB machine	1	FFF machine	1
	CCC machine	1	GGG machine	1
	DDD machine	1	HHH machine	1
담당자	(전화번호) 031-600-0000	(이메일)	managerkim@information.com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 현황(아는 경우에 한함)				
업체명	Holy Machine	해외공급자부호	11-1-1-1	
대표자		업종/업태		
시설	(사업장)			
	(공장 1)			
	(공장 2)			
종업원	(총 원) _____명 (관리직) _____명 (기술직) _____명 (생산직) _____명 (행정직) _____명 (기타) _____명			
원산지업무 인력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활용(○○○관세사, ☎000-000-0000) <input type="checkbox"/> 원산지관리사 보유(홍길동) <input type="checkbox"/> 자체 직원 활용(박길동, 원산지 업무경력 0년)			
주요 시설장비	설비의 종류	대수	설비의 종류	대수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주 1. 자율점검표의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이 표의 "HS코드" 란에는 가능한 한 HS 6단위(한-미 FTA의 경우 8단위) 이상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ection II 원산지결정 전제요건 점검

적용협정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국
1. 품목분류	
1-1. 귀사가 수입한 물품은 협정에서 정한 특혜세율 적용 대상품목이 맞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1-2.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코드)를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체 결정 <input type="checkbox"/> 수출자 통지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자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세청 사전회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1-3. 귀사는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자료(제조공정도, BOM 등)를 보관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 원산지증명서	
2-1. 특혜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는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2-2. 수입물품과 원산지증명서상 물품의 동일성에 대해 입증할 수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2-3. (한-미FTA 수입자 자율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귀사는 수입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발급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 협정관세 적용신청	
3-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특혜적용을 신청하였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3-2. 송품장 상에 원산지가 다수인 물품이 있는 경우 비원산지물품에 대하여도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3-3.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와 현품의 원산지표시는 일치합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3-4. 수량할당 협정관세 적용품목(TRQ)의 경우 주무장관의 추천서를 구비하였습니까? * WTO시장접근물량 할당관세 추천서로는 FTA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4. 운송원칙	
4-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은 계약상대국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목적지로 운송되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4-2. 귀사는 운송원칙 여부에 대한 입증자료를 보관하고 있고 이에 대해 소명할 수 있습니까? * 운송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습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4-3.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운송 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4-4. 비당사국(역외국, 제3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 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한 사실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4-4-1. 만약, 있다면 구체적 작업 또는 공정 내용을 아래에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5.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 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잘 모름

5. 서류보관	
5-1.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원산지증명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5-2. 귀사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서류를 5년간 보관하고 있습니까?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5px; margin: 5px 0;"> <p>〈FTA관세특례법 § 12-①, 같은 법 시행령 § 13-①-1〉 수입자는 아래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수입신고필증 -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 지적재산권 거래 관련 계약서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서류 - 사전심사서 사본 및 관련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div>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Section III 원산지 결정 기준 점검

6-1. 귀사와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본-지사 <input type="checkbox"/> 국내 대리점 <input type="checkbox"/> 위탁가공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6-2.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관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잘 모름
6-2-1 만약, 보유하고 있다면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주소 <input type="checkbox"/> 생산시설 <input type="checkbox"/> 보유장비 <input type="checkbox"/> 인력현황 <input type="checkbox"/> 생산공정 <input type="checkbox"/> 기타()
6-3. (한-미FTA 수입자 자율발급의 경우에만 해당)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외 수출자, 생산자 <input type="checkbox"/> 국내 수입자

(아래는 한-미 FTA에 있어 국내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는 추가 점검 항목입니다)			
[참고: 한-미FTA협정 제6.19조4항아목]			
	공통 사항	Part 1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개 별 사 항	완전생산 기준	Part 2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충족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세번변경 기준	Part 3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부가가치 기준	Part 4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가공공정 기준	Part 5 질문으로 이동하십시오.	

▶ PART 1. 불인정공정 (공통사항)

7-1.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7-2.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7-3.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 PART 2. 완전생산기준

8-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8-2. 해당 수입물품은 협정 또는 법률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완전 생산 또는 완전 획득되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PART 3. 세번변경기준

9-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원재료명</th> <th>HS코드</th> <th>원산지</th> <th>공급자명</th> <th>주소 및 연락처</th> </tr> </thead> <tbody> <tr> <td>1</td> <td>AAA</td> <td>8400.00</td> <td>US</td> <td>XXX</td> <td>Atlanta</td> </tr> <tr> <td>2</td> <td>BBB</td> <td>8401.00</td> <td>US</td> <td>YYY</td> <td>Atlanta</td> </tr> <tr> <td>3</td> <td>CCC</td> <td>8402.00</td> <td>US</td> <td>ZZZ</td> <td>Atlanta</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1	AAA	8400.00	US	XXX	Atlanta	2	BBB	8401.00	US	YYY	Atlanta	3	CCC	8402.00	US	ZZZ	Atlanta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1	AAA	8400.00	US	XXX	Atlanta																																	
2	BBB	8401.00	US	YYY	Atlanta																																	
3	CCC	8402.00	US	ZZZ	Atlanta																																	
9-3. 귀사의 수입물품은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성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충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4. 세번변경기준을 불충족한 경우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9-5. 미소(최소)기준을 사용한 경우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9-6. 역외산(제3국산) 원재료 중 완성품과 세번이 동일한 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table border="1"> <thead> <tr> <th>연번</th> <th>원재료명</th> <th>HS코드</th> <th>원산지</th> <th>단가</th> <th>제품1단위 (FOB 또는 EXW 가격)</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단가	제품1단위 (FOB 또는 EXW 가격)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단가	제품1단위 (FOB 또는 EXW 가격)																																	

▶ PART 4. 부가가치기준

10-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완전생산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0-2. 제품 1단위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에 대하여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코드	원산지	소요량	단가	금액
계						

※ 금액 : FOB, EXW 등 협정이 정하는 가격

비원산지재료 합계: _____
 원산지재료비 합계: _____
 물품의가격 : _____
 부가가치비율(RVC): _____ %

▶ PART 5. 가공공정기준

11-1. 귀사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하여 가공공정기준을 적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11-2. 해당 물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조공정을 아래에 간략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Section IV 기타 확인 사항

Section V 서명

위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3. 10. 22.

작성자 : (소속) **정보원(주)** (직책) **과장** (성명) **이과장** (서명)

45 원산지소명서

작성목적

- 수입물품의 FTA특혜적용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원산지 판단의 소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관세당국이 검증대상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로 검증대상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 위해 작성·제출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검증대상자	세관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1조(서면검증 통지) ① 세관장은 서면검증을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서면조사통지서를 사전 통지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2의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해당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2. 별지 제13호 서식의 원산지소명서
3. 별지 제14호 서식의 원산지질문서

② 세관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서면검증 착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기한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통지한다. 다만, 협정에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③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한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제출연기승인여부결정서로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1. 요청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2. 연기신청이 서면검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지 여부
3. 연기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연기신청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4. 연기가간이 검증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④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서면검증과 현지검증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검증 계획보고 및 통지는 서면검증 계획보고 및 통지로 같음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작성양식

[별지 제13호 서식]

문서번호:

원산지명서

① 수출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② 생산자(수출자≠생산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③ 소명대상 물품

품명 (HS번호)	규격/모델	물품가격		원산지	원산지기준	
		(USD)	가격조건		기준	충족여부

④ 원산지기준 검토

직접운송원칙	(적출국) (운송수단)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input type="checkbox"/> 선박 (환적) <input type="checkbox"/> 환적(환적국:) <input type="checkbox"/> 비환적
충분가공여부	<input type="checkbox"/> 예(생산 공정도, 사진 첨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대체가능재유무	<input type="checkbox"/> 예(재료명:)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기타	

[Form 13]

Reference no.:

Statement of Origin

① Exporter

Company Name		Tax Registration No.	
President name		Date of Birth	<i>*Individuals only</i>
Address			
Person in Charge	(Name)	(Phone)	(E-Mail)

② Manufacturer (to be completed if the exporter and manufacturer do not correspond)

Company Name		Tax Registration No.	
President name		Date of Birth	<i>*Individuals only</i>
Address			
Person in charge	(Name)	(Phone)	(E-Mail)

③ Details of Goods

Name (HS, 6digits)	Description	Price per Unit		Country of Origin	Preferential Criterion	
		Price(USD)	Price Terms		Criterion	Fulfillment or Failure

④ Examination on Rules of Origin

Direct Transportation	Country Where Consigned : Means of Transport : <input type="checkbox"/> air <input type="checkbox"/> sea Transshipment (T/S) : <input type="checkbox"/> Yes(Name of T/S Countries _____) <input type="checkbox"/> No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input type="checkbox"/> Yes(Production Flow Chart & Photos needed) <input type="checkbox"/> No
Fungible Materials	<input type="checkbox"/> Yes(Material Name _____) <input type="checkbox"/> No
Other Requirements	

⑤ List of Raw Materials

No.	Material Name (HS, 6 digits)	Quantity* (A)	Unit Value (B)	Total Value (A×B)	Unit of price	Country of Origin	Supplier /Manufacturer
Total				()			

Continue on additional sheets if needed.

* Quantity : Consumed Quantity per Unit

⑥ Details of Cost (to be completed for Regional Value Contents Criterion applied)

Category		Cost	Unit of price	Category	Cost	Unit of price
Materials	Originating			Sales and Management		
	Non-Originating (Origin Unknown)			Profit		
	Total			EXW Price		
Labor				Inland Transportation		
Overhead				FOB Price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MM. DD. YYYY

Company & Address :

Title :

Name : (Signature)

작성방법

- 1) **수출자(Exporter)** : 물품을 실제로 수출한 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세관담당자가 원산지소명과 관련하여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2) **생산자(Manufacture)** :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물품을 수출한 국가에서 실제 물품을 생산한 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세관담당자가 원산지소명과 관련하여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 3) **소명대상물품(Details of Goods)** : 원산지를 소명하고자 하는 물품의 관련 정보를 해당 란에 기재합니다.
- 4) **원산지기준 검토(Examination on Rules of Origin)** : 운송원칙 준수여부, 총분가공원칙 준수여부, 대체가능물품 사용여부 등의 질문의 해당 답변에 [V]표로 표시합니다.
- 5) **원재료내역(List of Raw Materials)** : 소명대상물품의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 관련 정보를 해당 란에 기재합니다.
- 6) **원가내역(Details of Cost)** : 소명대상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부가가치기준일 경우에 한해 관련 정보를 해당 란에 기재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13호 서식]

문서번호:

원산지명서

① 수출자

상호(법인명)	Tom's Ceramic	사업자등록번호	200-11-XXXXX
성명(대표자)	Jack Man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소	ABC Street Park Avenue Newyork, US		
담당자	(성명) Sam (전화번호) 00-01-0000 (E-MAIL) 000@000.co.us		

② 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소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③ 소명대상 물품

품명 (HS번호)	규격/모델	물품가격		원산지	원산지기준	
		(USD)	가격조건		기준	충족여부
앙아리 (6909.19)	35*100/장류보관	100	F0B	US	CC	충족

④ 원산지기준 검토

직접운송원칙	(적출국) US (운송수단) <input type="checkbox"/> 항공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선박 (환적) <input type="checkbox"/> 환적(환적국:) <input checked="" type="checkbox"/> 비환적
충분가공여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생산 공정도, 사진 첨부)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대체가능재유무	<input type="checkbox"/> 예(재료명:)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기타	

⑤ 원재료내역

연번	원재료명 (HS 코드)	원재료 수량*(A)	원재료가격** (B)	금액 (A×B)	가격/금액 단위	원산지	공급자(제조사)
1	진흙 (2508,40)	3 kg	10US\$	30US\$	30US\$	US	ABC Clay
2	부엽토 (2530,90)	3 kg	10US\$	30US\$	30US\$	US	ABC Clay
합 계				(60US\$)			

*원재료수량 : 완제품 1단위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수량

**원재료가격 : 원재료 1단위의 가격

⑥ 원가내역 (부가가치 기준에 한하여 작성)

구분		금액	가격/금액 단위	구분	금액	가격/금액 단위
재료비	원산지재료비	60US\$	60/US\$	판매비·관리비	10US\$	10US\$
	비원산지재료비			이윤	10US\$	10US\$
	합 계	60US\$	60US\$	E X W	95US\$	95US\$
노 무 비		10US\$	10US\$	내국운송비	5US\$	5US\$
제 조 간 접 비		5US\$	5US\$	F O B	100US\$	100US\$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제출합니다.

작성 자 : 이 대표 (서명)

직 위 : 대표이사

상호 및 주소 : 야탑무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111)

작성 일자 : 2013.10.10.

[Form 13]

Reference no.:

Statement of Origin

① Exporter

Company Name	Tom's Ceramic	Tax Registration No.	200-11-2222
President name	Jack Man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Address	ABC Street Park Avenue Newyork, US		
Person in Charge	(Name) Sam	(Phone) 00-01-0000	(E-Mail) 000@000.co.us

② Manufacturer (to be completed if the exporter and manufacturer do not correspond)

Company Name		Tax Registration No.	
President name		Date of Birth	*Individuals only
Address			
Person in charge	(Name)	(Phone)	(E-Mail)

③ Details of Goods

Name (HS, 6digits)	Description	Price per Unit		Country of Origin	Preferential Criterion	
		Price(USD)	Price Terms		Criterion	Fulfillment or Failure
Clay Pot (6909.19)	35*100	100	FOB	US	CC	Fulfill

④ Examination on Rules of Origin

Direct Transportation	Country Where Consigned : US Means of Transport : <input type="checkbox"/> air <input checked="" type="checkbox"/> sea Transshipment (T/S) : <input type="checkbox"/> Yes(Name of T/S Countries _____)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Yes(Production Flow Chart & Photos needed) <input type="checkbox"/> No
Fungible Materials	<input type="checkbox"/> Yes(Material Name _____)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Other Requirements	

⑤ List of Raw Materials

No.	Material Name (HS, 6 digits)	Quantity* (A)	Unit Value (B)	Total Value (A×B)	Unit of price	Country of Origin	Supplier /Manufacturer
1	Acid Clay (2508,40)	3 kg	10US\$	30US\$	30US\$	US	ABC Clay
2	Other (2530,90)	3 kg	10US\$	30US\$	30US\$	US	ABC Clay
Total				(60US\$)			

Continue on additional sheets if needed.

* Quantity : Consumed Quantity per Unit

⑥ Details of Cost (to be completed for Regional Value Contents Criterion applied)

Category		Cost	Unit of price	Category	Cost	Unit of price
Materials	Originating	60US\$	60US\$	Sales and Management	10US\$	10US\$
	Non-Originating (Origin Unknown)			Profit	10US\$	10US\$
	Total	60US\$	60US\$	EXW Price	95US\$	95US\$
Labor		10US\$	10US\$	Inland Transportation	5US\$	5US\$
Overhead		5US\$	5US\$	FOB Price	100US\$	100US\$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10, 10, 2013.

Company & Address : Yatap Trade(111 Yatap-Ro Bundang-Gu Seoungnam Kyunggi Province, Korea)

Title : President

Name : Dae-Pyo, Lee (Signature)

46 원산지질문서

작성목적

- 원산지 서면검증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FTA특혜적용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제출

작성주체	제출처
검증대상자	세관장

※ 주의사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질문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검증대상자는 서면검증 착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검증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제출기한연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1조(서면검증 통지) ① 세관장은 서면검증을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서면조사통지서를 사전 통지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2의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해당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2. 별지 제13호 서식의 원산지소명서
3. 별지 제14호 서식의 원산지질문서

② 세관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서면검증 착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기한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통지한다. 다만, 협정에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③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한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제출연기승인여부결정서로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1. 요청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2. 연기신청이 서면검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지 여부
3. 연기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연기신청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4. 연기가격이 검증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④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서면검증과 현지검증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검증 계획보고 및 통지는 서면검증 계획보고 및 통지로 같음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작성양식

[별지 제14호 서식]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질문서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상 호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본 사 소 재 지			
공 장 소 재 지			
직 원 현 황	총()명: 관리직()명, 생산직()명, 기술직()명, 기타()명		
시 설 현 황	공장 총면적()m ² : 생산시설면적()m ² , 기타()m ²		
장 비 현 황	장비명	수량	용도
주요 생산물품			
주요 수입물품			
업종 및 업태			
담 당 자	(성명) _____		(전화번호) _____
	(E-MAIL) _____		(팩스번호) _____

② 검증대상물품(원산지증명서별)

원 산 지 증 명 서	(발급번호)	(발급일)
물 품 명 세		

원 재료 명 세 서	원재료 (HS 코드)	공급자명/주소	원산지	중량 (KG)	금액 (USD)
적용원산지기준					
생 산 공 정					
③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관리					
C/O 관리담당	(직위)	(성명)	(서명)		
서 명 권 자	(직위)	(성명)	(서명)		
<p>질문서에 대한 상기 작성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선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p>					
작 성 자	(직위)	(성명)	(서명)		
<p>첨 부 1.생산시설 사진 2.조직도 3.공정도(공정별 사진 첨부) 4.회계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5.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서</p>					

□ 개별정보

① 원산지증명서 정보

--	--

② 거래정보

--	--

③ 물품정보

--	--

④ 생산관련 정보

--	--

질문서에 대한 상기 작성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20 . . .

작 성 자

(직위)

(성명)

(서명)

첨 부

[Form 14]

Reference no.: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input type="checkbox"/> General Information																											
① Respondent : <input type="checkbox"/> Exporter or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er (only to be selected when exporter and manufacturer do not correspond)																											
Company Name		Tax Registration No.																									
President name		Date of Birth	<i>*Individuals only</i>																								
Headquarters Address																											
Factory Address																											
Employees	Total Number : ____ person (Management Staff ____ / Production Staff ____ / Technical Staff ____ / Others ____)																										
Facilities	Total Area : ____ m ² Production Facilities : __ m ² , Other Facilities : __ m ²																										
List of Equipment	<table border="1"> <thead> <tr> <th>Name of Equipment</th> <th>Quantity</th> <th>Use</th> <th>Location</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Name of Equipment	Quantity	Use	Location																				
Name of Equipment	Quantity	Use	Location																								
Major Products																											
Major Importing Goods																											
Types of Business																											
Person in Charge	(Name) (E-Mail)	(Phone) (Fax)																									
②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by each Certificate of Origin)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No.)	(Date of Issuance) MM.DD.YYYY																									
Goods Description																											

List of Materials	<table border="1"> <thead> <tr> <th>Name of Material (HS, 6 digits)</th> <th>Supplier / Address</th> <th>Country of Origin</th> <th>Weight (Unit/KG)</th> <th>Value(USD)</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Name of Material (HS, 6 digits)	Supplier / Address	Country of Origin	Weight (Unit/KG)	Value(USD)																																			
	Name of Material (HS, 6 digits)	Supplier / Address	Country of Origin	Weight (Unit/KG)	Value(USD)																																								
*Continue on additional sheets if needed																																													
Origin Criterion																																													
Production Process	* Please attach photos of each production process. 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																																												
③ Management of Certificates of Origin																																													
Person in charge	(Name)	(Title)	(Signature)																																										
Designated Signatory	(Name)	(Title)	(Signature)																																										
<p>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p> <p style="text-align: center;">MM.DD.YYYY</p>																																													
Signatory	(Name)	(Title)	(Signature)																																										
<p>Required Document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hotos of Production Facilities 2. Organizational Chart 3. Production Flow Chart with photos of each process 4. Audit Reports within recent 2 years (including Balance Sheets and Income Statement) * If unavailable, please submit Tax Declaration 5. Certificates of Origin subject to verification 																																													

□ Specific Information	
① Information on Certificates of Origin	
	<i>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i>
② Information on Transaction	
	<i>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i>
③ Information on Products	
	<i>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i>
④ Information on Manufacturing	
	<i>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i>
<p>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p> <p style="text-align: center;">Date : MM.DD.YYYY</p>	
Signatory	(Name) (Title) (Signature)
List of Attachments (Please specify hereunder) :	

작성방법

- 1) **수출자 또는 생산자(Exporter or Manufacturer)** : 사업자등록증상의 회사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및 주소(본사 및 공장) 그리고 주요 취급품목 등에 관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만약,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해당 란에 [V]표로 표시하고, 상호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2) **검증대상물품(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 검증대상 물품을 각 원산지증명서 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물품의 명세와 원재료 구성내역을 상세히 기재하고, 원산지결정기준 및 생산공정을 설명합니다.
 - 3) **원산지증명서 관리(Management of Certificates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 관리담당자 및 서명권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 4) **개별정보(Specific Information)** : 원산지증명서 별로 개별 품목에 대한 상세정보를 기재합니다.
-

작성사례

[별지 제14호 서식]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질문서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 (수출자≠생산자)

상 호 (법 인 명)	정보원(주)	사업자등록번호	123-11-11111																					
성 명 (대 표 자)	김국제	생 년 월 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본 사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공 장 소 재 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직 원 현 황	총(100)명: 관리직(5)명, 생산직(80)명, 기술직(10)명, 기타(5)명																							
시 설 현 황	공장 총면적(500)m ² : 생산시설면적(450)m ² , 기타(50)m ²																							
장 비 현 황	<table border="1"> <thead> <tr> <th>장비명</th> <th>수량</th> <th>용도</th> <th>설치위치</th> </tr> </thead> <tbody> <tr> <td>XXX machine</td> <td>2</td> <td>XXX</td> <td>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td> </tr> <tr> <td>000 machine</td> <td>5</td> <td>000</td> <td>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장비명	수량	용도	설치위치	XXX machine	2	XXX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000 machine	5	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장비명	수량	용도	설치위치																				
	XXX machine	2	XXX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000 machine	5	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주요 생산물품	XXX, 000																							
주요 수입물품	AAA, BBB																							
업종 및 업태	제조업/기계생산																							
담 당 자	(성명) 이 과 장	(전화번호) 031-600-0000																						
	(E-MAIL) managerlee@origin.or.kr	(팩스번호) 031-600-0000																						

② 검증대상물품(원산지증명서별)

원 산 지 증 명 서	(발급번호) 130-14-XXXXX	(발급일) 2013.03.03
물 품 명 세	XXX 123-A/120*150	

원 재 료 명 세 서	원재료 (HS 코드)	공급자명/주소	원산지	중량 (KG)	금액 (USD)
	구리 (2603,00,0000)	Hollywood,Ltd/L,A	US	1	100
	아연 (2608,00,0000)	정보상사/경기 성남	KR	1.5	300
적용원산지기준	CTH				
생 산 공 정	용융→압출→절단→측정→포장				
③ 원산지증명서(원산지증명서) 관리					
C/O 관리담당	(직위) 과 장	(성명) 이 과 장	(서명) 이 과 장		
서 명 권 자	(직위) 과 장	(성명) 이 과 장	(서명) 이 과 장		
<p>질문서에 대한 상기 작성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선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 . 5 . 10 .</p>					
작 성 자	(직위) 과 장	(성명) 이 과 장	(서명) 이 과 장		
<p>첨 부 1.생산시설 사진 2.조직도 3.공정도(공정별 사진 첨부) 4.회계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5.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서</p>					

□ 개별정보

① 원산지증명서 정보

--	--

② 거래정보

--	--

③ 물품정보

--	--

④ 생산관련 정보

--	--

질문서에 대한 상기 작성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2013 . 5 . 10 .

작 성 자

(직위) 과 장

(성명) 이 과 장

(서명) 이 과 장

첨 부

[Form 14]

Reference no.: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General Information
① Respondent : **Exporter** or **Manufacturer**

(only to be selected when exporter and manufacturer do not correspond)

Company Name	JungBoWon,Ltd	Tax Registration No.	123-11-11111	
President name	KIM KYUK JE	Date of Birth	<i>*Individuals only</i>	
Headquarters Address	Yatap-Dong Sungnam city Kyung-Gi			
Factory Address	Yatap-Dong Sungnam city Kyung-Gi			
Employees	Total Number : 100 person (Management Staff 5 / Production Staff 80 / Technical Staff 10 / Others 5)			
Facilities	Total Area : 500㎡ Production Facilities : 450㎡, Other Facilities : 50㎡			
List of Equipment	Name of Equipment	Quantity	Use	Location
	XXX machine	2	XXX	Yatap-Ro Bungdang, Sungnam city Kyung-Gi
	000 machine	5	000	Yatap-Ro Bungdang, Sungnam city Kyung-Gi
Major Products	XXX, 000			
Major Importing Goods	AAA, BBB			
Types of Business	Manufacture/machine producer			
Person in Charge	(Name) Lee Gwa Jang (Phone) 031-600-0000 (E-Mail) managerlee@origin.or.kr (Fax) 031-600-0000			
②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by each Certificate of Origin)				
Certificate of Origin	(Issuance No.) 130-14-XXXXX (Date of Issuance) 03/03/2013			
Goods Description	XXX 123-A/120*150			

List of Materials	Name of Material (HS, 6 digits)	Supplier / Address	Country of Origin	Weight (Unit/KG)	Value(USD)
	Cooper (2603,00,0000)	Hollywood,Ltd/L,A	US	1	100
	Zinc (2608,00,0000)	JungBo/Sungnam	KR	1,5	300
*Continue on additional sheets if needed					
Origin Criterion	CTH				
Production Process	Melting→Extruding→Cutting→Measurement→Packing				
③ Management of Certificates of Origin					
Person in charge	(Name) <i>Lee Gwa Jang</i> (Title) <i>Manager</i> (Signature) <i>Gwa Jang</i>				
Designated Signatory	(Name) <i>Lee Gwa Jang</i> (Title) <i>Manager</i> (Signature) <i>Gwa Jang</i>				
<p>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p> <p style="text-align: center;"><i>03/2013</i></p>					
Signatory	(Name) <i>Lee Gwa Jang</i> (Title) <i>Manager</i> (Signature) <i>Gwa Jang</i>				
<p>Required Documents</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Photos of Production Facilities 2. Organizational Chart 3. Production Flow Chart with photos of each process 4. Audit Reports within recent 2 years (including Balance Sheets and Income State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unavailable, please submit Tax Declaration 5. Certificates of Origin subject to verification 					

□ **Specific Information**

① **Information on Certificates of Origin**

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

② **Information on Transaction**

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

③ **Information on Products**

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

④ **Information on Manufacturing**

If necessary, use additional sheets

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Date : 03/03/2013

Signatory (Name) *Lee Gwa Jang* (Title) *Manager* (Signature) *Gwa Jang*

List of Attachments (Please specify hereunder) :

47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수입자용)

작성목적

- 원산지 서면검증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FTA특혜적용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제출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검증대상자(수입자)	세관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표준검증질의서 작성·제출을 요구받은 검증대상자는 서면검증 착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검증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제출기한연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특히, 질문서 작성 후 반드시 작성일자와 업체 관리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제재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1조(서면검증 통지) ① 세관장은 서면검증을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서면조사통지서를 사전 통지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2의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해당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2. 별지 제13호 서식의 원산지소명서
3. 별지 제14호 서식의 원산지질문서

② 세관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서면검증 착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기한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통지한다. 다만, 협정에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③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한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제출연기승인여부결정서로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1. 요청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2. 연기신청이 서면검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지 여부
3. 연기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연기신청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4. 연기간이 검증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④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서면검증과 현지검증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검증 계획보고 및 통지는 서면검증 계획보고 및 통지로 같음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작성양식

[서식1] 수입자용 표준서면질의서(안)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안)
 (수입자 작성용)

본 질의서는 한-OO FTA협정 제0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답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본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내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페루 FTA는 제외).

부문 I ▶ 거래자 정보

수입자 현황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업 종 / 업 태
사 업 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 직 원	(총 원) _____명 (임 원) _____명 (관리직) _____명 (생산직) _____명 (기타) _____명
원산지업무인력	<input type="checkbox"/>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성명, _____ / ☎ _____) <input type="checkbox"/> 자체직원활용(성명, _____ / ☎ _____), 원산지업무경력 0년 기타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체제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원산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상대국 수출자 현황 (수입자가 아는 사항만 기재)																								
업 체 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가명																				
대 표 자		업종/업태																						
사 업 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 직 원	(총 원) _____ 명 (임 원) _____ 명 (관리직) _____ 명 (생산직) _____ 명 (기타) _____ 명																							
원산지업무인력	<input type="checkbox"/>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또는 성명) / ☎ _____) <input type="checkbox"/> 자체직원활용(성명, _____ / ☎ _____), 원산지업무경력 0년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 생산 설비	<table border="1"> <thead> <tr> <th>설비 명칭</th> <th>대수</th> <th>용도</th> <th>설치장소</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_____ (e-mail) _____																				

생산자 현황 (수입자가 아는 사항만 기재,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기재 생략)																								
업 체 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가명																				
대 표 자		업종/업태																						
사 업 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 직 원	(총원) _____ 명 (임원) _____ 명 (관리직) _____ 명 (생산직) _____ 명 (기타) _____ 명																							
원산지업무인력	<input type="checkbox"/>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또는 성명) / ☎ _____) <input type="checkbox"/> 자체직원활용(성명, _____ / ☎ _____), 원산지업무경력 0년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 생산 설비	<table border="1"> <thead> <tr> <th>설비 명칭</th> <th>대수</th> <th>용도</th> <th>설치장소</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r><td> </td><td> </td><td> </td><td> </td></tr> </tbody> </table>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_____ (e-mail) _____																				

부문 II ▶ 일반사항 (수입신고건별 작성)

적용협정(해당□에√표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APTA 최빈특혜

1. 검증대상물품

수입 신고 번호			수입신고일자		
품 명			규 격		
H S 부 호			금액	중량 또는 수량	
1-1.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부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체결정 <input type="checkbox"/> 수출자통지 <input type="checkbox"/> 관세사자문 <input type="checkbox"/> 관세청사전회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1-2.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거래계약서 <input type="checkbox"/> 제조공정설명서 <input type="checkbox"/> 원재료명세서(BOM) <input type="checkbox"/> 도설명서 <input type="checkbox"/> 품목분류사전심사서 <input type="checkbox"/> 견본품 (* 분석에 소비되는 견본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2-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상대국 정부기관 <input type="checkbox"/> 해외수출자 <input type="checkbox"/> 해외생산자 <input type="checkbox"/> 국내수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2-2.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3.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원산지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정관세 적용신청

3-1.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였습니까?	(YYYY/MM/DD)				
3-2. 1개의 송품장에 원산지가 다수인 경우, 물품별로 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3. 수량할당협정관세적용품목(TRQ)은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았나요(추천대상에 한함)? 만약 추천받았다면, 해당 추천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추천서가 전산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에 √ 표시 후 제출 생략 <input type="checkbox"/> 전산제출					

4. 운송관계

4-1.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B/L <input type="checkbox"/> AWB <input type="checkbox"/> 적하목록 <input type="checkbox"/> 기타자료()				
4-2.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3. 상기 4-2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4.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5. 상기 4-4 질문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세관 통제하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또는 공정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 III ▶ 원산지 결정 기준 (수입신고건별 작성)

5. 공통사항

- 5-1. 상대국 수출자는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5-2. 생산국가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5-3. 생산시설의 위치(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5-4.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 5-5. 원산지 검증 대상 물품의 제조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제조공정도가 있는 경우 제출).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에 V 표시 후 각 항목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협정 제6-19조 제4호 아목(Article 6.19 4 h)에 따라 수입자 증명(인지)이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는 수입자가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 이외에는 수입자가 아는 사항을 기재하시되 필수기재사항(8. 3 ~ 8. 7 질문)은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완전생산기준	6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세변변경기준	7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역내가치기준	8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가공공정기준	9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완전생산기준

- 6-1. 검증대상물품의 제조과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과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2. 검증대상 수입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유형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 HS부호 :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로 기재
유형 : 붙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7번 항목을 참고하여 a~h 중 하나를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세번변경기준

7-1.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원산지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 세번변경이 없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는 경우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미소기준).
 ※ 해당 협정에서 최소(미소)기준 산정방법이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란에,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란에 기재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원산지	가격	중량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총액	①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총 중량	①	
FOB기준 조정거래가격 총액	②		구성품의 총 중량	②	
또는 물품가격 총액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8. 역내가치기준

8-1. 역내가치(RVC) 산정대상 회계기간

8-2.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내역에 대하여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소요량	단가	원재료 가격	
							원산지 원재료	비원산지 원재료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 (8.3 ~ 8.7 질문)

8-3. 구매자(수입자)와 판매자(수출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8-4. 상기 8-3 질문과 관련하여 가격결정 방법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제1방법(실제지급가격 기초)	<input type="checkbox"/> 제2방법(동종동종물품 거래가격 기초)	<input type="checkbox"/> 제3방법(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
<input type="checkbox"/> 제4방법(국내판매가격 기초)	<input type="checkbox"/> 제5방법(산정가격 기초)	<input type="checkbox"/> 제6방법(합리적 기준)

8-5.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input type="checkbox"/>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input type="checkbox"/>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8-6. 물품의 수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V 표시하시고, 상세내역을 기재바랍니다(가산요소).

<input type="checkbox"/>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해당 물품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input type="checkbox"/> 구매자가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인하된 가격으로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가격 또는 인하차액	<input type="checkbox"/>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input type="checkbox"/>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input type="checkbox"/>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8-7. 물품의 수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V 표시하시고, 상세내역을 기재바랍니다(공제요소).

<input type="checkbox"/> 수입 후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기술지원비용	<input type="checkbox"/> 수입항 도착 후 운임·보험료
<input type="checkbox"/> 수입국에서 부과된 관세 등 제세, 공과금	<input type="checkbox"/>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수입물품의 연불이자

9. 가공공정기준

9-1. 해당 물품의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하시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대체가능물품

10-1.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2.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10-3. 대체가능물품의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물품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4.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5.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10-6. 대체가능원재료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원재료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Ⅳ ▶ 책임자 서명·확인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작성일자	
대표자 직함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관 기재 사항

세관명	부서
직급	성명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사항】

※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관련 질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질의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 본 질문서를 통해 수집된 기업의 비밀정보는 원산지결정, 관세 등 세금의 부과징수 등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질문서 작성 후 반드시 작성일자와 업체 관리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 수입자는 다음의 수입신고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FTA특례법, FTA특례법시행령, 각 협정

협정(법령)별	근거조항	보관대상자료
F T A 특 례 법 FTA특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1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수입신고필증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지식재산권거래 관련 계약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수입물품의 국제운송 관련 서류 사전심사서 사본 및 사전심사 증빙서류(사전심사서 교부받은 경우)
한 - 칠 레	제5.3조 제3항,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상품이 원산지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신고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문서 원산지증명서 사본
한 - 싱 가 포 르	제5.5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품수입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서류(전자기록포함) 원산지증명서 사본(전자기록포함)
한 - E F T A	부속서 I 21조 2항, 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과 관련된 모든 기록(전자기록 포함)
한 - 아 세 안	부록1 규칙 13조 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수입관련 기록
한 - 인 도	제4.10조 제2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사본 일체의 관련 수입서류 ※ 디지털 · 전자 · 광학 · 자기 또는 인쇄사본을 포함하되,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한 보관을 선택할 수 있음
한 - E U	제23조 제2항,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자의 법과 규정에 따른 수입과 관련된 기록(전자기록포함가능)
한 - 페 루	제4.6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 사본 수입과 관련된 기록
한 - 미	제6.17조 제2항 제6.17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상품이라는 수입자의 증명 또는 인지에 기초하여 그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그 상품이 특혜관세대우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 수출자나 생산자가 발급한 증명서에 기초하여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수입자가 신청의 기초로 사용된 증명의 사본 제6.13조(통관 및 환적)에 따라 원산지상품이 되는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기록을 수입자가 보유하는 경우 관련 기록

4. 물품의 HS부호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물품, 원재료 등의 가격(금액)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선인도조건(FOB), 공장인도조건(EXW), 조정가격, 순원가 등을 미화(USD) 환산한 가격(금액)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은 해당 물품의 HS부호체계에서 정하는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kg, u kg, 2u, m kg, m² kg, m³ kg, ℓ kg, MW 등
7.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원재료의 유형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 질문 관련).

구분	유형	상세 내용
광물성 생산품	a	당사국 영역에서 추출된 광물성 상품
식물성 생산품	b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집된 식물 또는 식물성 생산품
산동물 및 관련 물품	c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또는 그 동물로부터의 제품
수렵·어로·양식 생산품	d	당사국 영역에서 수렵·뎃사냥·어로·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영해밖 획득물, 해저물품	e	당사국에 등록되고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영해 밖에서 획득한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f	우주에서 당사국 또는 사람이 획득하고 가공한 상품
폐기물, 재생품	g	당사자내에서 생산·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부스러기,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집된 중고품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h	당사국에서 완전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 만든 물품

※ 영역, 산물의 세부적인 구분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8. 한-미 FTA 적용 대상 물품은 제6.18조 및 제6.19조에 따라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 세관당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KCS Form 3】 Korean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for Importer

KOREA CUSTOMS SERVICE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FOR IMPORTER)

This questionnaire is sent to you pursuant to Article O.OO of Korea-OO FTA and Article 13 of the Special Law on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It will be used in determining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imported good(s).

If necessary,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at a later date.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Please submit the completed sheets within ___ days after you receive the questionnair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provided if the due period is not met.

For an extension of the submission date, you may have a single opportunity to make a written request to the Customs Authority sending this questionnaire (Korea-Peru FTA excluded).

SECTION I ▶ TRADER INFORMATION

IMPORTER				
Company Name		Tax Registration Number		
Name of CEO		Business Type/Condition		
Physical Address	(Head office)		Tel	
			Fax	
			Website	
	(Factory 1)		Tel	
	(Factory 2)		Tel	
Personnel	(Total) _____ persons (Board of Directors) _____ persons (Managers) _____ persons (Production) _____ persons (Others) _____ persons			
Consultants and Staffs involved in Origin Management	<input type="checkbox"/> Third Party Consultants(Customs Broker, Consulting Firm, and/or Origin Specialist) Name: _____ /☎: _____ <input type="checkbox"/> Origin Staff (Name: _____ /☎: _____), experienced for ___ yr(s)			
	Please provide any other information about the origin staffs in charge of origin management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Origin Management System	Do you have an origin management manual?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lease provide (a copy of) the manual			
	Do you operate a system for origin managemen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Manager in charge of Origin	(Department)	(Position)	(Name)	(Tel) (E-mail)

Management					
EXPORTER (Fill out to the best of the importer's knowledge)					
Company Name		Overseas Supplier's No.		Country	
Name of CEO		Business Type/Condition			
Physical Address	(Head office)			Tel	
				Fax	
				Website	
	(Factory 1)			Tel	
	(Factory 2)			Tel	
Personnel	(Total) _____ persons (Board of Directors) _____ persons (Managers) _____ persons (Production) _____ persons (Others) _____ persons				
Consultants and Staffs involved in Origin Management	<input type="checkbox"/> Third Party Consultants(Customs Broker, Consulting Firm, and/or Origin Specialist) Name: _____ /☎: _____ <input type="checkbox"/> Origin Staff (Name: _____ /☎: _____), experienced for _____ yr(s)				
Production Facilities for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Description of Equipments	Quantity	Use	Location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Manager in charge of Origin Management	(Department)	(Position)	(Name)	(Tel)	(E-mail)
PRODUCER (Fill out to the best of the importer's knowledge, if producer and exporter are different)					
Company Name		Overseas Supplier's No.		Country	
Name of CEO		Business Type/Condition			
Physical Address	(Head office)			Tel	
				Fax	
				Website	
	(Factory 1)			Tel	
	(Factory 2)			Tel	
Personnel	(Total) _____ persons (Board of Directors) _____ persons (Managers) _____ persons (Production) _____ persons (Others) _____ persons				
Consultants and staffs involved in Origin Management	<input type="checkbox"/> Third Party Consultants(Customs Broker, Consulting Firm, and/or Origin Specialist) Name: _____ /☎: _____ <input type="checkbox"/> Origin Staff (Name: _____ /☎: _____), experienced for _____ yr(s)				

Production Facilities for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Name of Equipment	Quantity	Use	Location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Manager in charge of Origin Management	(Department)	(Position)	(Name)	(Tel)	(E-mail)

SECTION II ► GENERAL INFORMATION (based on each import declaration)

Applied FTA or Trade Agreement (Mark √ where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Korea-Chile <input type="checkbox"/> Korea-Singapore <input type="checkbox"/> Korea-EFTA <input type="checkbox"/> Korea-ASEAN <input type="checkbox"/> Korea-India <input type="checkbox"/> Korea-EU <input type="checkbox"/> Korea-Peru <input type="checkbox"/> Korea-US <input type="checkbox"/> APTA <input type="checkbox"/> GSP
---	---

1. DETAILS OF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Import Declaration No.	Date of Importation
Description of Good(s)	Specification of Good(s)
HS Code	Price
Weight/Quantity	
1-1. How did you determine HS code of the imported good(s)?	<input type="checkbox"/> Importer's determination <input type="checkbox"/> Advice by exporter <input type="checkbox"/> Consulting broker <input type="checkbox"/> Advance Rulings <input type="checkbox"/> Others (please specify:)
1-2. For tariff classification, please mark √ where applicable and provide a copy of the supporting documents or a sample	
<input type="checkbox"/> Transaction Contract <input type="checkbox"/> Production Process Information	<input type="checkbox"/> Bill of Material (BOM) <input type="checkbox"/> Use Information
<input type="checkbox"/> Advance Rulings on Tariff Classification	<input type="checkbox"/> Sample (※ Your sample will not return if it is used for analysis)
2. CERTIFICATE OF ORIGIN (C/O)	
2-1. Issuer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C/O)	<input type="checkbox"/> Government agency of the trade partner <input type="checkbox"/> Exporter <input type="checkbox"/> Producer <input type="checkbox"/> Importer <input type="checkbox"/> Others (please specify:)
2-2. Does the importer keep a C/O log book(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2-3. Please provide a copy of the C/O and supporting documents to substantiate a preference claim.	
3. CLAIM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3-1. Date of the claim for preferential treatment: (YYYY-MM-DD)	
3-2. Was the claim for preferential treatment made on each item in respect to the multiple countries of origin listed on the invoic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3-3. Were the imported good(s) that are subject to Tariff Rate Quota administered by the Authorities for Tariff Rate Quota (TRQ)? If yes, please submit the copy of the written administratio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the written administration was transmitted online, please mark √ only. (Do not submit the copy). <input type="checkbox"/> Transmitted online	
4. TRANSIT AND TRANSSHIPMENT	
4-1. Please mark √ where the applicable transportation modes are indicated.	

	<input type="checkbox"/> Bill of Lading (B/L)	<input type="checkbox"/> Airway Bill (AWB)	<input type="checkbox"/> Cargo Manifest	<input type="checkbox"/> Others (please specify:)
4-2.	Did the imported good(s), on which a claim for preferential treatment was made, transit or transship a non-originating party while transported?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4-3.	If you marked 'yes' to question 4-2, please provide supporting details proving that the good(s) remained under the control of Customs Authority of the non-originating party, and submit documentary evidences.			
	(※ Supporting detail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4-4.	Did the imported good(s) underg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the goods in good conditio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4-5.	If you marked 'No' to question 4-4, please explain the detailed operation under the control of Customs Authority, and provide the documentary evidences.			
	(※ Explanation of the operation,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SECTION III ►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based on each import declaration)

5. COMMON CRITERIA	
5-1.	Does the exporter own manufacturing facilitie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5-2.	Please state the country of production
5-3.	Please provide physical address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5-4.	Did the exporter or producer carry out the production operation beyond the non-qualifying operation stipulated in the relevant Agreemen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5-5.	Please explain the manufacturing processes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Manufacturing Flow Chart to be submitted if available).
	(※ Explan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Please mark indicating the appropriate preference rules applied to the good(s) being verified, and complete the questions below.

If the importer's certification or knowledge forms the basis for the claim stipulated in Paragraph 4 (h) to Article 6.19 of Korea-US FTA, all the relevant questions must be filled out. Otherwise, the relevant information may be provided to the best of the importer's knowledge. However, questions 8.3 ~ 8.7 are mandatory fields to be completed.

Preference Criterion	Please mark all the applicable rules that you applied. Complete the question corresponding to the rule that applies	<input type="checkbox"/> Wholly obtained and produced	Complete Question No. 6
		<input type="checkbox"/> Tariff classification change	Complete Question No. 7
		<input type="checkbox"/> Regional value content	Complete Question No. 8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ing process	Complete Question No. 9

6. WHOLLY OBTAINED AND PRODUCED CRITERION

6-1.	Please describe the production operation for the good(s) being verified
------	---

(☒ Production Operation,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6-2. Provide the details of raw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s) in the table below.

S/N	Description of Material	Type	HS Code	Name/Address of Supplier	Country of Origin

☒ HS code : 6 or 8 digit code to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Agreement.

☒ Type : please refer to #7 of the attached 'Completion Instructions' and choose one out of 'a' through 'h'.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7.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7-1. Provide the details of raw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good(s) in the table below and provide all documentary evidences.

S/N	Description of Material	Type	HS Code	Address/Contact Information of Supplier	Country of Origin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Provide the details of non-originating materials in the table below, which did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rovide supporting documents to substantiate a claim for the preferential treatment, e.g. based on De-minimis rule.

7-2. ✦ For application of De-minimis rule, please check if De-minimis calculation is based on value or weight. Complete only one of the two columns applicable.

S/N	Description of Material	HS Code	Country of Origin	Value	Weight

holding 5% or more of outstanding voting stock or shares		<input type="checkbox"/> others (Please specify the relationship:)
8-4. Regarding the above question 8-3, please select the methods for determining price		
<input type="checkbox"/>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imported goods	<input type="checkbox"/> Transaction price for identical goods	<input type="checkbox"/> Transaction price for similar goods
<input type="checkbox"/> Deductive value	<input type="checkbox"/> Computed value	<input type="checkbox"/> Other reasonable methods
8-5. In respect to the imported good(s), please mark <input checked="" type="checkbox"/> where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imported free of charge	<input type="checkbox"/> leased free of charge	
<input type="checkbox"/> imported for consignment sales for exporter's account	<input type="checkbox"/> imported based on intracorporate transaction	
<input type="checkbox"/> goods such as industrial waste, imported for proper disposal at the exporter's expense	<input type="checkbox"/> imported for consignment sales where a public auction determines the sale price	
<input type="checkbox"/> imported based on lease contract	<input type="checkbox"/> none of the above	
8-6. Please mark <input checked="" type="checkbox"/> where applicable in terms of additions to transaction value for the imported good(s)		
<input type="checkbox"/> selling commission incurred by the buyer (excluding buying commission)	<input type="checkbox"/> packing costs incurred by the buyer	
<input type="checkbox"/> discounts, such as reductions in price based on quantity purchased or payment of invoices in cash	<input type="checkbox"/>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such as patent rights, utility model rights, design rights, trademark rights that the buyer is required to pay directly or indirectly	
<input type="checkbox"/> the proceeds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ed good that accrue,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ller	<input type="checkbox"/> costs of international freight and insurance to Korean ports, and other transport-related expenses	
8-7. Please mark <input checked="" type="checkbox"/> where applicable in terms of deductions from transaction value for the imported good(s).		
<input type="checkbox"/> the costs occurred after importation, such as costs of constructing, installing, assembling, repairing, maintaining, providing technical assistance	<input type="checkbox"/> costs of freight and insurance occurred after importation	
<input type="checkbox"/> customs duties, taxes and utility bills in Korea	<input type="checkbox"/> installment interest in case the import is based on installment payment	
9. MANUFACTURING PROCESS CRITERION		
9-1. Explain how this criterion is met and submit supporting documents.		
(※ Explanation on manufacturing process undertaken.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10. FUNGIBLE GOODS/MATERIALS CRITERION		
10-1. Does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contain fungible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good(s)?	
10-2. If yes, select the inventory management method used.	<input type="checkbox"/> FIFO <input type="checkbox"/> LIFO <input type="checkbox"/> Averaging <input type="checkbox"/> Other acceptable method
10-3. Provide the fungible good(s) used in the space below.	
(※ Description of fungible good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10-4. Does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contain fungible material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10-5. If yes, select the inventory management method used.	<input type="checkbox"/> FIFO <input type="checkbox"/> LIFO <input type="checkbox"/> Averaging <input type="checkbox"/> Other acceptable method
10-6. Provide the fungible material(s) used in the space below.	
(※ Description of fungible material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SECTION IV ► CERTIFICATION

We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we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We understand that we are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Company Name	Date	
Name of Representative	Title	Authorized Signature/Seal
Name of Person who Completed this Form	Title	Authorized Signature/Seal

Customs Use Only

Name of Customs	Division
Title	Name of person in charge

[Additional question or information]

※ For additional questions or information, use the space below. If further space is needed, use the continuation pages.

List of Documents Submitted

S/N	Description of Documents	Question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Completion Instructions

- Th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ollected on the questionnaire may be only disclosed to th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the preference rules of origin, customs, and revenue regulations. If necessary,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at a later date.
- You will have to return the completed and signed questionnaire to the requesting Customs Offic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provided if the due period is not met.
- Importer is required to keep all import-related documents for 5 years from the acceptance date of import declaration. The documents stated as below shall be submitted if requested by Customs.
 - ☒ Record keeping requirements are stipulated in the FTA and Enforcement Decree under the Special Law on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FTA	Regulatory Basis	Documents entitled to Record Keeping
Enforcement Decree /the Special Law on Customs Act	Paragraph 1 of Article 12 Paragraph 1.1 of Article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includes e-C/Os) ● Certificate of Import Declaration ● Contract of import transaction ● Contract of intellectual property ● Customs-Value related documentations for imported good(s) ● Documents of International Shipment of imported good(s) ● A copy of Advanced Rulings and its documentary evidences (if applicable)
Korea-Chile	Paragraph 3 and 4 of Article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written declaration stating that the good qualifies origin requirements at the time of importation ● Documents related to the importation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Korea-Singapore	Article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cuments requested by the Authority in terms of the importation of the good(s) (including e-records)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includes e-C/Os)
Korea-EFTA	Paragraph 2 and 3 of Article 21 of Annex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l records (including e-records) related to the importation
Korea-ASEAN	Paragraph 2 of Article 13, Appendix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rds relevant to the impor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importing party
Korea-India	Paragraph 2 of Article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 All documents relevant to the importation ☒ Importer may choose to maintain records specified in any medium that allows for prompt retrieva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igital, electronic, optical, magnetic or hard copy
Korea-EU	Paragraph 2 and 4 of Article 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l records (including e-records) related to the impor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importing party
Korea-Peru	Paragraph 3 of Article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 Records related to the importation

Korea-US	Paragraph 2 and 3 of Article 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l records proving that the good(s) is entitled to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hich belong to the importer claiming the preference for the good(s)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that party based on the importer's certification or its knowledge ● A copy of the certification of the importer claiming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the good imported the territory of that party based on certifications submitted from exporter or producer ● Records demonstrating that the good satisfies the origin requirements pursuant to Article 6.13 (transit and transshipment)
----------	-----------------------------------	---

4. 6-digit or 8-digit HS Code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FTA.

5. In terms of the value of the goods and/or materials, please convert the value of FOB, EXW, adjusted price, net cost etc. into the
US dollars

6. Please describe the unit of quantity of the good set out i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g. kg, u
kg, 2u, m kg, m' kg, m' kg, £ kg, MW, etc.

7. For question 6-2, please indicate the type of products with reference to the chart below.

Classification	Type	Detailed Context
Mineral products	a	mineral goods extracted from in territory of the party
Vegetable products	b	vegetable products grown and harvested in territory of the party
Live animals or goods taken from them	c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in territory of the party, products from live animals raised in territory of the party
Goods obtained by hunting or fishing	d	goods obtained by hunting, trapping, fishing, aquaculture conducted in territory of the party
Marine products	e	products of sea fishing taken by vessels registered with the party and entitled to fly its flag from the sea outside the sea territorial sea
Goods from universe	f	goods taken from outer space provided that they are obtained by the party or a person of the party
Waste, recycling goods	g	used articles collected in territory of the party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or for use as waste
derived products	h	goods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the party solely from goods referred to as above

※ Detailed classification of territory and product depends on the applied FTA.

8. For goods entitled to preference under Korea-US FTA, the importer may arrange for the exporter or producer to provide information proving that the good is originating directly to the Party.

작성방법

1. 거래자 정보

- 1) **수입자 현황** : 수입자의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업종/업태 · 사업장(본사 및 공장)의 주소 등 연락처 정보 · 임직원 현황 · 원산지업무인력 및 원산지관리책임자 정보를 기재하고, 원산지관리체계와 관련된 질문에 대해 해당 란에 [V]표로 표시합니다.
- 2) **상대국 수출자 현황** : 수출자의 회사명 · 해외공급자부호 · 국가명 · 대표자 · 업종/업태 · 사업장(본사 및 공장)의 주소 등 연락처 정보 · 임직원 현황 · 원산지업무인력 및 원산지관리책임자 정보를 기재하고, 검증대상이 된 물품과 관련된 주요생산설비 정보를 기재합니다.
 ※ 다만, 수입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합니다.
- 3) **생산자 현황** : 생산자의 회사명 · 해외공급자부호 · 국가명 · 대표자 · 업종/업태 · 사업장(본사 및 공장)의 주소 등 연락처 정보 · 임직원 현황 · 원산지업무인력 및 원산지관리책임자 정보를 기재하고, 검증대상이 된 물품과 관련된 주요생산설비 정보를 기재합니다.
 ※ 다만, 수입자가 알고 있는 경우에 한해 기재하며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기재를 생략합니다.

2. 일반사항(수입신고건별 작성)

- 1) **검증대상물품** : 검증대상 물품을 각 수입신고건별로 구분하여 수입신고번호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2)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와 관련된 질문에 해당 답변을 [V]표로 표시합니다.
 - 3) **협정관세 적용신청** : 협정관세 적용신청 일시를 기재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과 관련된 질문에 해당 답변을 [V]표로 표시합니다.
 - 4) **운송관계** : 운송관계와 관련된 질문에 해당 답변을 [V]표로 표시합니다.
-

3. 원산지결정기준(수입신고건별 작성)

- 1) **공통사항** :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질문에 대해 해당 란에 [V]표로 표시합니다.
- 2) **원산지결정기준(6.완전생산기준~10. 대체가능물품)** : 답변 대상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란에 대해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다만, 선택기준의 경우 선택 가능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만 기재하면 되고, 결합기준은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모두에 대해 답변하여야 합니다.

4. 책임자 서명·확인

- 1) 공란에 해당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작성사례

[서식1] 수입자용 표준서면질의서(안)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안)
 (수입자 작성용)

본 질의서는 한-00 FTA협정 제0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수입된 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답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본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내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한-페루 FTA는 제외).

부문 I ▶ 거래자 정보

수입자 현황			
업 체 명	정보원(주)	사업자등록번호	123-11-11111
대 표 자	김국제	업 종 / 업 태	제조업/기계생산
사 업 장	(본사 주소)	전화	031-600-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팩스	031-600-0000
		홈페이지	www.home.co.kr
		(공장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 직 원	(총 원) 100 명 (임 원) 3 명 (관리직) 5 명 (생산직) 85 명 (기타) 7 명		
원산지업무인력	<input type="checkbox"/>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성명,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직원활용(성명, / ☎ 031-600-0000), 원산지업무경력 3년 기타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체제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 속) 관리부 (직위) 과장 (성명) 김관리 (전화) 031-600-0000 (e-mail) managerkim@origin.or.kr		

상대국 수출자 현황 (수입자가 아는 사항만 기재)																														
업 체 명	Holy Machine	해외공급자부호	11-1-1-1	국가명	German																									
대 표 자		업종/업태																												
사 업 장	(본사 주소) 1234 road 5 district Berlin city german	전화	000-0000-0000																											
		팩스																												
		홈페이지	holymachine@co.kr																											
	(공장1 주소) 1234 road 5 district Berlin city	전화	000-0000-0000																											
	(공장2 주소)	전화																												
임 직 원	(총 원) _____ 명 (임 원) _____ 명 (관리직) _____ 명 (생산직) _____ 명 (기타) _____ 명																													
원산지업무인력	<input type="checkbox"/>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또는 성명) / ☎ _____) <input type="checkbox"/> 자체직원활용(성명, / ☎ _____), 원산지업무경력 0년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 생산 설비	<table border="1"> <thead> <tr> <th>설비 명칭</th> <th>대수</th> <th>용도</th> <th colspan="2">설치장소</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colspan="2"> </td></tr> <tr><td> </td><td> </td><td> </td><td colspan="2"> </td></tr> <tr><td> </td><td> </td><td> </td><td colspan="2"> </td></tr> <tr><td> </td><td> </td><td> </td><td colspan="2"> </td></tr> </tbody> </table>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생산자 현황 (수입자가 아는 사항만 기재, 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한 경우 기재 생략)																														
업 체 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가명																										
대 표 자		업종/업태																												
사 업 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 직 원	(총원) _____ 명 (임원) _____ 명 (관리직) _____ 명 (생산직) _____ 명 (기타) _____ 명																													
원산지업무인력	<input type="checkbox"/>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또는 성명) / ☎ _____) <input type="checkbox"/> 자체직원활용(성명, / ☎ _____), 원산지업무경력 0년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 생산 설비	<table border="1"> <thead> <tr> <th>설비 명칭</th> <th>대수</th> <th>용도</th> <th colspan="2">설치장소</th> </tr> </thead> <tbody> <tr><td> </td><td> </td><td> </td><td colspan="2"> </td></tr> <tr><td> </td><td> </td><td> </td><td colspan="2"> </td></tr> <tr><td> </td><td> </td><td> </td><td colspan="2"> </td></tr> <tr><td> </td><td> </td><td> </td><td colspan="2"> </td></tr> </tbody> </table>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부문 II ▶ 일반사항 (수입신고건별 작성)

적용협정(해당□에√표시)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한-인도
 한-EU 한-페루 한-미국 APTA 최빈특혜

1. 검증대상물품

수입 신고 번호	123-11-XXXXXXXXXX		수입신고일자	2013.02.20
품 명	XXX		규 격	120*150
H S 부 호	8500.00	금액	110,000US\$	중량 또는 수량 1
1-1. 수입물품의 품목분류(HS부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체결정 <input type="checkbox"/> 수출자통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세사자문 <input type="checkbox"/> 관세청사전회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1-2.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거래계약서 <input type="checkbox"/> 제조공정설명서 <input type="checkbox"/> 원재료명세서(BOM) <input type="checkbox"/> 용도설명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품목분류사전심사서 <input type="checkbox"/> 견본품 (* 분석에 소비되는 견본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2-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상대국 정부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외수출자 <input type="checkbox"/> 해외생산자 <input type="checkbox"/> 국내수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2-2.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2-3. 원산지증명서 사본과 원산지 증명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협정관세 적용신청

3-1. 협정관세는 언제 신청하였습니까?	2013/03/03			
3-2. 1개의 송품장에 원산지가 다수인 경우, 물품별로 따로 협정관세를 적용하였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3. 수량할당협정관세적용품목(TRQ)는 주무장관의 추천을 받았나요(추천대상에 한함)? 만약 추천받았다면, 해당 추천서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추천서가 전산으로 전송된 경우에는 □에 √ 표시 후 제출 생략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전산제출			

4. 운송관계

4-1.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B/L <input type="checkbox"/> AWB <input type="checkbox"/> 적하목록 <input type="checkbox"/> 기타자료()			
4-2.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4-3. 상기 4-2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특혜관세적용 수입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4-4.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5. 상기 4-4 질문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세관 통제하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또는 공정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 III ▶ 원산지 결정 기준 (수입신고건별 작성)

5. 공통사항

- 5-1. 상대국 수출자는 검증대상물품에 대한 자체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5-2. 생산국가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German
- 5-3. 생산시설의 위치(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Berlin
- 5-4.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특혜관세 적용 수입물품에 대해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 5-5. 원산지 검증 대상 물품의 제조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제조공정도가 있는 경우 제출).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에 표시 후 각 항목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 협정 제6-19조 제4호 아목(Article 6.19 4 h)에 따라 수입자 증명(인지)이 신청의 기초를 이룰 때는 수입자가 해당 사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상기 이외에는 수입자가 아는 사항을 기재하시되 필수기재사항(8. 3 ~ 8. 7 질문)은 모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 산 지 결정기준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완전생산기준	6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번변경기준	7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역내가치기준	8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가공공정기준	9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6. 완전생산기준

- 6-1. 검증대상물품의 제조과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과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6-2. 검증대상 수입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유형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 HS부호 :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로 기재
 유형 : 붙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7번 항목을 참고하여 a~h 중 하나를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세번변경기준

7-1.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원산지
1	AAA	8400.00	RRR	Berlin(00-00-0000)	German
2	BBB	8401.00	RRR	Berlin(00-00-0001)	German
3	CCC	8402.00	NNN	Berlin(00-00-0002)	German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2. 세번변경이 없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는 경우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미소기준).
 ※ 해당 협정에서 최소(미소)기준 산정방법이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란에,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란에 기재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원산지	가격	중량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총액	①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총 중량	①	
FOB기준 조정거래가격 총액	②		구성품의 총 중량	②	
또는 물품가격 총액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8. 역내가치기준

8-1. 역내가치(RVC) 산정대상 회계기간

8-2.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내역에 대하여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소요량	단가	원재료 가격	
							원산지 원재료	비원산지 원재료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필수기재사항 (8.3 ~ 8.7 질문)

8-3. 구매자(수입자)와 판매자(수출자)와의 거래관계에 대해 표기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사업상의 임원 또는 관리자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구매자와 판매자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동지배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구매자 및 판매자가 동일한 제3자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를 받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호 법률상의 동업자인 경우	<input type="checkbox"/> 구매자와 판매자가 고용관계에 있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특정인이 구매자 및 판매자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5%이상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기타(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

8-4. 상기 8-3 질문과 관련하여 가격결정 방법에 대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제1방법(실제지급가격 기초)	<input type="checkbox"/> 제2방법(동종동종물품 거래가격 기초)	<input type="checkbox"/> 제3방법(유사물품 거래가격 기초)
<input type="checkbox"/> 제4방법(국내판매가격 기초)	<input type="checkbox"/> 제5방법(산정가격 기초)	<input type="checkbox"/> 제6방법(합리적 기준)

8-5. 수입하는 물품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V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무상으로 임차하는 수입물품
<input type="checkbox"/>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별개의 독립된 법적 사업체가 아닌 지점 등에서 수입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산업쓰레기 등 수출자의 부담으로 국내에서 폐기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수입 후 경매 등을 통하여 판매가격이 결정되는 위탁판매수입물품
<input type="checkbox"/>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입하는 물품	<input type="checkbox"/> 해당사항 없음

8-6. 물품의 수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V 표시하시고, 상세내역을 기재바랍니다(가산요소).

<input type="checkbox"/>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input type="checkbox"/> 해당 물품 용기의 비용과, 해당 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input type="checkbox"/> 구매자가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인하된 가격으로 직·간접으로 공급하는 가격 또는 인하차액	<input type="checkbox"/>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권리사용료
<input type="checkbox"/>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input type="checkbox"/>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

8-7. 물품의 수입이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에 V 표시하시고, 상세내역을 기재바랍니다(공제요소).

<input type="checkbox"/> 수입 후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기술지원비용	<input type="checkbox"/> 수입항 도착 후 운임·보험료
<input type="checkbox"/> 수입국에서 부과된 관세 등 제세, 공과금	<input type="checkbox"/> 연불조건 수입의 경우 수입물품의 연불이자

9. 가공공정기준

9-1. 해당 물품의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하시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 대체가능물품

10-1.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2.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10-3. 대체가능물품의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물품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0-4.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10-5.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10-6. 대체가능원재료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원재료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Ⅳ ▶ 책임자 서명 · 확인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정보원(주)	작성일자	2013.03.03
대표자 직함	대표이사	성명	김국제 (서명 또는 날인)
책임자 직위	과장	성명	이과장 (서명 또는 날인)

세관 기재 사항

세관명	부서
직급	성명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사항】

※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관련 질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8 원산지검증표준질의서(수출자·생산자용)

작성목적

- 원산지 서면검증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관세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FTA특혜적용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제출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검증대상자(수출자·생산자)	세관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관세당국으로부터 원산지표준검증질의서 작성·제출을 요구받은 검증대상자는 서면검증 착수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에 서류 제출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검증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류제출기한연기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특히, 질문서 작성 후 반드시 작성일자와 업체 관리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등 제재조치가 진행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함.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1조(서면검증 통지) ① 세관장은 서면검증을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서면조사통지서를 사전 통지한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표2의 원산지검증 표준 준비자료 목록표 해당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2. 별지 제13호 서식의 원산지소명서
3. 별지 제14호 서식의 원산지질문서

② 세관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서면검증 착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구서류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제출기한연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통지한다. 다만, 협정에서 제출기한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다.

③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서류제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 검토한 후 신청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류제출연기승인여부결정서로 승인 여부를 통지한다.

1. 요청 사유가 타당한지 여부
2. 연기신청이 서면검증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인지 여부
3. 연기한 사안에 대하여 다시 연기신청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4. 연기간이 검증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

④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서면검증과 현지검증을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현지검증 계획보고 및 통지는 서면검증 계획보고 및 통지로 같음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원산지증빙서류 등의 보관 및 제출) ① 수입자·수출자 및 생산자는 협정 및 이 법에 따른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협정에서 정한 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원산지의 확인, 협정관세의 적용 등에 관한 심사를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수입자
2. 수출자·생산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 및 생산자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2항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20일 이상의 기간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

작성양식

[서식2] 수출자·생산자용 표준서면질의서(안)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안)

(수출자·생산자 작성용)

본 질의서는 한-OO FTA협정 제O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답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본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내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한-칠레 FTA는 제외).

부문 I ▶ 거래자 정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아래 해당하는 유형의 □에 V 표시 후,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자 유형	유형별 설명
<input type="checkbox"/> 수출자	검증대상물품을 수출한 자
<input type="checkbox"/> 수출자/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의 수출한 자이면서 생산한 자
<input type="checkbox"/> 물품 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을 수출하지는 않았으나 생산한 자
<input type="checkbox"/> 원재료 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를 생산한 자

업 체 명		해외공급자부호		국기명																	
대 표 자		업 종 / 업 태																			
사 업 장	(본사 주소)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장1 주소)			전화																	
	(공장2 주소)			전화																	
임 직 원	(총원) _____ 명 (임원) _____ 명 (관리직) _____ 명 (생산직) _____ 명 (기타) _____ 명																				
원산지업무인력	<input type="checkbox"/>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성명) _____ / ☎ _____ <input type="checkbox"/> 자체직원활용(성명, _____ / ☎ _____), 원산지업무경력 O년 기타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체제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 생산 설비	<table border="1"> <thead> <tr> <th>설비 명칭</th> <th>대수</th> <th>용도</th> <th>설치장소</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	(e-mail)																

부문 II ▶ 일반사항 (수출신고건별 작성)

적용협정 (해당□에√표시)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type="checkbox"/> 한-미국	<input type="checkbox"/> APTA	<input type="checkbox"/> 최빈특혜

1. 검증대상물품

수출신고 번호		수출신고 일자	
품명		규격	
HS부호		금액	중량 또는 수량
1-1. 수출물품의 품목분류(HS부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체결정	<input type="checkbox"/> 관세사자문
		<input type="checkbox"/> 관세청사전회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1-2.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거래계약서			
<input type="checkbox"/> 제조공정설명서			
<input type="checkbox"/> 원재료명세서(BOM)			
<input type="checkbox"/> 용도설명서			
<input type="checkbox"/> 견본품 (* 분석에 소비되는 견본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2-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input type="checkbox"/> 수출자	<input type="checkbox"/> 생산자
		<input type="checkbox"/> 상대국수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2-2.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모름				
2-3.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모름				
2-4. 원산지증명의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된 송품장 (제3국 발행 송품장 포함)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소명서				
<input type="checkbox"/>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운송관계

3-1.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B/L				
<input type="checkbox"/> AWB				
<input type="checkbox"/> 적하목록				
<input type="checkbox"/> 기타자료()				
3-2. 특혜관세적용 수출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3. 상기 3-2 질문에서 '예' 를 선택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5. 상기 3-4 질문에서 '아니오' 를 선택한 경우, 세관 통제하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또는 공정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 Ⅲ ▶ 원산지 결정 기준 (수출신고건별 작성)

4. 공통사항

- 4-1. 귀사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물품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오
- 4-2. 해당 수출물품은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예 아니오
- 4-3. 생산국가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4-4. 생산시설의 위치(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4-5.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4-6. 원산지 검증 대상 물품의 제조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에 표시 후 각 항목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완전생산기준	6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세번변경기준	7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역내가치기준	8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가공공정기준	9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완전생산기준

- 5-1. 검증대상물품의 제조과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과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5-2. 검증대상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유형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 HS부호 :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로 기재
 유형 : 붙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7번 항목을 참고하여 a~n 중 하나를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세번변경기준

6-1.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원산지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 세번변경이 없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는 경우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미소기준).

※ 해당 협정에서 최소(미소)기준 산정방법이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란에,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란에 기재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원산지	가격	중량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총액	①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총 중량	①	
FOB기준 조정거래가격 총액 또는 물품가격 총액	②		구성품의 총 중량	②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부문Ⅳ ▶ 책임자 서명·확인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작성일자	
대표자 직함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세관 기재 사항

세관명	부서
직급	성명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사항】

※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관련 질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질의서 작성 요령 및 유의사항

1. 본 질문서를 통해 수집된 기업의 비밀정보는 원산지결정, 관세 등 세금의 부과징수 등 법령에 정한 목적으로만 이용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질문서 작성 후 반드시 작성일자와 업체 관리책임자의 서명날인을 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회신하지 않을 경우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3. 수출자 및 생산자는 다음의 수출신고 관련 서류를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세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 FTA특례법, FTA특례법시행령, 각 협정의 자료보관의무규정

협정(법령)별	근거조항	보관대상자료
F T A 특 례 법 FTA특례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 제2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전자문서 포함) 사본 • 증명서 발급신청서류 사본 • 수출신고필증 •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 원가계산서 • 원재료내역서 • 공정명세서 •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 관리대장 • 생산자가 해당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하여 작성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수출물품의 국내생산자가 따로 있는 경우,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확인서 또는 원산지소명서
한 - 칠 레	제5.4조 제5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혜관세대우가 요구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된 다음을 포함한 모든 기록 • 수출된 상품의 구입, 비용, 가격 및 이에 대한 지불 기록 • 수출품 생산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입, 비용, 가격, 지불 기록 • 수출된 형태로의 그 상품의 생산 기록 • 원산지증명서 또는 신고서
한 - 싱 가 포 르	제5.5조 제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의 원산지와 관련되는 모든 기록 •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격, 선적, 지불 기록 • 수출된 상품에 사용된 모든 재료의 구매처, 구매, 비용, 가격 및 지불 기록 • 수출된 형태로의 그 상품의 생산 기록
한 - E F T A	부속서 I 제21조 제1항 부속서 I 제21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신고서와 각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뒷받침하는 모든 서류 사본 • 전자기록을 포함
한 - 아 세 안	부록1 규칙13조 1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관련 기록
한 - 인 도	제4.10조 제1항 제4.10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의 신청서 및 원산지 관련 일체의 서류 •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인쇄사본을 포함하되,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한 보관을 선택할 수 있음
한 - E U	제23조 제1항 제23조 제3항 제16조 제3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신고서의 사본과 제16조 제3항에 언급한 서류 • 국내 법령에 따른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를 포함하여 해당 제품의 원산지지위와 이 의정서의 다른 요건을 충족을 증명하는 모든 적절한 서류 • 전자기록을 포함할 수 있음
한 - 페 루	제4.6조 제1항 제4.6조 제2항 제4.6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된 상품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 비용, 가치 및 그에 대한 지불과 관련된 문서 • 수출된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과 관련된 문서 •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문서 • 디지털, 전자, 광학, 마그네틱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는 않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에 기록보관 방법 선택

협정(법령)별	근거조항	보관대상자료
한-미	제6.17조 제1항 제6.17조 제4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에 관한 기록을 포함하여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증명을 제출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모든 기록 • 수출된 상품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수출된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간접재료를 포함한 모든 재료의 구매·비용·가치와 그에 대한 지불 • 수출되었던 형태로의 상품의 생산 • 양 당사국이 요구하기로 합의하는 그 밖의 서류 • 디지털·전자·광학·자기 또는 서면형태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아니하는,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하여 기록 유지 방법 선택

4. 물품의 HS부호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 등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물품, 원재료 등의 가격(금액)은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선인도조건(FOB), 공장인도조건(EXW), 조정가격, 순원가 등을 미화(USD) 환산한 가격(금액)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물품의 수량 또는 중량은 해당 물품의 HS부호체계에서 정하는 단위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kg, u kg, 2u, m kg, m² kg, m³ kg, ℓ kg, MW 등
7. 완전생산기준이 적용되는 원재료의 유형은 다음 표를 참조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2 질문 관련).

구 분	유형	상세 내용
광물성 생산품	a	당사국 영역에서 추출된 광물성 상품
식물성 생산품	b	당사국에서 재배되고 수확·채집된 식물 또는 식물성 생산품
산동물 및 관련 물품	c	당사국 영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또는 그 동물로부터의 제품
수렵·어로·양식 생산품	d	당사국 영역에서 수렵·뎃사냥·어로·양식에 의하여 획득된 상품
영해밖 획득물, 해저물품	e	당사국에 등록되고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한 선박이 영해 밖에서 획득한 어획물 및 그 밖의 제품
우주에서 취득한 물품	f	우주에서 당사국 또는 사람이 획득하고 가공한 상품
폐기물, 재생품	g	당사자내에서 생산·가공 공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부스러기, 원재료 회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수집된 중고품
완전생산품으로 만든 물품	h	당사국에서 완전생산품 또는 그 파생품으로 만든 물품

※ 영역, 산물의 종류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8. 한-미 FTA 적용 대상 물품은 제6.18조 및 제6.19조에 따라 수입국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입자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 하여금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그 세관당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수 있습니다.

[KCS Form 4] Korean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for Exporter or Producer

KOREA CUSTOMS SERVICE

VERIFICATION OF ORIGIN QUESTIONNAIRE

(FOR EXPORTER OR PRODUCER)

This questionnaire is sent to you pursuant to Article 0.00 of Korea-00 FTA and Article 13 of the Special Law on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It will be used in determining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for imported good(s).

If necessary,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at a later date.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Please return the completed sheets within ___ days after you receive this questionnair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provided if the due period is not met.

For an extension of the submission date, you may have a single opportunity to make a written request to the Customs Authority sending this questionnaire (Korea-Peru FTA excluded).

SECTION I ▶ TRADER INFORMATION

Exporter or producer mark <input checked="" type="checkbox"/> where applicable and complete the following questionnaire.				
Trader Status		Description		
<input type="checkbox"/> Exporter		You are the exporter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input type="checkbox"/> Exporter/Producer		You are the exporter and also the producer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input type="checkbox"/> Producer of Good(s)		You are the producer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input type="checkbox"/> Producer of Material(s)		You are the producer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Company Name		Overseas Supplier's No.		Country
Name of CEO		Business Type/Condition		
Physical Address	(Head office)		Tel	
			Fax	
			Website	
	(Factory 1)		Tel	
	(Factory 2)		Tel	
Personnel	(Total) _____ persons (Managers) _____ persons	(Board of Directors) _____ persons (Production) _____ persons	(Others) _____ persons	
Consultants and Staffs in Origin Management	<input type="checkbox"/> Third Party Consultants (Customs Broker, Consulting Firm, and/or Origin Specialist) Name: _____ /☎: _____			
	<input type="checkbox"/> Origin Staff (Name: _____, _____), experienced for ___ yr(s)			
	Please provide information about human resources in charge of origin management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Origin Management System	Do you have an origin management manual?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please provide (a copy of) the manual			
	Do you operate a system for origin managemen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Production Facilities for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Description of Equipment	Quantity	Use	Location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Manager in charge of Origin Management	(Department)	(Position)	(Name)	(Tel)	(E-mail)
--	--------------	------------	--------	-------	----------

SECTION II ► GENERAL INFORMATION (based on each export declaration)

Applied FTA or Agreement (Mark ✓ where applicable)	<input type="checkbox"/> Korea-Chile <input type="checkbox"/> Korea-Singapore <input type="checkbox"/> Korea-EF <input type="checkbox"/> Korea-ASEAN <input type="checkbox"/> Korea-India
	<input type="checkbox"/> Korea-EU <input type="checkbox"/> Korea-Peru <input type="checkbox"/> Korea-US <input type="checkbox"/> APTA <input type="checkbox"/> GSP

1. DETAILS OF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Export Declaration No.		Date of Exportation
Description of good(s)		Specification of good(s)
HS Code	Price	Weight/Quantity
2-1. How did you determine HS code of the exported good(s)?		<input type="checkbox"/> Exporter's determination <input type="checkbox"/> Consulting broker <input type="checkbox"/> Advance Rulings <input type="checkbox"/> Others (please specify:)
2-2. For tariff classification, please mark ✓ where applicable and provide a copy of the documents		
<input type="checkbox"/> Transaction Contract <input type="checkbox"/> Information of Production Process <input type="checkbox"/> Bill of Material (BOM) <input type="checkbox"/> Information of use		
<input type="checkbox"/> Advance Rulings on Tariff Classification <input type="checkbox"/> Sample (*Your sample will not return if it is used for analysis)		

2. CERTIFICATE OF ORIGIN (C/O)

2-1. Issuer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C/O).	<input type="checkbox"/> Government agency <input type="checkbox"/> Exporter <input type="checkbox"/> Producer <input type="checkbox"/> Importer <input type="checkbox"/> Others (please specify:)
2-2. Does the exporter keep C/O log book(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Unknown
2-3. Does the producer keep C/O log book(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Unknown
2-4. Which document is your determination of the preference rules of origin based on? Please mark ✓ where applicable and submit copy of supporting documents	
<input type="checkbox"/> Certificate of Origin <input type="checkbox"/> Invoice with certified origin (including C/Os issued by third countries) <input type="checkbox"/> Cost and Production Statement	
<input type="checkbox"/> Origin certifying document (*Supplier's Declaration (including blanket-exportations), domestic manufacturing confirmation, Import Declaration etc.) <input type="checkbox"/> Others ()	

3. TRANSIT AND TRANSSHIPMENT

3-1. Please mark ✓ where the transportation modes are indicated.	
<input type="checkbox"/> Bill of Lading (B/L) <input type="checkbox"/> Airway Bill (AWB) <input type="checkbox"/> Cargo Manifest <input type="checkbox"/> Others (please specify:)	
3-2. Did the exported good(s), on which a claim for preferential treatment was made, transit or transship a non-originating party while transported?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3-3. If you marked 'yes' to question 3-2, please provide supporting details proving that the good(s) remained under the control of Customs Authority of the non-originating party, and submit documentary evidences.	

	(※ Supporting detail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3-4.	Did the exported good(s) undergo further production or any other operation outside the territories of the Parties, other than unloading, reloading, or any other operation necessary to preserve the goods in good condition?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3-5.	If you marked 'No' to question 3-4, please explain the detailed operation under the control of Customs Authority, and submit documentary evidences.
	(※ Explanation of the operation.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SECTION III ▶ PREFERENTIAL RULES OF ORIGIN (based on each export declaration)

4. COMMON CRITERIA	
4-1.	Does your company have manufacturing plant(s) and/or equipments involv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good(s) entitled to the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4-2.	Did you carry out the production operations beyond the non-qualifying operations stipulated in the relevant Agreement?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4-3.	Please state the country of production.
4-4.	Please provide physical address of the production facilities.
4-5.	If you have marked 'Yes' to question 4-2, provide copies of the documents proving the production.
4-6.	Please explain the manufacturing processes of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 Explan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Please mark √ indicating the appropriate preference rules applied to the good(s) being verified, and complete the question(s) below.

Preference Criterion	Please mark all the applicable rules you applied. Complete the question corresponding to the rule that apply.	<input type="checkbox"/> Wholly obtained	Complete Question No. 5
		<input type="checkbox"/>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omplete Question No. 6
		<input type="checkbox"/> Regional value content	Complete Question No. 7
		<input type="checkbox"/> Manufacturing process	Complete Question No. 8

5. WHOLLY OBTAINED CRITERION	
5-1.	Please describe the production operation for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 Production Operation.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5-2.	Provide the details of raw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s) in the table below.

S/N	Description of Material	Type	HS Code	Name/Address of Supplier	Country of Origin

※ HS code: 6 or 8 digit code to be indicated according to the relevant Agreement.

Type: please refer to #7 of the attached 'Completion Instruction' and indicate one out of a through h.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6.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CRITERION

6-1. Provide the details of raw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good(s) in the table below and provide supporting documents.

S/N	Description of Material	HS Code	Name of Supplier	Address/Contact Details of Supplier	Country of Origin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6-2. Provide the details of non-originating materials in the table below, which did not undergo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Provide supporting documents to substantiate a claim for the preferential treatment, e.g. based on De-minimis rule.

※ For application of De-minimis rule, please check if De-minimis calculation is based on value or weight.
Complete only one of the two columns applicable.

S/N	Description of Material	HS Code	Country of Origin	Value	Weight
			Total		

(※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9-3. Provide the fungible good(s) used in the space below (☑ Description of fungible good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9-4. Does the good(s) subject to verification contain fungible materials? <input type="checkbox"/> Yes <input type="checkbox"/> No	
If yes, select the method applied for inventory management. <input type="checkbox"/> FIFO <input type="checkbox"/> LIFO <input type="checkbox"/> Averaging <input type="checkbox"/> Other acceptable method	
Provide description of the fungible material(s) used in the space below. (☑ Description of fungible materials. Attached continuation pages may be used if additional space is needed for your response.)	

SECTION IV ► CERTIFICATION

We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we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We understand that we are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on or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

Company Name	Date	
Name of Representative	Title	Authorized Signature/Seal
Name of Person who Completed this Form	Title	Authorized Signature/Seal

Customs Use Only

Name of Customs	Division
Title	Name of person in charge

【Additional question or information】

※ If you have any questions or comments please state below. If further space is needed use the continuation pages.

List of Documents Submitted

S/N	Description of Documents	Question No.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Completion Instruction

1. Th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collected on the questionnaire may only be disclosed to those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determination of preference rules of origin, and of customs, and revenue regulations. If

necessary, additional information may be requested at a later date.

2. You will have to return the completed and signed questionnaire to the requesting Customs office. Regulatory measures such as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may be provided if the due period is not met.

3. Exporter and/or producer is required to keep all export/production-related documents relevant to exportation for 5 years from

the acceptance date of export declaration. The documents stated as below shall be submitted if requested by Customs.

※ Record keeping requirements are stipulated in the FTA and Enforcement Decree under the Special Law on Customs Act for

the implementation of Free Trade Agreement

FTA	Regulatory Basis	Documents entitled to Record Keeping
-----	------------------	--------------------------------------

Enforcement Decree the Special Law on Customs Act	Paragraph 1 of Article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copy of the Certificate of Origin (including electronic records) ● A copy of Documents claiming for Origin Certification ● Certificate of Export Declaration ● Contract of Export Transaction ● Certificate of Export Declaration of materials used with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in question ● Documentary evidences proving production or purchase of the raw materials and the good in question ● Cost Statement ● Bill of Material ● Production Process Instruction ● Log books of the good(s) and materials ● Origin certifying documents completed by the producer and submitted to the exporter in order to prove the origin of the good in question ● Origin confirmation or declaration completed by the producer in case where the local producer exists separately.
	Paragraph 1.2 of Article 13	
Korea-Chile	Paragraph 5 of Article 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l records relating to the origin of the good(s)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claimed ● Records relevant to purchase, cost and value of and payment for the exported good(s) ● Records relevant to purchase, cost and value of, and payment for all materials used in production of the exported good(s) ● Records regarding the production of the good(s) in the form in which the good is exported from its territory ● Certificate of Origin or Origin Declaration
Korea-Singapore	Paragraph 1 of Article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l records relating to the origin of the good(s) for which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claimed ● Records relevant to purchase, cost, shipping and value of and payment for the exported good(s) ● Records relevant to sourcing, purchase, cost and value of, and payment for all materials used in production of the exported good(s) ● Records regarding the production of the good(s) in the form in which the good is exported from its territory
Korea-EFTA	Paragraph 1 and 3 of Article 21 of Annex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y of the Origin Declaration, and of all documents supporting the originating status ● The records shall include electronic records
Korea-ASEAN	Paragraph 1 of Article 13, Appendix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cords relevant to applying for issuance of Certificate of Origin pursuant to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of the exporting country
Korea-India	Paragraph 1 and 3 of Article 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Origin and all documents related to origin ● Exporter or producer may choose to maintain records specified in any medium that allows for prompt retrieva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igital, electronic, optical, magnetic or hard copy
FTA(Law)	Article	Record keeping data
Korea-EU	Paragraph 1 and 3 of Article 23 Paragraph 3 of Article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py of Origin Declaration as well as documents stated in Article 16.3 ● All appropriate documents prov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product(s) concerned including statements from the suppliers or producers in accord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as well as the fulfillment of the other requirements of the protocol ● The records may include electronic records
Korea-Peru	Paragraph 1, 2 and 4 of Article 4.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ocuments related to the purchase, cost, value of and payment for the exported good(s) ● documents related to the purchase, cost, value of and payment for all materials including indirect materials used o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good(s) ● Records regarding the production of the good(s) in the form in which

		<p>the good is exported from its territor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ther documents agreed by both parties ● Exporter or producer may choose to maintain records specified in any medium that allows for prompt retrieva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igital, electronic, optical, magnetic or hard copy
Korea-US	Paragraph 1 and 4 of Article 6.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ll records necessary to demonstrate that the good for which the producer or exporter provided a certification was an originating good, including records concern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he purchase, cost, value of and payment for the exported good(s) ● the purchase, cost, value of and payment for all materials including indirect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exported good(s) ● Records regarding the production of the good(s) in the form in which the good is exported from its territory ● Other documents agreed by both parties ● Exporter or producer may choose to maintain records specified in any medium that allows for prompt retrieval,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igital, electronic, optical, magnetic or hard copy

4. 6-digit or 8-digit HS Code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FTA.

5. In terms of the value (price) of the goods and/or materials, please convert the value(price) of FOB, EXW, adjusted price, net cost etc. into the US dollars.

6. Please describe the unit of quantity of the good set out i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e.g. kg, u
kg, 2u, m kg, m' kg, m' kg, £ kg, MW, etc.

7. For question 5-2, please complete the type of materials with reference to the below chart.

Classification	Type	Detailed Context
Mineral products	a	mineral goods extracted from in territory of party
Vegetable products	b	vegetable products grown and harvested there
Live animals or goods taken from them	c	live animals born and raised there, products from live animals raised there
Goods obtained by hunting or fishing	d	goods obtained by hunting, trapping, fishing, aquaculture conducted there
Marine products	e	products of sea fishing taken by vessels registered with the party and entitled to fly its flag from the sea outside the sea territorial sea
Goods from universe	f	goods taken from outer space provided that they are obtained by the party or a person of the party
Waste, recycling goods	g	used articles collected there fit only for the recovery of raw materials or for use as waste
derived products	h	goods obtained or produced in the territory of party solely from goods referred to as above

※ Detailed classification of territory and product depends on the applied FTA.

8. For goods entitled to preference under Korea-US PTA, the importer may arrange for the exporter or producer to provide information proving that the good is originating directly to the Party.

작성방법

1. 거래자 정보

1) **거래자 유형** : 주어진 예시 중 해당하는 거래자 유형을 [V]표로 선택하고 회사명·해외공급자부호·국가명·대표자·업종/업태·사업장(본사 및 공장)의 주소 등 연락처 정보·임직원 현황·원산지업무인력 및 원산지관리책임자 정보를 기재하고, 원산지업무인력 등 관련 질문에 대해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2. 일반사항(수출신고건별 작성)

1) **검증대상물품** : 검증대상 물품을 각 수출신고건별로 구분하여 수입신고번호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 **원산지증명서** :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및 관리와 관련된 질문에 해당 답변을 [V]표로 표시합니다.

3) **운송관계** : 운송관계와 관련된 질문에 해당 답변을 [V]표로 표시합니다.

3. 원산지결정기준(수출신고건별 작성)

1) **공통사항** :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질문에 대해 해당 란에 [V]표로 표시합니다.

2) **원산지결정기준(5.완전생산기준~9. 대체가능물품)** : 답변 대상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해당 란에 대해 관련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다만, 선택기준의 경우 선택 가능한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만 기재하면 되고, 결합기준은 해당 원산지결정기준 모두에 대해 답변하여야 합니다.

4. 책임자 서명·확인

1) **공란에 해당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작성사례

[서식2] 수출자·생산자용 표준서면질의서(안)

대한민국 관세청
원산지 검증 표준 질의서(안)

(수출자·생산자 작성용)

본 질의서는 한-OO FTA협정 제O조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특례법) 제13조에 따라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정보가 요구될 수 있으며, 답변 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은 본 질의서를 받은 날로부터 ___일 이내이며,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면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등 제재 조치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한-칠레 FTA는 제외).

부문 I ▶ 거래자 정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아래 해당하는 유형의 □에 V 표시 후,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래자 유형	유형별 설명
<input type="checkbox"/> 수출자	검증대상물품을 수출한 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출자/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의 수출한 자이면서 생산한 자
<input type="checkbox"/> 물품 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을 수출하지는 않았으나 생산한 자
<input type="checkbox"/> 원재료 생산자	검증대상물품의 원재료를 생산한 자

업 체 명	정보원(주)	해외공급자부호	11-1-1-1	국가명	Korea
대 표 자		업 종 / 업 태			

사 업 장	(본사 주소)	전화	031-600-0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팩스	031-600-0000
		홈페이지	www.flome.co.kr
	(공장1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전화	031-600-0000
	(공장2 주소)	전화	

임 직 원	(총 원) 100 명 (임 원) 3 명 (관리직) 5 명 (생산직) 85 명 (기타) 7 명
-------	--

원산지업무인력	<input type="checkbox"/> 외부전문가 활용(관세사무소, 컨설팅업체, 원산지관리사) 업체명(성명) /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직원활용(성명, 김관리 / ☎ 031-600-0000), 원산지업무경력 3년 기타 원산지관리 조직 및 인력 현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원산지관리체제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보유하고 있다면 원산지관리 매뉴얼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관리를 위한 별도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

검증대상물품관련 주요 생산 설비	설비 명칭	대수	용도	설치장소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관리책임자	(소속) 관리부 (직위) 과장 (성명) 김관리 (전화) 031-600-0000 (e-mail) origin@origin.or.kr
----------	---

부문 II ▶ 일반사항 (수출신고건별 작성)

적용협정 (해당□에√표시)	<input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type="checkbox"/> 한-미국	<input type="checkbox"/> APTA	<input type="checkbox"/> 최빈특혜	
1. 검증대상물품						
수출신고 번호	123-11-XXXXXXXXXX			수출신고 일자	2013.02.20	
품명	XXX			규격	120*150	
HS부호	8500.00	금액	110,000MS\$		중량 또는 수량	1
1-1. 수출물품의 품목분류(HS부호)를 어떻게 결정합니까? <input type="checkbox"/> 자체결정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관세사자문 <input type="checkbox"/> 관세청사전회시 <input type="checkbox"/> 기타()						
1-2.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결정에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거래계약서 <input type="checkbox"/> 제조공정설명서 <input type="checkbox"/> 원재료명세서(BOM) <input type="checkbox"/> 용도설명서 <input type="checkbox"/> 견본품 (* 분석에 소비되는 견본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원산지증명서						
2-1.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는 누구입니까? <input type="checkbox"/> 정부기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출자 <input type="checkbox"/> 생산자 <input type="checkbox"/> 상대국수입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2-2.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모름						
2-3.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을 기재·관리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모름						
2-4. 원산지증명의 근거가 되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증빙서류의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서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증명된 송품장 (제3국 발행 송품장 포함) <input type="checkbox"/> 원산지소명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원산지확인서류 (※ 원산지(포괄)확인서, 국내제조확인서, 수입신고필증 등) <input type="checkbox"/> 기타 ()						
3. 운송관계						
3-1. 운송경로를 알 수 있는 해당 자료에 대해 □에 √ 표시 후, 사본을 제출바랍니다. <input checked="" type="checkbox"/> B/L <input type="checkbox"/> AWB <input type="checkbox"/> 적하목록 <input type="checkbox"/> 기타자료()						
3-2. 특혜관세적용 수출물품 운송과정에서 비당사국(역외국·제3국)을 경유 또는 환적 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3-3. 상기 3-2 질문에서 '예'를 선택한 경우, 특혜관세 적용 수출물품이 경유국 또는 환적국에서 세관통제 하에 있었음을 입증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증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 비당사국에서 하역, 재선적, 포장, 상품의 양호한 상태보존, 당사국으로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 이외의 작업이나 공정을 수행하였습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3-5. 상기 3-4 질문에서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 세관 통제하에서 수행한 구체적 작업내용 또는 공정내용을 기재하시고, 관련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업 내용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 Ⅲ ▶ 원산지 결정 기준 (수출신고건별 작성)

4. 공통사항	
4-1. 귀사는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수출물품과 관련된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2. 해당 수출물품은 협정 및 법률에서 정한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습니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4-3. 생산국가명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한국
4-4. 생산시설의 위치(주소)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4-5. 불인정 공정 이상의 가공을 수행하였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의 사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 원산지 검증 대상 물품의 제조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에 표시 후 각 항목에 정한 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산지 결정기준	선택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 중 어느 하나만을 기재하면 되고, 조합기준의 경우 해당 기준을 모두 기재하여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완전생산기준	6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번변경기준	7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역내가치기준	8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input type="checkbox"/> 가공공정기준	9번 항목에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완전생산기준

5-1. 검증대상물품의 제조과정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과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2. 검증대상 수출물품 생산에 투입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유형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 HS부호 : 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6단위 또는 8단위로 기재
 유형 : 불임 질의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의 7번 항목을 참고하여 a~h 중 하나를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세번변경기준

6-1.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를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명	주소 및 연락처	원산지
1	AAA	8400,00	RRR	Busan(00-00-0000)	Korea
2	BBB	8401,00	RRR	Busan(00-00-0000)	Korea
3	CCC	8402,00	NNN	Busan(00-00-0000)	Korea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2. 세번변경이 없는 비원산지재료가 있는 경우 다음 서식에 기재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미소기준).
 ※ 해당 협정에서 최소(미소)기준 산정방법이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란에,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란에 기재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원산지	가격	중량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기준인 경우	가격	중량기준인 경우	중량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가격 총액	①	세번변경없는 비원산지재료의 총 중량	①
FOB기준 조정거래가격 총액 또는 물품가격 총액	②	구성품의 총 중량	②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미소기준비율=①/②×100(%)	③

7. 역내가치(RVC)기준

7-1. 역내가치(RVC) 산정대상 회계기간

7-2. 제품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내역에 대하여 다음 표에 기재하고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원재료명	HS부호	공급자	원산지	소요량	단가	원재료 가격	
							원산지 원재료	비원산지 원재료
						계		

(※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8. 가공공정기준

8-1. 해당 물품의 가공공정기준 충족여부를 기재하시고,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조공정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 대체가능물품

9-1.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9-2. 대체가능물품이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9-3. 대체가능물품의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물품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9-4. 검증대상물품에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아니오

9-5. 대체가능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재고관리기법은 무엇입니까?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평균법 개별법

9-6. 대체가능원재료의 내역을 다음 란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체가능원재료 내역 기재, 답변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문Ⅳ ▶ 책임자 서명·확인

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사실이고 정확하며 기재된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이 서류 또는 이와 관련한 허위진술 또는 중대한 사실 누락에 대해서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업체명 정보원(주)	작성일자 2013.03.03	
대표자 직함 대표이사	성명 김국제	(서명 또는 날인)
책임자 직위 과장	성명 이과장	(서명 또는 날인)

세관 기재 사항

세관명	부서
직급	성명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사항】

※ 추가 질의 또는 정보요청 사항이 있는 경우 작성하고, 분량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

제출하여야 할 서류 목록

연번	서류명	관련 질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49 사전심사 변경효력 유예승인(신청)서

작성목적

-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신청서 : 사전심사서 변경내용 적용시 손해가 발생하므로 변경효력 적용유예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제출
-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서 :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를 승인한다는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기 위함

구 분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신청서	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적용유예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	관세청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터키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승인서	관세청장	신청인	

※ 주의사항

수입자는 사전심사의 변경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것을 인지한 경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효력발생의 유예를 신청하여야 하며, 관세청장은 유예신청서를 검토한 후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7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규칙 제23조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효력 유예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 및 반력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 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① 영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서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

다. 사전심사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2.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1조(신청서류의 보정, 반려 등) ①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별도의 보정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9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해당 협정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3.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4. 주어진 기간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6.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Form 26]

Approval No.			
Application (approval) for Postponement of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 the contents of the modification of the advance ruling			
Modification Document No.		Receiving Date	
Applicant Type	<input type="checkbox"/> Importer <input type="checkbox"/> Agent		
Applicant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Origin	
The Contents of Modification	before Modification		after Modification
◆ Reasons of claims for postponement			
- reasons :			
- attachment : 1. document indicating damage by the modification 2. other evidences			
◆ period of postponement :			
I claim for postponement of the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pursuant to the Article ○.○ of Korea-○○○ FTA			
Date (2013. /20 / 20)			
applicant		(signature)	
to the Commissioner of KCS			
I approve the application for the postponement of the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Date (yy/mm/dd)			
the Commissioner of KCS		(signature)	

작성방법

- 1) **변경통보 문서번호(Modification Document No.)** :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사실을 통보받은 문서의 번호를 기재합니다.
- 2) **통지일자(Receiving Date)** :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을 통보받은 날자(문서 발행일자)를 기재합니다.
- 3) **신청인 구분(Applicant Type)** : “수입자” 와 “관세사” 중 해당란에 [V]로 표시합니다.
- 4) **신청인(Applicant)** :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 5) **수입자(Importer)** :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6) **수출자 또는 생산자(Exporter or Producer)** :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7) **원산지-Origin)** : 사전심사서에 의해 확인된 원산지를 기재합니다.
- 8) **변경내용(The Contents of Modification)** : 사전심사서의 변경 전/후 내용을 기재합니다.
- 9) **유예신청 이유(Reasons of Claims for postponement)** : 변경내용 적용의 유예를 신청하는 사유를 기재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손해의 내역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 10) **유예기간(Period of postponement)** : 변경사실 적용의 유예를 받고자 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다만, 변경사실 적용의 유예는 선의의 수입자에 한해 한-싱가포르 FTA의 경우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한-칠레 FTA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작성사례

[별지 제26호 서식] 사전심사 변경효력 유예승인(신청서)

적용유예 승인번호			
사전심사서 변경적용 유예신청(승인)서			
◆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통보 내용			
변 경 통 보 문 서 번 호	관세-1-2013-2	통지일자	2013년 10월 15일
신 청 인 구 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신 청 인	이 국 제	수 입 자	국제무역
수 출 자 (또는 생산자)	Dual card sds	원 산 지	싱가포르
변 경 내 용	변경전	변경후	
	해당내용 기재	해당내용 기재	
◆ 유예신청 이유			
- 이유 :			
- 첨부서류 : 1. 손해발생내역 기재서류 2. 증빙서류			
◆ 유예기간 : 2013년 11월 5일 ~ 2013년 12월 31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하여 사전심사 결정사항 변경내용의 적용유예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10월 20일 신 청 인 이 국 제 (인) 관 세 청 장 귀하			
위 사전심사 변경내용 적용 유예신청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관 세 청 장 (인)			

[Form 26]

Approval No.			
Application (approval) for Postponement of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 the contents of the modification of the advance ruling			
Modification Document No.	Customs-1-2013-2	Receiving Date	2013/10/15
Applicant Type	<input checked="" type="checkbox"/> Importer <input type="checkbox"/> Agent		
Applicant	KuR-Je Lee	Importer	KuRJe Trade
Exporter (or Producer)	Dual card sds	Origin	Singapore
The Contents of Modification	before Modification	after Modification	
	Write down the information	Write down the information	
◆ Reasons of claims for postponement - reasons : - attachment : 1. document indicating damage by the modification 2. other evidences			
◆ period of postponement :			
I claim for postponement of the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pursuant to the Article 0.0 of Korea-000 FTA Date 2013/10/20 applicant KuR-Je Lee (signature) to the Commissioner of KCS			
I approve the application for the postponement of the modification of advance ruling. Date (yy/mm/dd) the Commissioner of KCS (signature)			

50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

작성목적

- 기업이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해 원가 및 제조기밀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비공개자료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

작성주체	제출처
서류 및 자료의 비공개 지정 희망자	세관장

※ 주의사항

제조원가, 제조공정, 거래상대방 등 기업의 경영상 비밀과 관계되는 자료나 계약상대국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의 경우에는 기업이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에 의해 별도로 비밀지정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자동적으로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8조(비밀취급자료 지정) 영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비밀유지) ① 법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란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그 밖의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발급권한기관”이라 한다)에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3.2.15>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자는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할 때에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해당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관세청장, 세관장 및 발급권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자료를 제출한 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제출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야 한다.

1. 제조원가
2. 제조공정
3. 거래 상대방의 성명, 주소 및 거래량
4. 협정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제공받은 원산지증빙서류
5. 그 밖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④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출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이 지나면 소각 또는 파쇄 등의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⑤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비밀취급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자료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은 때에만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해당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 및 세관장은 제5항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때에는 제공되는 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보증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보증서 제공을 거부하면 자료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0조(비밀유지 의무) ① 세관공무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산지증빙서류 발급자는 수입자·수출자·생산자(계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수출자·생산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 또는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협정 및 이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산지의 결정, 관세의 부과·징수 또는 통관을 목적으로 제출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된 자료(이하 “비밀취급자료”라 한다)를 자료제출자의 동의 없이 타인(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을 포함한다)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비밀취급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또는 관세법의 소추(訴追)를 목적으로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비밀취급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3. 세관공무원 상호간에 관세의 부과·징수, 통관 또는 질문·검사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비밀취급자료의 보관기간, 보관 방법 및 제공·사용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작성방법

- 1) **자료제출자** : 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2) **요청사유** : 비공개자료로 지정해 주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3) **요청기간** : 비공개자료 지정희망기간을 기재합니다.
 - 4) **지정요청자료의 목록** : 제출자료 중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와 각 자료의 총페이지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작성사례

[별지 제37호서식]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

비밀취급자료 지정요청서		
자 료 제 출 자	상 호 (대 표 자)	원산지무역(김국제)
	사 업 자 번 호	010-11-23567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로 366번길 77
	전 화 / E - mail	064-565-5656/et@natr.com
요 청 사 유	원가 및 제조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유출될 경우 경영활동에 차질 발생	
요 청 기 간	2013년 10월 2일 ~ 2014년 10월 2일	
<p>○ 지정요청자료의 목록</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조공정도 (총페이지수 2) 2. 제조명세서 (총페이지수 5) 3. _____ (총페이지수 _____) 4. _____ (총페이지수 _____) 5. _____ (총페이지수 _____)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상기 자료를 비밀취급자료로 지정하여 줄것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년 10월 2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김 국 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광 주 세 관 장 귀하</p>		

51 관세상호협약의 신청서

작성목적

-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해 협정에 부합되지 않는 처분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우리나라 관세당국으로 하여금 계약상대국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수출자 또는 생산자	기획재정부장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관세상호협약의 신청서 등)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약의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7.15.>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약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7.15.>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관세상호협약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상호협약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세상호협약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관세상호협약의 신청과 관련된 계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통지서·과세처분통지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신청인 또는 계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계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3.3.23>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8조(상호협력) ① 관세청장은 협정을 통일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정보 교환, 세관기술의 지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계약상대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또는 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행위
2. 계약상대국과 동시에 원산지 조사를 하는 행위
3. 계약상대국에 세관공무원을 파견하여 직접 원산지 조사를 하게 하거나 계약상대국의 원산지 조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4.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협정에 따라 원산지 조사에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수락하는 행위

③ 관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활동을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협정(관세 분야만 해당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국 정부와 공동으로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관세상호협정의 신청 등) ①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으로부터 수출물품에 대하여 협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의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정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상호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신청인이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관세상호협정의 절차를 이용하려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이 있는 날부터 3년이 지난 후 신청한 경우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신속한 관세상호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8조제4항** 전단에 따른 협의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④ 관세상호협정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상호협력절차) ① **법 제1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원산지의 확인에 필요한 상호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2. 원산지와 관련되는 법령의 교환에 관한 사항
3. 서류 없는 통관절차의 구축, 전자무역환경의 증진 등 통관절차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4. 세관공무원과 통관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수출입물품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에 필요한 정보교환
6. 그 밖에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협의기구에서 합의한 사항

② 관세청장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의 협력의 절차·방법 및 범위 등 관세행정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과 협정(관세분야에 한한다)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협의와 관세협의기구의 운영을 위하여 관세협의전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작성방법

- 1) **상호** : 관세상호합의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2) **사업자등록번호** : 관세상호합의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3) **대표자(성명)** : 관세상호합의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 4) **주민등록번호** : 관세상호합의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5) **업종** : 관세상호합의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을 기재합니다.
- 6) **전화번호** : 관세상호합의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 7) **관련물품** : 신청인의 관세상호협약의 신청 대상 물품의 명칭 또는 상품명을 기재합니다.
- 8) **HS 번호** : 신청인의 7)물품의 HS Code를 기재합니다.
- 9) **소재지(주소)** : 관세상호합의를 신청하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10) **상호** : 거래상대방인 국외 관련기업의 상호를 기재합니다.
- 11) **소재국가** : 거래상대방인 국외 관련기업의 소재국가를 기재합니다.
- 12) **대표자(성명)** : 거래상대방인 국외 관련기업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 13) **업종** : 거래상대방인 국외 관련기업의 업종을 기재합니다.
- 14) **소재지(주소)** : 거래상대방인 국외 관련기업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 15) **신청인과의 관계** : 신청인과 국외 관련기업의 관계에 [V]표로 표시합니다.
- 16) **상호협약상대국** : 관세상호협약을 진행해야 하는 상대국가명을 기재합니다.
- 17) **처리희망기간** : 관세상호협약이 종료되기를 원하는 처리기간을 기재합니다.
- 18) **원산지결정 또는 과세처분 내용 및 사실을 안 날** : 상대국가에서 신청인이 수출한 물품의 원산지가 부인되거나 부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실을 안 날자를 기재합니다.
- 19) **상호협약의 신청사유** : 관세상호협약을 신청하는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08.7.15>

관세상호협약의 신청서				
신청인	(1)상 호	(주) 아리랑	(2)사업자등록번호	212-22-31234
	(3)대표자 (성명)	김 국 제	(4)주민등록번호	501010-1344342
	(5)업 종	반도체 제조, 수출	(6)전화번호	02) 2122-3333
	(7)관련물품	핸드폰용 IC	(8)HS번호	8534, 10
	(9)소재지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1번길		
국외관련기업	(10)상 호	America Ltd.	(11)소재국가	미국
	(12)대표자 (성명)	Smitn, Kim	(13)업 종	핸드폰 제조
	(14)소재지 (주소)	72, Jane Dr, Luverne, AL 36049, USA		
	(15)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현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본지사관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현지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계:)		
(16)상호협약의 상대국	미국	(17)처리희망기간	상호협약의 상대국의 과세결정 전	
(18)원산지결정(예상) 또는 과세처분(예상) 내용 및 그 사실을 안 날	2013. 03. 01			
(19)상호협약의 신청사유	신청인이 미국의 America Ltd.로 수출한 물품이 협정세율을 받을 수 있는 세번이고, 동 한국에서 제조된 물품으로서 판정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당국에서 한국산임을 부인하여 당사의 수입업체가 수입당시 적용받았던 협정세율을 배제할 것으로 예상되어 상호협약을 신청합니다. 원산지 편정 근거서류를 별첨으로 첨부합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세상호협약을 신청합니다.				
2013 년 3월 10 일				
신청인 김 국 제 (서명 또는 인)				
기획재정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1. 관세상호협약의 신청과 관련된 계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통지서·과세처분통지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국외대리인이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52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작성목적

-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제출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수입자)	세관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이 요구할 경우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수입신고 수리 전에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의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협정관세의 적용을 위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후에 이루어져야 하나, FTA관세특례법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에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협정관세적용신청서)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수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변경통보
2.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제1호의 항목을 제외한다)

제28조(수입신고 수리 전 협정관세적용신청)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자는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적용받으려는 협정관세율과 관세율 구분부호를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 라 한다)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자는 신청할 때에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세관장이 요구하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1항 후단에 따라 요구받은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④ 제3항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의 보정(補正)을 신청하거나 경정(更正)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정신청이나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그 신청이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의 적용 및 세액의 보정이나 경정 여부를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보정을 신청하거나 경정을 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고 관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경정 및 환급에 관하여는 「관세법」 제38조의2제1항·제2항, 제38조의3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항, 제46조, 제47조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1.1>

⑦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심사한다. 다만,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원산지 및 협정관세의 적정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심사한다. [전문개정 2010.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2009.1.23, 2013.2.15>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의 구비 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8.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자
9.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자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를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0.12.30, 2013.2.15>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3.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4.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제11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수입신고의 수리 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제2항**에 따른 보정신청에 필요한 서류 또는 같은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제1항제1호의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개정 2009.1.23, 2010.2.18, 2013.2.15>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③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세관장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의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세액을 보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

④ 법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액의 보정신청·경정청구 및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관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제34조 및 제50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9.1.23, 2010.2.18.> [제목개정 2009.1.2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규칙」

제16조의2(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의 적정여부 심사물품) 법 제10조제7항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 또는 수입하는 물품
2. 영 제26조에 따른 협정관세 적용보류 대상자가 수입하는 물품
3.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이 7일 이내인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23.]

작성양식

[별지 제16호 서식]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갑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갑지)

(처리기간 : 즉시)

(페이지번호/총페이지수)

①수입신고번호 : XXXXX-XX-XXXXXXXX-X

②수입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XXXXXXXXXXXXXXXXXXXX (FAX) XXXXXXXXXXXX
 (전자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사업자등록번호) 999-99-99999 (통관고유부호) XXXXXXXX-9-99-9-99-9

③수출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X (국가명) XX (성명) X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XX

④생산자 : (상호) XXXXXXXXXXXXXXXXXXXX (성명) XXXXXXXXXXXX
 (주소) 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X
 (전화번호) 999-99-99999 (FAX) XXXXXXXXXXXX

⑤신청일자 : YYYY/MM/DD

⑥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X] (1:원산지증명서, 2:사전심사서, 3:동종동질물품)

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X] (1:기관, 2:자율(수출자), 3:자율(생산자), 4:자율(수입자)) ⑧원산지 : XX

⑨기관명 및 종류 : XXXXXXXXXXXXXXXXXXXXXXXX, [X] (1:국가기관, 2:상공회의소, 3:기타)

⑩발급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 ⑪발급일자 : YYYY/MM/DD

⑫총순중량 : 999,999,999 XXX

⑬적출국 : XX

⑭적출항 : XXXXXXXXXXXXXXXXXXXXXXXX

⑮출항일 : YYYY/MM/DD

⑯환적국 : XX

⑰환적항 : XXXXXXXXXXXXXXXXXXXXXXXX

⑱환적일 : YYYY/MM/DD

⑲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 XX

⑳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XX

㉑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

㉒협정적용 순중량 : 999,999,999 XXX

㉓분할차수 : 999

㉔HS부호 : 9999,99

㉕협정관세율(구분) : 9,999.99(XX XXXX)

㉖원산지결정기준 : [X] (A:완전생산, B:세번변경, C:부가가치, D:조합기준, E:역외가공, F:기타, G:자율발급)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였기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을지)

(페이지번호/총페이지수)

란번호	001란	002란	003란	004란	005란
⑤신청일자					
⑥원산지증빙서류 종류					
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⑧원산지					
⑨기관명					
기관종류					
⑩발급번호					
⑪발급일자					
⑫총순중량					
⑬적출국					
⑭적출항					
⑮출항일					
⑯환적국					
⑰환적항					
⑱환적일					
⑲연결원산지증명서발급국가					
⑳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㉑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㉒협정적용 순중량					
㉓분할차수					
㉔HS부호					
㉕협정관세율(구분)					
㉖원산지결정기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기재요령

수입신고서 란이 1개인 경우에는 (갑지)에 작성하며, 란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을지)에 각 란별 내역을 적습니다.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신고번호	•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	40620-08-0700105-
②수입자 - 상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 - 전자주소 - 사업자등록번호 - 통관고유부호	•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 기재 - '상호'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상호를 기재 - 그 외의 항목은 물품양수도 등의 이유로 수입신고인이 원산지증명서 '수입자'의 관련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의 해당 항목을 기재	- 모나리자(주) - 홍나리 - 서울 강남구 논현동 235 - 02-402-7896 - 02-402-8816 - trade@monarisa.com - 112-81-66062 - 모나리자1771025
③수출자 - 상호 - 국가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	• 체결상대국의 수출자 관련사항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회사명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 수출자가 소재하는 국가명 (통계부호표 국가명 참조) - 원산지증명서상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 - 원산지증명서상의 주소지를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AX번호 기재 (수입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 ABC Corporation - 칠레의 경우 : CL - 미국의 경우 : US - JOELLE LAU - 55 Newton Road #10 - Revenue House Singapore - 68-6355-2050 - 68-6355-2051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④생산자 - 상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FAX	• 체결상대국의 생산자 관련사항 기재 - 회사명을 기재 - 대표자 성명을 기재 - 회사의 주소지를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기재 - 회사 또는 담당부서의 FTA번호 기재 ※생산자관련 정보는 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로서 원산지증명서상에 생산자가 기재되었거나 수입자가 알고 있을 때에만 기재	- CBA Corporation - Tan Juan Fook - 371 Beach Road #10-11 - Keypoint Singapore - 68-7755-7777 - 68-7755-7780 ※(국가코드)-(지역번호)-(전화번호) 순으로 기재
⑤신청일자	• 협정관세 적용 신청일자를 기재	- 2008/02/01
⑥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원산지물품 확인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근거자료 기재 - 원산지증명서 등 : "1"로 기재 - 사전심사서 : "2"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동종동질물품 : "3"로 기재	- 원산지증명서를 소지하고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는 경우 : 1
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원산지증명서 발급자를 기재 - 기관발급 방식인 경우 : "1"로 기재 - 수출자가 자율증명한 경우 : "2"로 기재 - 생산자가 자율증명한 경우 : "3"로 기재 - 수입자가 자율증명한 경우 : "4"로 기재	-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인 경우 : 1 - 한-미 FTA 수출자가 자율발급한 경우 : 2

항 목	작성요령	작성예
⑧원산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원산지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원산지 한-EU FTA 적용물품으로 원산지가 EU당사국내 어느 한 국가가 아닌 경우 'EU' 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가 싱가포르인 경우 : SG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원산지가 미국인 경우 : US
⑨기관명 및 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의 발급기관명을 기재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종류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기관인 경우 : "1" 로 기재 상공회의소인 경우 : "2" 로 기재 기타의 비국가 기관 : "3" 으로 기재 ※ 번 항목이 "1" 인 경우에만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 세관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인 경우 : Singapore Customs [1]
⑩발급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의 일련번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번호 기재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해당 HS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SCCOIN200603010001 자율발급인 경우 해당서류 번호를 기재 해당서류번호가 없을 경우 송품장 번호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서류의 발급번호를 띄어 쓰지 않고 대문자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문자('-', '/', 등)는 기재 생략 ※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발급일자 기재 ※ 같은 날짜에 발급번호가 중복되는 경우 뒤쪽에 일련번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VN-KR/02 71인 경우 : 'VNKR0271' 'VNKR0271(20080201)' 'VNKR0271(2008020112)'
⑪발급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류상의 발급일자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발급의 경우 : 발급일자를 기재 - 자율증명의 경우 : 서명일자를 기재 ※ 다만 사전심사서의 경우 승인일자 기재 ※ 동종동질물품의 경우 기재 생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급일자가 2008.2.1인 경우 : 2008/02/01
⑫총순중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류상의 총순중량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0kg
⑬적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하증권(B/L)상의 선적국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적국의 국가부호를 기재(통계부호표 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적국인 미국인 경우 : US
⑭적출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B/L상의 선적항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출항이 싱가포르 항구인 경우 : Singapore
⑮출항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B/L상의 B/L 발행일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B/L상의 발행일(Date of issue of B/L)이 2008.2.1인 경우 : 2008/02/01
⑯환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국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싱가포르에서 출발하여 일본을 환적한 경우 : JP
⑰환적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항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적항이 요코하마 항구인 경우 : Yokohama
⑱환적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선적지 발행 B/L 또는 운송사의 운송정보를 통하여 확인된 환적일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적일이 2008. 2. 20인 경우 : 2008/02/20
⑲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아세안 FTA의 규정에 따라 생산국의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다른 계약상대국이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최초로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베트남 원산지제품을 싱가포르에서 다시 수출하며 연결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는 경우 : 'VN'

항 목	작성요령	작성예
㉔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국 송품장이 발급된 경우 발급한 국가의 국가부호를 기재 (통계부호표 국가코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본에서 제3국 송품장이 발행된 경우 : 'JP'
㉕원산지 인증수출자 번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자가 원산지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수출자 번호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문자('/' , '-' 등)는 입력 생략 * 공란은 제거(붙여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 : IT001RM106
㉖협정적용 순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입신고 물품 중 협정관세적용신청 물품의 순증량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증명서를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 수입신고하는 물품의 순증량을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상의 유효유1,000kg 중 500kg에 대해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신청하는 경우 :500kg
㉗분할차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의 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경우 분할차수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2회차 분할신고시 : 2
㉘HS부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증명서상의 HS부호 6단위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신고서의 HS와 C/O상의 HS가 불일치할 경우에는 C/O를 기준으로 기재 * C/O에 HS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협정의 경우 수입신고서상의 HS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상 6단위 HS : 2710.19
㉙협정관세율(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협정관세율(관세율 구분부호)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받고자 하는 FTA의 협정관세율과 해당 관세율 구분부호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싱 FTA에 따라 항공기용 유효유(2710.19-7110)를 수입한 경우 : 3.5(FSG)
㉚원산지결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산지물품의 종류를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생산물품 : "A" 로 기재 - 세번변경기준 충족물품 : "B" 로 기재 - 부가가치기준 충족물품 : "C" 로 기재 - 조합기준 충족물품 : "D" 로 기재 - 역외가공기준 충족물품 : "E" 로 기재 - 기타 원산지기준 충족물품 : "F" 로 기재 - 자율발급원산지증명서 물품 : "G" 로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전생산물품의 경우 : [A]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조합 기준의 경우 : [D] 세번변경과 부가가치 선택 기준의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번변경 기준 적용 : [B] · 부가가치 기준 적용 : [C]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물품으로 원산지기준을 알 수 없는 경우 : [G]

작성사례

[별지 제16호 서식] 협정관세적용신청서(갑지)

협정관세적용신청서 (갑지)	
(처리기간 : 즉시)	(페이지번호/총페이지수)
①수입신고번호 : 40620-08/-0700105000-X	
②수입자 : (상호) 모나리자(주) (성명) 흥나리 (주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세관로 235번길 (전화번호) 02-402-7896 (FAX) 02-402-8816 (전자주소) trade@monarisa.com (사업자등록번호) 112-81-66062 (통관고유부호) 모나리자1771025	
③수출자 : (상호) ABC Corporation (국가명) US (성명) JOELLE LAM (주소) 55 Nweton Road #10 Revenue House Ale, Washington D.C, US (전화번호) 66-6355-2050 (FAX) 66-6355-7778	
④생산자 : (상호) CBA Corporation (성명) Tan Juan FooK (주소) 31371 Beach Road #10-11 Keypoint Washington, US (전화번호) 66-6355-7777 (FAX) 66-6355-7778	
⑤신청일자 : 2013/11/01	
⑥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1] (1:원산지증명서, 2:사전심사서, 3:동종동질물품)	
⑦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2] (1:기관, 2:자율(수출자), 3:자율(생산자), 4:자율(수입자))	
⑧원산지 : US	
⑨기관명 및 종류 : XXXXXXXXXXXXXXXXXXXXXXXX, [X] (1:국가기관, 2:상공회의소, 3:기타)	
⑩발급번호 : ABC-1111	
⑪발급일자 : 2013/07/01	
⑫총순중량 : 15Kg	
⑬적출국 : US	
⑭적출항 : Newyork	
⑮출항일 : 2013/10/09	
⑯환적국 : XX	
⑰환적항 : XXXXXXXXXXXXXXXXXXXXXXXX	
⑱환적일 : YYYY/MM/DD	
⑲연결원산지증명서 발급국가 : XX	
⑳제3국 송품장 발급국가 : XX	
㉑원산지인증수출자 번호 : XXXXXXXXXXXXXXXXXXXXXXXX	
㉒협정적용 순중량 : 15Kg	
㉓분할차수 : 999	
㉔HS부호 : 2710.19	
㉕협정관세율(구분) : 0(FUS)	
㉖원산지결정기준 : [B] (A:완전생산, B:세번변경, C:부가가치, D:조합기준, E:역외가공, F:기타, G:자율발급)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통하여 원산지물품임을 확인하였기 위와 같이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p>	

53 협정관세적용신청 정정신청(승인)서

작성목적

- FTA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제출한 수입자가 그 내용을 정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제출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기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수입자)	세관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가 FTA관세특례법시행령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오류가 있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정정 및 란 추가는 수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점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정정통보가 필요한 사항

-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7조(협정관세적용신청서) ①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과 같다.

② 다음 각 호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정정하려는 수입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그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승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변경통보
2.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제출한 협정관세적용신청서의 정정(제1호의 항목을 제외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2항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5.16, 2009.1.23, 2013.2.15>

1. 당해 물품의 수입자의 상호·성명·주소(전자주소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2. 당해 물품의 수출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3. 당해 물품의 생산자의 상호·성명·주소·전화번호 및 모사전송번호. 다만, 수입자가 그 생산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품명·모델·규격 및 품목번호
5. 협정관세율·원산지 및 당해 물품에 적용한 원산지결정기준
6. 원산지증명서 또는 그 밖에 원산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정보 등의 구비 여부
7.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번호(수입자가 발급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만 기재한다), 발급일자, 발급기관 또는 작성자
8. 적출국(積出國)·적출항 및 출항일자

9. 환적국(換積國)·환적항 및 환적일자
10.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른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요구를 하지 아니 한다.

1.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협정에서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하로서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 내의 물품. 다만, 수입물품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불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여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동종·동질물품을 계속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물품의 생산공정 또는 수입거래의 특성상 원산지의 변동이 없는 물품 중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품
3.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청장으로부터 원산지에 대한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 다만,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전심사시의 조건과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4. 물품의 종류·성질·형상·상표·생산국명 또는 제조자 등에 따라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물품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탈루의 우려가 있거나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④ 수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정관세의 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한 후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안 때에는 즉시 그 변경사항을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제외하여 계산한다. <신설 2009.1.23, 2010.2.18, 2013.2.15>

1.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별지 제17호서식 기재요령]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승인(신청서) 기재요령

항 목	작 성 요 령	작 성 예																																																																								
①수입신고번호	○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를 기재	40620-08-0700105-																																																																								
②수입신고수리일자	○ 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 수리일자를 기재	2013.10.01																																																																								
③수입자 - 상호 - 성명	○ 원산지증명서 수입자 관련사항 기재	- 모나리자(주) - 홍나리																																																																								
④신청의 종류	○ 정정, 란삭제, 란추가 여부를 기재 - 란사항 정정인 경우 - 란삭제인 경우 - 란추가인 경우 - 란사항 정정 및 란추가인 경우	- U, X, X - X, D, X - X, X, I - U, X, I																																																																								
⑤신청일자	○ 신청일자를 기재	- 2013.12.12																																																																								
⑥란사항 변경내역	○ 란정정, 란삭제, 란추가된 내역을 기재	<p style="text-align: center;">〈변경내역 기재요령 (작성예)〉</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란번호</th> <th>구분부호</th> <th>항목번호</th> <th>항목명</th> <th>정정전</th> <th>정정후</th> </tr> </thead> <tbody> <tr> <td>001</td> <td></td> <td>10</td> <td>발급번호</td> <td>SCCOIN200603010001</td> <td>SCCOIN201312310099</td> </tr> <tr> <td>001</td> <td></td> <td>16</td> <td>환적국</td> <td>JP</td> <td>CN</td> </tr> <tr> <td>002</td> <td>99D</td> <td></td> <td></td> <td>002란</td> <td>-</td> </tr> <tr> <td>003</td> <td>99D</td> <td></td> <td></td> <td>003란</td> <td>-</td> </tr> <tr> <td></td> <td>99I</td> <td>5</td> <td>신청일자</td> <td>-</td> <td>2013.12.31</td> </tr> <tr> <td></td> <td>99I</td> <td>6</td> <td>원산지증빙서류 종류</td> <td>-</td> <td>1:원산지증명서</td> </tr> <tr> <td></td> <td>99I</td> <td>7</td> <td>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td> <td>-</td> <td>2:자율(수출자)</td> </tr> <tr> <td></td> <td>99I</td> <td>8</td> <td>원산지</td> <td>-</td> <td>EU</td> </tr> <tr> <td></td> <td>99I</td> <td>9</td> <td>기관명 및 종류</td> <td>-</td> <td>3:기타</td> </tr> <tr> <td></td> <td>99I</td> <td>10</td> <td>발급번호</td> <td>-</td> <td>FR0099</td> </tr> <tr> <td></td> <td>99I</td> <td>11</td> <td>발급일자</td> <td>-</td> <td>2013/06/01</td> </tr> </tbody> </table> <p>- 란 번 호 : 협정관세적용신청서 란번호를 기재, 란추가인 경우 기재하지 않음, 공통사항은 '000'을 기재</p> <p>- 구분부호 : [란정정인 경우] 기재안함, [란삭제인 경우] '99D' 기재, [란추가인 경우] '99I' 기재</p> <p>- 항목번호 : [란정정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번호 기재</p> <p>- 항 목 명 : [란정정인 경우] 항목명 기재, [란삭제인 경우] 기재안함, [란추가인 경우] 항목명 기재</p>	란번호	구분부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001		10	발급번호	SCCOIN200603010001	SCCOIN201312310099	001		16	환적국	JP	CN	002	99D			002란	-	003	99D			003란	-		99I	5	신청일자	-	2013.12.31		99I	6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1:원산지증명서		99I	7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2:자율(수출자)		99I	8	원산지	-	EU		99I	9	기관명 및 종류	-	3:기타		99I	10	발급번호	-	FR0099		99I	11	발급일자	-	2013/06/01
란번호	구분부호	항목번호	항목명	정정전	정정후																																																																					
001		10	발급번호	SCCOIN200603010001	SCCOIN201312310099																																																																					
001		16	환적국	JP	CN																																																																					
002	99D			002란	-																																																																					
003	99D			003란	-																																																																					
	99I	5	신청일자	-	2013.12.31																																																																					
	99I	6	원산지증빙서류 종류	-	1:원산지증명서																																																																					
	99I	7	원산지증명서 발급주체	-	2:자율(수출자)																																																																					
	99I	8	원산지	-	EU																																																																					
	99I	9	기관명 및 종류	-	3:기타																																																																					
	99I	10	발급번호	-	FR0099																																																																					
	99I	11	발급일자	-	2013/06/01																																																																					

* 협정관세를 적용을 위한 정정 및 란추가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54 사전심사 신청서

작성목적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가 수입신고 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사전심사 신청인	관세청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자는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시 신청물품 당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협정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전심사의 신청이 가능하고, 사전심사의 신청이 가능한 협정이라 하더라도 FTA관세특례법고시 제51조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의 반려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사전심사서의 유효기간은 협정에 따라 상이한데 한-싱가포르 FTA와 한-미 FTA의 경우 사전심사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의 변동이 없는 한 계속하여 유효한 반면, 한-칠레 FTA는 사전심사서 교부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고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이 없는 때에는 그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사전심사 신청대상]

- ①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 ②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 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 ③ 당해 물품의 생산, 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등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사전심사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8조의 4에서 정하는 사전심사업무 담당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사전심사기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 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 제51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④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⑤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품목당 3만원의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 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제51조(신청서류의 보정, 반려 등) ①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신청서와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결과 원산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별도의 보정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요구 이유
3. 보정기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신청인이 보정에 필요한 기간과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이를 고려하여 보정기간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법 제14조 및 영 제19조제4항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전심사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해당 신청이 수입신고 후에 신청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
2. 해당 협정별 사전심사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3. 신청 자격이 없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
4. 주어진 기간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5. 해당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해 원산지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6. 사전심사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제52조(원산지확인위원회 상정)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4에 따라 원산지확인위원회에 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전례가 없는 사항 등의 사유로 사전심사 담당부서에서 원산지를 결정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동일물품에 대한 이전의 원산지 결정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53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28조의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19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4조(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4조제5항과 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제55조(사전심사서의 효력) 세관장은 사전심사서와 물품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반복사용여부를 불문하고 사전심사서를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물품의 내용’ 이라 함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하여 사전심사서와 당해 수입물품이 동일한 경우를 말한다.

제56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규칙 제22조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관세청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해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전심사서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변경내용을 법 제14조제2항의 신청인·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내용 적용일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중 세액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
4.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신청 절차 및 법적 근거

④ 수입자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서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38조·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은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수입자가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7조(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① 규칙 제23조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효력 유예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 대한 보완 및 반력에 대하여는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체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사전심사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제15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12.2>

1.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 가. 신청인·수입자 및 수출자(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자를 포함하되, 생산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및 가격
 -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 라. 당해 물품의 제조과정(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마. 사전심사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 바.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이나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당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제19조의2(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居所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9.1.23.]

제20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
2.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 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3.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4. 제19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수정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싱가포르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싱가포르와의 협정 제5.8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6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21조의2(칠레와의 협정에 따른 사전심사서 변경 효력의 특례) **법 제15조제3항** 단서 및 칠레와의 협정 제5.9조에 따라 사전심사의 내용을 신뢰한 선의의 수입자가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는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는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 전의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사전심사) ① 관세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2>

③ **법 제1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신청 물품 당 3만원을 말한다.

④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4는 사전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정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
 - 가. 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 나.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 다. 당해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수입 신고수리일자·품명·수량·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라. 변경된 내용

2. 사전심사서 원본
3.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제23조(사전심사서 변경효력의 적용유예신청) ① 영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 변경된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적용받을 경우 손해가 발생할 것임을 입증하고자 하는 수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전심사서의 변경내용을 통지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서
 - 가. 신청인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 나. 변경내용을 통지 받은 날(사전심사서 변경내용의 통지대상자가 아닌 자의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이 변경된 사실을 안 날)
 - 다. 사전심사서 변경일 이후에 수입되었거나 수입될 예정인 물품의 품명·수량 및 금액과 수입시기 또는 수입예정시기
2. 수입거래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3. 예상되는 손해내역과 그 증빙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유예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사전심사서 변경적용을 유예할 것임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21호 서식]

처리기간 90일

사전심사 신청서

1. 신청인	<input type="checkbox"/> 수입자 <input type="checkbox"/> 관세사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2. 수입자	(성명, 주소, 국가,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3. 수출자 또는 생산자	(알 수 있는 경우 성명, 주소, 국가)			
4. 신청물품				
품 명	HS번호(6단위)	조정가격(\$)	물품 설명 구성, 생산과정, 용도 및 견본(가능한 경우)	
5. 원재료 내역				
원재료 품명	HS번호(6단위)	가격(\$)	원산지(결정근거)	생산과정
·				
·				
·				
6. 사전심사 신청내용				
① 물품이 원산지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② 비원산지재료가 세번변경이 일어났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③ 물품이 역내부가가치 요건을 만족하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④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원재료 또는 물품의 조정가격의 계산을 위한 적절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⑤ 중간재 가치의 계산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비용을 할당하는 적절한 방법 <input type="checkbox"/> ⑥ 수리 또는 개조 후 재반입하는 물품이 면세처리될 자격이 있는 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input type="checkbox"/> (상세 기재)				
7. 물품의 법적지위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V 표시를 하고, 물품의 성상을 나타내는 간단한 설명자료 첨부)				
① 원산지 검증 <input type="checkbox"/> ② 행정적 심사 또는 불복청구 <input type="checkbox"/> ③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심사 <input type="checkbox"/> ④ 사전심사요청 <input type="checkbox"/>				
<p>이 신청서에 기재한 모든 내용과 진술은 자신이 알고 있는 최상의 지식과 신뢰로 작성한 것으로서 진실하고 정확한 것임을 보증합니다. 만약 허위나 잘못 기재한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되거나 협정관세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p> <p>신청인 서명 _____ 작성일자 _____</p> <p>신청인과의 관계 _____ (신청인 대신 작성한 경우)</p>				

* 만약 기재할 사항이 많은 경우 다른 용지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Form 21]

Processing Time 90day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n application for Advanced Ruling of Origin

1. Applicant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2. Importer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email address)

3. Exporter(or Producer) (full name, address, country) (if known)

4. The good subject to advanced ruling

Name of the good	HS Code(6 digit)	Adjusted Value(US\$)	Description of the good
			<i>composition, production process, use of the good and sample(if practicable)</i>

5. List of Materials which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Material list	HS No (6 digit)	Price(US\$)	Origin (Basis of determination)	Production Process

6. Type of the request for the advanced ruling

- ①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 ② Whether materials imported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③ Whether a good satisfies a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 ④ The appropriate method for value for calculating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or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 ⑤ The appropriate method for reasonably allocating cost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an intermediate material
- ⑥ Whether a good that re-enters after repair or alteration qualifies for duty-free treatment
- ⑦ Others (specify)

7. Status of the good (Mark Yes or No and if yes, attach a brief statement setting forth the status or disposition of the matter)

As to whether the issue that is the subject of the request for an advance ruling is or has been the subject of

- ① a verification of origin
- ② an administrative review or appeal
- ③ a judicial or quasi-judicial review
- ④ a request for an advanced ruling

I certify that all the information and statement I have filled up on this form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understand that any false and misrepresentation may result in the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he good.

Applicant's Signature _____ **Date of Issue** _____

Relationship to applicant _____

(if prepared on behalf of applicant)

* Please attach an additional sheet if you need more space to continue our answers

작성방법

- 1) **신청인(Applicant)** : “수입자”와 “관세사” 중 해당란에 [V]로 표시하고 신청자의 성명·주소 등 작성을 요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2) **수입자(Importer)** : 신청인이 관세사인 경우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하며, 수입자가 신청인인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3) **수출자 또는 생산자(Exporter or Producer)** : 신청인이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 수출자 성명·주소·국가 등 기재를 요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4) **신청물품(The good subject to advanced ruling)** :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물품의 품명, 6단위 HS Code, 조정가격*, 물품에 대한 설명**을 기재합니다.
 - * 조정가격이란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에 따라 결정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같은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결정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국제적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을 제외한 가격을 말합니다. 각 적용 협정에서 정하는 물품의 조정가격은 유럽권 3개 협정의 경우 EXW를 말하며 나머지 협정은 FOB가격을 의미합니다.
 - ** 물품에 대한 설명은 물품의 구성(원재료), 생산과정 및 용도를 말하며 가능한 경우 견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5) **원재료 내역(List of Materials which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 신청물품의 원재료를 품명, 6단위 HS Code, 가격, 해당 원재료의 결정근거에 기반한 원산지 및 생산과정을 기재합니다.
- 6) **사전심사 신청내용(Type of the request for the advanced ruling)** : 사전심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V]로 표시합니다.
- 7) **물품의 법적지위(Status of the good)**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V]로 표시하고 물품의 성상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설명자료를 첨부합니다.

[Form 21]

Processing Time 90days

KOREA-○○○ FREE TRADE AGREEMENT

An application for Advanced Ruling of Origin

1. Applicant JungBoWon 1, Ya-Top Ro, Bundang Gu, sung-Nam Si, Koung-Ki Do, Korea
(Tel : 031-000-0000, Fax : 031-000-0001), orgin@orgin.go.kr

2. Importer JungBoWon 1, Ya-Top Ro, Bundang Gu, sung-Nam Si, Koung-Ki Do, Korea
(Tel : 031-000-0000, Fax : 031-000-0001), orgin@orgin.go.kr

3. Exporter(or Producer) America Trad, 22 Street, LA, US, 1-800-392-3673

4. The good subject to advanced ruling

Name of the good	HS Code(6 digit)	Adjusted Value(US\$)	Description of the good
SunGlass	9410.00	500	composition, production process, use of the good and sample(if practicable)

5. List of Materials which are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Material list	HS No (6 digit)	Price(US\$)	Origin (Basis of determination)	Production Process
Lens, Plastic	9000.00	100	Korea	Refer to Appendix
	3900.00	50	Korea	

6. Type of the request for the advanced ruling

- ① Whether a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 ② Whether materials imported undergo an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 ③ Whether a good satisfies a regional value-content requirement
- ④ The appropriate method for value for calculating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or of the material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 ⑤ The appropriate method for reasonably allocating costs for calculating the value of an intermediate material
- ⑥ Whether a good that re-enters after repair or alteration qualifies for duty-free treatment
- ⑦ Others (specify)

7. Status of the good (Mark Yes or No and if yes, attach a brief statement setting forth the status or disposition of the matter)

As to whether the issue that is the subject of the request for an advance ruling is or has been the subject of

- ① a verification of origin
- ② an administrative review or appeal
- ③ a judicial or quasi-judicial review
- ④ a request for an advanced ruling

I certify that all the information and statement I have filled up on this form are true and correc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and belief. I understand that any false and misrepresentation may result in the punishmen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r denial of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to the good.

Applicant's Signature Jungbowon **Date of Issue** 2013, 9, 10

Relationship to applicant _____

(if prepared on behalf of applicant)

* Please attach an additional sheet if you need more space to continue our answers

55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서

작성목적

- 통보된 사전심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목적으로 작성·제출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사전심사결과 이의제기인	관세청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 주의사항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자는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협정에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사전심사의 신청이 가능하고, 사전심사의 신청이 가능한 협정이라 하더라도 FTA관세특례법고시 제51조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신청의 반려가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4조(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법 제14조제5항과 령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 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관세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 ④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사전심사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사전심사서를 받은 날짜와 사전심사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 및 품목번호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

[Form 24]

Processing Period: 30 Days

Claim for Objection to Result of Advance Ruling

Claimant	Company Name		Business No.		
	Name of Representative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Person in Charge	(Position)	(E-mail)		
		(Name)	(Mobile No.)		
(Phone No.)		(Fax No.)			
Claimee	Division		Determination Number/Date		
	Product Description/ Specification/ HS Code				
	Result of Advance Ruling				
Reasons for Objection	Claimant may either provide reasons for objection or attach supporting documents to this form				
<p>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claim is made pursua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Fulfillment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Article 19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p> <p style="text-align: center;">Date of Submission</p> <p style="text-align: center;">Claimant's Signature</p>					

작성방법

- 1) **청구인(Claimant)** : 이의를 신청하는 자의 상호·사업자등록번호·대표자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청구담당자의 직함·성명 등 인적사항과 연락처 정보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2) **청구대상(Claimed)** : 사전심사를 담당한 심사부서의 명칭과 통보받은 사전심사결과 통보서의 결정번호와 결정일자 및 사전심사를 받은 물품정보(품명·규격·HS code)와 심사내용을 기재합니다.
- 3) **이의제기 요지 및 이유(Reasons for Objection)** : 신청서 제출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24호서식]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V표를 합니다.

처리기간 30일

사전심사결과 이의신청서			
청구인	상호(법인명)	정보원(주)	사업자등록번호 111-11-11111
	성명(대표자)	김국제	주민등록번호 *개인에 한함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청구담당자	(직함) 과 장	(이메일) origin@origin.or.kr
		(성명) 이 과 장	(휴대전화번호) 010-1000-2000
(전화번호) 600-0000		(팩스번호) 600-0001	
청구대상	심사부서	분류 1과	결정번호 / 결정일자 분류-1-A/2013.10.10
	품명 / 규격 품목번호	연필/4B HS 제9609.10호	
	심사내용	한-아세안 FTA 결정기준 불충족	
이의제기 요지 및 이유	별첨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13년 11월 5일 김국제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p> <p style="text-align: right;">관세청장 귀하</p>			

[Form 24]

Processing Period: 30 Days

Claim for Objection to Result of Advance Ruling

Claimant	Company Name	JungBoWon, Ltd	Business No.	111-11-11111
	Name of Representative	KuK-Je, Kim	Resident Registration No.	
	Address	555 Yatap Ro Bundang-Gu Suengnam City Kyunggi Province, Korea		
	Person in Charge	(Position) manager	(E-mail) origin@origin.or.kr	
		(Name) Gwa-Jang, Lee	(Mobile No.) 010-1000-2000	
		(Phone No.) 600-0000	(Fax No.) 600-0001	
Claimee	Division	Classification Dept. 1	Determination Number/Date	CL-1-A/2013.10.10
	Product Description/ Specification/ HS Code	Pencil/4B HS 9609.10		
	Result of Advance Ruling	Unsatisfaction for AK FTA PSR		
Reasons for Objection	<p style="margin: 0;">Claimant may either provide reasons for objection or attach supporting documents to this form</p>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claim is made pursuant to the Act on Special Cases of the Customs Act for the Fulfillment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Article 19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Date of Submission 2013.11.05

Claimant's Signature KuK-Je, Kim

56 사전심사서 수정 통보서

작성목적

- 사전심사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하여 이를 통보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제출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사전심사 내용의 변경을 통보하고자 하는 자	관세청장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기 교부받은 사전심사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심사를 신청한 자는 그 내용을 관세청장에게 통보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6조(사전심사 내용의 변경) ① 규칙 제22조에 따른 사전심사 변경내용 수정통보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다.

② 관세청장은 수정 통보내용을 검토한 결과 당해 사전심사서에 의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당해 사전심사서가 영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원산지를 인정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그 변경내용을 법 제14조제2항의 신청인·수입자 및 통관지세관장에게 통지(통보)하여야 한다.

1. 사전심사서 변경 이유 및 법적 근거
2. 사전심사서 변경내용 적용일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 중 세액수정 대상 수입물품 목록
4. 사전심사서 변경 적용유예 신청 절차 및 법적 근거

④ 수입자는 제3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관지세관장에게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세법 제38조·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의 규정은 세액정정·세액보정신청 또는 수정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수입자가 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심사변경 적용유예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5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관세청장은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그 변경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 후에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대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다만, 협정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사서의 내용 변경이 자료제출 누락 또는 거짓자료 제출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사전심사와 관련하여 그 변경일 전에 수입신고된 물품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변경된 내용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사전심사서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 또는 상황이 변경된 경우
2. 협정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되거나 원산지결정의 기초가 되는 품목분류 등이 변경된 경우

3. 사전심사 대상물품 또는 재료의 품목분류, 부가가치비율의 산정 등에 착오가 있는 경우
4. 제19조제6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서를 교부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게 된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그 변경내용을 수정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변경사실을 심사하여 사전심사서의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사전심사 변경내용의 수정통보 등)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수정통보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수정통보서
 - 가. 수정통보를 하는 자의 성명·주소 및 사업자등록번호
 - 나. 변경사항을 알게 된 날
 - 다. 당해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의 목록(수입신고번호·수입신고수리일자·품명·수량·가격 및 원산지가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
 - 라. 변경된 내용
2. 사전심사서 원본
3. 변경 사실을 보여 주는 증빙서류

[Form 25]

Correction of Advance Ruling

Applicant	<input type="checkbox"/> Importer <input type="checkbox"/> Agent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tax I.D., e-mail address)		
Importer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tax I.D., e-mail address)		
Advance Ruling	Advance Ruling No		Issuing Date
	Description of Goods		Exporter (Producer)
	Contents		
Contents of the Correction	Correction Date		Conformation Date
	before Correction		
	after Correction		
Attachment	1. Import Clearance list which applie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2. Origin Advance Ruling 3. Supporting Document for Correction		

I notify you of the correction of the Advance Ruling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

Date (yy/mm/dd)

applicant

(signature)

to the commissioner of KCS

작성방법

- 1) **신청인(Applicant)** : “수입자”와 “관세사” 중 해당란에 [V]로 표시하고 신청자의 성명·주소 등 작성을 요하는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2) **수입자(Importer)** : 신청인이 관세사인 경우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하며, 수입자가 신청인인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 3) **사전심사서(Advance Ruling)** : 수정내용을 통보하고자 하는 교부받은 사전심사서의 번호와 발행일자 및 심사받은 내역을 기재합니다.
- 4) **수정내용(Contents of the Correction)** : 기 교부받은 사전심사서의 내용 중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Form 25]

Correction of Advance Ruling				
Applicant	<input checked="" type="checkbox"/> Importer <input type="checkbox"/> Agent			
	JungBoWon 1, Ya-Top Ro, Bundang Gu, sung-Nam Si, Koung-Ki Do, Korea (Tel : 031-000-0000, Fax : 031-000-0001), orgin@origin.go.kr			
Importer	(full name, address, country, phone number, fax number, tax I.D., e-mail address) - (신청인이 수입자 동일인인 경우 생략 가능)			
Advance Ruling	Advance Ruling No	20121211-12	Issuing Date	2013.01.01
	Description of Goods	Cryogenic (300 l)	Exporter (Producer)	Shane' s Ltd
	Contents	That the goods meet the requirements whether Value Contents Criterion(Fill in the information)		
Contents of the Correction	Correction Date	2013.01.01	Conformation Date	2013.01.01.
	before Correction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after Correction	Refer to the attached documents		
Attachment	1. Import Clearance list which applie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2. Origin Advance Ruling 3. Supporting Document for Correction			
<p>I notify you of the correction of the Advance Ruling as above pursuant to Article ○.○ of Korea-○○○ FTA</p> <p style="text-align: center;">Date 2013.01.09</p> <p style="text-align: center;">applicant <i>KuK-Je Lee</i> (signature)</p> <p style="text-align: right;">to the commissioner of KCS</p>				

• 한-미 FTA 원산지 검증

01 한-미 FTA 원산지 검증 개요

FTA 원산지 검증이란 협정 또는 국내법령에 따라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 물품에 대하여 그 물품이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혜관세 적용배제 또는 수입자 처벌 등의 사후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원산지 검증 방법은 검증수행의 주체를 기준으로 직접검증과 간접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한-미 FTA에서는 직접검증 방식^①을 채택하고 있으며 섬유류 및 의류에 대하여는 간접검증 방식^②이 가능한 바,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다른 FTA의 원산지 검증 절차와 다소 차이가 있다. 즉,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체결한 대부분의 FTA 협정에서는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직접검증을 하거나 또는 상대국 관세당국을 통하여 간접검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관세당국은 먼저 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확인 가능한 정보를 관세당국에 제공하게 하고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나 정보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우리나라 관세당국이 직접 협정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하거나 협정 상대국 관세당국에 요청하여 상대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하도록 하고 있다.

① 한-미 FTA 협정 제6.18조 제1항 :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자국 영역으로 수입되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입 당사국은 다음의 수단에 의하여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요청

나. 수입자 ·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질의

다. 제6.17조 제1항에 언급된 기록을 검토하거나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시설을 시찰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 방문

라.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하여는 제4.3조(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세관협력)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 또는

마. 수입 및 수출 당사국이 협의하는 다른 절차

수입 당사국이 가호 또는 나호에 언급된 수단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입 당사국에게 정보를 직접 제공하도록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한-미 FTA 협정 제4.3조 제3항 : 수입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출 당사국은 수입 당사국이 섬유 또는 의류 상품에 대한 원산지 신청이 정확하다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검증을 수행한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 제6.18조에서는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제공 요청 또는 질의를 할 수 있고 수입자에게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검증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다른 협정과 달리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 검증절차 없이 곧 바로 수출자나 생산자를 대상으로 원산지 검증을 실시 할 수 있으며, 수입자에게 상대국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검증관련 자료를 수입국 세관 당국에 직접 제공하도록 주선할 것을 요청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미 FTA의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를 대상으로 수입자가 보관하고 있거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원산지 검증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수입자가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된 자료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 적용된 특혜관세를 배제할 수 있다.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미국 관세당국(CBP :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한-미 FTA협정 이행지침」이나 지금까지 미국 세관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사례를 보면 미국 세관은 먼저 자국 수입자에게 원산지 검증관련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세관당국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수입자는 우리나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원산지 검증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세관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원산지 검증을 한 후 원산지 입증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 적용한 협정관세를 배제하는 예비결정을 통지한다.

따라서 한-미 FTA 원산지 검증에 있어서는 미국세관으로부터 또는 미국의 수입자를 통하여 원산지관련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 정보제공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이를 위한 선제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02 CBP의 원산지 검증절차(요약)

정보제공 요청

한-미 FTA 협정에 따른 미국세관(CBP)의 원산지검증은 CBP Form 28(정보제공 요청서)을 통하여 수입자에게 정보제공을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CBP가 정보제공 요청을 하면, 수입자는 원산지증명서(C/O)와 원산지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수입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입증서류는 아래의 서류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원산지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가 해당됨)

- 상품의 제조과정을 설명하는 Flow charts, 기술 설명서 및 기타 서류
- 상품이 GN33^③(b)의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GN33(o)의 특정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설명하는 설명서
- 원재료의 HS번호, 원산지 및 원가(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경우)를 표시한 BOM
-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산지 재료의 C/O 또는 원산지확인서(입증을 못할 경우 비원산지 재료로 간주됨)
- 거래가격을 입증하는 구매확약서(Purchase order) 및 대금결제 입증서류
- 재고관리방법, 간접재료 등을 입증하는 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수입자는 미국세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 및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미국세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선할 의무가 있으며, 수출자/생산자는 비밀자료의 경우에는 미국의 수입자를 통하지 않고 미국세관에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CBP는 수입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만으로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협정의 양당사자가 합의한 절차에 따라 수출자나 생산자를 방문하여 원산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결과 통보

만약 수입자가 수입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는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면, CBP는 유선 또는 Form 29(결정 통지서)로 긍정적 최종 결정을 통보한다.

그러나 수입자가 원산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CBP는 부정적 예비결정을 통보하게 되는데, 통보서(Form 29)에는 제출한 자료가 불충분한 이유 또는 상품이 비원산지라는 결정과 경정 세율 및 2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하라는 예비결정 내용이 포함되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동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으로 확정되게 된다.

^③ GN33(General Note 33)은 미국 CBP가 한-미 FTA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자국 관세율표(HTSUS)에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수록한 관세율표 주석임(미국 CBP는 FTA 협정이 추가될 때마다 동 주석을 추가하고 있음)

• CBP의 정보제공 요청

01 개요

미국세관은 FTA 원산지 검증의 첫 단계로 CBP Form 28(Request for Information, 정보제공요청서)을 통해서 수입자에게 ① 원산지증명서(C/O), ②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③ 원가 자료(Cost Data), ④ 생산 또는 제조관련 기록(Production and Manufacturing Records), ⑤ 주문서 원본(Original Purchase Order), ⑥ 송품장(Invoice), ⑦ 수입대금 결제 증빙자료(Proof of Payment) 및 ⑧ 수입품의 샘플 등을 요구한다.

미국세관은 일반적으로 먼저 자국 내에 있는 수입자에게 상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미국세관으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수입자는 우리나라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CBP Form 28을 다시 송부하여 요구한 자료를 자신에게 제공하거나 필요한 경우 미국세관에 직접 제출할 것을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요청한다.

미국세관으로부터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서류를 미국세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한-미 FTA 검증상식

한-미 FTA 원산지 검증절차는?

한-미 FTA 협정문 제6.18조에는 원산지 검증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섬유 및 의류 제품의 경우에는 제4.3조에 규정된 섬유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협정에 따른 검증 방법은 ① 서면에 의한 정보요청, ② 서면질의 또는, ③ 사업장 방문조사(현장검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검증대상 기업도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국세관은 ① 1차로 수입자에게 C/O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② 2차로 수입자/수출자/생산자에게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생산/제조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며, 현지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③ 서면 질의서를 송부한 후 ④ 현지검증을 실시하는 순서로 원산지 검증을 하고 있다.

① 1차 C/O 제공 요청 → ② 2차 정보 제공 요청 → ③ 서면질의 → ④ 현지검증

02 CBP Form 28의 주요내용 (구성요소)

미국세관은 FTA원산지 검증시 CBP Form 28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데, Form 28은 FTA원산지 검증만을 위해 사용하는 서식이 아니라 일반수입 물품에 대한 통관 및 과세가격 심사 절차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식이다.(그림 1-1 서식 참조)

CBP Form 28의 주요내용은 수입신고일, 제조자/판매자/선적인, 수입신고 번호, 송품장상품명, 송품장 번호, HS부호, 원산지/수출국가, 과세가격과 관련된 질문 및 요청서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FTA원산지 검증 정보제공 요청과 관련하여서는 14번 란의 'CBP 담당자 메시지'란을 활용하여 원산지 검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한다.

CBP Form 28은 FTA 원산지검증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입자·수출자·생산자는 요청받은 자료를 충실하게 신속히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FTA 검증상식

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대상 선별 기준은?

미국세관이 원산지검증 대상 선별기준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공표한 기준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입신고 건을 우선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① 미국 관세청에서 전략적으로 검증을 하려는 품목 - 석유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류
- ② 부정수입 등의 정보가 있는 업체의 수입신고 건
- ③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Compliance Measurement System)의 평가점수가 낮거나, 내부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도가 높은 업체의 수입신고 건

미국세관의 수입통관 및 심사절차

미국의 수입통관제도도 수입통관단계와 사후심사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입통관단계는 ① 화물반입신고와 ② 납세신고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후심사단계는 ③ 사후세액심사와 ④ 정산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 한-미 FTA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은 사후심사의 일종으로 원산지 검증결과에 따라 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림 1-1〉 CBP Form 28 서식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3 Exp. 03-31-2014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1. Date of Request	
Any text that scrolls will not print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5. Entry No.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5b. Invoice No.	6. HTSUS Item No.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8. CBP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9. TO:		10. FROM: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11a. Port	11b. Date Information Furnished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Revers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input type="checkbox"/>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any revisions thereto.
<input type="checkbox"/>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input type="checkbox"/> (1) packing <input type="checkbox"/> (2) commissions <input type="checkbox"/>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input type="checkbox"/> (4) assists <input type="checkbox"/>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input type="checkbox"/>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input type="checkbox"/>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input type="checkbox"/> D.	Submit samples: Article number and description _____ _____ from container _____ mark(s) and number _____ Samples consumed in analysis, and other samples whose return is not specifically requested, will not normally be returned. <input type="checkbox"/> E. See item 14 below.
14. CBP Officer Message			
15. Reply Message (Use additional sheets if more space is needed.)			
16. CERTIFICATION It is required that an appropriate corporate/company official execute this certificate and/or endorse all correspondence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E: NOT REQUIRED IF FOREIGN FIRM COMPLETES THIS FORM.)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with or upon this form in response to this inquiry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any samples provided were taken from the shipment covered by this entry.		16a.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16b. Signature	
		16c. Telephone No.	16d. Date
17. CBP Officer		18. Team Designation	
		19. Telephone No.	

CBP Form 28 (03/11)

〈그림 1-2〉 CBP Form 28 서식(뒷면)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1. The requested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proper classification and/or appraisal of your merchandise and/or for insuring import compliance of such merchandise. Your reply is required in accordance with section 509(a), Tariff Act of 1930, as amended (19 U.S.C. 1509).
2. All information, documents, and samples requested must relate to the shipment of merchandise described on the front of this form.
3. Please answer all indicated questions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4. All information submitted will be treated confidentially.
5. If a reply cannot be mad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is request or if you wish to discuss any of the questions designated for your reply, please contact the CBP officer whose name appears on the front of this form.
6. Return a copy of this form with your reply.

DEFINITIONS OF KEY WORDS IN BLOCK 12

Question A: RELATED - The persons specified below shall be treated as persons who are related:

- (A) Members of the same family, including brothers and sisters (whether by whole or half blood), spouse, ancestors, and lineal descendants.
- (B) Any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 (C) An officer or director of an organization and an officer or director of another organization, if each such individual is also an officer or director in the other organization.
- (D) Partners.
- (E) Employer and employee.
- (F) Any person directly or indirectly owning, controlling, or holding with power to vote, 5 percent or more of the outstanding voting stock or shares of any organization and such organization.
- (G) Two or more persons directly or indirectly controlling, controlled by or under common control with, any person.

PRICE PAID OR PAYABLE - This term is defined as the total payment (whether direct or indirect and exclusive of any costs, charges, or expenses incurred for transportation, insurance, and other C.I.F. charges) made, or to be made, for imported merchandise by the buyer to, or for the benefit of, the seller.

Question B: ASSISTS - The term "assist" means any of the following if su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and free of charge or at reduced cost, by the buyer of the imported merchandise for use in connection with the production or the sale for export to the United States of the merchandise:

- (1) Materials, components, parts, and similar items incorporated in the imported merchandise.
- (2) Tools, dies, molds, and similar items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 (3) Merchandise consumed in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 (4) Engineering, development, artwork, design work, and plans and sketches that are undertaken elsewhere than in the United States and are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merchandise.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 This term is defined as the amount of any subsequent resale, disposal, or us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that accrues, directly or indirectly, to the seller.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 This term relates to those amounts that the buyer is required to pay, directly or indirectly, as a condition of the sale of the imported merchandise for exportation to the United States.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 information collection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is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 valid OMB control number and an expiration date. The control number for this collection is 1651-0023. The estimated average time to complete this application is 2 hours. If you have any comments regarding the burden estimate you can write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ffice of Regulations and Rulings, 799 9th Street, NW., Washington DC 20229.

〈그림 1-3〉 CBP Form 28 서식 국문 번역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관세청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3 Exp. 03-31-2014	
정보 요청 [REQUEST FOR INFORMATION] 관세법 시행령 § 151.11			1. 요청일
			2. 수입신고일
3. 제조자 / 판매자 / 선적인	4. 운송사	5. 수입신고 번호	
5a. 송품장 상 물품 이름 / 설명	5b. 송품장 번호	6. HS 코드	
7. 원산지 / 수출 국가		8. 관세사 및 참고나 파일 번호	
9. TO:		10. FROM:	
법에서 요구하는 문서 및/또는 정보의 제출: 만약 귀하가 이 질문서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CBP 에게 다른 항구를 통해 제출하였다면, 가능한 한 제출한 항구를 기재하고 최신 사본을 이 부서로 제출바랍니다.		11a. 항구	11b. 제출일
		전반적 정보 및 설명은 뒷면을 참조하십시오.	
12. 표시된 질문에 대해 답변하십시오.		13. 표시된 서류를 준비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A.	귀하는 이 물품의 판매자와 특수 관계(뒷면 참조)에 있습니까? 만약 특수 관계라면, 관계에 대해 기술하시고 그 관계가 어떻게 수입물품의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서술하십시오.	<input type="checkbox"/> A.	이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 사본 (또는 구매주문서 및 판매자 계약서)와 일체의 개정사항
<input type="checkbox"/> B.	이 거래에서 다음과 같은 추가 경비 비용이 발생한다면 표기하고 자세히 기술하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1) 포장 <input type="checkbox"/> (2) 커미션 <input type="checkbox"/> (3)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 <input type="checkbox"/> (4) 생산지원비용 <input type="checkbox"/> (5) 권리사용료 	<input type="checkbox"/> B.	해당 물품이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출판물이나 정보 제공
		<input type="checkbox"/> C.	완제품으로 조립할 시 구성요소, 재료나 구성성분의 무게 및 구성요소의 실제 원가
		<input type="checkbox"/> D.	견본품 제출: 물품 번호 및 설명 _____ 컨테이너 _____ 표시 및 번호 _____ 분석에 사용된 견본품 및 특별히 반환 요청이 없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D.	하기 14번 칸 참조
14. CBP담당자 메시지			
15. 최신 메시지 (만약 공간이 부족하다면 필요한 페이지만큼 첨부하십시오.)			
16. 증명서	이 증명서는 적합한 기업 책임자가 작성하고 /또는 요청된 정보에 대한 답변을 보증해야 합니다. (알림: 이 문서를 작성하는 외국 기업에게는 요구사항이 아님)		
	16a. 서명자의 이름 및 직급 (소유주, 수입자 또는 기업 임원)	16b. 서명	
		16c. 전화번호	16d. 날짜
17. CBP담당자 이름	18. 부서	19. 전화번호	

〈그림 1-4〉 CBP Form 28 서식(뒷면) 국문번역

1. 요청된 정보는 귀사 수입물품의 적절한 품목분류 및/또는 평가 및/또는 물품의 수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귀사의 회신은 개정된(19 U.S.C 1509) 관세법 1930의 §509(a)에 의거하여 필수적입니다.
2. 요청된 모든 정보, 문서 및 견본품은 이 문서 앞면에 기술된 물품과 연관되어야 합니다.
3. 모든 질문에 아는 대로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4. 제출되는 모든 정보에 대한 기밀은 철저히 유지됩니다.
5. 만약 이 요청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이 불가하거나 답변을 요하는 질문에 대해 논의가 필요한 경우, 이 문서 앞면에 기재되어 있는 세관 직원에게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6. 귀하의 답변과 함께 이 문서를 송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2번 칸에 기재되어 있는 핵심 단어들의 정의

질문 A: **특수관계자** - 아래에 기술된 사람들은 특수관계자로 간주된다.

- (A) 형제자매 (친형제 자매나 이복 형제자매 포함), 배우자, 조상 및 직계 자손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
- (B) 조직의 임원이나 책임자 및 해당 조직
- (C) 만약 각 개개인이 다른 조직의 임원이나 책임자일 경우, 한 조직의 임원이나 책임자 및 다른 조직의 임원이나 책임자
- (D) 동업자
- (E) 고용주 및 고용인
- (F) 어떤 조직에서 직간접적으로 5% 이상 사외의 결정주식을 소유, 통제하거나 행사할 수 있는 투표권이 있는 개인이나 해당 조직
- (G) 둘 이상의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통제-통제 당하거나 다른 사람과 함께 같은 통제 하에 있는 것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PRICE PAID OR PAYABLE) - 이 용어는 구매자가 판매자의 이익을 위해 수입 물품에 대한 지급된 가격이나 지급할 총 가격 (운송, 보험 및 다른 CIF 요금에 대한 그 어떤 값, 요금이나 비용에 대한 직·간접적 및 독점적인 여부와 상관없이)으로 정의한다.

질문 B: **생산지원비용** - 생산지원비용이란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미국으로의 수출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된 요소들을 직·간접적, 무료 또는 인화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1) 수입 물품에 결합되는 재료, 구성요소, 부분품 및 유사 물품
- (2) 수입물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구, 금형, 다이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
- (3) 수입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소비되는 물품
- (4) 수입물품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 단, 미국에서 개발된 것은 제외함.

판매자에게 귀속되는 사후귀속이익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 이 용어는 당해 수입물품의 전매·처분 또는 사용 등에서 얻어져 판매자에게 직·간접적으로 귀속되는 판매대금, 임대료, 가공임 등을 의미한다.

권리사용료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 이 용어는 수입물품의 미국 수출을 위해 구매자가 수입물품과 관련된 거래조건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다.

PAPERWORK REDUCTION ACT STATEMENT - 대행사는 정보 수집을 이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이 정보에 현재 유효한 정부 부여 번호 (OMB control number) 및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이상 회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문서의 정부 부여 번호는 1651-0023입니다. 이 신청서를 작성하는 예상 평균 시간은 2시간입니다. 만약 이 평균 시간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워싱턴 DC 9번가 799번지에 있는 CBP 규정 및 예규 부서로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03 미국세관의 자료요청 사례 (요청내용)

사례 1.

그림 2-1 및 그림 2-2는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미국으로 수출한 자동차용 교류발전기에 대하여 미국세관이 수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례로 수입자가 한-미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 ① 물품의 상세 설명자료 및 용도, 재질
- ② 원산지증명서(C/O)
- ③ 제조공정도 및 설명자료
- ④ 원산지기준 충족 설명자료
- ⑤ 원재료명세서(Bill of Materials)
- ⑥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원산지재료의 C/O 또는 확인서
- ⑦ 구매 관련 증빙자료
- ⑧ 재고관리 및 간접재료 관련 자료
- ⑨ 기타 증빙 자료

사례 2.

그림 2-3 및 그림 2-4는 우리나라의 수출자가 미국으로 수출한 circular Knit Fabric에 대하여 미국세관이 수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한 사례로 수입자가 한-미 FTA 특혜세율을 적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 ① 별첨 목록의 모든 서류 사본
- ② 수입물품의 샘플
- ③ 직물의 세부 구성내역
- ④ 구매확약서(Purchase Order)의 사본
- ⑤ 송품장(Invoice)
- ⑥ 수입품의 대금결제 증빙자료

〈그림 2-1〉 CBP Form 28- CBP의 자료요구 사례1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3; Exp. 5-31-2011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1. Date of Request 04/02/2013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09/06/2012 09/06/2012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Hanjin Oslo	5. Entry No.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ALTR TGS/ 90A 4G/ 90A 6G; Starter 700S; C-ALTR; SC		5b. Invoice No. VM-0820WS-1/2	6. HTSUS Item No. 8511500000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KR KR		8. Customs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F.R.T. INTERNATIONAL, INC.	
9. TO:		10. FROM: Millissa Nixon 1000 2nd Ave Ste 2100 Seattle, WA 98104-3629 US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11a. Port 3002	11b. Date Information Furnished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Revers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input checked="" type="checkbox"/>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input checked="" type="checkbox"/>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packing <input checked="" type="checkbox"/> (2) commissions <input checked="" type="checkbox"/>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input checked="" type="checkbox"/> (4) assists <input checked="" type="checkbox"/>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any revisions thereto. <input checked="" type="checkbox"/>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input type="checkbox"/> D. Submit samples: Article number and description _____ _____ from container number _____ mark(s) and number _____ Samples consumed in analysis, and other samples whose return is not specifically requested, will not normally be return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E. See item 14 below	
14. CBP Officer Message See continuation sheet			
15. Reply Message (Use additional sheets if more space is needed.)			
16. CERTIFICATION It is required that an appropriate corporate/company official execute this certificate and/or endorse all correspondence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E: NOT REQUIRED IF FOREIGN FIRM COMPLETES THIS FORM.)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on or upon this form in response to this inquiry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any samples provided were taken from the shipment covered by this entry.		16a.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17. CBP Officer Millissa Nixon		16b. Signature	
		16c. Telephone No.	16d. Date
18. Team Designation 790		19. Telephone No. 206-553-1428	

〈그림 2-2〉 CBP Form 28 – CBP의 자료요구 사례1 (계속)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3, Exp. 5-31-2011	
REQUEST FOR INFORMATION Continuation Page 19 CFR 151.11			1. Date of Request 04/02/2013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09/06/2012 09/06/2012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Hanjin Oslo		5. Entry No.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ALTR TG9/ 90A 4G/ 90A 6G; Starter 700S; C-ALTR; SC		5b. Invoice No. VM-0820WS-1/2		6. HTSUS Item No. 8511500000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KR		8. Customs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F.R.T. INTERNATIONAL, INC.		
<p>14. CBP Officer Message</p> <p>The items: ALTR TG9/ 90A 4G/ 90A 6G; Starter 700S; C-ALTR; SG7K listed on invoice VM-0820WS 1 / 2 associated with entry number DQ7-00164626, classified under HTSUS 8511.50.0000 and 8511.40.0000 were imported into the U.S. an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claimed under the U.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UKFTA). This is notification tha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goods pursuant to 19 U.S.C. 3805 note. The purpose of the verification is to determine whether the goods is originating per the rules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p> <p>First, please provide detailed description / illustration of each of the parts. How will they be used? For what purpose? What are they made of?</p> <p>Please provide the certificate of origin with the preference criterion.</p> <p>Next,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KFTA, such as,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Flow chart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An explanation of how the goods meets the GN 33(b) rule of origin or the GN 33(o) specific rule of origin; •A bill or materials showing the classification number, origin, and cost (if the good is subject to a RVC calculation) or each material; •A certification of origin or affidavit corresponding to each originating material that fails the prescribed tariff shift; otherwise, the material may be deemed non-originating; •Purchase orders and proof of payment to substantiate values; •Documentation pertaining to assists, inventory management methods, indirect materials, etc.; or •Other documentation, as needed. <p>Contact: millissa.a.nixon@cbp.dhs.gov</p>				
17. CBP Officer Millissa Nixon		18. Team Designation 790		19. Telephone No. 206-553-1428

CBP Form 28 (08/08)

(그림 2-3) CBP Form 28 - CBP의 자료요구 사례2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3; Exp. 5-31-2011	
REQUEST FOR INFORMATION 19 CFR 151.11		1. Date of Request 11/20/2012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09/03/2012 09/03/2012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BA/115 BRITISH AIRWAYS	5. Entry No.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CIRCULAR KNIT FABRIC	5b. Invoice No. V20120829	6. HTSUS Item No. 6006440085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KR KR	8. Customs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ANA LINK, LTD		
9. TO:	10. FROM: Michelle Akalski Cst 252 Building 77 JFK International Airport Jamaica, NY 11430 US		
Production of Documents and/or Information Required by Law: If you have provided the information requested on this form to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at other ports, please indicate the port of entry to which it was supplied, and furnish a copy of your reply to this office, if possible.		11a. Port 4701	11b. Date Information Furnished
General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on Reverse			
12. Please Answer Indicated Question(s)		13. Please Furnish Indicated Item(s)	
<input type="checkbox"/>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input type="checkbox"/>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input type="checkbox"/> (1) packing <input type="checkbox"/> (2) commissions <input type="checkbox"/>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input type="checkbox"/> (4) assists <input type="checkbox"/>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input type="checkbox"/>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any revisions thereto. <input type="checkbox"/>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input type="checkbox"/>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input type="checkbox"/> D. Submit samples: Article number and description _____ _____ from container number _____ mark(s) and number _____ Samples consumed in analysis, and other samples whose return is not specifically requested, will not normally be return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E. See item 14 below.	
14. CBP Officer Message See continuation sheet			
15. Reply Message (Use additional sheets if more space is needed.)			
16. CERTIFICATION It is required that an appropriate corporate/company official execute this certificate and/or endorse all correspondence in response to the information requested. (NOTE: NOT REQUIRED IF FOREIGN FIRM COMPLETES THIS FORM.)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furnished herewith or upon this form in response to this inquiry is true and correct, and that any samples provided were taken from the shipment covered by this entry.	16a. Name and Title/Position of Signer (Owner, Importer, or Corporate/Company Official)		16b. Signature
			16c. Telephone No. 16d. Date
17. CBP Officer Michelle Akalski	18. Team Designation 252	19. Telephone No. 718-487-2530	

〈그림 2-4〉 CBP Form 28 – CBP의 자료요구 사례2 (계속)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OMB No. 1651-0023; Exp. 5-31-2011	
REQUEST FOR INFORMATION Continuation Page		1. Date of Request 11/20/2012	
19 CFR 151.11		2. Date of Entry and Importation 09/03/2012 09/03/2012	
3. Manufacturer/Seller/Shipper	4. Carrier BA/115 BRITISH AIRWAYS	5. Entry No.	
5a. Invoice Description of Merchandise CIRCULAR KNIT FABRIC	5b. Invoice No. V20120829	6. HTSUS Item No. 6006440085	
7. Country of Origin/Exportation KR	8. Customs Broker and Reference or File No. ANA LINK, LTD		
<p>14. CBP Officer Message</p> <p>REQUEST FOR INFORMATION: The following good(s), CIRCULAR KNIT FABRIC, was/were imported into the U.S. and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claimed under the U.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This is notification that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 verify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fabric pursuant to GENERAL NOTE 33. The purpose of this verification is to determine whether the fabric is originating per the rules of origin set forth in General Note 33 of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the U.S. – KOREA FREE TRADE AGREEMENT. Please submit a copy of all the documents listed on the attachment as well as a ½ yard sample of THE CIRCULAR KNIT FABRIC (ACET SLINKY VIT-22-275 IVORY/GREEN) imported in this shipment (Invoice # V20120829) and the fabric construction details (see attached form). Also submit a copy of the original purchase order, invoice and proof of payment for this fabric. Note box # 16 below.</p>			
17. CBP Officer Michelle Akalski	18. Team Designation 252	19. Telephone No. 718-487-2530	
CBP Form 28 (08/08)			

● 원산지 소명서 작성 예시 및 사례

01 세번변경기준 작성 예시

소명서 작성 예시(국문)

원산지 소명서						
1. 수출자	상 호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전화 / 팩스	02)222-3333		
	주소(전자주소)	서울시 강남구 00로 00-0(www.abc.com)				
2. 생산자	상 호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전화 / 팩스	031)999-3333		
	주소(전자주소)	경기도 양주시 00로 00-0				
소명대상 물품 : Invoice No. ABC20130608-03(2013.06.08)						
3. 품명 / 규격	Ball Bearing / ABC-6102-2Z		4. HS No.	8482.10		
5. 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Ex-Works()		6. 원산지 결정기준	CTSH	
	금 액	@9.55			(ex 8482.10~8482.80, 8482.99)	
7. 주요생산공정	베어링 Outer Ring 및 베어링 제조 별첨 Flow charts 및 기술 설명서 참조					
원재료명세서(수출품 단위당)						
8. 연번	9. 재료명	10. HS No.	11. 원산지	12. 가 격		13. 공급자(생산자)
				수 량	가 격	
①	Molded Seal	8482.99	한국	2ea	1.00	(주)한국
②	Outer Ring	8482.99	한국	1ea	1.80	(주)한국
③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20	USA ltd
④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50	USA ltd
⑤	Ball	8482.91	미국	10ea	1.00	USA ltd
⑥	Grease	2710.19	한국	0.1g	0.05	(주)한국
⑦	Cage	8482.99	독일	1ea	0.10	Germany ltd
⑧	Seal	8482.99	일본	1ea	0.65	Japan ltd
14. 합 계		원산지재료(역내산)				6.55
		비원산지재료(역외산)				0.75
		간접재료비				2.25
		합 계				9.55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			
15.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16.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7.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비율 : %)		
18.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19. 최소기준 적용 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0.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1. 역외가공기준 적용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 직접운송 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3.기 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 원산지 결정	충족 (○)		불충족 ()
<p>본인은 이 소명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사실임을 인증하며, 본인이 위 내용에 대한 입증을 책임집니다. 본인은 이 소명서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이나 자료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작 성 자 : 이 정 한 (서명) 직 위 : 무역부장 상호 및 주소 : (주) ABC 서울시 강남구 00로 00-0 작 성 일 자 : 201X. XX. XX </p>			
<첨부 문서>			
1. 송품장 (○) 3. 원재료 구입명세서 (○) 5. 제조공정 설명서 (○) 7. 기타 관련 서류 ()		2. 원재료 명세서 (○) 4. 비원산지재료의 수입증빙서류 사본 (○) 6. 직접운송 증빙서류 (○)	

원산지 소명서에 대한 설명

귀 세관에서 00년00월00일 ABC사에 요청한 00년00월00일 미국 XYZ사로 수출한 물품(Invoice No. ABC20130608-03)은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당사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으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임을 아래와 같이 소명합니다.

- 수출물품 : Ball bearing, Invoice No. ABC20130608-03(2013.06.08)
- 품목분류 : 8482.10

Ball Bearing 품목분류 근거

물품설명

- 원통 형태의 외륜이 있고, 그 안의 케이지에 철강제 ball(10개)이 결합되어 있음. 케이지의 내접원경 부위에는 축(shaft)이 끼워지고 상하 움직임(직선운동)을 가능하게 함

품목분류 : 8482.10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 베어링 또는 롤러 베어링”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고 해설
- 동 물품은 철강제의 강구(ball)를 구름재(전도체)로 사용하는 볼 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볼 베어링이 해당하는 8482.10 소호에 분류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1 : CTSH(ex) 8482.10 ~ 8482.80, 8482.99)
- 원산지결정기준 2 :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집적법 40 또는 공제법 50)
- ※ 한·미 FTA 협정 제6장 부속서 6-가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의거 8482.10 ~ 8482.80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가지 임

원산지결정기준 1번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원산지결정기준 2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없이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10호 내지 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 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 수출물품(Ball Bearing)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1번
- 원재료명세서 : 수출물품은 1제품 당 8개의 원재료로 구성

연번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수량	가격(\$)	공급자(생산자)
1	Molded Seal	8482.99	한국	2ea	1.00	(주)한국
2	Outer Ring	8482.99	한국	1ea	1.80	(주)한국
3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20	USA ltd
4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50	USA ltd
5	Ball	8482.91	미국	10ea	1.00	USA ltd
6	Grease	2710.19	한국	0.1g	0.05	(주)한국
7	Cage	8482.99	독일	1ea	0.10	Germany ltd
8	Seal	8482.99	일본	1ea	0.65	Japan ltd
원산지재료비				-	6.55	-
비원산지재료비				-	0.75	-
간접재료비				-	2.25	ERP 자료
물품가격(FOB)				-	9.55	수출 Invoice

● 원산지판정 : 한·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한국산), 최소허용기준 적용

- 원산지결정기준 : CTSH(ex) 8482.10 ~ 8482.80, 8482.99)
- 원재료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판정

연번	원재료명	HS CODE	소호변경	충족사유	증빙서류
1	Molded Seal	8482.99	충족	한국산원재료	원산지확인서
2	Outer Ring	8482.99	충족	한국산원재료	원산지확인서
3	Inner Ring	8482.99	충족	미국산원재료	원산지증명서
4	Inner Ring	8482.99	충족	미국산원재료	원산지증명서
5	Ball	8482.91	충족	미국산원재료 소호변경	원산지증명서 6단위 소호변경
6	Grease	2710.19	충족	한국산원재료 소호변경	원산지확인서
7	Cage	8482.99	불충족	-	최소허용기준 적용
8	Seal	8482.99	불충족	-	(0.75\$)

- 최소허용기준 : 한·미 FTA협정 제6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절차 제6.6조 최소허용수준 조항에 의거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조정가치의 10 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상품으로 인정 함
 - 최소허용기준 계산

계산방식	세번이 변경되지 아니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조정가치(AV)
계산결과	0.75 / 9.55 = 7.85% ≤ 10%

- Ball Bearing 원산지 판정 결과 : 동 물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원재료의 소호변경 및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충족한 한국산 원산지제품 임

소명서 작성 예시(영문)

Statement of Origin						
1. Exporter	Name of Company	ABC co.	Business Number	123-45-67890		
	Representative	Hong, Gil Dong	Telephone & Fax No.	82+2-222-3333		
	Address	00-0 00ro, Gangnam-gu, Seoul, Korea (www.abc.com)				
2. Producer	Name of Company	ABC co.	Business Number	123-45-67890		
	Representative	Hong, Gil Dong	Telephone & Fax No.	82+2-999-3333		
	Address	00-0 00ro, Yangju-si, Gyeonggi-do, Korea				
Description of Exported Goods : Invoice No. ABC20130608-03(08/06/2013)						
3. Name & Model	Ball Bearing / ABC-6102-2Z		4. HS No.	8482.10		
5. Value	Term of Price	FOB (○), Ex-Works()	6. Origin Criteria	CTSH		
	Price	@9.55		(ex 8482.10~8482.80, 8482.99)		
7.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Bearing(including Outer Ring) production ※ See attached Flow charts and Technical Specification					
List of Material (Per Unit)						
8. No	9. Name of Material	10. HS No.	11. Country of Origin	12. Price		13. Supplier (Producer)
				Volume	USD	
①	Molded Seal	8482.99	Korea	2ea	1.00	Han Guk, Inc.
②	Outer Ring	8482.99	Korea	1ea	1.80	Han Guk, Inc.
③	Inner Ring	8482.99	U.S.	1ea	1.20	USA ltd
④	Inner Ring	8482.99	U.S.	1ea	1.50	USA ltd
⑤	Ball	8482.91	U.S.	10ea	1.00	USA ltd
⑥	Grease	2710.19	Korea	0.1g	0.05	Han Guk, Inc.
⑦	Cage	8482.99	Germany	1ea	0.10	Germany ltd
⑧	Seal	8482.99	Japan	1ea	0.65	Japan ltd
14. Total		Originating Materials			6.55	
		Non-Originating Materials			0.75	
		Indirect Materials			2.25	
		Total			9.55	

Supplementary Explanation for the Origin Determination

We hereby determine that the goods (Invoice No. ABC20120808-01), which ABC produced in our factory located in Yangju-si, Gyeonggi-do, Korea and exported to XYZ of U.S., on DD/MM/YY, meet the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under the Korea-US FTA.

- Exported Goods : Ball bearing (Invoice No. ABC20120808-01 ; Dated August 8, 2012)
- Tariff Classification(HS) : 8482.10

Tariff Classification Basis for Ball Bearing

Description of Good(s)

- It has a cylindrical rim in which 10 pieces of balls of iron or steel are combined in a cage. A shaft is inserted to the inscribed circle diameter of such cage for up-and-down motion.

HS Code: 8482.10

- According to the Tariff Classification, the heading 8482 includes "Ball or roller bearings, and parts thereof." The explanatory notes of this heading provides, "This heading covers all ball, roller or needle roller type bearings."
- In accordance with Rule 1 and Rule 6 of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above goods are classified into the subheading 8482.10, because they are ball bearings that use a ball of iron or steel as a conductor.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 Criterion 1: CTSH (except for 8482,10 ~ 8482,80, 8482,99)
 - Criterion 2: Change from 8482,99 + (Build-Up 40% or Build-Down 50%)
- ※ According to Annex 6-A (Specific Rules of Origin), Chapter 6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Korea-US FTA, two criteria of Origin determination are applicable for the goo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8482.10 through 8482.80, as follows .

Criterion 1	A change to subheading 8482.10 through 8482.80 from any other subheading outside of that group, except from subheading 8482.99; or
Criterion 2	A change to subheading 8482.10 through 8482.80 from subheading 8482.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a) 40 percent under the build-up method, or (b) 50 percent under the build-down method.

- Applied Criterion to the exported goods(Ball Bearing) : Criterion 1
- List of Materials : eight materials per unit of the exported goods

S/N	Material Name	HS No.	Origin	Q'ty	Price (USD)	Supplier (Producer)
1	Molded Seal	8482,99	Korea	2ea	1.00	Han Guk, Inc.
2	Outer Ring	8482,99	Korea	1ea	1.80	
3	Inner Ring	8482,99	U.S.	1ea	1.20	USA Ltd
4	Inner Ring	8482,99	U.S.	1ea	1.50	
5	Ball	8482,91	U.S.	10ea	1.00	
6	Grease	2710,19	Korea	0.1g	0.05	Han Guk, Inc.
7	Cage	8482,99	Germany	1ea	0.10	Germany Ltd
8	Seal	8482,99	Japan	1ea	0.65	Japan Ltd
Originating Material(OM) Cost					6,55	
Non-originating Material(NOM) Cost					0.75	
Indirect Material Cost + Profit					2,25	as of ERP
Unit Price of Goods (FOB)					9,55	as of Invoice

● **Decision** : Originating goods(Korea), in compliance with Korea-US FTA De Minimis standard applied

- Criterion for Origin Determination : CTSH (except for 8482,10~8482,80, 8482,99)
- Summary of Origin Determination

S/N	Material Name	HS No.	Change in Subheading	Originating Material	Supporting Document
1	Molded Seal	8482,99	Satisfied	Korea	Origin Confirmation
2	Outer Ring	8482,99	Satisfied		
3	Inner Ring	8482,99	Satisfied	US	C/O
4	Inner Ring	8482,99	Satisfied		
5	Ball	8482,91	Satisfied	US (Subheading Change)	C/O SH Change
6	Grease	2710,19	Satisfied	Korea (Subheading Change)	Origin Confirmation
7	Cage	8482,99	Dissatisfied	—	De minimis applied (0.75\$)
8	Seal	8482,99	Dissatisfied	—	

- De Minimis standard : As provided in Article 6.6 (De Minimis), Chapter 6 of Korea-US FTA, a good is originating if the value of all non-originating materials that have been used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and do not undergo the applicable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does not exceed ten percent of the adjusted value (AV) of the good.

Calculation	Value of all NM(without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AV
Result	0.75 / 9.55 = 7.85% ≤ 10%

- **Result of Determination** : Originating Good(Korea) satisfying requirement of subheading change of materials and de minimis standard in accordance with Korea-US FTA.

02 부가가치기준 작성 예시

소명서 작성 예시(국문)

원산지 소명서						
1. 수출자	상 호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전화 / 팩스	02)222-3333		
	주소(전자주소)	서울시 강남구 00로 00-0(www.abc.com)				
2. 생산자	상 호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홍 길 동	전화 / 팩스	031)999-3333		
	주소(전자주소)	경기도 양주시 00로 00-0				
소명대상 물품 : Invoice No. ABC20120808-01(2012.08.08)						
3. 품명 / 규격	Ball Bearing / ABC-6102-2Z		4. HS No.	8482.10		
5. 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Ex-Works()		6. 원산지 결정기준	CTSH from 8482.99+RVC (집적법 40% or 공제법 50%)	
	금 액	@9.55				
7. 주요생산공정	베어링 Outer Ring 및 베어링 제조 별첨 Flow charts 및 기술 설명서 참조					
원재료명세서(수출품 단위당)						
8. 연번	9. 재료명	10. HS No.	11. 원산지	12. 가격		13. 공급자(생산자)
				수 량	가 격	
①	Molded Seal	8482.99	한국	2ea	1.00	(주)한국
②	Outer Ring	8482.99	한국	1ea	1.80	(주)한국
③	Grease	2710.19	한국	0.1g	0.05	(주)한국
④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20	USA ltd
⑤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50	USA ltd
⑥	Ball	8482.91	미국	10ea	1.00	USA ltd
⑦	Cage	8482.99	독일	1ea	0.10	Germany ltd
⑧	Seal	8482.99	일본	1ea	0.65	Japan ltd
14. 합 계		원산지재료(국산,미국산)		6.55		
		비원산지재료(수입산)		0.75		
		간접재료비		2.25		
		합 계		9.55		

원산지 인정요건 검토					
15. 완전생산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16. 세번변경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7.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부가가치비율 : BU 68.5%, BD 92.1 %)				
18.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 동시 적용품목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19. 최소기준 적용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 누적기준 적용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1. 역외가공기준 적용 여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 직접운송 여부	예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type="checkbox"/>	23. 기 타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 원산지 결정	충족 (○)		불충족 ()		
<p>본인은 이 소명서의 내용이 정확하고 사실임을 인증하며, 본인이 위 내용에 대한 입증 책임을 집니다. 본인은 이 소명서와 관련하여 허위 진술이나 자료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이 있음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작 성 자 : 이 정 한 (서명) 직 위 : 무역부장 상호 및 주소 : (주) ABC 서울시 강남구 00로 00-0 작 성 일 자 : 201X. XX. XX </p>					
<p>〈첨부 문서〉</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1. 송품장 (○) 3. 원재료 구입명세서 (○) 5. 제조공정 설명서 (○) 7. 기타 관련 서류 () </td> <td style="vertical-align: top;"> 2. 원재료 명세서 (○) 4. 비원산지재료의 수입증빙서류 사본 (○) 6. 직접운송 증빙서류 (○) </td> </tr> </table>				1. 송품장 (○) 3. 원재료 구입명세서 (○) 5. 제조공정 설명서 (○) 7. 기타 관련 서류 ()	2. 원재료 명세서 (○) 4. 비원산지재료의 수입증빙서류 사본 (○) 6. 직접운송 증빙서류 (○)
1. 송품장 (○) 3. 원재료 구입명세서 (○) 5. 제조공정 설명서 (○) 7. 기타 관련 서류 ()	2. 원재료 명세서 (○) 4. 비원산지재료의 수입증빙서류 사본 (○) 6. 직접운송 증빙서류 (○)				

원산지 소명서에 대한 설명

00년00월00일 ABC사에 요청한 00년00월00일 미국 XYZ사로 수출한 물품(Invoice No. ABC20120808-01)은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당사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으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임을 아래와 같이 소명합니다.

- 수출물품 : Ball bearing, Invoice No. ABC20120808-01(2012.08.08)
- 품목분류 : 8482.10

Ball Bearing 품목분류 근거

물품설명

- 원통 형태의 외륜이 있고, 그 안의 케이지에 철강제 ball(10개)이 결합되어 있음. 케이지의 내접원경 부위에는 축(shaft)이 끼워지고 상하 움직임(직선운동)을 가능하게 함

품목분류 : 8482.10

-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 베어링 또는 롤러 베어링”이 분류되며, 이 호의 해설서는 “이 호에는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형의 모든 베어링이 포함된다.”고 해설
- 동 물품은 철강제의 강구(ball)를 구름재(전도체)로 사용하는 볼 베어링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볼 베어링이 해당하는 8482.10 소호에 분류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1 : CTSH(ex) 8482.10 ~ 8482.80, 8482.99)
- 원산지결정기준 2 :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집적법 40 또는 공제법 50)
 - ※ 한·미 FTA 협정 제6장 부속서 6-가의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에 의거 8482.10 ~ 8482.80에 해당하는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은 2가지 임.

원산지결정기준 1번	이 상품군 외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에서 제8482.10호 내지 제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원산지결정기준 2번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여부와 관계 없이 제8482.99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제8482.10호 내지 8482.80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변경된 것. 다만, 아래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에 한한다 가. 집적법 40퍼센트 이상, 또는 나. 공제법 50퍼센트 이상

- 수출물품(Ball Bearing)에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2번
- 원재료명세서 : 수출물품은 1제품 당 8개의 원재료로 구성

연번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수량	가격(\$)	공급자(생산자)	증빙서류
1	Molded Seal	8482,99	한국	2ea	1,00	(주)한국	원산지확인서
2	Outer Ring	8482,99	한국	1ea	1,80	(주)한국	원산지확인서
3	Grease	2710,19	한국	0.1g	0,05	(주)한국	원산지확인서
4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20	USA ltd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5	Inner Ring	8482,99	미국	1ea	1,50	USA ltd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6	Ball	8482,91	미국	10ea	1,00	USA ltd	수입신고서 원산지증명서
7	Cage	8482,99	독일	1ea	0,10	Germany ltd	수입신고서
8	Seal	8482,99	일본	1ea	0,65	Japan ltd	수입신고서
원산지재료비				-	6,55	-	-
비원산지재료비				-	0,75	-	-
간접재료비				-	2,25	-	ERP 자료
물품가격(FOB)				-	9,55	-	수출 Invoice

- 원산지판정 : 한 · 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제품(한국산)
-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2
- 원산지결정기준 2 :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집적법 40 또는 공제법 50)
 - 원산지결정기준 2-1 :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집적법 40
 - 원산지결정기준 2-2 :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공제법 50
- 원산지결정기준 2-1 : RVC 68.5%로 한 ·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원산지결정기준 2-1 : RVC 92.1%로 한 · 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Ball Bearing 원산지 판정 결과 : 동 물품은 제8482.99호의 원재료로부터 생산된 제품으로서, 역내 부가가치비율이 집적법 RVC 68.5%, 공제법 RVC 92.1%로서 한 · 미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한 한국산 원산지제품임

원산지결정기준	역내부가가치비율	한 · 미 FTA 원산지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집적법 40	RVC 68,5%	원산지제품
8482,99호로부터의 변경 + 공제법 50	RVC 92,1%	원산지제품

소명서 작성 예시(영문)

Statement of Origin						
1. Exporter	Name of Company	ABC co.	Business Number	123-45-67890		
	Representative	Hong, Gil Dong	Telephone & Fax No.	82+2-222-3333		
	Address	00-0 00ro, Gangnam-gu, Seoul, Korea (www.abc.com)				
2. Producer	Name of Company	ABC co.	Business Number	123-45-67890		
	Representative	Hong, Gil Dong	Telephone & Fax No.	82+2-999-3333		
	Address	00-0 00ro, Yangju-si, Gyeonggi-do, Korea				
Description of Exported Goods : Invoice No. ABC20120808-01(08/08/2012)						
3. Name & Model	Ball Bearing / ABC-6002-1Z		4. HS No.	8482.10		
5. Value	Term of Price	FOB (○), Ex-Works()	6. Origin Criteria	CTSH from 8482.99 + RVC(BU40% or BD50%)		
	Price	@9.55				
7.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Bearing(including Outer Ring) production ※ See attached Flow charts and Technical Specification					
List of Materials(Per Unit)						
8. S/N	9. Material Name	10. HS No.	11. Origin	12. Price		13. Supplier
				Volume	USD	
①	Molded Seal	8482.99	Korea	2ea	1.00	Han Guk, Inc.
②	Outer Ring	8482.99	Korea	1ea	1.80	Han Guk, Inc.
③	Grease	2710.19	Korea	0.1g	0.05	Han Guk, Inc.
④	Inner Ring	8482.99	U.S.	1ea	1.20	USA Ltd
⑤	Inner Ring	8482.99	U.S.	1ea	1.50	USA Ltd
⑥	Ball	8482.91	U.S.	10ea	1.00	USA Ltd
⑦	Cage	8482.99	Germany	1ea	0.10	Germany Ltd
⑧	Seal	8482.99	Japan	1ea	0.65	Japan Ltd
14. Total Cost		Originating Materials		6.55		
		Non-Originating Materials		0.75		
		Indirect Materials		2.25		
		Total		9.55		

Origin Determination			
15. Wholly Obtained Criter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16. Tariff Shift Criter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17. Value-added Criterion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Ratio : BU 68.5%, BD 92.1%)		
18. Combined Criterion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19. De Minimi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 Accumulation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21. Outward Processing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 Direct Consignment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23. Other Requirement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24. Origin Determination	Qualified (<input type="checkbox"/>)		Non-Qualified (<input type="checkbox"/>)
<p>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p>			
Name : Lee, Jung Han		(Signature)	
Title : Director of Trade Department			
Company & Address : ABC, Inc. /00-0 00ro, Gangnam-gu, Seoul, Korea			
Date : DD/MM/YYYY			
〈Documentary Evidence〉			
1. Invoice (○) 3. Payment Evidence for Material (○) 5. Production Process Documents (○) 7. Other Related Documents, if Required ()		2. List of Materials (○) 4. A Copy of Import Permit for Non-originating Materials (○) 6. Direct Transportation Evidence (○)	

Supplementary Explanation for the Origin Determination

We hereby determine that the goods (Invoice No. ABC20120808-01), which ABC produced in our factory located in Yangju-si, Gyeonggi-do, Korea and exported to XYZ of U.S., on DD/MM/YY, meet the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under the Korea-US FTA.

- **Exported Goods** : Ball bearing (Invoice No. ABC20120808-01; Dated August 8, 2012)
- **Tariff Classification(HS)** : 8482.10

Tariff Classification Basis for Ball Bearing

Description of Good(s)

- It has a cylindrical rim in which 10 pieces of balls of iron or steel are combined in a cage. A shaft is inserted to the inscribed circle diameter of such cage, for up-and-down motion.

HS Code: 8482.10

- According to the Tariff Classification, the heading 8482 includes "Ball or roller bearings, and parts thereof." The explanatory notes of this heading provides, "This heading covers all ball, roller or needle roller type bearings."
- In accordance with Rule 1 and Rule 6 of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above goods are classified into the subheading 8482.10, because they are ball bearings that use a ball of iron or steel as a conductor.

●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 Criterion 1 : CTSH (except for 8482.10 ~ 8482.80, 8482.99)
- Criterion 2 : Change from 8482.99 + (Build-Up 40% or Build-Down 50%)
 - ※ According to Annex 6-A (Specific Rules of Origin), Chapter 6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 of Korea-US FTA, two criteria of Origin determination are applicable for the goods, classified under subheading 8482.10 through 8482.80, as follows.

Criterion 1	A change to subheading 8482.10 through 8482.80 from any other subheading outside of that group, except from subheading 8482.99; or
Criterion 2	A change to subheading 8482.10 through 8482.80 from subheading 8482.99, whether or not there is also a change from any other heading, provided that there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40 percent under the build-up method, or (b) 50 percent under the build-down method.

- **Criterion applied to the exported goods(Ball Bearing)** : Criterion 2
- **List of Materials** : eight materials per unit of the exported goods

S/N	Material Name	HS No.	Origin	Q'ty	Price (USD)	Supplier (Producer)	Supporting Document
1	Molded Seal	8482,99	Korea	2ea	1,00	Han Guk, Inc.	Origin Confirmation
2	Outer Ring	8482,99	Korea	1ea	1,80		
3	Grease	2710,19	Korea	0,1g	0,05		
4	Inner Ring	8482,99	U.S.	1ea	1,20	USA Ltd	Import Declaration, Certificate of Origin
5	Inner Ring	8482,99	U.S.	1ea	1,50	USA Ltd	
6	Ball	8482,91	U.S.	10ea	1,00	USA Ltd	
7	Cage	8482,99	Germany	1ea	0,10	Germany Ltd	Import Declaration
8	Seal	8482,99	Japan	1ea	0,65	Japan Ltd	
Originating Material(OM) Cost				-	6,55	-	-
Non-originating Material(NOM) Cost				-	0,75	-	-
Indirect Material Cost				-	2,25	-	as of ERP
Unit Price of Goods (FOB)				-	9,55	-	as of Invoice

- Decision : Originating goods(Korea), in compliance with Korea-US FTA
- Applied Criterion to the exported goods : Criterion 2
-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
 - Criterion 2 : Change from 8482,99 + (Build-Up 40% or Build-Down 50%)
 - Criterion 2-1 : Change from 8482,99 + Build-Up method 40%
 - Criterion 2-2 : Change from 8482,99 + Build-Down method 50%
- Criterion 2-1 : Satisfies requirement under Korea-US FTA, with RVC 68.5%
- Criterion 2-2 : Satisfies requirement under Korea-US FTA, with RVC 92.1%
- Decision : Originating goods(Korea), in compliance with Korea-US FTA Regional Value Content(RVC) is 68.5%(BU) or 92.1%(BD), as produced from materials of the subheading 8482,99

Origin Determination	RVA (%)	Originating
Change from subheading 8482,99 + BU 40	68,5	Yes(Korea)
Change from subheading 8482,99 + BD 50	92,1	Yes(Korea)

03 가공공정기준 작성 예시

소명서 작성 예시(국문)

소명서						
1. 수출자	상호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홍길동	전화 / 팩스	02)222-3333		
	주소(전자주소)	서울시 강남구 00로 00-0(www.abc.com)				
2. 생산자	상호	(주)ABC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0		
	대표자(성명)	홍길동	전화 / 팩스	031)333-3333		
	주소(전자주소)	경기도 수원시 00로 00-0				
소명대상 물품 : Invoice No. ABC20130105-05(2013.01.05)						
3. 품명 / 규격	Men's Padding Jumper / 5Z220		4. HS No.	6201.93		
5. 물품가격	가격조건	FOB (○), Ex-Works()		6. 원산지 결정기준	CC(ex_)	
	금액	-			+ cut & sewn or assembled + 제62류 규칙 1	
7. 주요생산공정	국내에서 제직을 통해 생산된 원단을 구매하여 재단, 봉제, 다림질, 라벨링 등을 통하여 완제품 생산 별첨 Flow charts 및 원산지 확인서 참조					
원재료명세서(수출품 단위당)						
8. 연번	9. 재료명	10. HS No.	11. 원산지	12. 가격		13. 공급자(생산자)
				수량	가격(₩)	
①	100% polyamide fabrics(겉감)	5903.20	한국	1yard (200g)	38,000	(주)섬유물산
②	Inter lining(Nonwovens)	5603.11	한국	300g	11,000	(주)충진재
③	100% Nylon fabrics(안감)	5407.42	한국	0.4yard (50g)	9,800	(주)섬유물산
④	단추	9606.21	미상	4ea	1,200	(주)단추
⑤	재봉사(Sewing thread of Nylon)	5401.10	한국	30m(3g)	500	(주)섬유물산
⑥	지제 라벨	4821.10	미상	3ea	500	(주)라벨
⑦	직물제 라벨	5807.10	미상	4ea(6g)	1,000	(주)라벨
14. 합계		원산지재료(국산)				59,300
		비원산지재료(수입산)				2,700
		간접재료비				24,000
		합계				86,000

원산지 소명서에 대한 설명

00년00월00일 ABC사에 요청한 00년00월00일 미국 XYZ사로 수출한 물품(Invoice No. ABC20130105-05)은 대한민국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하는 당사의 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으로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임을 아래와 같이 소명합니다.

- 수출물품 : Men's Padding Jumper, Invoice No. ABC20130105-05(2013.01.05)
- 품목분류 : 6201.93

Men's Padding Jumper 품목분류 근거

물품설명

-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남성용 패딩 자켓으로서 전면의 원편이 오른편 위로 잠그도록 되었고 지퍼로 완전개폐가 가능하며 탈부착이 가능한 후드, 밑단에 조임끈, 소매 끝 부위에 리브드한 밴드처리 등으로 디자인되었으며 내부에 패딩이 충전된 방한용의 것.

품목분류 : 6201.93

- 관세율표 제6201호에 “남자 또는 소년용의 오버코트·카코트·케이프·클락·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윈드치터·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6101호에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 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 동 제품 합성섬유제 직물로 제조된 방한용의 남성용 패딩 자켓으로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6201.93 소호에 분류함.

● 원산지결정기준

- 원산지결정기준 : 세번변경기준 + 가공공정기준

① CC (ex) 제5106호 내지 제5113호, 제5204호 내지 제5212호, 제5307호 내지 제5308호, 제5310호 내지 제5311호, 제5401호 내지 제5402호, 제5403.20호, 제5403.33호 내지 제5403.39호, 제5403.42호 내지 제5408호, 또는 제5508호 내지 제5516호, 제5801호 내지 제5802호, 또는 제6001호 내지 제6006호)

② 어느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되고, 사용된 보이는 안감 재료가 제62류에 대한 류 규칙 1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원재료명세서 : 수출물품은 1제품 당 8개의 원재료로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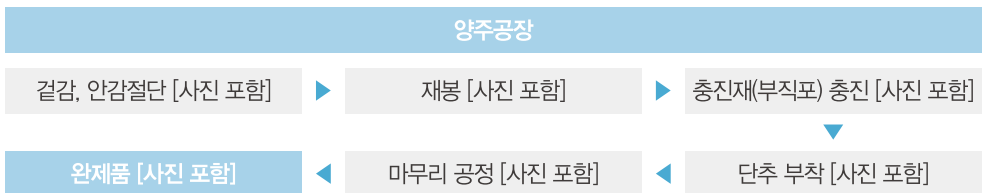
연번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수량(중량)	가격(₩)	공급자(생산자)
1	100% polyamide fabrics(겉감)	5903.20	한국	1yard(200g)	38,000	(주)섬유물산
2	Inter lining(Nonwovens)	5603.11	한국	300g	11,000	(주)충진재
3	100% Nylon fabrics(안감)	5407.42	한국	0,4yard(50g)	9,800	(주)섬유물산
4	단추	9606.21	미상	4ea	1,200	(주)단추
5	재봉사(Sewing thread of Nylon)	5401.10	한국	30m(3g)	500	(주)섬유물산
6	지제 라벨	4821.10	미상	3ea	500	(주)라벨
7	직물제 라벨	5807.10	미상	4ea(6g)	1,000	(주)라벨
원산지재료비				-	59,300	-
비원산지재료비				-	2,700	-
간접재료비				-	24,000	ERP 자료
물품가격(FOB)				-	86,000	수출 Invoice

○ 원산지판정

- 수출물품 HS CODE : 6201.93 (인조섬유로 만든 직물제 남성 패딩 점퍼)
- 원재료 세번변경 판정 : 충족

연번	원재료명	HS CODE	결정기준	충족사유	증빙서류
1	100% polyamide fabrics(겉감)	5903.20	충족	류 변경 한국산원재료	원산지확인서
23	Inter lining(Nonwovens)	5603.11	충족	류 변경 한국산원재료	원산지확인서
3	100% Nylon fabrics(안감)	5407.42	충족	한국산원재료	원산지확인서
4	단추	9606.21	충족	류 변경	-
5	재봉사(Sewing thread of Nylon)	5401.10	충족	한국산원재료	원산지확인서
6	지제 라벨	4821.10	충족	류 변경	-
7	직물제 라벨	5807.10	충족	류 변경	-

-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 판정 : 충족
- 제조공정도



- 류 규칙 1 충족 판정 : 충족
 - 5407.42 소호의 직물을 보이는 안감으로 사용한 경우 그 원단은 어느 한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 된 것이어야 함.

완전히 형성되고 마무리된이라 함은

원단을 언급하는 데 사용하는 때에는, 더 이상의 과정없이 사용하도록 준비된 마무리된 원단을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생산 과정과 마무리 작업을 말한다. 이러한 과정과 작업은 제직, 편직, 니들링(미봉), 터프팅, 펠팅, 인텐글링 또는 다른 그러한 과정과 같은 형성 과정과, 표백, 염색 그리고 날염을 포함하는 마무리 작업을 포함한다.

- 품명 : 100% Nylon fabrics(안감)
- 품목번호 : 5407.42
- 생산자 : (주)섬유물산
-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00로 00-0
- 원산지결정기준 : CC (ex) 제5106호 내지 제5110호, 제5205호 내지 제5206호, 또는 제5509호 내지 제5510호)
- 원재료 명세서

연번	원재료명	HS CODE	원산지	수량(중량)	가격(₩)	공급자(생산자)
1	High tenacity yarn of nylon yarn	5402.10	한국	3,000m(100g)	2,000	(주)섬유물산

- 제조공정도



- 원단 제조 증빙서류
 - ① 거래 계약서
 - ② 구매 영수증(부가세 영수증 등)
 - ③ 국내운송서류
 - ④ 결제 내역
 - ⑤ 반입내역(반입지시서 등)
 - ⑥ 원산지확인서(원사)

- Men's Padding Jumper 원산지 판정 : 동 물품은 한·미 FTA 협정에 따라 원재료의 류 변경, 제62류 규칙 1 및 한 쪽 또는 양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단 및 봉제 또는 달리 결합한 제품이므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한 한국산 원산지 제품 임

소명서 작성 예시(영문)

Statement of Origin						
1. Exporter	Name of Company	ABC co.	Business Number	123-45-67890		
	Representative	Hong, Gil Dong	Telephone & Fax No.	02)222-3333		
	Address	00-0 00ro, Gangnam-gu, Seoul, Korea (www.abc.com)				
2. Producer	Name of Company	ABC co.	Business Number	123-45-67890		
	Representative	Hong, Gil Dong	Telephone & Fax No.	82+2-999-3333		
	Address	00-0 00ro, Suwon-si, Gyeonggi-do, Korea				
Description of Exported Goods : Invoice No. ABC20130105-05(05/01/2013)						
3. Name & Model	Men's Padding Jumper / 5Z220		4. HS No.	6201.93		
5. Value	Term of Price	FOB (○), Ex-Works()	6. Origin Criteria	CC + cut & sewn or assembled + Chap. Rule 1 for Chapter 62		
	Price	-				
7.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Producing the goods by Purchasing domestically produced fabrics, and tailoring, sewing, ironing, and labeling such fabrics ※ See the attached Flow Charts and Origin Confirmation					
List of Materials(Per Unit)						
8. S/N	9. Material Name	10. HS No.	11. Origin	12. Price		13. Supplier
				Volume	KRW(₩)	
①	100% polyamide fabrics	5903.20	Korea	1 yard (200g)	38,000	SYC, Inc.
②	Inter lining(Nonwovens)	5603.11	Korea	300g	11,000	FM, Inc.
③	100% Nylon fabrics	5407.42	Korea	0.4 yard (50g)	9,800	SYC, Inc.
④	Button	9606.21	Unknown	4ea	1,200	BT, Inc
⑤	Sewing thread of Nylon	5401.10	Korea	30m (3g)	500	SYC, Inc.
⑥	Paper Label	4821.10	Unknown	3ea	500	LT, Inc.
⑦	Textile Label	5807.10	Unknown	4ea (6g)	1,000	LT, Inc.
14. Total Cost		Originating Materials				59,300
		Non-Originating Materials				2,700
		Indirect Materials				24,000
		Total				86,000

Origin Determination			
15. Wholly Obtained Criter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16. Tariff Shift Criterion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17. Value-added Criter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Ratio : %)		
18. Combined Criter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19. De Minimis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20. Accumulation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21. Outward Processing	Yes <input type="checkbox"/> No <input checked="" type="checkbox"/>
22. Direct Consignment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23. Other Requirements	Yes <input checked="" type="checkbox"/> No <input type="checkbox"/>
24. Origin Determination	Qualified (○)		Non-Qualified ())
<p>I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on this document is true and accurate, and I assume the responsibility for proving such representations. I understand that I am liable for any false statements or material omissions made in connection with this document.</p> <p>Name : Lee, Jung Han (Signature)</p> <p>Title : Director of Trade Department</p> <p>Company & Address : ABC Co./ 00-0 00ro, Gangnam-gu, Seoul, Korea</p> <p>Date : DD/MM/YYYY</p>			
〈Documentary Evidence〉			
1. Invoice (○) 3. Payment Evidence for Material (○) 5. Production Process Documents (○) 7. Other Related Documents, if Required ()		2. List of Materials (○) 4. A Copy of Import Permit for Non-originating Materials (○) 6. Direct Transportation Evidence (○)	

Supplementary Explanation for the Origin Determination

We hereby determine that the goods (Invoice No. ABC20130105-05), which ABC produced in our factory located in Suwon-si, Gyeonggi-do, Korea and exported to XYZ of U.S., on DD/MM/YY, meet the origin determination criteria under the Korea-US FTA,

- **Exported Goods** : Men's Padding Jumper(Invoice No. ABC2013105-05; Dated January 5, 2013)
- **Tariff Classification(HS)** : 6201.93

Tariff Classification Basis for Men's Padding Jumper

Description of Good(s)

- Jacket of synthetic fibers, designed for left over right closure at the front, and full open and closing with a slide fastener(zipper); Consisting of a detachable hood, ribbed waistband, and tightening string at the bottom of jacket; padded against the cold.

HS Code: 6201.93

- The heading 6201 includes "Men's or boys' overcoats, car-coats, capes, cloaks, anoraks (including ski-jackets), wind-cheaters, wind-jackets and similar articles", and the explanatory notes of the heading 6101 provides "they are generally worn over all other clothing for protection against the weather."
- In accordance with Rule 1 of Gener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he Harmonized System, the good is to be classified in subheading 6201.93.

•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 CC + Production Process (Cut & Sewn or Assembled)
 - ① CC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3, 5204 through 5212, 5307 through 5308, 5310 through 5311, 5401 through 5402, subheading 5403.20, 5403.33 through 5403.39, 5403.42 through heading 5408, or heading 5508 through 5516, 5801 through 5802, or 6001 through 6006.
 - ② the good is both cut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any visible lining material used in the apparel article satisfies the requirements Chapter Rule 1 for Chapter 62.

- List of Materials : eight materials per unit of the exported goods

S/N	Material Name	HS No.	Origin	Volume(Weight)	Price(KRW)	Supplier
1	100% polyamide fabrics(Outshell)	5903,20	Korea	1yard(200g)	38,000	SYC, Inc.
2	Inter lining(Nonwovens)	5603.11	Korea	300g	11,000	FM, Inc.
3	100% Nylon fabrics(Lining)	5407,42	Korea	0,4yard(50g)	9,800	SYC, Inc.
4	Button	9606,21	Unidentified	4ea	1,200	BT, Inc.
5	Sewing thread of Nylon	5401,10	Korea	30m(3g)	500	SYC, Inc.
6	Paper Label	4821,10	Unidentified	3ea	500	LT, Inc.
7	Textile Label	5807,10	Unidentified	4ea(6g)	1,000	LT, Inc
Originating Material(OM) Cost				—	59,300	—
Non-originating Material(NOM) Cost				—	2,700	—
Indirect Material Cost				—	24,000	as of ERP
Unit Price of Goods (FOB)				—	86,000	as of Invo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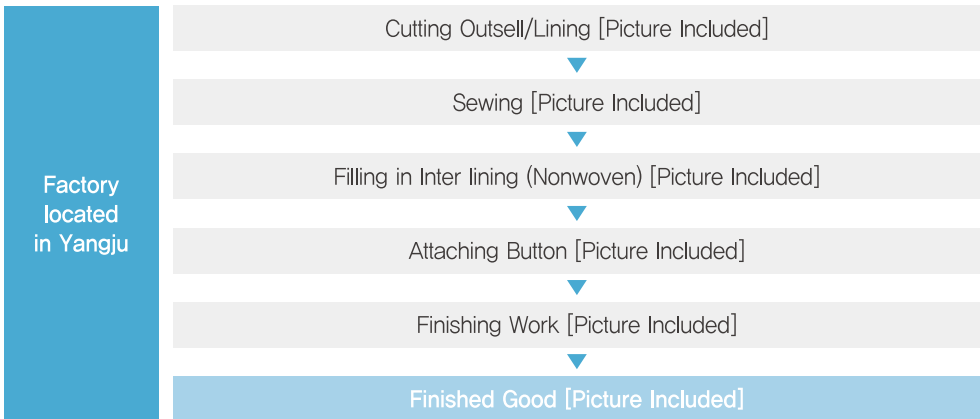
• Decision

- HS Code : 6201,93 (Men's Padding Jumper of synthetic fibers)
- CC(Change Chapter) Requirement : Satisfied

S/N	Material Name	HS No.	Requirement	Basis	Supporting Document
1	100% polyamide fabrics (outshell)	5903,20	Satisfied	CC OM(Korea)	Origin Confirmation
23	Inter lining (Nonwovens)	5603,11	Satisfied	CC OM(Korea)	
3	100% Nylon fabrics(lining)	5407,42	Satisfied	CC OM(Korea)	
4	Button	9606,21	Satisfied	CC	—
5	Sewing thread of Nylon	5401,10	Satisfied	OM(Korea)	Origin Conf.
6	Paper Label	4821,10	Satisfied	CC	—
7	Textile Label	5807,10	Satisfied	CC	—

- The good is both cut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 Satisfied

– Production Process Drawing



• Requirement of Chapter Rule 1 : Satisfied

- When a fabric classified in subheading 5407.42 is used to lining, the fabric shall be wholly formed and finish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Parties.

Wholly formed and Finished mean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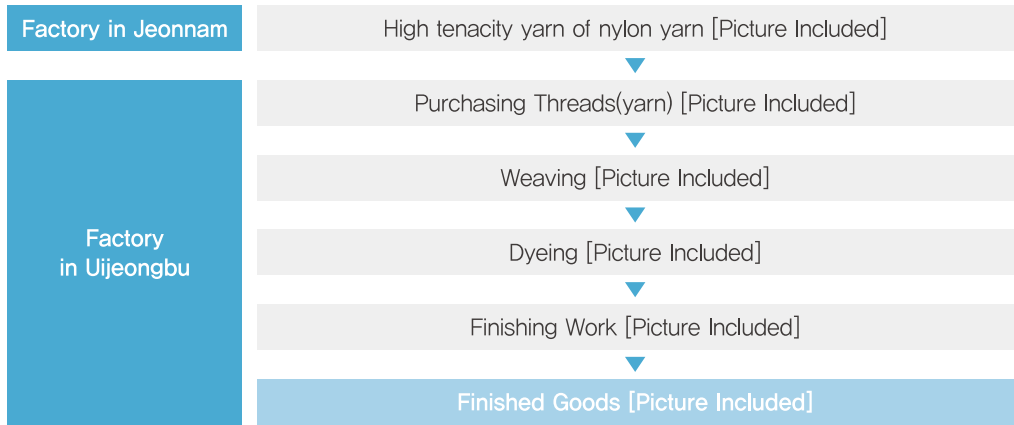
When used in reference to fabrics, all production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necessary to produce a finished fabric ready for use without further processing, such as weaving, knitting, needling, tufting, felting, entangling, or other processes, and finishing operations, including bleaching, dyeing, and printing

– Annex 4–A (Specific Rules of Origin for Textile or Apparel Goods)

- Material : 100% Nylon fabrics(Lining)
- HS Code : 5407,42
- Producer : SYC, Inc.
- Address : XXX–X XXXro, Uijeongbu–si, Gyeonggi–do
- Criterion for Origin Determination : CC –Change Chapter (except from heading 5106 through 5110, 5205 through 5206, or 5509 through 5510)
- List of Materials

S/N	Material Name	HS No.	Origin	Volume(Weight)	Price(KRW)	Supplier
1	High tenacity yarn of nylon yarn	5402,10	Korea	3,000m(100g)	2,000	SYC, Inc.

– Production Process Drawing



• Evidential Documents of producing fabric

- ① Trade agreement
- ② Purchase receipt (including Value Added Tax)
- ③ Local conveyance document
- ④ Payment statement
- ⑤ Detail of carrying-in(Carrying-in Instruction, etc.)
- ⑥ Origin Confirmation

- Origin Determination of Men's Padding Jumper : Originating Good(Korea) In accordance with Korea-US FTA, the good is both cut and sewn or otherwise assembled in the territory of one or both of the Parties, and any visible lining material used in the apparel article satisfies the requirements Chapter Rule 1 for Chapter 62.

04 세번변경기준 실제 사례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1. Exporter	Name of Company		Business Number			
	Representative		Telephone & Fax No.			
	Address		HWANG SUNG-DONG, KYONGJU CITY, KYONGBUK, KOREA			
2. Producer	Name of Company		Business Number			
	Representative		Telephone & Fax No.			
	Address		HWANG SUNG-DONG, KYONGJU CITY, KYONGBUK, KOREA			
Description of Exported Goods						
3. Name & Model		ALT. BOBCAT V2607. 13.5V 90A TG9A0002613848		4. HS No.		8511.50
5. Value	Term of Price	FOB (○), Ex-Works()		6. Origin Criteria		CTSH
	Price	/ ea				
7. Description of Production Process		Refer to Attached the Manufacturing processing				
List of Materials(Parts)						
8. S/N	9. Material Name	10. HS No.	11. Origin	12. Price		13. Supplier
				Volume	Cost	
	REFER TO ATTACHED CONTINUATION SHEET					
14. Total Cost		Originating Materials				
		Non-Originating Materials				
		Total				blind

List of Materials(Parts) – A0002613848

8. S/N	9. Material Name	10. HS No.	11.Origin	12.Price			13.Supplier
				Volume	Cost		
1	K504101	BALL BEARING-F,H	848210	KR	1	PC	blind 한국○○○케이(주)
2	K504432	BALL BEARING-R,T	848210	unknown	1	PC	blind 한국○○○케이(주)
3	TA258N01001	Bar Steel Cut,T	722860	unknown	1	PC	blind ○○기전(주)
4	C0302545308	BEAR'G COVER,T	851190	unknown	1	PC	blind ○○플라트(주)
5	F1252605352	BOBBIN,T	392690	unknown	1	PC	blind ○○플라트(주)
6	K101327	C/STEEL BAR,C	721499	unknown	127,4	MM	blind ○○산업(주)포항
7	D6292549591	CIRCUIT BOARD,D	851190	unknown	1	PC	blind ○○플라트(주)
8	K306422	CLEANING FLUID,W	382490	unknown	0,582	AL	blind ○○상사
9	K100134	COLD ROLL STEEL COIL,S	720917	unknown	0,961	KG	blind ○○철강(주)
10	K309829	CONDUCTING PAINT,F	320990	unknown	0	KG	blind ○○○○ MADER
11	B8002606770	COVER,T	851190	unknown	1	PC	blind ○○플라트(주)
12	K407227	DIODE-,A	854110	unknown	3	PC	blind ○○○○○○ TECHNOLOGY CORPORATION
13	K407226	DIODE+,A	854110	unknown	3	PC	blind ○○○○○○ TECHNOLOGY CORPORATION
14	K200112	ENAMEL COPPER WIRE,T	854411	KR	0,57	KG	blind ○○○전선(주)
15	G4022605342	F/BACKET M/C,B	851190	unknown	1	PC	blind ○○산업(주)
16	F3702655472	FAN-F,T	841459	unknown	1	PC	blind ○○(주)
17	F3802655473	FAN-R,T	841459	unknown	1	PC	blind ○○(주)
18	E2212601715	FILM POLYESTER,D	392190	unknown	1,33	M	blind ○○○(주)
19	B1402655331	FLANGE NUT, M	731816	KR	2	PC	blind ○○정공(주) 울산공장
20	K306009	FLUX,N	851190	unknown	0,02	G	blind ○○상사(주)
21	D7182655069	HEAT SINK M/C,S	851190	unknown	1	PC	blind ○○엠티(주)
22	K200960	INGOT SOLDER, S	720719	unknown	0,5	G	blind ○○상사(주)
23	E3222608761	INSULATION TUBE, D	854720	unknown	3	PC	blind ○○전기(주)
24	K301595	LIQUID ARGON,A	280421	unknown	52	G	blind ○○코리아(주)
25	K301733	LIQUID EPOXY,A	320890	unknown	0,002	KG	blind ○○화학
26	K301773	LIQUID LUBRICANT,K	340399	unknown	16	G	blind ○○○코리아(주)
27	K302245	LIQUID LUBRICANT WHITE, C	271020	unknown	2,48	G	blind ○○○○캠텍(주)
28	K300872	LIQUID OIL, S	271020	unknown	1	AL	blind ○○상사(주)
29	K300642	LIQUID S/HEADING OIL,M	340399	unknown	9,6	AL	blind ○○하우튼(주) 온산공장

8, S/N	9, Material Name	10, HS No.	11, Origin	12, Price			13, Supplier	
				Volume	Cost			
30	K300913	LIQUID THINNER VARNISH, S	320890	unknown	0,43	G	blind	○○화학
31	K300912	LIQUID VARNISH BASE, S	320810	unknown	43	G	blind	○○화학
32	C0062546997	LOCATION PIN,D	392690	unknown	1	PC	blind	○○공업사
33	K407139	Module,T	854231	unknown	1	PC	blind	○○○○ANGERS
34	D5402547179	MOLD,M	392690	unknown	2	PC	blind	○○플라트(주)
35	B8702618983	NAME PLATE,B	391990	unknown	1,05	PC	blind	○○상사(주)
36	B0702655152	NUT HEX,T	731816	unknown	1	PC	blind	○○정공(주)울산공장
37	F3222614441	PAINT,N	321000	unknown	0,2	G	blind	○○상사(주)
38	K306128	PAINT,T	321000	unknown	0,001	KG	blind	○○○○MADER
39	K306128	PAINT,T	321000	unknown	0,001	KG	blind	○○○○MADER
40	F3172605691	POLE,T	851190	unknown	2	PC	blind	○○정밀(주)
41	L0002655050	PULLEY,S	848350	unknown	1	PC	blind	○○산기(주)대구지점
42	K300871	PUNCHING OIL, C	271020	unknown	1,992	AL	blind	○○상사(주)
43	C0102605340	R/BKT M/C,B	851190	unknown	1	PC	blind	○○크랑크
44	N0002605600	REGULATOR ASS'Y,B	851190	unknown	1	PC	blind	○○정공(주)
45	K306132	RESIN,TG,RAIGIPOX 310-A/B,2	350699	unknown	0,003	KG	blind	○○○GI
46	G4062601799	RETAINER,T	851190	unknown	1	PC	blind	○○(주)
47	F317L605691	ROTOR POLE ANNEALING,T	851190	unknown	2	PC	blind	○○열처리
48	G4082655149	SCREW,T	731815	unknown	4	PC	blind	○○금속(주)
49	B1002655151	SCREW,Tightenning for Reg, M	731815	unknown	2	PC	blind	○○금속(주)
50	C0352656049	SEAL,S	401693	unknown	1	PC	blind	○○화학(주)
51	K302249	SHOT BALL, D	830890	unknown	4	G	blind	○○상사(주)
52	K303003	SILICONE,SG7K TG for REG,S	391000	unknown	0	KG	blind	○○○○MADER
53	F3302611317	SLIP RING ASS'Y,F	392690	unknown	1	PC	blind	○○플라트(주)
54	N9102545469	SLIP RING GUIDE ASS'Y,S	392690	unknown	1	PC	blind	○○산업
55	E2152548991	Slot Cell,T	392690	unknown	730	MM	blind	○○○(주)
56	B0102655047	SPACER-P, T	848790	unknown	1	PC	blind	○○피엠(주)
57	F3422655102	SPACER-RING,T	848790	unknown	1	PC	blind	○○피엠(주)
58	B1052655150	STUD BOLT, T	731815	unknown	1	PC	blind	○○산업(주)
59	B1052655150	STUD BOLT, T	731815	unknown	2	PC	blind	○○산업(주)
60	D7302655067	TERMINAL B+S	731815	KR	1	PC	blind	○○산업(주)
61	K200085	THERMO SET WIRE,T	854411	unknown	0,361	KG	blind	○○○전선(주)
62	B7202655049	THROUGH BOLT, T	731815	unknown	4	PC	blind	○○산업(주)

Answer sheet for Question of CBP

	Question	Answer	Attached sheet
12. A	Are you related (see reverse) in any way to the seller of this merchandise? If you are related, please describe the relationship, and explain how this relationship affects the price paid or payable for the merchandise.	Not applicable	-
12. B	Identify and give details of any additional costs/expenses incurred in this transaction, such as: (1) packing (2) commissions (3) proceeds that accrue to the seller (4) assists (5) royalties and/or license fees	We were paid a commissions for this transaction to Uriman.	#1, Commissions Invoice (UR121107VMESK)
13. A	Copy of contract (or purchase order and seller's confirmation thereof) covering this transaction, and revisions thereto.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2, P/O and Distribution Agreement.	#2, PO and Distribution Agreement
13. B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3~4, Product sheet.	#3, Product sheet (Alternator) #4, Product sheet (Starter)
13. C	Breakdown of components, materials, or ingredients by weight and the actual cost of the components at the time of assembly into the finished article.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5, BOM, #6,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11, Additional Data sheet.	#5, BOM #6,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11, Additional Data sheet
13. E	First, please provide detailed description / illustration of each of the parts. How will they be used? For what purpose? What are they made of? Next, you are hereby required to produc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substantiate your claim for UKFTA, such as,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3~4, Product sheet.	#3, Product sheet (Alternator) #4, Product sheet (Starter)
(14)	Flow charts, technical specifications and other documents explaining the manufacturing process.	We manufacture all products only in Kyongju, Korea,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7~10, Manufacturing Process sheet.	#7, Kyongju Plants (in KOREA) #8, Manufacturing Process sheet A0002655302, A0002613848 #9, Manufacturing Process sheet TA0002608756 , TA000A63701, TA000A48402 #10, Manufacturing Process sheet TM000A28901

Question	Answer	Attached sheet
An explanatin of how the goods meets the GN 33(b) rule of origin or the GN 33(o) specific rule of origin.	HS CODE 8511,40 and 8511,50 specific rule of origin : ▶ A change to subheading 8511,10 through 8511,80 from any other subheading, (CTSH)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6,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6,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A Bill of materials showing the classification number, origin, and cost(if the good is subject to a RVC calculation) or each material,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6,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6, Origin Verification Questionnaire
Purchase orders and proof of payment to substantiate values,	We are using SAP for ERP.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11, Additional Data sheet,	#11, Additional Data sheet
13. E (14) Documentation pertaining to assists, inventory management methods, indirect materials etc,	1. Inventory management method : Averaging But, we are considering the originating status of the materials as "Fungible materials" following that: (1) if the materials purchased as fungible materials are all originating, the materials are considered as originating materials, (2) otherwise if any material is non-originating, the all materials purchased are considered as non-originating materials, 2. Indirect materials, etc : Please, refer to attached sheet #5, BOM	#5, BOM

Concerning your request, we would like to reply as above:

- The answer that related with the cost is regarded as confidential one in our company.
In case, if you still need the cost to verify the data, then we can prepare and provide it with only after receiving a nondisclosure agreement.

We would appreciate your understanding,

Name :

Title : FTA manager (Purchaing Planning Team)

Date : 2013.04.26

• 검증결과 및 이행통지

01 개요

수입자/수출자/생산자로부터 원산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은 미국세관 담당자는 원산지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수입자에게 CBP Form 29(Notice of Action)을 통하여 그 결과를 통보한다.

만약 제출한 자료에 이상이 없고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되면 수입자에게 검증결과 이상이 없음을 통보하고 검증을 종료하며, 수입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검증결과 원산지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정적(Negative) 결정을 내리고 CBP Form 29를 이용하여 예비결정(is Proposed) 또는 최종결정(Has Been Taken)을 그림 3-1 및 3-2와 같이 통보한다.

한-미 FTA 검증상식

미국세관의 현지검증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

미국세관의 현지검증은 수입자, 수출자/생산자로부터 제출받은 서류를 토대로 검증한 결과 추가적인 현지 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실시하게 되며, 우선적으로 수입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현지방문에 앞서 검증하고자하는 내용에 대하여 서면 질문서를 송부하게 된다.

질문서의 내용은 회사의 수출입에 대한 내부통제(Internal Control)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총 40여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주요한 항목은 회사의 조직, 운영, 회계, 수입부서의 운영 및 활동사항 등이다.

이후 수입자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수입부서의 존재여부 등 사실 확인을 하게 된다.

02 통보내용

CBP Form 29는 12번란에서 ① 예비결정 인지, ② 최종결정 인지를 통보하는 것이 주요 핵심 내용이다. 예비결정은 수입자가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였을 경우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최종결정은 그 자체로 이미 확정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선 그 결정에 따르고, 정산 후 이의제기를 이용하여 구제요청을 하거나 소송을 통한 구제절차를 이용하여야 하는 결정이다.

예비 결정문	만약 이 예비결정에 동의하지 않으면 이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당해 세관으로 서면 이유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20일 이후에는 해당 수입건이 예비결정 내용대로 정산되게 됩니다.
최종 결정문	해당 수입건은 정산과정에 있으며, 해당 세관은 더 이상 검토할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결정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원산지를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자료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예비결정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어 정산절차로 넘어가 최종 확정되고, 최종확정 이후 구제는 정산이 종료된 이후 행정구제나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되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림 3-2〉 CBP Form 29 – CBP측 결정통지 사례 (계속)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OF ACTION Continuation Page			
19 CFR 152.2			
This is NOT A Notice of Liquidation			1. DATE OF THIS NOTICE 11/28/2012
2. CARRIER MARKS WISMAR	3. DATE OF IMPORTATION	4. DATE OF ENTRY 08/31/2012	5. ENTRY NO. EWW10053160
6. MPN/SELLER/SHIPPER CNJIAHAN1JIA	7. COUNTRY CN	8. CBP BROKER AND FILE NO. Julio Rodriguez US Customs Broker Corp.	
9. DESCRIPTION OF MERCHANDISE CAR TIRES			
13. EXPLANATION (REFER TO ACTION LETTER DESIGNATIONS ABOVE)			
EWW10053160	2	13-309009100	
EWW10053160	3	13-309009100	
EWW10053160	4	13-309009100	
EWW10053160	5	13-309009100	
14. CBP OFFICER (PRINT OR TYPE) Laramarie Calero		15. TEAM DESIGNATION 453	16. TELEPHONE NO. 787-729-6980

CBP Form 29 (10/12)

수출자/생산자의 대응전략

01 개요

현재까지의 미국세관의 검증사례를 보면 미국세관은 대부분 정보제공 요청단계에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제공한 서류만을 바탕으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미국세관의 특혜관세 배제조치의 대부분은 미국세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때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세관은 제출받은 원산지 증빙자료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상태에서 원산지 검증을 종료하고, 만약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인정하면 다음 단계인 서면조사 및 현지 검증을 진행하게 된다. 따라서 미국세관의 정보제공요청을 받으면 적극적으로 충분한 근거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여 이 단계에서 원산지 검증이 종료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미 FTA 검증상식

미국세관의 특혜관세 거부 요건

미국 세관은 FTA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다음의 경우에 특혜관세의 부여를 거부할 수 있다.

- ① 세관장에게 원산지 검증과 관련하여 불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경우 ②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허위 또는 근거가 없는 FTA 원산지 신고를 하거나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③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현장 검증(verification visit)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이다.

따라서, 미국세관(또는 미국의 수입자)으로부터 원산지 검증관련 정보제공 요청을 받으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 특정 수입건에 대한 검증(Single Transaction Verification)에서 원산지를 인정받지 못하면 향후 전체 수출신고 물품에 대한 검증(Total Transaction Verification)이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의 전략적인 대응은 더욱 더 중요하다.

한-미 FTA 검증상식

미국 관세청 검증관련 조직

미국 관세청의 FTA 원산지 검증은 '특정 수입신고'(Single Transaction)건에 대한 검증과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Total Transaction)건에 대한 검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 수입신고건에 대한 검증'은 주요 항구에 소재한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전문관(Import Specialist)이 당해 세관에 수입신고된 특정 건에 대하여 검증(Port Authority Verification)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 회사의 전체 수입신고 건에 대한 검증'은 CBP 본청 국제무역국(Office of International Trade)의 기업 심사과 산하의 주요 항구 현장사무소(Field Office)의 심사전문관(Auditor)에 의하여 검증(CBP Audit Verification)이 수행되고 있다.

미국 관세청 검증 유형 및 수행기관

특정 수입신고건 검증	통관지 세관 차원에서 검증 수행
특정 업체 원산지 검증	CBP 차원에서 검증 수행
섬유류 검증	CBP 산하 섬유생산검증팀에서 수행(가장 강력한 검증수행) * 9개국 174개 공장 현장검증(2012년)

02 수출자 / 생산자의 대응전략

먼저 원산지 증빙자료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라

CBP의 서면조사는 먼저 수입자/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 증빙자료를 잘 제출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따라서 CBP가 Form 28로 요청한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여야 하므로 먼저 증빙자료가 잘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CBP가 요청한 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라

CBP는 수입자에게 30일 내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30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자의 자료제출 기한을 고려하여 수입자에게 신속히 자료를 제공하거나, 수입자와 협의하여 자료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만약 수입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치 못하면 CBP는 수입신고시 적용된 협정 관세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한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업비밀 정보가 수입자에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직접 미국세관에 검증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CBP는 원칙적으로 수입자를 통하여 원산지 증빙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수출자/생산자는 통상적으로 관련 자료를 미국의 수입자를 통하여 제출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등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비밀 정보가 수입자에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직접 미국 세관에 제출할 수 있다.

자료 제출시 수입자와 협의하여 영문 번역본을 준비하라

CBP가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자와 협의하여 관련 자료의 영문 번역본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미 FTA협정 등 양 당사국 사이에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우리나라 세관도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자료의 한글 번역본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세관도 한글로 작성된 문서의 경우에는 영문 번역본을 수입자에게 요구한다. 따라서 영문 번역본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수입자와 협의하여 수입자 또는 수출자/생산자중 어느 하나가 영문 번역본을 제출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좋다.

충분한 자료제출로 원산지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현장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서면조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CBP는 수입자 등이 제출한 자료로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조사로 원산지 검증을 종료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따라서 서면조사 단계에서 적극적인 자료제출로 원산지 상품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미국세관의 검증대상 선별은 섬유류 및 자동차 부품류 등 전략적 검증대상 품목과 부정수입 등의 정보가 있는 업체의 수입신고 건 뿐만 아니라, 법규준수도 측정시스템의 평가 점수가 낮거나, 내부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위험도가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선별된다. 또한, 다양한 품목을 생산하여 수출하거나, 다양한 공급체인을 통하여 여러 가지 원재료를 공급받아 수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를 하여야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협정체결국가로부터 원산지 검증을 받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원산지 관리와 효율적인 검증대응을 위해서는 FTA-Pass 등 원산지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평상시부터 원산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원산지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 및 자문을 적극 활용하라

한-미 FTA협정뿐만 아니라 모든 FTA협정에서는 직·간접의 원산지 검증을 실시하고 있으며, 원산지 결정기준은 각 협정별로 또는 각 품목별로 그 기준이 상이하여 수출품에 대한 체계적인 원산지 관리는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수출자/생산자는 원산지 전담인력을 채용하여 수출입 관련 원산지 업무를 전담하거나 관세청 및 세관에서 시행하는 원산지 관리 전문가의 컨설팅이나 관세사 등의 자문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정보제공요청 대응 가이드라인

- ① 먼저 원산지증빙자료가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그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라
- ② 수입자의 자료제출 기한(30일)을 고려하여 기한 내에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수입자와 협의하라
- ③ 필요한 경우 수입자를 통하여 자료제출 기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 ④ 영업비밀 정보가 수입자에게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직접 미국세관에 검증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하라
- ⑤ 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원산지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 현장조사(원산지 검증)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 ⑥ 미국세관의 원산지 검증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산지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 ⑦ 원산지관리 역량제고를 위한 전문가의 컨설팅 및 자문을 적극 활용하라

03 자료보관 가이드라인

개요

원산지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발행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와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수입자는 FTA 특례법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한 서류를 포함하여 각 협정에서 정한 서류를 일정 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하며,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된 기한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산지임을 증빙하기 위한 자료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자료에 한정하지 않고 검증 대상에 따라 증빙자료의 종류 및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제시된 증빙자료 외 기타의 자료 및 방법으로도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미보관·미제출 및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원산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증빙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협정관세 적용배제 및 FTA 특례법에서 정한 벌금·과태료 등 행정벌이 부과될 수 있다.

당사자별 필수 증빙자료

● 수출자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신청한 수출자는 다음의 자료 중 당해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세관 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서(신고서) 및 발급 신청서류 사본
- ② 당해 물품의 수출신고필증
- ③ 당해 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의 명의로 직접 수입한 경우)
- ④ 당해 물품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송품장 등)
- ⑤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품목분류 사전심사서, 품목분류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⑥ 당해 물품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⑦ 당해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⑧ 당해 물품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⑨ 당해 물품과 관련한 공급자 또는 생산자의 진술서·원산지확인서·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 확인서류
- ⑩ 당해 물품을 획득하기 위하여 수행한 증거(회계 또는 내부 장부 포함)

- ⑪ 당해 물품의 운송서류
- ⑫ 원산지증명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수출자 자율증명에 한함)
- ⑬ 인증수출자 인증서(인증수출자에 한함)
- ⑭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별 매입보조부, 국내매입 증빙자료 등

● 생산자

원산지확인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발급한 생산자는 다음의 자료 중 당해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세관 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① 수출자 또는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제공한 서류(원산지 확인서, 수출물품 국내제조확인서 등)
- ②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생산자의 명의로 수입 신고한 경우)
- ③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 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송품장 등)
- ④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품목분류 사전심사서, 품목분류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⑤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충분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공정 증빙자료
- ⑥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⑦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⑧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원가계산서 및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기재 필수)
- ⑨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 ⑩ 재료 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 증명을 위하여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및 당해 서류에 기재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확인서류
- ⑪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생산된 형태로의 생산에 관한 기록
- ⑫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
- ⑬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당사국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증명 서류
- ⑭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이 영역 밖에서 행해진 작업 또는 가공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필요한 경우)
- ⑮ 수출자에게 제공한 물품 및 원재료의 운송서류
- ⑯ 원산지확인서 서명카드 및 작성대장(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한 경우)
- 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작성된 회계자료 및 증빙자료
 - 회계감사보고서 및 재무제표, 매출전표, 외환거래 증빙자료, 제조원가명세서, 제품수불부, 거래처별 매입보조부, 국내매입 증빙자료 등

원산지기준별 필수 증빙자료

원산지증명서 및 증빙자료를 발급·신청한 수출자 또는 생산자 및 협정관세대우를 신청한 수입자는 당사자별 증빙자료와 다음 자료를 기초로 당해 물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원산지검증 당국의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요청된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완전생산기준

- ①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품목분류 사전심사서, 품목분류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②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
- ③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 ④ 당해 물품의 재배, 채취, 어로 등 생산, 제조 공정 설명서 및 관련 기록
- ⑤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송품장 등)

○ 세번변경기준

- ①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품목분류 사전심사서, 품목분류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②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원산지 기재 필수)
- ③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 ④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송품장 등)

○ 역내가치기준

- ①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품목분류 사전심사서, 품목분류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②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 원산지 기재 필수)
- ③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 ④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⑤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증빙자료
- ⑥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거래관계 증빙자료(거래계약서, 구매주문서, 세금계산서, 신용장, 구매확인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분할증명서, 송품장 등)
- ⑦ 당해 물품과 관련한 판촉·마케팅·판매후 서비스 비용, 로열티, 운송·포장 비용, 비허용 이자비용 관련 증빙자료(순원가법 적용시)

○ 가공공정기준

- ① 당해 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 및 공정 증빙자료

○ 역내가공원칙

- ① 당해 물품의 생산, 제조, 가공 지역 및 공정 입증자료(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임가공 계약서 등)

● 충분가공원칙(불인정공정 이상의 공정)

- ① 당해 물품의 충분공정을 증빙할 수 있는 생산, 제조, 가공 공정 증빙자료

● 누적기준

- ①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부분품, 상품 등의 원산지 증빙자료
- ②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부분품, 상품 등의 생산·제조·가공 공정 및 지역 증빙자료

● 최소허용기준

- ①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품목분류 사전심사서, 품목분류 질의회신서, 용도·기능·성분 등 물품 설명서)
- ②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단가/중량, 원산지 기재 필수)
- ③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가격 또는 중량 증빙자료(판매 또는 구매 관련 대금 영수·지급 증빙자료 포함)
- ④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판매 또는 구매 관련 운송·보험·통관 등 부대비용 명세서

● 중간재 기준

- ① 자가 생산, 제조, 가공 증빙자료
- ②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단가/중량, 원산지 등 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기재 필수)
- ③ 중간재 및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 ④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원산지 증빙자료
- ⑤ 중간재 및 중간재에 사용된 원재료의 가치 또는 중량 증빙자료

● 대체가능물품

- ① 대체가능물품으로 분류할 수밖에 없는 근거 자료
 -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를 구분·보관하는데 상당한 비용 또는 중대한 어려움 등으로 구분·관리하지 못함을 입증하는 자료
 - 원산지 및 비원산지 재료가 상업적으로 동종·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
- ② 대체가능물품의 관리에 적용된 재고관리기법 및 동 기법에 따른 계산 근거 자료

● 세트물품

- ① 당해 물품이 세트물품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근거 자료
- ② 당해 세트물품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 ③ 당해 세트물품의 구성 요소 및 요소별 품목분류 근거자료
- ④ 당해 세트물품 및 구성요소별 가격 증빙자료
- ⑤ 당해 세트물품의 구성요소별 원산지 증빙자료

● 간접재료(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 ① 당해 물품에 사용된 간접재료 목록 및 간접재료의 용도·기능·성분 설명서 등 포함)
- ② 당해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명세서(HS, 소요량, 단가 기재 필수)

● 부속품·예비부품·공구(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 ① 당해 부속품·예비부품·공구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 ② 당해 부속품·예비부품·공구의 가격 증빙자료
- ③ 당해 부속품·예비부품·공구의 원산지 증빙자료

● 소매용 포장·용기(원산지결정시 고려된 경우)

- ① 당해 소매용 포장·용기의 품목분류 근거자료
- ② 당해 소매용 포장·용기의 가격 증빙자료
- ③ 당해 소매용 포장·용기의 원산지 증빙자료

● 직접운송원칙

- ① 양 당사국간 직접운송된 경우 상품의 모든 운송경로와 모든 선적 지점을 나타내는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 ② 양 당사국이 아닌 제3국(비당사국)을 경유하는 경우
 - 계약상대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의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적출항이 계약상대국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한-미 FTA·한-칠레 FTA 제외)
 - 계약상대국이 내륙지국가로서 선하증권 또는 화물운송장상의 수출자가 원산지증빙서류상의 수출자로 기재되어 있고, 적출항이 계약상대국의 인접국가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항이 우리나라의 항구 또는 공항으로 기재되어 있을 것(한-미 FTA·한-칠레 FTA 제외)
 - 비당사국의 보세구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 장치되었음을 해당국가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증명서(당해 물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될 것)
 - 비당사국에서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거나 운송에 필요한 공정 이외에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 비당사국에서 발행하는 하역 관련 서류(당해 물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 표시 등)

자료보관 방법

수출자·생산자·수입자는 당해 물품이 원산지임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로 출력하여 편철·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관련자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이미지 또는 전자서식으로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 하되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보관방법

- 가. 1개의 원산지증명서에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를 일괄하여 원산지증명서별 1권(책)으로 편철하여 보관하되 날짜순으로 보관
- 나.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관련 증빙자료를 디스크 또는 이와 유사한 전산매체에 보관하되 관련 증빙자료와 원산지증명서와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관리번호 부여·보관

● 보관매체 및 검색 조건

아래의 매체 중 하나의 방법으로 자료를 보관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신속하게 검색이 가능하도록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 가. (종이 서류) 모든 서류를 종이 서류로 출력하여 편철 보관
- 나. (이미지 전산파일) 모든 서류를 이미지 상태로 전산매체에 보관
- 다. (전자서식) 모든 서류를 전자서식으로 전산매체에 보관
- 라. (가, 나, 다 혼합 보관) 가·나·다를 혼합·연계하여 보관

원산지 관련 용어

○ 약어표

WO	Wholly Obtained	완전생산기준
CC	Change of Chapter	2단위 세번변경기준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CTSH	Change of Tariff SubHeading	6단위 세번변경기준
CTC	Change of Tariff Classification	세번변경기준
RVC	Regional Value Content	역내부가가치
SP	Specific Processes	특정공정
LC	Local Contents	역내재료
MC	iMport Contents	수입재료
BU method	Build Up method	부가가치기준 중 집적법
BD method	Build Down method	부가가치기준 중 공제법
NC method	Net Cost method	부가가치기준 중 순원가법
AV	Adjusted Value	조정가치
VNM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	비원산지재료가치
VOM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	원산지재료가치
PSR	Product Specific Rules	품목별 원산지 기준
C/O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 주요 용어

Origin Criteria	원산지기준
Intermediate Material	중간재
Accumulation	누적계산
De Minimis	최소허용기준
Fungible Materials	대체가능재
Accessories, Spare Parts and Tools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Indirect Materials / Neutral Elements	간접재료
Sufficiently Worked or Processed Products	충분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친 상품
Non-Qualifying Operations	불인정공정
Certificate and Declaration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및 신고서
Origin Verification	원산지 검증
Advanced Rulings on Determinations of Origin	원산지 사전판정
Outward Processing	역외가공
Direct Consignment	직접운송
Claims for Preferential Treatment	특혜관세 신청
Unit of Qualification	원산지 자격 단위 물품
Approved Exporter	인증수출자
Supporting Documents	증빙서류
Discrepancies and Formal Errors	불일치 및 형식적 오류

FTA 정보제공 웹사이트

FTA 협정관련 자료제공 사이트

기관명	인터넷 사이트
관세청	http://fta.customs.go.kr
국제원산지정보원	http://www.origin.or.kr
한국관세사회 FTA 포탈	http://fta.kcba.or.kr
기획재정부	http://www.most.go.kr
산업통상자원부FTA	http://www.fta.go.kr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curiss/fta/vision_re/list.aspx
대한상공회의소	http://cert.korcham.net/certweb/
무역협회	http://okfta.kita.net

해외시장정보, 산업동향정보 제공

기관명	인터넷 사이트
글로벌 윈도우(코트라)	http://www.globalwindow.org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fta.go.kr
중소기업청 원자재정보시스템	http://www.wji.go.kr
해외진출정보시스템(OIS)	http://www.ois.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미국 FTA 정보제공 사이트

주소	정보
http://cbp.gov	미국 관세청
http://dataweb.usitc.gov	미국 세율 조회
http://www.ustr.gov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http://otexa.ita.doc.gov	미국 섬유수출통계국
http://web.ita.doc.gov	한-미 FTA Commercial Availability(Short Supply)

전 세계 FTA 현황 참고 : <http://www.bilaterals.org>

미국 직접 검증대응 성공사례

● 늘푸른기업

미국의 교두보를 지켜라!

한-미 FTA 원산지검증 성공

2013년 05월 01일, 제출기한 1일을 남기고 최종 완성된 검증제출서류를 무사히 미국 씨애틀 세관에 제출완료했으며, 미국 고객사인 A사에서도 미국 씨애틀 세관의 어떠한 요구사항도 없다고 통보하였다.

이렇게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세관의 원산지 직접검증을 성공리에 마무리 함으로써 FTA 환경변화에 따른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지켰고, 향후 대 미국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위험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미국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었다.

01 미국 씨애틀 세관의 직접검증(서면조사) 통보

미국 씨애틀 세관으로부터의 원산지조사 이메일 수신

미국의 A사에게 한-미 FTA C/O를 소급 발급한 몇일 후, 담당자는 A사 로부터 한통의 이메일을 수신 받았다. 수신한 이메일에는 미국 씨애틀 세관이 A사에 발송한 “2013년 09월수입신고(2012년 08월 선적건)의 원산지조사 자료요청” 이메일이 포워딩(FW:전달)되어 함께 첨부되어 있었다.

당황스러운 한-미 FTA 직접검증

A사를 통한 미국 씨애틀 세관의 직접검증 메일 수신 후, 이에 대한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영업팀 담당자는 당사의 원산지관리전담자를 통해 관세법인 △△에게 상황파악 및 업무협조를 요청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에서는 A사의 독촉에 못이겨 소급발급한 한-미 FTA C/O가 미국 씨애틀 세관의 직접검증 대상이 되었기에 요청받은 원산지조사 자료를 준비하여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고 알렸다.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게된 우리는 A사의 기만으로 인하여 미국세관의 직접검증 대상이 된 사실에 상당히 당황하였고, 한편으로는 분노하게 되었다.

한-미 FTA 대응전략의 고민

모든 정황을 파악한 CEO 및 해당 임직원은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게 할 지를 다음과 같은 대응안을 놓고 심각하게 고민 했다.

① 고객사의 기만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므로 고객사에게 책임을 지운다.

- 장점 : 직접검증 수행을 위한 노력 · 시간 ·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검증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당사의 벌금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
- 단점 : 원산지위반으로 인해 고객사가 벌금으로 인한 피해를 받게 되고, 향후 당사의 한-미 FTA C/O 발급 제한에 대한 우려가 있다.

② A사는 당사의 유일한 미국 수출 고객으로서 미국시장 진출 및 확대를 위한 교두보이므로, 우리가 반드시 직접검증을 수검 받아 통과한다.

- 장점 : 고객의 피해는 곧 당사의 피해로 이어지므로, 검증을 통과하여 고객의 신뢰확보를 통해 미국 시장의 교두보를 지킬 수 있다.
- 단점 : 검증을 통과한다는 절대적 보장이 없고, 수검에 따른 노력 · 시간 · 비용에 대한 부담이 있다.

02 CBP Form 28과 검증수행

한-미 FTA 원산지검증의 수검 결정

A사는 늘푸른기업의 입장에서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고객사이고, 추후 한-미 FTA C/O에 대하여 발급제한을 받지 않고, FTA를 통한 미국 시장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성공적인 미국 세관의 직접검증의 통과가 필요하므로, 늘푸른기업의 CEO 및 임직원은 전격적으로 수검을 결정하게 되었다.

CBP Form 28의 분석과 대응전략 수립

의뢰인의 성공적인 미국 세관 직접검증 통과를 위하여, 관세법인 △△는 CBP Form 28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CBP Form 28 대응전략

주요 질문		대응전략
No. 12A	특수관계자	수입판매계약을 통해 입증
No. 12B	관세평가 가산요소	원가계산서로 입증(커미션 포함)
No. 13B	수출품의 물품설명	상세한 카탈로그형 설명자료 작성
No. 13C	상세한 BOM 내역	ERP BOM > FTA BOM 변환과정
No. 13E	재료 구성 설명	상세한 분해/구성도 작성
	제조공정도	실제 생산현장 사진촬영 및 설명
	원산지판정 내역	영문 원산지소명서 작성(확장형)
	재료구매 및 가격 입증	ERP의 PO 및 지급증빙 내역
	재고관리 유형 및 대체가능재료	대체가능재료의 All or Nothing

검증 수행 목표와 전략적인 자료준비

1. 검증 수행 목표

당해 한-미 FTA 원산지 직접검증은 미국 세관이 제출된 서면자료만으로 조사대상 수출품목의 원산지가 충분히 역내산(한국산)임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하여, 미국 세관이 당해 검증을 서면심사 단계에서 종결 하도록 하여, 미국 세관의 직접적인 현장방문 심사를 방어하자.

2. 전략적 자료준비 및 그 과정

① A사와 늘푸른기업은 특수관계자 여부 입증

▶ 고민사항 : 특수관계자가 아님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 해결방법

A사와 늘푸른기업이 맺은 “수입판매계약서”를 통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 관계이며, 관세평가 제1방법에 따른 거래가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입증.

즉, “수입판매계약서”를 의해 수출품의 판매가격이 정상적 거래가격임을 밝혀 간접적으로 특수관계가 아님을 입증.

② 관세평가 가산요소 항목에 대하여 입증

▶ 고민사항

● 해당 “Commission Fee”는 관세평가 제1방법에 따른 거래가격 외에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수입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귀속되는 금액”에 해당하는가?

● 해당 “Commission Fee”가 수출입 대금결제 외에 추가로 결제하는 금액인 경우 미국에서의 과세가격 과소신고로 인한 추징 발생 및 한국에서의 원산지판정시 판매가격의 산정오류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지 않을까?

▶ 해결방법

- “Commission Fee”의 대금결제 방법 및 시기를 전면 재검토한 결과, “Commission Fee”는 수출 CIF금액(=수입자측의 수입 CIF 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원가요소임을 확인
- 수출 CIF 금액에 “Commission Fee”가 포함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

③ 수출물품에 대한 설명 및 HS 분류근거

▶ 해결방법

- CBP Form 28에서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였다.

“Descriptive or illustrative literature or information explaining what the merchandise is, where and how it is used, and exactly how it operates”

그러므로, 당해 수출품목의 도식화된 설명자료를 작성하기로 결정

- 단순 물품설명 뿐만 아니라, HS CODE 분류에 대한 전문의견을 영문으로 작성하여 첨부하기로 결정. 특히, HS 호해설서를 적극적으로 인용

④ ERP BOM과 FTA의 직접재료 구성내역인 FTA BOM과의 상관관계

▶ 고민사항

- 직접재료의 목록으로만 구성된 FTA BOM만 제출하면, 원산지판정에 사용된 원재료목록의 조작 의심을 받지 않을까?
-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통해 정합성 있는 FTA BOM을 구성하였다는 진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 해결방법

- SAP ERP에서 확정되어 보관중인 Original BOM과 FTA BOM으로 변환과정 설명 자료인 Editing BOM을 작성·제출함으로써, 최종 작성되는 원산지소명서(FTA BOM 구성체계)의 원재료내역 입증자료로서, FTA BOM의 직접재료 선별과정을 설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결정

〈자료제출 순서〉 Original BOM → Editing BOM → 원산지소명서(FTA BOM)

⑤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 재료의 구성 및 역할 설명

▶ 고민사항

- 과연 검증자료 제출기한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약 180여개 품목에 대한 물품설명자료 및 HS CODE 분류근거자료를 작성할 수 있을까?

▶ 해결방법

- 검증품목의 HS는 제8511.50호이며,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CTSH이다. 그리고, HS 구조상 검증품목의 부분품은 제8511.90호 또는 다른 호에 분류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HS 통칙 2 가호에 따라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으로 제8511.50호에 분류될 수 있을 수 있는 품목만 없으면,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
- BOM 및 원산지소명서상에 기재된 늘푸른기업의 재료 품명은 일반적 관점에서 품명만으로 물품을 이해할 수 있을 수준으로서 HS 통칙2 가호에 따라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없음을 확인 가능함
- 미국 세관이 검증품목의 재료 구성을 이해하고, HS 통칙2 가호의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 없음을 알 수 있도록, 원산지소명서와는 별도로 “상세한 분해/구성도 작성”하여 제출.

⑥ 역내 충분가공함을 입증하는 제조공정도

▶ 고민사항

- 한국 소재공장에서 생산하고 있고, FTA에서 요구하는 충분가공공정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

▶ 해결방법

- 늘푸른기업 공장이 소재함을 위성사진으로 소명.
- 검증품목의 제조공정을 실제 생산시설과 생산과정을 함께 실사촬영하여, 제조공정도를 작성함으로써 소명.

⑦ 원산지 판정 내역 설명자료(원산지소명서)

▶ 고민사항

- 미국 세관은 영어를 사용하고, 검증 제출자료 검토시 영문본을 추가 요구할 것이 분명한데, 과연 한글본 원산지소명서를 그대로 제출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 해결방법

- 다행이도, 대한민국 관세청은 국제적인 FTA 원산지검증을 대비하여, FTA 특례법 시행규칙 서식 1의2에 원산지소명서 영문본을 작성하였음.
- 늘푸른기업의 한글본 원산지소명서를 FTA 특례법 시행규칙에 의한 영문본 원산지소명서로 재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결정.

⑧ 재료의 구매사실 및 가격 증빙

▶ 고민사항

- 일반적으로 구매증빙은 “세금계산서 또는 거래내역서”로 하는데, 이 증빙서류 들은 대한민국 법령하에서 한글본으로 작성된 서류인바, 이를 제출하면, 미국 세관은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 검증품목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재료는 여러 구매건의 재고 중에 어느 하나의 품목으로 과연 어느 구매건을 입증자료로 제시할 것인가?

▶ 해결방법

- 관계되는 재료의 수가 약 180여개 이고, 다수의 구매건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모든 증빙자료를 Hard copy(PDF 파일로 변환)로 제출하게 되면, 매우 과다한 제출이 되고, 이들을 미국 세관이 일일이 검토하리라고는 예상되지 않는다.
- 따라서, 늘푸른기업은 SAP ERP에 의하여 전산으로 회계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리고, 검증품목의 판매월 전월의 구매증빙 자료로서 SAP ERP에 있는 “P/O”, “전표번호” 및 “지급증빙” 번호와 “구매일”을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결정.

⑨ 재고관리 유형과 대체가능재료에 대한 처리 방법

▶ 고민사항

- 과연 미국 세관은 발레오전장이 적용하고 있는 “All or Nothing” 원칙을 “대체가능재료”의 원산지지위 판단방법으로 인정해 줄 것인가?

▶ 해결방법

- 미국의 NAFTA 검증사례에서 “대체가능재료에 대하여 재고관리기법 등을 통한 합리적인 방법으로 역내산을 구분할 할 수 없으면, 모두 역외산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음.
- 따라서, 늘푸른기업이 활용하고 있는 “All or Nothing” 원칙은 모두 역내산이 아니면 모두 역외산으로 간주하는 보수적인 개념의 대체가능 재료에 대한 원산지지위 판단방법이므로 미국 세관에서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인정해 줄 것으로 판단하여, 현재 적용중인 “All or Nothing” 원칙으로 대체가능 재료의 원산지지위를 판단함을 알리기로 결정.

03 한-미 FTA 원산지검증 성공

제출기한 1일을 남기고 최종 완성된 검증제출서류를 무사히 미국 씨애틀 세관에 제출 완료하였다.

그 후 6개월, 미국 세관은 제출기한일 이후 2월 이내에 추가 요청이 없었고, 미국 고객사인 A 사에서도 미국 씨애틀 세관의 어떠한 요구사항도 없다고 알려주었다.

이렇게 늘푸른기업과 관세법인 B는 한-미 FTA에 대한 미국 세관의 원산지 직접검증을 성공리에 마무리함으로써 FTA 환경변화에 따른 늘푸른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지켰고, 향후 대 미국 수출품목에 대한 원산지 위험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미국 시장 확대를 꾀할 수 있었다.

● 국제머신(주)

There is always a way!!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미국세관의 “불충족” 최종결정 통지를 받았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속담을 되새기며, 부산세관의 도움을 얻어 수입자측 관세사와 협업하여 미국세관 담당자의 재검토 결정을 이끌어 내었고, 최종결과를 뒤집고 “충족” 재결정 통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원산지검증을 받으면서 서류보관(record keeping)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되새기게 되었으며, 부산세관에서 진행하는 『ERP-FTA PASS 연계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FTA 전용 시스템을 확보하고, 회사의 전폭적인 투자로 직원 및 협력업체 교육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수출경쟁력이 있는 대형 공작기계 시장에서 FTA를 활용하여 우리회사가 더욱 날개를 펴고 세계시장에 도전하겠습니다.

01 업체개요

국내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대형 공작기계 제조기업

반세기 동안 축적된 세계 수준의 기술력으로 미국·EU 등 전세계 30여개국에 대형 공작 기계를 제작·수출하는 종업원 300명 규모의 기업이다.



02 FTA를 설계하다

부산세관으로부터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한-EU·한-아세안 FTA 활용을 위해 부산세관, 마산세관의 FTA 활용 컨설팅 지원을 받아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 세관 컨설팅과 품목별 인증을 준비하면서 FTA의 핵심은 “원산지관리”와 “서류보관(Record Keeping)”임을 인식한 사장님의 지시로 업체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준비 착수

관세사와 합동으로 업체별 인증 T/F팀 구성(4명)

1,500여개의 부품에 대한 HS코드 부여, 원산지관리 매뉴얼 작성, 협정별 PSR 충족 여부 시물레이션(20회), 원산지교육이수 등 약 3개월의 작업 끝에 업체별 인증수출자 인증 획득

03 자만심 가운데 찾아온 원산지검증

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START!!

- **수입자의 검증서류 제출 요청** : 2013.4월경 美 Baltimore 세관으로부터 CBP Form28(Request for Information)을 받았으나, 세관측의 단순 자료요청으로 판단, 자료를 미제출하였다. (한국 수출자측에 자료 미요청)
- **Baltimore세관 CBP Form29(Notice of Action) 수입자에 통지**
 - ▶ **주요내용** : 원산지 및 생산 입증서류가 제출되지 않아 20일 이내에 소명 없으면 협정세율 적용배제 예정(제출기한 : 6. 19)
 - ▶ **우리회사는 수입자에게 CBP Form29를 이메일로 전달 받았다.**(6. 3)
- **수입자측에 원산지검증 관련자료 제출**: 원산지검증 대상물품의 한-미 FTA 원산지결정기준 (PSR)을 충족하는 자료를 수입자측에 발송하였다.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OF ACTION
19 CFR 102.2

RECEIVED NO 31 2013 JUN 03 10:58 AM

85Fo 2016 0997

1. DATE OF ENTRY 06/03/13
2. DATE OF NOTICE 06/03/13
3. OFFICE CBP/PHS332

4. NAME OF ENTRY 00000000
5. ENTRY NO. 0010000000

6. IMPORTER'S NAME S. B. BENTON & CO. INC.
7. ADDRESS 2000 W. BENTON ST.
8. CITY/STATE/ZIP BALTIMORE, MD 21202-4902
9. COUNTRY OF ORIGIN US

10. DESCRIPTION OF MERCHANDISE CNC Vertical Turning Center Model VTC

11. NAME JEREMY JACKSON
12.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403 9 Ave SE
BALTIMORE, MD 21202-4902
US

13. TYPE OF ACTION

PREPARED - IF YOU DISAGREE WITH THE PROPOSED ACTION, PLEASE FURNISH YOUR REASON IN WRITING TO THIS OFFIC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IS NOTICE. AFTER 30 DAYS, THE ENTRY WILL BE LIQUIDATED AS IMPORTED.

HAS BEEN TAKEN - THE ENTRY IS IN THE LIQUIDATION PROCESS AND IS NOT AVAILABLE FOR REVIEW IN THIS OFFICE.

TYPE OF ACTION A. BATE ADVANCE
B. VALUE ADJUST
C. EXCISE
D. OTHER (See below)

14. TYPE OF ACTION A. BATE ADVANCE
B. VALUE ADJUST
C. EXCISE
D. OTHER (See below)

15.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s in the process of verifying the origin of CNC Vertical Turning Centers model VTC-60100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The good was imported into the U.S. on the entry summary listed below and which a claim for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made.

The verification has revealed that the good does not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pursuant to General Note 33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Specifically, no information supporting any regional value content was provided, no information showing any applicable tariff shifts were made and no evidence demonstrating production was provided.

The CNC Vertical Turning Center Model VTC model 5990 is classified under HTS 8458.91.1090 with a duty rate of 4.2% ad valorem. This notice is to inform you that CBP intends on denying the claims for preference under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after 20 days of the date of this notice.

You may provide additional information concerning the origin of the good before the issuance of the final determination. If you do not supply additional information,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ill be denied and the entry summary will be rate advanced. If you do supply additional information it will be taken into consideration.

14. CBP OFFICE (Date of Filing) JEREMY JACKSON
15.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403 9 Ave SE
BALTIMORE, MD 21202-4902
US

16. CBP OFFICE (Date of Filing) JEREMY JACKSON
17.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403 9 Ave SE
BALTIMORE, MD 21202-4902
US

CBP Form 29 (10/12)

Baltimore 세관이 CBP Form29(Notice of Action)

원산지검증 대상물품

품명	VERTICAL TURNING CENTER		
HS코드	8458.19(미국기준)	PSR	CTH+BD55%
관세율	(협정전) 4.2% → (협정후) 0%		

원산지검증 최종결과 통지

● Baltimore세관의 “불충족” 원산지검증 결과 통지

- ▶ 美세관은 CBP Form 29 양식으로 검증결과 통지를 하였으며, 수입자에게 이의제기 및 불복청구 권리가 있음을 통지
- ▶ 미국 수입자에게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회사는 발각 뒤집혔고, 수입자는 DDP 계약조건을 이유로 해당 추징금액을 우리회사에서 전액 지불해 달라고 요청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OF ACTION 19 CFR 152.2			
This is NOT a Notice of Liquidation		5. DATE OF THIS NOTICE 4/15/2012	
2. CLASSIFICATION VALIENUS WILHELMSEN KORBERG & WITTMANN	3. DATE OF ORIGINATION KOR	4. DATE OF ENTRY 09/20/11	5. ENTRY NO. 091846222
6. IMPORTER/EXPORTER CNC VERTICAL TURNING CENTER MODEL VTC-5060	7. COUNTRY KOR	8. CBP OFFICE AND FIELD NO. Baltimore International, Inc.	9. CBP OFFICE AND FIELD NO. Baltimore International, Inc.
10. TO HYUNDAI IDEAL ELECTRIC CO 330 E 1st St Mansfield, OH 44902-7756 US			
11. FROM JEREMY JACKSON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19.9.500.3000 Baltimore, MD 21202-4522 US			
12. THE FOLLOWING ACTION, WHICH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DUTY:			
<input type="checkbox"/> IS DISAGREED → IF YOU DISAGREE WITH THIS PROPOSED ACTION PLEASE FURNISH YOUR REASONS IN WRITING TO THIS OFFIC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IS NOTICE. AFTER 30 DAYS THE ENTRY WILL BE LIQUIDATED AS PROPOSED.			
<input checked="" type="checkbox"/> HAS BEEN TAKEN → THE ENTRY IS IN THE LIQUIDATION PROCESS AND IS NOT AVAILABLE FOR REVIEW IN THIS OFFICE.			
TYPE OF ACTION: A. <input type="checkbox"/> DUTY ADVANCE B. <input type="checkbox"/> VALUE ADVANCE C. <input type="checkbox"/> EXCESS WEIGHT <input type="checkbox"/> QUANTITY D. <input checked="" type="checkbox"/> OTHER (See below)			
13. EXPLANATION (REFER TO ACTION #19 FOR ORIGINATION ABOVE)			
<p>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as verified the origin of CNC Vertical Turning Centers model VTC-5060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FTA). The good was imported into the U.S. on the entry summary listed and which a claim for KORFTA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made. The verification revealed that the good does not qualify for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pursuant to General Note 33(c) Chapter 84 Rule of Origin 85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Specifically, no information supporting any regional value content was provided, no information was presented showing any applicable tariff shifts were made and no production records were provided.</p> <p>The CNC Vertical Turning Center Model VTC model 5060 is classified under HTS 8458.91.1000 with a duty rate of 4.2%. The entry summary will be rate advanced and a bill will be issued for the amount of duty owed.</p> <p>You have the right to appeal the liquidation of the entries listed in this notice pursuant to 19 USC 1514 and 19 CFR 174. A Bulletin Notice of Liquidation will be posted at the Customhouse where the entries were filed. Your appeal rights are allowed for 180 days after the Bulletin Notice of Liquidation is posted. Appeals filed prior to liquidation will be denied as untimely.</p>			
14. CBP OFFICE (PRINT OR TYPE) JEREMY JACKSON	15. CBP OFFICE NO. 189	16. TELEPHONE NO. 410.962.3030	17. REPORTING NO. 410.962.3003

Baltimore 세관이 발송한 원산지검증 결과 통지서

04 CBP, 최종결정을 반복하고 “총족” 재결정

부산세관의 도움과 탁월한 Two-Track 위기관리

● Two-track으로 미국세관의 원산지검증 결정내용(불충족) 대응

▶ Track 1 : 미국 수입자측 대리인(관세사)와 긴밀한 협조하에 미국세관이 결정내용을 자발적으로 재검토할 수 있도록 설득

▶ Track 2 : 이의신청(CBP Form19) 및 추가자료 준비

부산세관의 자문에 따라 이의신청을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수입자측 관세사와 협조하여 자발적 재검토 유도하는 방향으로 추진

CBP 담당자의 재검토 자진결정

최초 불충분하게 제출한 부가가치기준 총족여부 확인자료(가격자료)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근거 자료와 함께 수입자측에 발송

미국세관 담당자에 대한 수입자 대리인(관세사)의 지속적인 설득과 추가 자료 제출로 본 건에 대해 자발적 재검토하기로 결정

최종결정을 반복하고 “총족” 재결정

Baltimore세관은 재검토 결과 한-미 FTA PSR인 “CTH + BD55” 를 충족함을 수입자에게 통지

기대효과

원산지검증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금번 미국세관의 검증을 받은 CNC선반 뿐 아니라 한-미 FTA 발효 이후 우리회사가 원산지증명서(C/O)를 발행한 158억원 상당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DDP¹⁾ 무역계약조건 하에서 수출자가 부담하여야 할 관세 약 7억원 상당의 감면혜택을 유지하는 등 수출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첫 원산지검증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향후 원산지 재검증에 대한 부담도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1) DDP(Delivered Duty Paid) : 수출자가 수입국 관세까지 부담하는 무역계약조건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NOTICE OF ACTION				NOTICE OF ACTION			
32 CFR 182.2				32 CFR 182.2			
This is NOT A Notice of Liquidation.				This is NOT A Notice of Liquidation.			
1. OFFICE OF ORIGIN JEREMY JACKSON	2. DATE OF SEIZURE 09/25/2012	3. DATE OF ENTRY 09/25/2012	4. OFFICE NO. OHL01982222	1. OFFICE OF ORIGIN JEREMY JACKSON	2. DATE OF SEIZURE 09/25/2012	3. DATE OF ENTRY 09/25/2012	4. OFFICE NO. OHL01982222
5. OFFICE (INCLUDES INTERNATIONAL)	6. OFFICE (INCLUDES INTERNATIONAL)	7. COUNTY	8. OFFICE (INCLUDES INTERNATIONAL)	5. OFFICE (INCLUDES INTERNATIONAL)	6. OFFICE (INCLUDES INTERNATIONAL)	7. COUNTY	8. OFFICE (INCLUDES INTERNATIONAL)
9. DESCRIPTION OF MERCHANDISE: CNC VERTICAL TURNING CENTER MODEL VTC-5060				9. DESCRIPTION OF MERCHANDISE: CNC VERTICAL TURNING CENTER MODEL VTC-5060			
10. TO: WYUNGA IDEAL ELECTRIC COO 130 E 1st St Marion, OH 44902-7756 US				11. FROM: JEREMY JACKSON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40 S Oa St Baltimore, MD 21202-4550 US			
12. THE FOLLOWING ACTION, WHICH WILL RESULT IN AN INCREASE IN DUTY, IS:				13. DUTY ACTION (REFER TO ACTION LETTER LEGISLATION NUMBER)			
<input type="checkbox"/> IS PROPOSED → IF YOU DISAGREE WITH THIS PROPOSED ACTION, PLEASE FURNISH YOUR REASON IN WRITING TO THIS OFFICE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IS NOTICE. AFTER 30 DAYS THE ENTRY WILL BE LIQUIDATED AS PROPOSED.				OHL01982222 1 54-198258100			
<input checked="" type="checkbox"/> HAS BEEN TAKEN → THE ENTRY IS IN THE LIQUIDATION PROCESS AND IS NOT AVAILABLE FOR REVIEW IN THIS OFFICE.							
TYPE OF ACTION							
A. <input type="checkbox"/> RATE ADVANCE							
B. <input type="checkbox"/> VALUE ADVANCE							
C. <input type="checkbox"/> EXCESS				WEIGHT <input type="checkbox"/> QUANTITY			
D. <input type="checkbox"/> OTHER (See 182.6)							
13. EXPLANATION (REFER TO ACTION LETTER LEGISLATION NUMBER):							
Based on additional information supplied, U. 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has verified the origin of CNC VERTICAL TURNING CENTER MODEL VTC-5060 pursuant to Article 3 of the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FTA) and Title 19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Part 10 Subpart K. The goods were imported into the U.S. on the entry summary listed above for which a claim for KORFTA preferential tariff treatment was made.							
The verification revealed that the good qualifies as an originating good pursuant to General Note 33(b) to 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S.							
The CNC VERTICAL TURNING CENTER MODEL VTC-5060 is classified under HTS 8458.91.1080 with a duty rate of Free.							
14. CBP OFFICE (PRINT OR TYPE) JEREMY JACKSON		15. TELEPHONE NO. 410-962-2823		16. TELEPHONE NO. 410-962-2823		17. TELEPHONE NO. 410-962-2823	
CBP Form 20 (10/10)				CBP Form 20 (10/10)			

Baltimore 세관이 발송한 원산지검증 재결정 통지서

시사점

본 사례는 상대국 세관의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결정된 후 다시 재검토하여 최종결정이 반복된 것으로, 수출자·세관·수입자·수입자측 관세사가 혼연일체의 노력으로 이룬 성과이다.

비록 미국세관 원산지검증 대응지식이 부족하여 명백한 한국산임에도 불충족 판정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서 시의 적절하게 부산세관에 자문을 요청, 적절한 대응방법을 지원받아 FTA 원산지검증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 일반특혜 관련 서식

57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작성목적

- 기업이 관세당국에 제출한 서류 및 자료 등에 대해 원가 및 제조기밀 등 중요 사항에 대해 비공개자료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 작성

작성주체	제출처
서류 및 자료의 비공개 지정 희망자	세관장

근거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요구) ① 법 제232조제3항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91조에 따라 세관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세액심사의 목적인 경우에는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가 다른 물품
 2. 품명과 원산지기준이 적정하지 않은 물품
 3. 제3국 선적물품 등 직접운송 미충족 우려물품
 4. 물품의 특성, 수출국의 산업구조 등을 고려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 제출대상 품목으로 관세청장이 지정한 물품
 5. 기타 원산지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 제25조에 따라 보완요구할 사항을 통관시스템에 입력하고 보완요구서를 신고인에게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요구서에 보완을 하여야 할 사항,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와 보완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④ 수입자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서를 통지받은 때에는 보완기간이내에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세관장은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즉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 ⑥ 세관장은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확인자료를 확인한 결과 특혜관세 적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 제232조제3항에 따라 특혜관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⑦ 법 제232조제4항에 따른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참고규정

「관 세 법」

제232조(원산지증명서 등) ①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원산지증명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하는 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 조약, 협정 등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특혜관세·국제협력관세 또는 편익관세를 배제하는 등 관세의 편익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료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하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산지 확인이 필요한 물품을 수입한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관장은 수입신고 시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를 제출한 자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그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제출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해당 자료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제출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작성양식

[별지 제6호서식]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자 료 제 출 자	상 호 (대 표 자)	
	사 업 자 번 호	
	주 소	
	전 화 / E - mail	
요 청 사 유		
요 청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p>○ 지정요청자료의 목록</p> <p>1. _____ (총페이지수 _____)</p> <p>2. _____ (총페이지수 _____)</p> <p>3. _____ (총페이지수 _____)</p> <p>4. _____ (총페이지수 _____)</p> <p>5. _____ (총페이지수 _____)</p>		
<p>「관세법」 제232조제4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라 상기 자료를 비공개자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인)</p> <p style="text-align: right;">○○ 세관장 귀하</p>		

작성방법

- 1) **자료제출자** : 자료를 제출한 기업의 정보(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E-mail)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 2) **요청사유** : 비공개자료로 지정해 주어야 하는 사유를 기재합니다.
- 3) **요청기간** : 비공개자료 지정희망기간을 기재합니다.
- 4) **지정요청자료의 목록** : 제출자료 중 비공개로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자료의 종류와 각 자료의 총페이지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6호서식]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비공개자료 지정요청서		
자 료 제 출 자	상 호 (대 표 자)	원산지무역(김국제)
	사 업 자 번 호	010-11-235678
	주 소	전라북도 군산시 나운로 366번길 77
	전 화 / E - mail	064-565-5656/et@natr.com
요 청 사 유	원가 및 제조기밀이 포함되어 있어 유출될 경우 경영활동에 차질 발생	
요 청 기 간	2013 년 10 월 2 일 ~ 2014 년 10 월 2 일	
<p>○ 지정요청자료의 목록</p> <p>1. 제조공정도 (총페이지수 2)</p> <p>2. 제조명세서 (총페이지수 5)</p> <p>3. _____ (총페이지수 _____)</p> <p>4. _____ (총페이지수 _____)</p> <p>5. _____ (총페이지수 _____)</p>		
<p>「관세법」 제232조제4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22조에 따라 상기 자료를 비공개자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 년 10 월 2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청 인 김 국 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광 주 세관장 귀하</p>		

58 조사연기승인(신청)서

작성목적

- **조사연기신청서** : 원산지와 관련된 조사를 받아야 하는 피조사자가 서면조사/현지조사의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작성
- **조사연기승인서** : 원산지조사 대상자의 연기신청에 대해 당해 신청을 승인하기 위함

구분	작성주체	제출처
조사연기신청서	조사대상자	세관장
조사연기승인서	세관장	조사대상자

근거규정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원산지조사 연기신청)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 대상자는 법 제233조제2항에 따른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연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조사연기승인(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규정

「관 세 법」

제233조(원산지증명서 등의 확인요청 및 조사) ① 세관장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의 세관이나 그 밖에 발급권한이 있는 기관에 제2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의 확인요청은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확인을 요청한 사실 및 회신 내용과 그에 따른 결정 내용을 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② 세관장은 제232조의2에 따라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물품을 수입하는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으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의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32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확인요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약·협정 등의 시행을 위하여 원산지증명서 확인요청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12.31>

작성방법

- 1) **조사통지서번호** : 원산지와 관련된 조사를 통보받은 통지서의 번호와 당해 통지서 발급일자를 기재합니다.
- 2) **조사대상자** : 조사통지서에 의해 피조사자로 지정된 자의 상호와 주소를 기재합니다.
- 3) **조사예정기간** : 최초 조사통지서 상에 기재된 조사예정기간을 기재합니다.
- 4) **조사대상기간** : 최초 조사통지서 상에 기재된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기재합니다.
- 5) **방문기간** : 현지조사의 경우 최초 조사통지서 상에 기재된 현지조사 방문기간을 기재합니다.
- 6) **자료제출기한** : 서면조사의 경우 최초 조사통지서 상에 기재된 서면자료 제출기간을 기재합니다.
- 7) **자료제출목록** : 원산지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관세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의 목록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8) **연기신청목록** : 원산지와 관련된 조사를 위해 관세당국으로부터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 중 제출 연기를 희망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그 목록을 상세히 기재합니다.
- 9) **연기희망기간** : 최초 조사통지서 상에 기재된 조사대상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희망기간을 기재합니다. 다만, 현지조사의 경우 연기를 승인받을 수 있는 기간은 조사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10) **연기승인(신청)이유** - 신청인이 원산지와 관련된 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이유를 기재합니다.
 ※ 이후 이 란에 기재된 내용은 세관장의 연기 승인이유가 기재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8호 서식] 조사연기신청서

승인번호				
조사연기승인(신청서)				
조사통지서번호 (접수일자)	서울13-2013 (13/02/24)	조사대상자	업체명	(주) 정보원
			주소(거소)	경기 성남
조사예정기간	2013.3.1 ~ 2013.3.4	조사대상기간	2012.3.1~2013.2.28	
방문기간	*현지조사	자료제출기한	*서면조사	
조사대상 수출입물품	품명	HS번호(6단위)	규격 등 물품설명	
	S EASYLIFE MASK	9019.20	SRS PART OF IN701HS 2	
자료제출목록	수출입 신고필증, 원산지 증명서 발급 대장, 원산지 증명서, Invoice, 회계 일체	연기신청목록	제출목록 전체	
연기(희망)기한	2013. 05월 이후			
연기승인 (신청)이유	국세청 조사기간과 중복되어 귀관의 조사 기간에 성실히 대응하기가 어려움, 이에 국세청 조사가 종결된 후로 조사기간을 연기하여 주신다면 조사에 성실히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첨부서류	조사예정통지서 사본			
<p>「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8제3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1조에 따라 조사연기를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 년 2 월 20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김 국 제 (인)</p> <p>서울 세 관 장 귀하</p>				
<p>위 조사기간 연기신청을 승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OO세관장 (인)</p>				

59 이의제기서

작성목적

- 원산지에 관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자 할 경우를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이의를 제기하는 자	세관장 또는 관세청장

※ 주의사항

원산지와 관련된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동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세당국은 이를 심사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심사과정 중 필요자료의 제출이나 제출자료의 보정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근거규정

「원산지제도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이의제기서) 영 제236조의8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참고규정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8(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등에 관한 조사 절차 등) ① 법 제233조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는 서면조사만으로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증명서확인자료의 진위 여부,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거나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조사의 연기신청, 조사결과의 통지에 관하여는 법 제114조제2항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④ 조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조사대상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서에 이의제기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이의를 제기하는 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2.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통지서를 받은 날짜 및 조사결정의 내용
3.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용도·수출자·생산자 및 수입자
4. 이의제기의 요지와 내용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내용이나 절차에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서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1. 보정할 사항
2. 보정을 요구하는 이유
3. 보정할 기간
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⑦ 제6항 본문에 따른 보정기간은 제5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4.1]

작성양식

[별지 제9호 서식] 원산지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이의제기서				처리기간	수수료
				30일	없음
청구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소				
	청구담당자	직함	성명	전화번호	
청구대상	수입신고번호		신고일자		
	품명 및 규격				
	처분의 내용	20년월일	관세등	원납부고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년월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년월일)			
이의제기이유					
<p>「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8제4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년월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인</p> <p>○○세관장 귀하</p>					
이의제기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p>위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년월일 세관 접수담당자 인</p>					

작성방법

- 1) **청구인** :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자(체약상대국의 조사대상자가 생산 또는 수출한 물품을 수입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대표자성명, 사업자등록번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청구를 담당하는 자의 직함과 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합니다.
- 2) **청구대상** : 이의제기를 청구하는 대상물품/수입신고서의 수입신고번호와 수입신고일자 및 신고대상 물품의 품명과 규격을 기재하고, 원산지조사결과 통보받은 처분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3) **처분이 있음을 안 날** : 원산지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자를 기재합니다. 특히, 이의 제기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 4) **이의제기이유** : 원산지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와 그 내용을 기재하되, 별지에 작성 가능합니다.
- 5) **청구인/인** : 청구인의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회사 직인/명판을 날인합니다.

작성사례

[별지 제9호 서식] 원산지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서

이 의 제 기 서				처리기간	수수료
				30일	없음
청구인	상호(법인명)	(주)정보원	사업자등록번호	123-45-6789	
	성명(대표자)	이국제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555번길			
	청구담당자	직함 과장	성명 박야탑	전화번호	031-600-0000
청구대상	수입신고번호	20130715-1-5569	신고일자	2013.07.14	
	품명 및 규격	안경테 (150*160*50mm)			
	처분의 내용	2013년 9월 3일 관세 등 500,000원 납부고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13년 9월 5일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 2013년 9월 3일)				
이의제기이유	첨부와 같음				
<p>「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8제4항 및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3년 9월 18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 이 국 제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 세관장 귀하</p>					
이의제기서 접수증 (접수번호: 호)					
청구인		처분청		청구금액	
<p>위와 같이 이의제기서를 접수하였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 세관 접수담당자 인</p>					

2. 세관 등 발급기관 작성서식

☀️ 📄

60 관세상호협약의 결과통지서

작성목적

- 계약상대국과의 관세상호협약의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 교부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상호협약의 신청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FTA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EU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상호협약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상호협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계약상대국과 관세상호협약을 진행할 수 있으며, 협약이 완료되면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관세상호협약의신청서 등) ①영 제28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약의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7.15.>

②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약의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7.15.>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관세상호협정의 신청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상호협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세상호협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관세상호협정의 신청과 관련된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결정통지서·과세처분통지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
2. 신청인 또는 체약상대국에 있는 신청인의 대리인(신청인의 물품을 수입한 자 및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이 체약상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불복쟁송을 제기한 경우 불복쟁송청구서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또는 직권으로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세상호협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에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요구를 수락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관세협이기구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2.30, 2013.3.23>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관세상호협의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작성양식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08.7.15>

관세상호협약의 결과통지서				
상호 협약의 신청인	(1)상 호		(2)사업자등록번호	
	(3)대표자 (성명)		(4)주민등록번호	
	(5)업 종		(6)소재지 (주소)	
	(7)관련물품		(8)HS번호	
국외 관련인	(9)상 호		(10)대표자 (성명)	
	(11)소재지 (주소)			
	(12)신청인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현지법인 <input type="checkbox"/> 본지사관계 <input type="checkbox"/> 현지수입업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관계:)		
협약 상대국	(13)협약대상기관			
	(14)상호협약방법			
처 리 일	(15)상호협약개시일			
	(16)상호협약종결일			
(17)관세상호협약의 요청내용				
(18)관세상호협약의 종결내용				
<p>「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기획재정부 장관 (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 하</p>				

61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정요구서

작성목적

- 원산지증명서에 오류 또는 흠결이 있을 경우 보정을 요구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세관장	원산지증명서제출자

※ 주의사항

원산지증명서의 오류 보정을 요구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정을 완료하여 보정을 요청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30조(원산지증명서의 보정) 세관장은 제28조 제1항에 따라 검증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협정 및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는 등 오류 또는 흠결이 있는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7호 서식의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정요구서를 송부하여 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른 보정을 요구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8조(자료제출 요구) ① 세관장은 법 제12조 및 「관세법」 제30조제4항·제38조제2항·제263조·제266조에 따라 검증대상자에 대하여 검증에 필요한 서류, 장부, 전산자료 그 밖에 검증과 관련된 자료(이하 이 조 및 제29조에서 “검증관련자료”라 한다)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검증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때에는 요구자료를 특정하여 서면으로 요구하고 그 사실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다만, 현지검증 수행 과정에서 개별 서류 및 장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무실 복귀 후에 사후 등록할 수 있다.

제29조(자료 보관 및 반환) ① 검증요원은 제출받은 검증관련자료를 세관관서에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 보관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보관자료 목록을 교부한다.

② 검증요원은 보관 서류 중 증거서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검증대상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③ 세관장은 검증을 종결한 때에는 세관관서에 보관한 검증관련자료를 검증대상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보관자료 반환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자료제출자 및 자료제출기한) ① **법 제12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7.15, 2010.12.31>

1.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를 공급하거나 생산한 자(체약상대국에 거주하는 자를 포함한다)
2. 당해 물품의 거래·유통·운송·보관 및 통관을 대행하거나 취급한 자

② **법 제12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1.7.29>

1. 페루와의 협정 제4.8조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 : 요구받은 날부터 90일
2. 제1호 외의 자 :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서류제출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면조사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제출기한 연기신청서를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9>

1. 희망하는 서류제출기한
2. 제출할 서류의 목록
3. 연기신청의 사유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서류제출기한의 연기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 및 서류제출기한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원산지증명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7.15, 2010.12.31>

1. 원산지증명서가 영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원산지증명서의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거나 오류 또는 흠이 있는 경우

작성양식

[별지 제7호 서식]

문서(관리)번호:			
원산지증명서 오류 보정요구서			
① 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 소			
②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		발급일자	
수출자	상호		
	주 소		
수입자	상호		
	주 소		
물품	품명/규격(HS코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
			금액(천불)
③ 오류(정정)사항			
④ 보정기한 : 20 . . . 까지			
<p>1.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일반특혜의 경우 생략) 원산지증명서 오류(정정)사항을 상기와 같이 통보하오니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오류를 보정하여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 동 기간내에 원산지증명서의 오류(정정)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위반으로 협정관세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년 월 일 ○ ○ 세 관 장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62 원산지조사(대상/수행)기간 확장통지서

작성목적

- 원산지조사 대상기간 확장통지서 : 원산지조사 대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증대상자에게 통지하기 위함
- 원산지조사 수행기간 확장통지서 : 원산지조사 수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증대상자에게 통지하기 위함

작성주체	제출처
세관장	검증대상자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11조(검증대상기간) ① 세관장은 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법과 「관세법」의 벌칙조항에 적용되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증대상기간을 정한다.

② 제20조에 따라 편성된 검증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산지 검증결과 추가 혐의가 발견되는 등 검증대상기간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검증대상기간을 확장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검증대상기간을 확장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대상기간 확장 통지서를 통지한다.

제12조(검증수행기간) ① 세관장은 검증대상자의 수출입 규모, 검증범위·방법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검증수행기간을 정한다.

1. 서면검증기간: 30일 이내
2. 현지검증기간: 10일 이내

② 세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검증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검증수행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하는 경우 관세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검증대상자가 장부·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그 제출을 지연 또는 거부하는 등 검증을 기피하는 경우
 2. 검증범위를 다른 품목이나 거래상대방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증거 확보 등을 위하여 검증수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검증수행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수행기간 확장 통지서를 통지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1호 서식]

문서번호:

원산지조사 (대상/수행)기간 확장통지서

① 조사대상자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개인(사업자)에 한함
주소			
사업장소재지			

② 통지내용

조사연장기간	20 ~ 20 (일간)		
조사대상연장기간	20 ~ 20 (일간)		
조사대상물품			
연장사유			
조사내용			
제출요구자료	별첨	제출기한	20 . . . (까지)

1. (FTA)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제1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일반특혜) 「관세법」 제114조제1항에 의하여 서면검증을 하고자 통지하오니 제출기한 까지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약 귀사가 천재지변·화재발생·노사분규 등으로 사업상 심한 곤란에 처하거나 검증을 받기 곤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30일의 범위 내에서 자료제출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국내 소재 조사대상자의 경우) 아울러 귀사가 제출기한 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법 제16조 및 제22조에서 제2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 관세청은 해당물품의 협정관세 적용제한(추징)하거나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관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세관장(인)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

(별첨) 자료제출 요구목록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63 청렴 협약서

작성목적

- 원산지검증 현지조사와 관련하여 검증담당자와 검증대상자가 청렴과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

작성주체	제출처
세관장(검증담당 공무원) 및 검증대상자	세관장(검증담당 공무원)과 검증대상자가 맞교환하여 보관

※ 주의사항

세관장은 검증대상자가 청렴협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증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 거부' 라고 표기하여 검증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3조(청렴협약서 작성) 세관장은 현지검증에 착수하는 때에는 검증대상자와 함께 별지 제3호 서식의 청렴협약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검증대상자가 청렴협약서 작성에 동의하지 않는 때에는 검증대상자 또는 대리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 거부' 라고 표기하여 검증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3호 서식]

청렴 협약서

○○세관 자유무역협정과 원산지조사팀(팀장:○○○)과 ○○○(주)(대표이사:○○○)는 20 . . . ~ . . . 까지 ○○○(주)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세관의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공정하고 깨끗한 관세심사업무 수행과 납세의무자로서 성실한 협조를 통해, 청렴한 관세행정문화 정착과 성실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면서, 아래와 같이 약속합니다.

1.○○세관 원산지조사팀은 지연·혈연·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1.○○세관 원산지조사팀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을 거절하며, 그것을 이유로 특정인 또는 업체에 특혜를 제공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겠습니다.

1.○○세관 원산지조사팀은 조사결과와 관련한 어떠한 조치를 이유로 금품 또는 향응(식사 등) 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1.○○세관 원산지조사팀은 조사 과정 중 취득하는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1.○○○(주)는 ○○세관 원산지조사팀의 자료제공 요청 및 질의응답 등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원활한 조사업무 수행이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협력하겠습니다.

1.○○○(주)는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0

○○세관
원산지조사팀 팀장

○○○(주)
대표이사 ○○○

64 자료 보관증, 보관자료 목록, 보관자료 반환증

작성목적

- **자료 보관증, 보관자료 목록** : 검증대상자에게 제출받은 검증관련 자료를 세관에 보관하기 위함
- **보관자료 반환증** : 검증관련 자료를 검증대상자에게 반환한 후, 세관에 보관하기 위함

구분	작성주체	제출처
자료보관증, 보관자료 목록	검증요원	검증대상자
보관자료 반환증	세관장	세관에 보관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29조(자료 보관 및 반환) ① 검증요원은 제출받은 검증관련자료를 세관관서에 보관하고자 하는 경우 검증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자료 보관증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보관자료 목록을 교부한다.

② 검증요원은 보관 서류 중 증거서류로서의 활용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것은 검증대상자에게 즉시 반환한다.

③ 세관장은 검증을 종결한 때에는 세관관서에 보관한 검증관련자료를 검증대상자에게 즉시 반환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보관자료 반환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4호 서식]

자료 보관증

1. 소재지 (사업장) :
2. 법인명 (상 호) :
3. 대표자 (성 명) :

귀사에 대한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보관 자료목록」의 서류 또는 물품을 조사기간 동안 당 세관에 일시보관 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 중

[별지 제5호 서식]

보관 자료목록

20

일련 번호	서류 또는 물 품 명	수량	제출자	소유자	비 고

[별지 제6호 서식]

보관자료 반환증

1. 소재지 (사업장) :

2. 법인명 (상 호) :

3. 대표자 (성 명) :

귀사에 대한 원산지조사와 관련하여 별첨 「보관 자료목록」 의 서류 또는 물품을 반환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또는 인)

귀 중

수령인

부서
성명직위
(서명 또는 인)

65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사실/회신)통지서

작성목적

-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검증결과 원산지증빙서류의 진위여부 및 정확성 등을 확인하기 곤란하여 해외공급자(수출자)를 대상으로 한 국제검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사실을 국내수입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

작성주체	제출처
세관장	국내 수입자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48조(체약상대국에 대한 간접검증 요청) ① 관세청장은 세관장으로부터 제47조에 따른 국제 간접검증을 요청받은 때에는 영문 서한 및 영문 질문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원산지증빙서류 사본과 함께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에 송부한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국제 간접검증 요청 서신을 송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요청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국내 수입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지서를 통지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 간접검증 요청에 대한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그 회신 내용을 요청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회신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 서식의 원산지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관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검토기한을 추가로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관세청장은 제5항의 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증내용 및 증빙자료의 보완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⑦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검증결과 회신을 통보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국내 수입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회신 통지서를 통지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16호 서식]

문서(관리)번호:

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요청 (사실/회신) 통지서

① 조사 대상자(국내수입자)

상 호 (법 인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 (대 표 자)		생 년 월 일	
주 소			

②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

업 체 명		해외공급자부호	
소 재 지			

③ 체약상대국 확인요청사실/회신내용

요 청 사 유				
대 상 원 산 지 증 명 서	번호	발급번호 (발급일자)	품명 (HS코드)	수입금액 (천불)
	1			
	2			
	3			
질 문 내 용	번호	확인요청사항	회신내용	
	1			
	2			
	3			
요 청 일		회신일		

1. 원산지확인요청 사실 통보시:

(FTA)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일반특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물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수출국 관세당국에 원산지확인 요청하였음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 원산지확인요청에 대한 회신내용 통보시:

(FTA)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일반특혜) 「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의7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수출국 관세당국의 원산지확인 결과 회신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 세 관 장

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 fax / e-mail

66 과세전(경정) 통지서

작성목적

- 수입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검증결과 특혜관세의 경정이 필요할 경우 그 결과를 검증대상자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작성

작성주체	제출처
세관장	국내 수입자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원산지 검증 운영에 관한 시행세칙」

제58조(과세전통지)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22조에 따라 별지 제17호 서식의 과세전(경정) 통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송부한다.

1. 검증대상자가 제57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2. 제57조의 이의제기를 세관장이 심사한 결과 이유 없음을 사유로 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
3.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제48조에 의한 원산지 검증결과를 통지한 경우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협정관세의 적용제한) ① 세관장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배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관세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미리 수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의 부도·폐업·소재불명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2.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대상자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작성양식

[별지 제17호 서식]

과세전(경정) 통지서					
통지번호				통지일자	
조사대상 업체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① 조사대상기간					
② 원산지조사 경위 및 조사내용		(별지 내역)			
③ 경정할 내역 (예상 총 고지세액 : 원)					
구분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가산세	기타세 합계
과세전 통지내역					
통지전 경정내역					
보정내역					
계					
<p>1.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및 「관세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사의 원산지조사 대상물품에 대해 경정할 내용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p> <p>2. 통지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과세전 통지내역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으며, 통지전 경정내역에 대하여는 경정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세법 제119조에 따른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또는 관세법 제132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3. 또한, 보정내역에 대하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정신청을 할 경우 가산세가 면제되며, 기간경과에 대한 보정이지만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p> <p>4. 아울러 관세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사 등 관세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20 ○ ○ 세 관 장					
<p>자유무역협정과 담당자 ○○○ 우 ○○○-○○○ 주소 ○○시 ○○동○○○ / www.customs.go.kr 전화 /fax /e-mail</p>					

67 원산지 서면검증 통지서

작성목적

-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능력 향상 및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지원을 위해 각 본부세관이 실시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 업무 중 서면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수출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작성

작성주체	제출처
세관장	서면검증 대상 수출자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8조(서면검증 통지) ① 본부세관장은 사전검증을 시작하려는 때에는 「원산지 서면검증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검증대상기업에 송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검증의 통지를 할 때에는 사전검증대상기업에게 원산지결정과 관련되는 질문서에 대한 답변과 「원산지 소명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산지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1. 원산지증명서 사본 또는 원산지확인서 사본
2. 송품장 사본
3. 수출신고수리필증
4. 원재료 공급자 목록 및 원재료 소요량 명세서(원산지소명서에 포함된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5. 수출물품의 원가구성내역서(수출물품의 단위가격을 기준으로 역내산 재료비·역외산 재료비·노무비·제조경비·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가액과 비중을 각각 표기한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한정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서면검증) ① 본부세관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검증을 위한 자료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료제출 요구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전검증대상기업이 자료제출

기간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최초 자료제출 요구일부터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본부세관장은 서면검증을 할 때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2. 각 적용대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3.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물품의 기준가격, 수입원재료 기준가격 및 부가가치비율 산출 산식의 적정여부
4. 대체가능재료를 사용한 경우 재고관리기법의 적정여부
5. 누적기준을 적용한 경우 누적대상물품 및 누적방법의 적정여부
6. 자가생산 중간재를 사용한 경우 그 중간재의 원산지 적정여부
7.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 적정여부
8. 직접운송원칙 및 충분가공기준 충족여부

③ 본부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한 때에는 「서면자료 검토 요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되, 제출요구 자료의 미비·누락 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검증대상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본부세관장은 서면검증자료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전검증대상기업과 현장검증장소·방문일정 및 현장검증 내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장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검증을 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3호서식]

원산지 서면 검증 통지서			
대 상 자	상	호	
	대	표	자
	사	업	자
	사	업	장
〈통 지 내 용〉			
서	면	검	증
기	간		대상기간
검	증	대	상
수	출	물	품
		수출신고번호가 있는 경우 기재	
검	증	이	유
검	증	내	용
제	출	요	구
제	출	기	한
검	증	기	관
		○○세관 기재	
검	증	담	당
<p>위와 같이 원산지 서면 검증을 시작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세 관 장 직 인</p>			

68 원산지 현장검증 통지서 및 현장검증 점검표

작성목적

- 수출기업의 원산지 검증 대응능력 향상 및 자유무역협정의 활용 지원을 위해 각 본부세관이 실시하는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 업무 중 현장검증을 실시하기 전에 수출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작성

작성주체	제출처
세관장	현장검증 대상 수출자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10조(현장검증) ① 본부세관장은 현장검증을 시작하려는 때에는 「원산지 현장검증 통지서(별지 제6호서식)」와 「현장검증 점검표(Check-List)(별지 제7호서식)」를 현장검증 시작일 7일전까지 사전검증대상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본부세관장은 현장검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1. 검증대상물품의 생산시설 · 생산장비 및 생산공정
2. 검증대상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각 재료의 입고 및 불출내역
3. 검증대상물품의 생산 완료 후 제품포장 및 출고내역
4. 원산지증빙서류별 실제 보관 및 관리실태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 · 관리 및 서명자 지정여부
6. 원산지자율관리업무 매뉴얼 개발 및 운영여부
7. 원산지전산관리시스템의 적정여부
8. 그 밖에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대한 무역거래계약서 · 적용환율 · 환급세액 · 회계장부 · 입출금 전표 및 증빙서류의 적정여부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출물품의 원산지 사전검증에 관한 시행세칙」

제9조(서면검증) ① 본부세관장은 제8조 제2항에 따른 서면검증을 위한 자료제출기간은 원칙적으로 해당 자료제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사전검증대상기업이 자료제출

기간연장을 요청한 때에는 최초 자료제출 요구일부터 30일의 범위에서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본부세관장은 서면검증을 할 때에는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 충족여부
2. 각 적용대상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3.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물품의 기준가격, 수입원재료 기준가격 및 부가가치비율 산출 산식의 적정여부
4. 대체가능재료를 사용한 경우 재고관리기법의 적정여부
5. 누적기준을 적용한 경우 누적대상물품 및 누적방법의 적정여부
6. 자가생산 중간재를 사용한 경우 그 중간재의 원산지 적정여부
7.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 재료의 원산지 적정여부
8. 직접운송원칙 및 충분가공기준 충족여부

③ 본부세관장이 제2항에 따라 검토를 한 때에는 「서면자료 검토 요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되, 제출요구 자료의 미비·누락 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검증대상기업에게 자료제출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본부세관장은 서면검증자료만으로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사전검증대상기업과 현장검증장소·방문일정 및 현장검증 내용 등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장 또는 생산시설에 대한 현장검증을 한다.

작성양식

[별지 제6호서식]

원산지 현장검증 통지서		
대 상 자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통 지 내 용〉		
검 증 기 간		
현 장 검 증 방 문 기 간		
검 증 대 상 수 출 물 품		
검 증 이 유	- 현지검증이 불가피한 사유를 적시	
검 증 내 용	- 현지에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 적시	
검 증 방 법	- 물적조사대상 : 장부, 서류, 공정, 재료, 설비 등의 범위 적시 - 자료의 열람, 복사, 확인서 징구 등 필요한 검증방법 적시	
검 증 기 관		
검 증 공 무 원		
<p>위와 같이 원산지 현장 검증을 개시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세 관 장 직 인</p>		

[별지 제7호서식]

현장검증 점검표	
현장검증 사업장	※ 본사 또는 공장명 기재
현장 확인 목록	업체 준비사항
1	검증대상물품의 생산시설·생산장비 및 생산공정
2	대상물품의 재료 입고 및 불출내역
3	생산 완료 후 제품 포장 및 출고 내역
4	원산지 증빙서류별 실제 보관 및 관리 실태
5	원산지증명서 작성대장 비치·관리
6	원산지증명서 서명자 지정여부
7	원산지자율관리업무 매뉴얼
8	원산지 전산관리시스템
9	기타
10	추가 확인 목록 있는 경우 기재
11	추가 확인 목록 있는 경우 기재
12	추가 확인 목록 있는 경우 기재

69 사전심사 신청대장

작성목적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가 수입신고 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하는 사전심사신청을 관리하기 위해 심사관청이 작성·보관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사전심사기관	-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사전심사를 희망하는 자는 사전심사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내역을 신청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0조(사전심사의 신청)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과 같다.

② 신청인은 제1항의 사전심사신청서에 영 제19조제2항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28조의4에서 정하는 사전심사업무 담당기관 또는 부서의 장(이하 '사전심사기관(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영 제19조 제1항에 규정된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2. 각 협정에서 정하는 사전심사 신청대상인지 여부
 3. 신청주체, 신청서 서식 및 기재항목 적정 여부
 4. 제51조에 따른 반려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5. 신청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었는지 여부
- ④ 관세청장은 사전심사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신청 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사전심사 신청대장에 신청내용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 ⑤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은 품목당 3만원의 사전심사 신청수수료를 국고수납 은행에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제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사전심사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70 사전심사서

작성목적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가 수입신고 전 미리 심사해 줄 것을 신청한 사전심사신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기 위해 작성·교부

작성주체	제출처	적용협정
사전심사기관	사전심사신청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칠레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싱가포르 <input type="checkbox"/> 한-EFTA <input type="checkbox"/> 한-아세안 <input type="checkbox"/> 한-인도 <input type="checkbox"/> 한-EU <input type="checkbox"/> 한-페루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한-미 <input type="checkbox"/> 한-터키

※ 주의사항

사전심사신청을 받은 기관은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사전심사서에 결과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심사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근거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3조(사전심사 결과통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사전심사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② 사전심사기관(부서)장은 사전심사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전심사의 주요 내용을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제28조의 수리전 협정관세적용신청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영 제19조제6항 각 호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참고규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14조(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 ① 협정관세의 적용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의문이 있는 자(계약상대국의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의문사항을 미리 심사(이하 “사전심사”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세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기재한 서류(이하 “사전심사서”라 한다)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자료의 미비 등으로 사전심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수입자가 사전심사서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 등을 신청하는 경우 수입신고된 물품의 내용이 사전심사서의 내용과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심사서의 내용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서의 내용변경 통지를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사전심사의 절차·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1.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원산지 등에 관한 사전심사) ①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18, 2011.12.2>

1.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원산지에 관한 사항
2. 당해 물품 및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의 품목분류·가격 또는 원가결정에 관한 사항
3. 당해 물품의 생산·가공 또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의 산정에 관한 사항
4.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환급·감면에 관한 사항
5. 해당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6. 제4조에 따른 수량별 차등협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정관세의 적용 또는 관세면제에 대한 기초가 되는 사항으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전심사신청서
 - 가. 신청인·수입자 및 수출자(수출자와 생산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는 생산자를 포함하되, 생산자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나.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품목번호 및 가격
 - 다.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재료별 품명·품목번호·가격 및 원산지
 - 라. 당해 물품의 제조공정(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 마. 사전심사를 원하는 구체적인 내용
 - 바. 그 밖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항
2. 거래계약서·원가계산서·원재료내역서·공정명세서 등 신청내용에 대한 심사에 필요한 서류

③ 관세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미비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충족여부 등의 신청사항을 심사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사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물품과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원산지에 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의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⑤ 법 제14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라 함은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을 말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기간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2.18>

⑥ 법 제1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사전심사 후 수입신고 전에 협정 또는 관세법령의 개정이나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 또는 상황이 변경되어 사전심사의 내용이 변경된 사정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신청인이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사전심사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3. 사전심사의 신청내용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또는 소송제기 등을 받은 권한 있는 기관 또는 법원의 최종결정 또는 판결이 당해 사전심사의 내용과 다르게 된 경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사전심사) ① 관세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전심사의 신청인에게 사전심사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심사결정의 이유를 함께 알려야 한다.

② 관세청장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전심사 결과(법 제20조에 따른 비밀취급자료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외한다)를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협정에서 사전심사 결과 공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12.2>

③ 법 제14조제4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신청 물품 당 3만원을 말한다. <개정 2008.7.15, 2010.12.31, 2011.12.2>

④ 「관세법시행령」 제236조의4는 사전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Form 23]

Approval No.				
Advance Ruling				
Applicant	Name			Country
	Address			Telephone
Importer	Name			Country
	Address			Telephone
Exporter (or Producer)	Name			Country
	Address			Telephone
Content				
Goods	Name	HS No.(6digit)	Description of Goods	
Decision and Basis				
<p>I notify you of the advance ruling of the origin pursuant to Article 0.0 of the Korea-000 FTA Date(yy/mm/dd)</p> <p>The Commissioner of Korea Customs Service (signature)</p>				
<p>※ Remark</p> <p><u><i>This advnace ruling is applied to the identical goods in name and description with advnce ruling.</i></u></p>				

PART 4.

부록

KOREA
CUSTOMS
SERVICE



1. FTA 활용절차



1	FTA협정 발효여부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가 발효되었는지 확인 										
2	품목번호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FTA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필수 수입물품의 경우 품목번호 확인을 위해 관세사 등 전문가와 상담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수출물품의 경우 HS가 우리나라와 다르게 분류될 수 있으므로 상대국 수입자로부터 확인 필요 										
3	FTA 관세혜택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출물품 품목번호를 찾은 후 상대국의 FTA 관세혜택 여부 확인 필요 [관세혜택=(상대국 일반세율-FTA세율) × 수출금액] FTA 세율 확인은 협정문상 각국 양허안으로 확인 										
	세율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정세율 : FTA가 발효되면서 해당 협정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로 FTA발효로 품목별로 즉시철폐, 단계별 철폐, 관세 변동이 없는 미양허 품목 등으로 구분 기본세율 : 자국법에 따라 정해진 세율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세율 기준세율 : 관세인하 교섭 등에서 각국의 관세율 수준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세율 MFN세율 : 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실행 관세율 										
4	원산지결정기준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FTA 관세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협정상 규정된 HS별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필요 원산지결정기준 종류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종 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일반 기준</td> <td style="text-align: center;">기본원칙</td> <td>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총부가공원칙</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분야별특례</td> <td>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포장 및 용기, 전시물품</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품목별기준</td> <td>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선택기준, 조합기준</td> </tr> </tbody> </table>	구 분		종 류	일반 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총부가공원칙	분야별특례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포장 및 용기, 전시물품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선택기준, 조합기준
구 분		종 류									
일반 기준	기본원칙	완전생산기준, 역내가공원칙, 총부가공원칙									
	분야별특례	누적기준, 최소기준, 중간재, 대체가능물품, 간접재료, 세트물품,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포장 및 용기, 전시물품									
	품목별기준	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가공공정기준, 선택기준, 조합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판단방법 ① 재료명세서(BOM : Bill Of Material)로 원재료 내역 확인 ②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등을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 BOM을 기초로 원산지결정에 필요한 구입경로, 각 재료별 가격, 품목번호 등을 추가 ii) 국내/해외구매 여부, 수출자 직접구매/생산 여부, 납품업체 생산/국내구매/수입 여부 확인 iii) 국내 구매 부품에 대해 역내산 인정을 위해서는 납품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 수취 필요 ③ 최종생산제품의 원산지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의 원산지 및 가격을 기초로 최종제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결정
5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상대국에서 FTA 세율 적용을 위해 한국산 제품임을 증빙하는 필수 서류 • 각 협정에서 정한 규격 및 지침에 따라 정확하게 발급하여야 상대국 세관에서 FTA특혜세율 적용 가능 • 원산지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 상대국에서 특혜적용이 배제될 수 있어 정정발급 필요
6	수출 및 관련 서류 보관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TA특혜적용에 대해서는 사후검증이 원칙이므로 수출자·생산자 등 거래당사자에게 5년간 자료보관의무 부여 • 수출자 보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산지증명서 사본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서류 사본 ② 수출신고필증 ③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④ 수출거래 관련 계약서 ⑤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⑥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⑦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⑧ 생산자가 해당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수출자에게 제공한 서류 • 수출자 보관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출자 또는 계약상대국의 수입자에게 당해 물품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제공한 서류 ② 수출자와의 물품공급계약서 ③ 당해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수입신고필증(수출자 명의로 수입신고한 경우) ④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생산 또는 구입 관련 증빙서류 ⑤ 원가계산서, 원재료내역서 및 공정명세서 ⑥ 당해 물품 및 원재료의 출납·재고관리대장 ⑦ 재료생산자가 해당 재료의 원산지증명을 위해 작성한 후 생산자에게 제공한 서류

2.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절차(세관)

☀ ☰

STEP 1.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접속

업무처리>수출통관>FTA원산지증명서 들어가기

FTA원산지증명서

- 신고서작성
 - FTA원산지 발급신청
 - 거래처관리
 - 볼러오기
 - 신고서조회
- 처리현황
 - 수출통관처리 현황
 - FTA원산지 상세
 - 원산지증명서 발급
- 전자문서
 - 임시문서함
 - 수발신문서함*

*** FTA원산지관리 통관포탈 접근 방법**

- 관세청 UNI-PASS에서 업무처리>수출통관을 클릭한다
- 수출통관 메뉴중 하위의 신고서작성,처리현황, 전자문서함 중에 하나를 클릭한다
- FTA원산지발급신청, 수출통관처리현황, 임시문서함, 수발신문서함 중에 사용하고자 하는 메뉴를 클릭하여 하위를 오픈 한다

STEP 2.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세부내용 입력 (공통사항)

업무처리>수출통관>신고서작성>FTA원산지발급신청서

공통사항 1/2

- 원산지제출번호는 채번버튼을 클릭하면 자동 생성된다
- 신청차수는 최초제출의 경우 0으로 자동 부여된다
- 원산지 인증수출업체 유효성을 검증한다
- 자주쓰는 거래처를 미리 등록해 놓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편리하게 사용한다
- *수출신고번호의 유효성을 검증한다. *수출신고서의 관이 1개월 경우 이미 승인된 이전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재검과거 유효하지 않다 *유효한 수출신고번호의 경우 수리일자를 지정으로 기재한다

STEP 2-3.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사용 가능한 편리한 기능

업무처리>수출통관>신고서작성>FTA원산지발급신청서

*** 블러오기 기능을 활용한 과거자료 활용한 신규문서 작성**

- ① 하단의 블러오기 버튼을 클릭한다
- ② 팝업으로 조회된 FTA원산지증명서 처리현황 화면에서 조회조건에 맞는 자료를 조회한다
* 원본조회 하고자 하는 자료의 제출번호를 클릭한다
- ③ 원본 조회된 자료를 확인한다
* 조회된 자료를 활용해서 신고서를 신규작성 하고자 하는 경우 하단의 신규전환 버튼을 클릭한다
- ④ 블러온 자료를 활용하여 새로운 신고서를 작성한다
* 채번버튼을 클릭하여 새로운 제출번호를 생성한다

*** 화면설명**
신청인이 신청한 신청건에 대해 수출통관처리현황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기능을 제공한다

*** 조회조건**

- 신고일자: 신청일자를 기간으로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 제출번호: 신청인의 제출번호를 입력 후 조회
- 시식구분: FTA원산지증명서를 선택 후 조회

*** 화면기능**

(1) 조회
조회조건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조건에 맞는 정보가 조회된다.

STEP 3. 원산지증명서 신청서 처리현황 조회

업무처리>수출통관>처리현황>수출통합처리현황

*** 화면설명**
신청인이 신청한 신청건에 대해 수출통합처리현황에서 진행상태를 확인하고 제출내역 화면으로 이동기능을 제공한다

*** 조회조건**

- 신고일자: 신청일자를 기간으로 조회
-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
- 제출번호: 신청인의 제출번호를 입력 후 조회
- 시식구분: FTA원산지증명서를 선택 후 조회

*** 화면기능**

(1) 조회
조회조건을 선택하고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해당조건에 맞는 정보가 조회된다.

*** 제출번호 클릭시 FTA원산지증명서 상세 화면으로 이동**

*** 처리상태 클릭시 처리상태 상세 화면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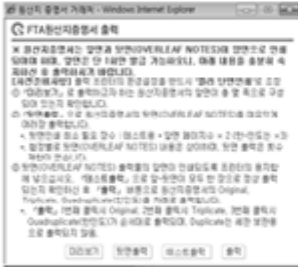
접수
반려
보정
승인

STEP 6. 원산지증명서의 발급(1)

업무처리/수출통관신고서작성/FTA원산지증명서 발급(1/2)

* 화면설명

신청인이 신청한 원산지증명서가 승인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한다



* 조회조건

- 원산지계출번호:
계출번호를 입력 후 조회
FTA원산지상세에서 화면연계 되어
자동조회 된다

* 화면기능

(1) 미리보기

- 출력형태를 뷰어형태로 조회하는 기능



(2) 뒷면출력

- Overleaf Note 등의 뒷면을 출력하는 기능

(3) 테스트출력

- 테스트로 출력하는 기능
- 상단에 "Test Print" 글자가 표기된다
- 세관직원이 출력되지 않는다

STEP 6. 원산지증명서의 발급(2)

업무처리/수출통관신고서작성/FTA원산지증명서 발급(2/2)

* 화면설명

신청인이 신청한 원산지증명서가 승인된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한다



(4) 출력

- 승인된 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출력한다
- 출력은 앞면과 뒷면으로 구성되므로
양면으로 출력해야 한다
- 전-이세연, 전-싱기포르는 2부가 출력되며
첫번째는 Original, 두번째는 Triplicate 이다
- 전-인도는 3부가 출력되며 세번째는
Quadruplicate 이다
- Duplicate는 세관 보관용이므로 출력하지
않는다

3.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절차(상공회의소)

☀ ☎

STEP 1. 웹인증 사용자 등록 (<http://cert.korcham.net>)



STEP 1-1. 웹인증 사용자 등록화면



STEP 2. 원산지증명서 작성신청(1) : 로그인 및 신청서 작성

대한상공회의소 무역인증서비스센터
Trade Certification Service Center

원산지 증명서 목록 (Web Certification List) | 신청 및 발급받은 증명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검색어: [] 조회

접수번호: 2010-10-27 ~ 2010-11-30 증명서번호: [] 조회

조회: []

페이지: 0/0 총페이지: 0건

접수번호	증명서종류	대표 Invoice	접수일자	처리상태
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원산지 증명서 발급

정보관리

- 회원정보 수정
- 출력인증지침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회사로그 관리

STEP 2. 원산지증명서 작성신청(2) : 신청서식 작성

Home >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신청서식작성

신청서식 작성

원 - 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신청번호	접수번호	신청일자	신청인명	접수일자	접수번호
10000000000000000000	00000000000000000000	2010-10-26 17:25			

기존 서식 복사

원산지인용 수출자 인증번호

[] ex) 12345678901 - 구분자없이 입력하세요.

※ 서전에서 인증수출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해당없는 경우 빈칸)

STEP 2. 원산지증명서 작성신청(5) : 수출신고 정보확인 및 품목정보 추가

수출신고번호 111-11-11-11111111 ex) 123456789123456 - 구분자없이 입력하세요. [?] [X]

수출신고번호는 전자출발국경검역에 도착하여 수출신고와 일치한 정보입니다.
 국경에서의 행사를 사용하여 세칙을 작성한 경우 기존 수출신고번호를 그대로 사용하여 반래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 해당 수출신고번호로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 이력이 있을 경우 해포령에 따른 발급금포차 해발금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출신고번호가 여러개일 경우 [?]를 눌러 추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E. Marks & numbers; number and kind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수출신고번호 111-11-11-11111111

수출신고일련번호

HS 코드 9031801000 - 구분자없이 숫자만 입력하세요.
 * 10자리 모두 입력해야 하며 Origin criterion 이 표시됩니다. (CTH/RVC)
 * *Origin criterion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HS 코드 앞 숫기버튼([?])을 눌러 해당 품목을 검색, HS 코드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품명

상품명세

B. Origin criterion (* 누락기준 * 취소기준 * 선택원소)
 * 누락기준, 취소기준을 필요한 경우에만 선택하세요.

Origin Confering Criteria

보장수(수/단위) / 단위

수량(수/단위)

총량(수/단위)

FOB 금액 / USD * 수출신고일련번호의 FOB 신고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 [추가]버튼을 누르시면 위에 입력하신 품목정보가 아래쪽 품목리스트에 등록됩니다.
 품목리스트에 등록되지 아니한 품목은 등록되지 않으나 품목정보를 입력하신 후 [추가]버튼을 꼭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수출 신고번호	량	HS코드	품명	수량 (단위)	총량 (단위)	금액	원산지 기준	원산지 소명서
111-11-11-11111111	1	9031.80-1000	Ultrasonic fish finders	10(SET)	1,000(KG)	50,000(USD)	CTH	작성

STEP 3. 원산지소명서 작성

원산지 소명서 * 모든 항목에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주세요.

1. 수출품명 명세 (Specification OF Exporting Item)

1. 수출품의 HS No	6005220000
2. 수출품목	Warp knit Dyed fabrics
3. 수출국	Kuala Lumpur, MYANMAR

4. 원산지 기준 및 설명

CTH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일
 것 2. 40% 이상의 여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 완전생산기준(WO : Wolly Obtained)
 상품이 한 국가 내에서 재배, 가공, 조립 등 모든 생산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 (주로 농, 수, 축산물 및 그 가공품)

○ 세번변경기준(세번변경기준)
 원재료와 완제품의 세번(HS코드)을 비교하여 세번이 일정 단위 이상으로 변하는 경우 이를 실질적 변경으로 인정하여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CC (Change of Chapter) HS 2단위 변경 / 류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HS 4단위 변경 / 호
 CTSN (Change of Tariff SubHeading) HS 6단위 변경 / 소호
 *최소기준 : HS코드 변경이 없는 원재료 사용율이 10% 미만일 경우 인정하는 기준

○ 부가가치기준 (RVC : Regional Value of contents)
 일정수준 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하는 기준으로 정확한 부가가치비를 환산을 위한 환가계산 및 환가공계가 필요한 바,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불가피할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좋다.
 *누락기준 : 협정국내 원재료를 사용하여 부가가치를 누락하여 수출물품을 생산 시 적용

○ 특정공정기준 (SP : Specific Process)
 상품의 제조나 가공 과정에서 특정 생산공정이나 특정 재료를 사용한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하는 기준이다. 예) 의류의 총계 수명국가, TV의 브라운관(CRT) 생산 국가 등

STEP 3. 원산지조사명서 작성(2)

III. 주요조사내용

1. 수출물품의 관세적인 제조과정 설명:

2. 세번변경 변화과정 (원재료 등의 완성품의 HS코드 6자리 변화과정 포함):

3. 수출물품의 관세적인 제조과정 설명:
한국제품 통제로부터 원시구입 - 동방양자재 원시 열세공경 위하 - 당시에서 편직 및 마무리 공정

4. 세번변경 변화과정:
8604.30 (인조섬유)를 8604.32 (염색공정을 수행한 면직물)로

IV. 관세공표내서

NO	과목명	HS코드	원산지	수량	가격	공급지(생산지)
1.	인조물사	8604.30	한국	70%		한국제조
2.	면직물	8604.32	대한민국	20%		한국제조
3.	면직물	8604.30	인도	0.5%		INDIA
4.	면직물	8604.11	싱가포르	0.5%		SG.00

발행지 제1호서식(개정 2008.7.15) (국문 발행)

발행지조사명서

1. 수출품명: 인조물사
2. 수출품명: 면직물
3. 수출품명: 면직물

발행지조사명서

1. 품명: 인조물사
2. 품명: 면직물
3. 품명: 면직물

발행지조사명서

1. 품명: 인조물사
2. 품명: 면직물
3. 품명: 면직물

발행지조사명서

1. 품명: 인조물사
2. 품명: 면직물
3. 품명: 면직물

STEP 4. 원산지증명서 작성 : 품목정보 등

발행지의 자동작성 **발행지의 자유기**

※ 아래 입력받은 원산지증명서식 제 6, 7번 항목(Descriptions of Goods)에 출력될 내용을 생성하는 화면으로, '발행지의 자동작성' 버튼을 클릭하면 입력한 기본사항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자동으로 출력됩니다.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on (see notes overleaf)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FOB)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 of Packages	7. Description of Goods	8. Origin	9. Value	10. Invoice No. & Date
1	N/M	[HS CODE : 8505.21] Berg knit fabric Unbleached or bleached 1000 1000 1,000K 1,100K 1200 X 500 Manufacturer :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OTH	1,100K 20,800USD	OWP01126 2010-11-26

ORIGINAL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FORM A-E
THE REPUBLIC OF KOREA

1. Description of Goods: Berg knit fabric Unbleached or bleached 1000 1000 1,000K 1,100K 1200 X 500

2. Origin: OTH

3. Value: 1,100K 20,800USD

4. Invoice No. & Date: OWP01126 2010-11-26

5. Signature: K. D. Park

6. Date: 20 JUN 2010

STEP 4. 원산지증명서 작성(2) : 서명자 정보 등 입력

Declaration by Exporter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한국

exported to: USA

Signature(동국서명): Hong

Name: *None 입력여부 (체크하시면 출력시 Name를 표시합니다.)

원산지증명서 특례

Third Country Invoicing

Exibition

Back-to-Back C/O

ORIGINAL

KOREA-FREE TRADE AREA
PRESID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FROM: KOREA

TO: USA

STEP 5. 원산지증명서 신청 구분 (신규 혹은 정정신청)

특기사항

신청구분: 신규신청 정정신청

신청자구분: --신청자구분 선택--

신청수량: * 원본 1 * 사본 4 * 원본 2회 이상 시에는 관련 근거서류(L/C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발급기관 전달사항

* 서행통관 및 신청자정보와 다른 신청자인 경우 메모해 담당자 이름 및 전화번호도 남겨주세요.
(서류상사 중 전화상담이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 신청구분 항목정의

신규신청 : 수출신고 후 해당 수출 건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최초 신청시

정정신청 :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에 정정사항에 발생하여 재발급 신청시

STEP 6.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필요서류 첨부

근거서류유형	<input type="checkbox"/> 첨부파일 <input type="checkbox"/> FAX (FAX전송시 표지에 반드시 접수번호를 기재해주세요)		
첨부파일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첨언보기..."/>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첨언보기..."/>	
	<input type="text"/>	<input type="button" value="첨언보기..."/>	
<p>※ 수출신고증은 근거서류로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 FAX는 02-6050-3321~3/ 3328~30 으로 접수번호 기재하여 보내주세요. ※ 이미 첨부된 파일의 재사용이 필요하셨던 경우에는 기존 첨부파일의 수량에 체크하셔야 합니다. ※ 첨부파일은 최대 총 5MB 까지만 가능합니다.</p>			
서명등록 및 신청자정보			
사업자번호	104-82-03606	업종명	서울상공회의소
주소	서울 중구 송파로1가 (태은로)		
담당자 전화	02-6050-3305	신청자	이경숙
<p>[과장]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된 내용이 저장됩니다. 작성이 완료된 신청서역 전송은 일족 "결의증신청"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취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작성된 내용을 저장하지 않고 작성화면을 떠나게 됩니다. [대리보기] 작성된 내용의 출력물을 미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초 작성시에는 [과장]을해 [대리보기]가 가능합니다. [신청화면으로 이동] 작성된 내용을 저장하고 "결의증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대리보기]와 [신청화면으로 이동]시 변경된 내용이 자동 저장됩니다. ※ 반드시 대리보기를 하셔서 작성된 서석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p>			
<input type="button" value="저장"/> <input type="button" value="취소"/> <input type="button" value="대리보기"/> <input type="button" value="신청화면으로 이동"/>			

STEP 7. 원산지증명서 작성 마감 및 신청

▶ 웹 인증 신청

Home > 웹 증명서 발급 > 웹 인증 신청

(Application) | 작성한 신청서를 상공회의소에 접수합니다. 내용을 수정할 수 있지만 접수된 신청서는 불가능 합니다.

신청자가 원산지 신청서의 내용을 정확히 기재하여 대외무역법의 원산지 표시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제 30조에 의거 3억원 이하의 과징금과 동법 제50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됩니다. 또한 동법 30조 2항에 의거 외국산물품용 국산물품용도 가장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input type="checkbox"/>	Invoice	출원서류명	접수수령일시	상태	비고
<input checked="" type="checkbox"/>	CH4M101126	한-미FTA 원산지증명서	10-11-26 10:44	작성완료 (Saved)	조회 삭제

신청결과 문자메시지 수신여부

수신 수신안함

휴대전화번호

○ 다른인증(대행인증)로 제공계연서 발행시

서명등록번호

업종명

 (※ 해당업종번호를 입력하시고 검색하세요)

※ 대리인증 신청서를 한번에 접수할 수 있고, 동시에 심사결과를 문자메시지로 수신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 신청 및 발급 처리권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증명인증서 오류(해당코드 100)가 발생할 경우 다음 증명화면을 다운로드 하셔서 설치해 주십시오.
 ※ 꼭 확인 설치후 시스템 재시작에 필요 할 수 있습니다.

Windows Internet Explorer



이 문서를 신청하시겠습니까?
 관심을 건넬하신 후에는 수정작성 수가 없으므로 미리보기 버튼을 눌러 문서를 확인하신 후에 전송하시기 바랍니다.

STEP 8. 원산지증명서 신청현황 조회

웹 인증 현황

(Web Certification List) | 신청 및 발급받은 증명서를 조회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Home > 홈 > 증명서 발급 > 웹 인증 현황

접수번호(Application No.)	001-10-0001921R
-----------------------	-----------------

- ※ 승인된 문서는 컬러프린터를 이용하여 A4 일반 용지에 인쇄하여야 합니다.(2010.02.01부터 한번도맹검 영식지 사용금지) 위 주의 사항을 따르지 않을 경우 통관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한-아세안 FTA, APFA(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협정) 원산지증명서는 반드시 원산지증명서 뒷면에 "OVERLEAF"를 인쇄하여 수입국 세관에 제출하여야 관세특혜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원본은 1회만 출력되며, 새 출력이 되지 않으므로 사본을 먼저 출력하여 내용 확인 후 원본을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웹사이트 중 상업은행, 포항광역시, 가격정보에서는 상공회의소 로고(중앙에 위치한 이미지)가 출력되지 않습니다.

증명서종류	접수일시 (Application Date)	발급일시 (상시기준)	처리상태 (Status)	인쇄 (Print)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CHAM101126]	2010-11-26 17:12	2010-11-26 17:25	발급완료 (Accept) 원본신청 1회/원본출력 0회	원본 사본 OVERLEAF

- ※ 원본 출력은 신청접수까지 원본이 출력되며, 신청접수 이후부터는 사본이 출력됩니다.
[출력가능 프래머 목록]
- ※ 인쇄 및 미리보기는 ActiveX Control의 설치가 필요합니다.
PC의 설정이나 보안상태에 따라서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증명 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다운로드 1]
[증명 조회 및 출력프로그램 다운로드 2]

STEP 9. 발급완료 된 원산지증명서 프린트 (칼라프린트 사용)

ORIGINAL

1. Issued on request from 2. Applicant, beneficiary name, address, country: HANJUNG STEEL 200-100, 200-100 RD KOREA		3. Issued on request from 4. Applicant, beneficiary name, address, country: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Bilateral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C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5.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to be followed: Departure date: 07/07/2010 Your's name: HANJUNG STEEL Port of Loading: SOON, KOREA Port of Discharge: JAKARTA, INDONESIA		6. For Official use: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input type="checkbox"/>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	
7. Name and number of packages and weight and value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originating country)	8. Origin criteria (where applicable)	9. Country of origin (where applicable)	10. Number and date of issuance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goods and materials are entirely that of the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originating in INDONESIA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rrect control,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WHEN EXTENDED FROM 2004 TO 2010 29 JUN 2010  Director HANJUNG STEEL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VERLEAF FORM

1. Before filling in original form the program administrator will make the following to the Trade Agency (Export):

2. Issued on request from 3. Applicant, beneficiary name, address, country:
 HANJUNG STEEL
 200-100, 200-100 RD
 KOREA

3. Issued on request from 4. Applicant, beneficiary name, address, country: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Bilateral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C
 Issued in THE REPUBLIC OF KOREA
 (Country)

4.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

5. Means of transport and route to be followed:
 Departure date: 07/07/2010
 Your's name: HANJUNG STEEL
 Port of Loading: SOON, KOREA
 Port of Discharge: JAKARTA, INDONESIA

6. For Official use:
 Preferential Treatment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

7. Name and number of packages and weight and value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re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originating country)

8. Origin criteria (where applicable)

9. Country of origin (where applicable)

10. Number and date of issuance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goods and materials are entirely that of the goods were produced i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ASEAN-Korea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originating in INDONESIA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rrect control,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WHEN EXTENDED FROM 2004 TO 2010
 29 JUN 2010

 Director
 HANJUNG STEEL
 Place and dat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원산지증빙서류 작성실무가이드

발행일 2014년 4월
발행처 관세청 FTA 집행기획관실
편집인 이명구 FTA 집행기획관
제영광 FTA 집행기획과장
정재호 사무관 / 고현주 행정관
연락처 T. 042-481-3200 F. 042-481-7753
주 소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인 쇄 디자인아람 042-625-2771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